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071호

2025. 6. 12.(목)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제2025-1763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
제2025-1791호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6
제2025-1812호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35
제2025-1813호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3
제2025-1847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8
제2025-1849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52

◈ 고 시

제2025-306호 서울온수일반산업단지 개발(변경)계획 ····· 57
제2025-30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66
제2025-308호 사당5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69
제2025-309호 중랑구 상봉동 109-28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 ····· 101
제2025-311호 온수근린공원(문학지구)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12
제2025-313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 131
제2025-315호 건축허가등 제한 지형도면 고시 ····· 135

◈ 공 고

제2025-1688호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예고 및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146
제2025-1689호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예고 및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147
제2025-1690호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예고 및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148
제2025-1691호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예고 및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149
제2025-1720호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위한 열람공고 ····· 150

제2025-1783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162
제2025-1784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168
제2025-1785호 녹색교통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174
제2025-1786호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178
제2025-1800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181
제2025-1811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 184
제2025-1815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 186
제2025-1816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187
제2025-1828호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 188
제2025-1829호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6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 193
제2025-1830호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용산전자상가지구 나진19·20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 199
제2025-1831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지정 공고 ····· 205

◈ 서울특별시의회공고

제2025-393호 주식매각신고사항 공고 ····· 233

◈ 서울특별시교육청

[입법예고]

제2025-24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238
제2025-25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45

◈ 구 고 시

제2025-843호 도시계획시설(북한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열람공고 (종로구) ····· 248
제2025-56호 도시계획시설사업(불암산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노원구) ····· 254
제2025-57호 도시계획시설사업(불암산 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노원구) ····· 257

제2025-59호 도시계획시설(학교:태강삼육초등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노원구) ····· 261
제2025-83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서대문구) ····· 263
제2025-86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초구) ····· 265

◈ 구 공 고

제2025-921호 도시계획시설사업(불암산근린공원 조성) 완료 공고(노원구) ····· 270
제2025-1160호 도시관리계획(G밸리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금천구) ····· 271
제2025-1184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공사완료 공고(서초구) ····· 273
제2025-1204호 도시관리계획(사당역세권(방배동 452-1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서초구) ····· 274

◈ 사업소고시

제2025-25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275
제2025-25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276
제2025-25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277
제2025-25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277
제2025-25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278
제2025-25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278
제2025-25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279
제2025-26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279
제2025-26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280
제2025-26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280
제2025-26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281
제2025-26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281
제2025-26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282
제2025-26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282

◈ 기 타

제2025-218호 하천점용(변경) 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283

◈ 정 정

제2025-312호 도시관리계획(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 284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763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하수도사용료를 연차별로 현실화함으로써 하수도 재정 여건을 개선하여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한강 수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요금 현실화율 80%를 목표로 5년간 연평균 9.5% 하수도사용료 인상(안 별표 2)
나. 가정용 누진제 폐지, 일반용 누진제 기존 6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안 별표 2)
다. 유출지하수는 현재 가정용 최저 요율이 적용됨에 따라 가정용과 연계하여 개편(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물재생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물재생계획과(전화: 02-2133-3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 2133-1042

(2) 이메일: yoonsj0225@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물재생계획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가목, 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의 수행

라. 「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등의 수행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6조”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6조”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당해년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영‘ 이라 한다.)”를 “‘영’이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4항 후단 중 “납부토록”을 “납부하도록”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33조의2 단서 중 “「지방재정법」 제82조”를 “「지방재정법」 제82조”로 한다.

제34조제1항제7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58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을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 중 “경우 :”를 각각 “경우 :”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경우 :”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를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로, “경우 :”를 “경우:”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하수도사용료 요율 및 업종구분 (제23조 관련)

가. 하수도사용료 요율표(1개월 기준)

구분 / 업종	사용구분(㎥)	연도별 단가(원/㎥)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부터
가정용	㎥당	480	560	630	700	770
욕탕용	500이하	520	590	660	730	800
	500초과~2,000이하	630	710	790	870	950
	2,000초과	720	810	890	970	1,050
일반용	30이하	580	660	740	820	900
	30초과~100이하	1,550	1,690	1,830	1,970	2,100
	100초과~1,000이하	2,100	2,200	2,300	2,400	2,500
	1000초과	2,200	2,300	2,400	2,500	2,600
유출지하수	㎥당	480	560	630	700	770

※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업종 구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한다.

나.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업 종	구 분 내 용
가정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1에 따른 가정용 업종
욕탕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1에 따른 욕탕용 업종
일반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1에 따른 일반용 업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뜻은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배수설비 설치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 안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 · 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 · 공유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3. ---------- ---------- 한다) - ---------- ---------- ---------- ---------- ---------- ---------- ---------- ---------- ----------.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12. "타행위"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 ---------- ---------- ----------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수행	수행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등의 수행	라. 「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등의 수행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제5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①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5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① ---------- ---------- -- 한다)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사용료 등) ① ~ ③ (생략)	제23조(사용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하수도사용요금의 산정 및 세대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④ ---------- ---------- ----------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6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수도 조례」 제26조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② (생 략)	제2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점용료는 회계연도 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 분을 해당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점용허가시에 당해년도 분을 선납하게 한다.	③ ---------- 해당 연도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2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 "영"이라 한다)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③ (생 략)	제3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그 개산액을 통보	④ ----------

하되, 제29조의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준용하여 징수(납부)한다. 다만 제29조를 준용하지 아니할 경우 개산액을 준공 전 분할 납부토록 하되 준공 시에 정산 징수(납부)한다.	----------. ---------- ---------- 납부하도록 - ---.
제32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제32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각 구청장이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뇨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의 구청장에 대하여는 분뇨처리수수료를 면제하고 다른 구(강남구는 제외한다.)의 구청장에 대하여는 가산금 10%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 ---------- 제외한다)----------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소멸시효)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33조의2(소멸시효) ---------- ---------- ---------- ----------. ---------- ---------- ---------- 「지방재정법」 제82조---------- ---.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회계 등에 의하여 경비 보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유예할 수 있다.	제34조(감면) ① ---------- ---------- ---------- ----.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시설의 경우 : 사용량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경감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 ------
8.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부지경계선이 확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8.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

는 최초 면제 시행일인 2009년 10월 1일 부지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인 경우 : 면제	----------
9.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9. ---------- 경우 : ----------
10.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이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면	10. ---------- 경우 : ----------
11. · 12. (생 략)	11. · 12. (현행과 같음)
1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13. ---------- 경우: ----------
14. 유출지하수를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용도로 이용 후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거나, 분류식하수관로 중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배출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감면	14. ----------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 -- 경우: ----------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별표 2>

하수도사용료 요율 및 업종구분(제23조 관련)

가. 하수도사용료 요율표(1개월 기준)

구분 / 업종	2022년부터	
	사용구분(㎥)	단가(원/㎥)
가정용	30이하	400
	30초과~50이하	930
	50초과	1,420
욕탕용	500이하	440
	500초과~2,000이하	550
	2,000초과	630
일반용	30이하	500
	30초과~50이하	1,000
	50초과~100이하	1,520
	100초과~200이하	1,830
	200초과~1,000이하	1,920
	1,000초과	2,030
유출지하수	㎥당	400

※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업종 구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한다.

[별표 2]

하수도사용료 요율 및 업종구분 (제23조 관련)

가. 하수도사용료 요율표(1개월 기준)

구분 / 업종	사용구분(㎥)	연도별 단가(원/㎥)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부터
가정용	㎥당	480	560	630	700	770
욕탕용	500이하	520	590	660	730	800
	500초과~2,000이하	630	710	790	870	950
	2,000초과	720	810	890	970	1,050
일반용	30이하	560	660	740	820	900
	30초과~100이하	1,550	1,690	1,830	1,970	2,100
	100초과~1,000이하	2,100	2,200	2,300	2,400	2,500
	1000초과	2,200	2,300	2,400	2,500	2,600
유출지하수	㎥당	480	560	630	700	770

※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업종 구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791호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동일한 법조항에서 위임한 사항이 2개의 조례로 규율되고 있어 법령과 자치법류의 통합성 및 시민 이해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자치법규로 통일하고,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정기준,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 관련 사항을 정함(안 제4조의2~제4조의4)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인용 조문 삽입(안 제5조)

다.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정기준,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의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133-7671, 이메일: food119@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 스: 02-768-8834

1) 이메일: food119@seoul.go.kr

2)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보건의료정책과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 “응급환자”라 함은”을 “ “응급환자”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 “응급의료”라 함은”을 “ “응급의료”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 “응급처치”라 함은”을 “ “응급처치”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 “응급의료종사자”라 함은”을 “ “응급의료종사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 “응급의료기관”이라 함은”을 “ “응급의료기관”이란”으로, “이 법”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 “구급차”라 함은”을 “ “구급차등”이란”으로, “자동차를”을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동수단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 “응급의료기관등”이라 함은”을 “ “응급의료기관등”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 “응급환자이송업”이라 함은 구급차를”을 “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하고, “ “기본계획 “”을 “ “기본계획” ”으로, “ “시행계획 “”을 “ “시행계획” ”으로 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기능) 법 제13조의6에 따라 두는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4.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6.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및 서울소방재난본부 구급 관계 공무원: 보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보건의료정책과장 및 재난대응과장
2.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3.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정된 서울권역외상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4. 법 제27조에 따른 서울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6.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매년 2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응급의료사업”을 “법 제13조의6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응급의료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서울시”를 “서울특별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구급차 등”을 “구급차등”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서울시”를 각각 “서울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련기관”을 “관련 기관”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병원전”을 “병원 전”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서울시”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각종자료”를 “각종 자료”로, “운영 할”을 “운영할”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중 “구급차 등”을 각각 “구급차등”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소아응급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소아응급환자에게 매일 24시간 적정한 진료 제공
2. 소아응급환자의 전원 및 수용 체계 구축

② 시장은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에서 정한다.

④ 시장은 지정된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에 대하여 재지정 여부를 3년마다 검토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의 준수 여부 및 평가 결과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소아응급환자 진료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항

제14조제1항 중 “서울시”를 “서울특별시”로, “관련단체”를 “관련 단체”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는 이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제4조의3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의 지정기준 등(제13조의2제3항 관련)

1. 지정 기준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인력·장비를 갖출 것

나. 최근 1년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아응급환자 진료 실적이 있을 것

다. 24시간 진료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마련할 것

라. 환자 전원 및 수용체계를 포함한 협력 네트워크를 확보할 것

마. 그 밖에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2. 신청 자격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우리아이 안심병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중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나.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3. 신청 방법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지정 신청서

나. 사업계획서

다. 응급실 구조 및 배치 도면

라. 최근 1년간 소아응급환자 진료 실적 자료

마. 그 밖에 소아응급환자의 응급의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 지정 심의

서울특별시장은 신청기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뜻은 ----------.
1.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응급환자”란 ---------- ---------- ---------- ---------- ---------- ---------- ---------- ---------- ---------- ----------.
2. “응급의료”라 함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 · 구조 · 이송 ·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 ---------- ---------- ---------- ---------- ---------- ---------- ----.
3. “응급처치”라 함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3. “응급처치”란 ---------- ---------- ----------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 ---------- ---------- ---------- --.
4. “응급의료종사자”라 함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 안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 ---------- ---------- ---------- ---------- ----------.
5. “응급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
6. “구급차”라 함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구급차등”이란 ---------- ---------- ------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동수단을 ---.
7. “응급의료기관등”이라 함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 ---------- ---------- ----.

8. “응급환자이송업”이라 함은 구급차를 이용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업을 말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4조(서울특별시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응급의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 법 ---------- “기본계획”---------- --- “시행계획”----------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기능) 법 제13조의6에 따라 두는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

	송체계 개선 4.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6.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결과의 활용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제4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및 서울소방재난본부 구급 관계 공무원: 보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보건의료정책과장 및

	재난대응과장 2.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3.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정된 서울권역외상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4. 법 제27조에 따른 서울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6.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4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매년 2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응급의료사업의 정책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	제5조(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등) ① ---- 법 제13조의6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응급의료사업------

운영한다.	------.
② 응급의료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서울시가 수행하는 응급의료관련 업무의 지원	8. ------ 서울특별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2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응급의료지원센터,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용자, 보건소 및 응급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 ------- 구급차등---------- ----------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등) ① (생 략)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서울시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 관리자, 설치 일시, 사용 등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소방재난본부 및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 서울특별시-------- ---------- ---------- ---------- ---------- ---------- ----------.
③ 시장은 서울시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실적을 관	③ ----- 서울특별시-------- ----------

리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관련 기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병원전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 등) ①·② (생 략)	제9조(병원 전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서울시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 ① 시장은 응급의료 계획 마련, 응급의료 성과평가, 재난대비, 응급실 감염병 관리 등 효과적인 응급의료제공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각종자료 수집과 취합, 관리할 수 있는 응급의료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 ① ---------- ---------- ---------- ---------- ---------- 각종 자료 ---- ---------- ---------- 운영할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응급환자 이송) ①·② (생 략)	제11조(응급환자 이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구급차 등을 응급환자의 수요에 맞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구급차등--------- ---------- ----------.
④ 시장은 구급차 등에 의하여 이송된 응급환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 구급차등--------- ---------- ---------- --------.
<신 설>	제13조의2(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소아

	응급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소아응급환자에게 매일 24시간 적정한 진료 제공 2. 소아응급환자의 전원 및 수용 체계 구축 ② 시장은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에서 정한다. ④ 시장은 지정된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에 대하여 재지정 여부를 3년마다 검토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의 준수 여부 및 평가 결과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소아

	응급환자 진료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항
제14조(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서울시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생활권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자치구,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① ---- 서울특별시 ---------- 관련 단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규제영향분석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table>
<tr><td rowspan="2">1. 규제사무명</td><td rowspan="2">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td><td colspan="8">2. 구 분</td></tr>
<tr><td>신설</td><td>○</td><td>강화</td><td></td><td>내용
심사</td><td></td><td>존속
기한
연장</td><td></td></tr>
<tr><td>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td><td colspan="9">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보건의료정책과장 최현정, 응급의료팀장 함현진, 담당 최선미</td></tr>
<tr><td>4. 근거법령명등</td><td colspan="5">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서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td><td>관 련
규제수</td><td colspan="3">1</td></tr>
<tr><td>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td><td colspan="9">의료기관</td></tr>
<tr><td>6. 규제존속기한</td><td colspan="9">조례 공포일~폐지시</td></tr>
<tr><td>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td><td colspan="9">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 지정 근거 마련 조항 신설 및
지정기준, 신청자격 등 포함한 별표 신설</td></tr>
</table>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일 24시간 운영하는 소아 응급환자 진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수행기관을 공모하고 있음

○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 및 고질적인 필수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의사 인력 (소아 청소년과 ·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 신규채용 ·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현재와 같이 매년 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하는 경우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어 사업 참여 인력의 잦은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 수행 역량 및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없어 다년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이 필요함

○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지정기준, 신청자격 등 명시한 별표 마련은 필수 요소임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신청 후 지정이 되지 않을 경우 참여 기관의 불만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업수행을 위한 역량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 · 절차 등을 마련하였음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정 필요성과 소아 응급환자 진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자격, 지정기준 · 절차 등을 충분히 홍보할 예정임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대체수단 및 기존 규제수단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규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없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으로 지정되어 다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지정기관은 안정적 운영 및 사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편익이 발생함

○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소아응급환자는 신속하게 적정한 치료를 제공받을아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편익이 발생함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규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없는 반면 소아환자가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의료 환경조성 가능함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별표2에 정하여 기준 및 절차를 명확하게 나타냄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시장은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및 간병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 및 자활시설 등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지원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기존 보건의료정책과 조직·인력을 통해 대체 가능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신청시 필요 서류는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응급실 구조 및 배치도면, 최근 1년간 소아응급환자 진료실적 자료, 그밖에 소아응급환자의 응급의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구비하도록 하여 신청기관의 사업수행을 위한 역량을 확인하여 진행할 예정임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지정기준 요건을 충족한 의료기관 중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임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812호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가. 기존에 운영 중이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확인 신청 절차를 시행규칙상에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건축물 미술작품을 체계적으로 관리
 나. 미술작가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작품 가액의 지급 증명 서류를 첨부하도록 서식 변경

2. 주요내용
 설치 완료 확인 신청을 위한 서식 신설(안 제11조 및 별지 제19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디자인산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디자인산업담당관 (전화: 02-2133-27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이 메 일: yjcho3@seoul.go.kr
  (2) 등기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12층 디자인산업담당관
  (3) 온 라 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시행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관련분야”를 “관련 분야”로, “추천 받거나”를 “추천받거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타당성을”을 “타당성에 대한”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평가기준”을 “평가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건부 승인결정”을 “조건부승인 결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조건부 승인작품의 경우”를 “조건부 승인 작품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심이상”을 “두 번 이상 심사한”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건축주는 미술작품을 설치한 후 조례 제23조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 신청서(작품 대금 지급 확인 서류 포함)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제11조제4항 관련”을 “제11조제5항 관련”으로 하며,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 신청서(제11조제4항 관련)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 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 〕공공기관 〔 〕민간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건축물개요	건축구분 〔 〕신축 〔 〕증축	주 소	
	건축허가일자	최종설계변경일자	
	건축물명	용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해당시설 중 선택)	설치대상 연면적
미술작품개요	작품명	작가명	
	작가 연락처(휴대전화)	작품종류	
	작품재료	작품규격	
	설치위치(건물 위치 내 상세위치 명기)	작품가액	
	심의일자	설치완료일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을 신청합니다.

붙 임 : 1. 미술작품 설치완료 사진(정면, 원경, 근경, 후면, 좌측면, 우측면 사진 및 작품 설명판 포함) 1부.
2. 작품 대금 지급 완료 증명 각 1부.
〔거래 양당사자(건축주 및 작가)의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은행입금확인서〕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울특별시(또는 해당 자치구)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 절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며, 이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 목적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 신청 관련 대금지급 여부 확인 및 행정처리

2. 수집 항목
-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등 통장사본에 포함된 개인정보

3. 보유 및 이용 기간
- 공공기록물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존기간(30년) 동안 보유

※ 본 개인정보는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 절차의 필수요건인 작품 대금 지급 확인을 위해 수집·이용됩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설치확인 절차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구청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미술관련 기관 및 연구 분야 등의 전문가를 통해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천 받거나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 후보자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① ---------- ---------- ---------- ---------- ---------- --- 관련 분야 ---------- --- 추천받거나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공공미술작품 심의신청) ① 공공미술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주관기관은 위원회에 심의요청 전까지 공공미술 사업의 타당성을 관련 전문가·전문기관 및 시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심의 신청 시 별지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0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미술작품 심의신청) ① ---------- ---------- ---------- 타당성에 대한 ---------- ---------- ----------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신청) ①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	제7조(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신청) ① ----------

축주는 별지 제8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건축물 미술작품 심의방법)	제8조(건축물 미술작품 심의방법)
①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미술작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작품별 평가기준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① ---------- ---------- ---------- 평가 기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의 안전성과 도시미관 등을 참작하여 조건부 승인결정을 할 수 있다.	③ ---------- ---------- ---------- 조건부승인결정----------.
④ 제3항에 따른 조건부 승인작품의 경우 설치 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조건이행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8호서식을 제출하여 이행여부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 조건부승인 작품의 경우에는 ---------- ---------- ---------- ---------- --.
⑤ 조례 제22조 단서에 따른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는 경우는 동일작가의 재심이상 신청작품에 한정한다.	⑤ ---------- ---------- -------- 두 번 이상 심사한 - --------.
제11조(공공미술의 관리) ① ~ ③ (생 략)	제11조(공공미술의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건축주는 미술작품을 설치한 후 조례 제23조에 따라 별지 제

	19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 신청서(작품 대금 지급 확인 서류 포함)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별지 제17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대장(제11조제4항 관련) <신 설>	[별지 제17호서식] ----------(제11조제5항 관련) [별지 제19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 신청서(제11조제4항 관련)

[별지 제19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 신청서(제11조제4항 관련)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 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 )공무기관 ( )민간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건축물 개요	건축구분 ( )신축 ( )증축	주 소	
	건축허가일자	최종설계변경일자	
	건축물명	용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제1호 부 설계]	설계 대상 연면적
미술작품 개요	작품명	작가명	
	작가 연락처(휴대전화)	작품종류	
	작품재료	작품규격	
	설치위치(건물 외부 내 상세위치 명기)	작품가액	
	설치일자	설치완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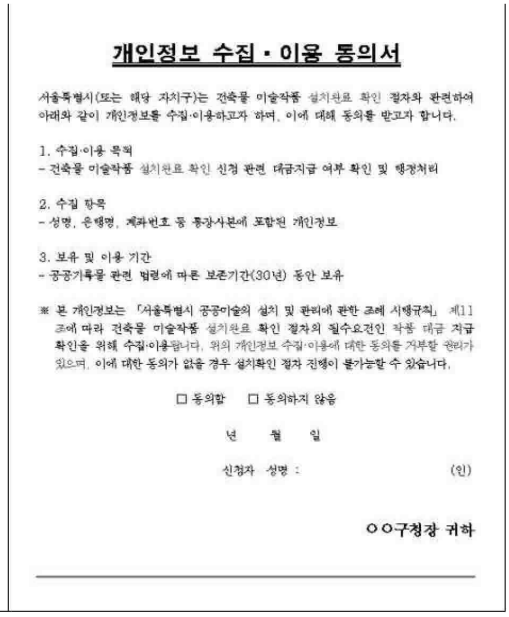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 설치 완료 확인을 신청합니다.

붙 임 : 1. 미술작품 설치완료 사진(정면, 원경, 근경, 후면, 좌측면, 우측면 사진 및 작품 설명판 포함) 1부.
2. 작품 대금 지급 완료 증명 각 1부.
(거래 당사자(건축주 및 작가)의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은행입금확인서)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울특별시(또는 해당 자치구)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 절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며, 이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 목적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 신청 관련 대금지급 여부 확인 및 행정처리

2. 수집 항목
-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등 통장사본에 포함된 개인정보

3. 보유 및 이용 기간
- 공공기록물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존기간(30년) 동안 보유

※ 본 개인정보는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 절차의 필수요건인 작품 대금 지급 확인을 위해 수집·이용됩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설치확인 절차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구청장 귀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813호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재해영향평가심의의 효율적 운영과 물순환안전국 사무전결규정 정합 시행에 따라 치수안전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연직 위원(부위원장 : 치수안전과장) 추가(안 제3조)
나. 부서의장(치수안전과장)의 당연직 위원 위촉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심의 회의 간사를 “부서의 장”에서 “사무관”으로 변경(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치수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치수안전과(전화: 02-2133-38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 · 등기우편 · 온라인
(1) 이 메 일: jwb831@seoul.go.kr
(2) 등기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별관 1동 8층 치수안전과
(3) 온 라 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물순환안전국장”을 “물순환안전국장, 치수안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4조제1항 중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치수안전과장이 맡는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제4조제1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서의 장”을 “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당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검토수당 및 소집회의 참석수당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검토수당: 1건당 10만원
   나. 참석수당: 1건당 15만원(다만,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정하여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 교통비 등 여비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다음과 같이 위촉한다.	② ---------- --.
1. 당연직 위원: 물순환안전국장	1. ---------- 물순환안전국장, 치수안전과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물순환안전국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 치수안전과장이 맡는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해촉) ①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6조(위원의 해촉) ①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4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제5조제3항----------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 및 운영) ① ~ ⑥ (생략)	제7조(회의 및 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회의 진행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맡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⑦ ---------- 사무관----------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2조(수당 및 여비) ① 심의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② 제1항에 따라 수당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수당 및 소집회의 참석 수당 - 심의수당: 70,000원/회 - 참석수당: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금액 2. 교통비 등 여비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지급 조례」에 준하여 지급	1. 검토수당 및 소집회의 참석 수당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검토수당: 1건당 10만원 나. 참석수당: 1건당 15만원 (다만,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정하여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 교통비 등 여비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847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시의회사무처 국장급 기구 설치 및 서울시립대학교 우수교원 확보에 대응하기 위하여 총정원 변동없이 직렬 · 직급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의회사무처 국장급 기구 정원 및 서울시립대학교 교육공무원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을 상계 조정
- 3급 +1명, 6급 △4명, 7급 △4명, 8급 △4명, 교수·부교수·조교수 +11명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6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syg1108@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 계	11,730	4,781	429	1,140	5,153	227

같은 표 일반직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10,689	4,731	420	350	4,963	225

같은 표 3급 소계란, 부이사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급 소계	27	16	1	1	9	
부이사관	27	16	1	1	9	

같은 표 6급 소계란, 시설관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급 소계	3,733	1,966	177	105	1,386	99
시설관리	25	3			22	

같은 표 7급 소계란, 기계운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7급 소계	3,280	1,314	122	131	1,656	57
기계운영	48	2	1	1	44	

같은 표 8급 소계란, 사무운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8급 소계	1,060	120	37	42	860	1
사무운영	97	39	12	4	41	1

같은 표 교육공무원 계란, 교수·부교수·조교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공무원 계	565			565		
교수·부교수·조교수	487			48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1]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직급별·직렬별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11,730	4,781	429	1,129	5,164	227
(생략)						
일반직 계	10,700	4,731	420	350	4,974	225
(생략)						
3급 소계	26	16		1	9	
부이사관	26	16		1	9	
(생략)						
6급 소계	3,737	1,966	177	105	1,390	99
(생략)						
시설관리	29	3			26	
(생략)						
7급 소계	3,284	1,314	122	131	1,660	57
(생략)						
기계운영	52	2	1	1	48	
(생략)						
8급 소계	1,064	120	38	42	863	1
(생략)						
사무운영	101	39	13	4	44	1
(생략)						
교육공무원 계	554			554		
(생략)						
교수·부교수·조교수	476			476		
(생략)						

개 정 안

[별표 1]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직급별·직렬별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11,730	4,781	429	1,140	5,153	227
(현행과 같음)						
일반직 계	10,689	4,731	420	350	4,963	225
(현행과 같음)						
3급 소계	27	16	1	1	9	
부이사관	27	16	1	1	9	
(현행과 같음)						
6급 소계	3,733	1,966	177	105	1,386	99
(현행과 같음)						
시설관리	25	3			22	
(현행과 같음)						
7급 소계	3,280	1,314	122	131	1,656	57
(현행과 같음)						
기계운영	48	2	1	1	44	
(현행과 같음)						
8급 소계	1,060	120	37	42	860	1
(현행과 같음)						
사무운영	97	39	12	4	41	1
(현행과 같음)						
교육공무원 계	565			565		
(현행과 같음)						
교수·부교수·조교수	487			487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849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의정국 설치 및 의정국장 직위(3급) 신설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정국장 직위 신설(안 제3조 및 제4조)
- 하부조직 명칭 변경 및 직제 조정(안 제5~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담당관(전화: 02-2133-66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E-mail : ysk5881@seoul.go.kr
(2) 전 화 : (02) 2133 - 6632
(3)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기획담당관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의정담당관·언론홍보실장·의사담당관·법제담당관·재정분석담당관·인사담당관·현장민원담당관을 두며, 의정담당관·언론홍보실장·의사담당관·법제담당관·재정분석담당관·인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현장민원담당관”을 “의정국·의사과·언론홍보과·운영지원과·법제과·재정분석과·인사과·현장민원과를 두며, 의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의사과장·언론홍보과장·운영지원과장·법제과장·재정분석과장·인사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현장민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제담당관”을 “법제과장”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제7조로 한다.

제6조를 제5조로 하고,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정국) 의정국장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의사담당관)”을 “(의사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사담당관”을 “의사과장”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의 제목 “(언론홍보실)”을 “(언론홍보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언론홍보실장”을 “언론홍보과장”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4조)의 제목 “(의정담당관)”을 “(운영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정담당관”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 “(법제담당관)”을 “(법제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제담당관”을 “법제과장”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재정분석담당관)”을 “(재정분석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분석담당관”을 “재정분석과장”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의 제목 “(인사담당관)”을 “(인사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사담당관”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의 제목 “(현장민원담당관)”을 “(현장민원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현장민원담당관”을 “현장민원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처장 밑에 의정담당관·언론홍보실장·의사담당관·법제담당관·재정분석담당관·인사담당관·현장민원담당관을 두며, 의정담당관·언론홍보실장·의사담당관·법제담당관·재정분석담당관·인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현장민원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3조(하부조직) ① --- 의정국·의사과·언론홍보과·운영지원과·법제과·재정분석과·인사과·현장민원과를 두며, 의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의사과장·언론홍보과장·운영지원과장·법제과장·재정분석과장·인사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현장민원과장----------.
② 제1항의 법제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 법제과장----------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정국) 의정국장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4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제5조(언론홍보실) 언론홍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 13. (생 략)	제6조(언론홍보과) 언론홍보과장----------. 1. ~ 13. (현행과 같음)
제6조(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 20. (생 략)	제5조(의사과) 의사과장----------. 1. ~ 20. (현행과 같음)
제7조(법제담당관) 법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 12. (생 략)	제8조(법제과) 법제과장----------. 1. ~ 12. (현행과 같음)
제8조(재정분석담당관) 재정분석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 11. (생 략)	제9조(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1. ~ 11. (현행과 같음)
제9조(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 12. (생 략)	제10조(인사과) 인사과장----------. 1. ~ 12. (현행과 같음)
제10조(현장민원담당관) 현장민원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 8. (생 략)	제11조(현장민원과) 현장민원과장----------. 1. ~ 8. (현행과 같음)
제11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06호

서울온수일반산업단지 개발(변경)계획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266호(2025. 5. 15)로 고시한 '서울온수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에 따라 개발(변경)계획을 수립하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 · 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서울온수일반산업단지
○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일원
○ 면 적 : 150,264.5㎡(변경)

(단위 : ㎡, %)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구성비	
합 계	157,560.0	감) 7,295.5	150,264.5	100.0	
서울지역	107,012.0	감) 2,494.0	104,518.0	69.6	
부천지역	50,548.0	감) 4,801.5	45,746.5	30.4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 기계공업에 공용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기계공업의 합리적 운영체제 확립으로 기계공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1. 개발계획의 필요성 및 목적(변경없음)
○ 서울온수일반산업단지는 1970년 인가 이후 50여 년이 경과된 노후 산업단지로, 전통 제조업 중심의 2차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의 부족으로 산업 경쟁력이 점차 저하되고 있어 재구조화가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선행되어야 할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서울시가 현황을 반영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실시계획 수립 및 재개발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2. 개발의 기본방향(변경없음)

○ 공간 구성 방향

- 산업+지원+생활 복합화: 단순한 공장 밀집이 아닌, 업무 · 제조 · 문화 · 편의시설이 혼합된 구조
- 보행 중심 구조: 단지 내 차량 중심 구조에서 보행 중심으로 재편
- 유연한 토지이용: 산업의 변화에 따라 기능 전환 가능한 블록 설계

○ 서울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

- 다핵체계 도시구조와의 연계: 서남권의 산업·일자리 거점으로 기능 회복
- 도시재생 및 균형발전 실현: 낙후된 도시공간을 새로운 기능으로 전환하여 도심 내 불균형 해소
- 스마트·탄소중립 도시 구현: 에너지자립형 산업단지 및 스마트인프라 구축
- 삶의 질 중심 도시공간 조성: 산업 중심에서 생활 중심 공간으로 확장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기조성 완료된 지역으로 해당사항 없음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 민간개발방식(기조성 완료)

5. 주요 유치 업종(변경없음)

조항	분 류	내 용
1	지식산업 · 정보통신산업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른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
2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입주제한업종 제외)
3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 중 지식산업센터에 적합한 공장 및 산업집적법 제28조5제1항에 적합한 산업
4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임대업 : 표준산업분류상 68112 (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 공급업 : 68122(지식산업센터에 한 함)
5	기타업종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정되는 산업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현황)

구분		합 계(㎡, %)				서울지역(㎡, %)				부천지역(㎡,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구성비	
합 계		157,560	감)7,295.5	150,264.5	100.0	107,012	감)2,494	104,518	69.6	50,548	감)4,801.5	45,746.5	30.4	
산업시설용지	소 계	122,754	감)7,295.5	115,458.5	76.8	83,439	감)2,494	80,945	53.9	39,315	감)4,801.5	34,513.5	23.0	
	제조시설용지	122,754	감)7,295.5	115,458.5	76.8	83,439	감)2,494	80,945	53.9	39,315	감)4,801.5	34,513.5	23.0	※
지원시설용지	소 계	1,041	-	1,041	0.7	1,041	-	1,041	0.7	-	-	-	-	
	공공지원시설	1,041	-	1,041	0.7	1,041	-	1,041	0.7	-	-	-	-	
공공시설용지	소 계	33,765	-	33,765	22.5	22,532	-	22,532	15.0	11,233	-	11,233	7.5	
	도로	25,922	-	25,922	17.3	14,689	-	14,689	9.8	11,233	-	11,233	7.5	
	기타	7,843	-	7,843	5.2	7,843	-	7,843	5.2	-	-	-	-	

※ 온수동 산16-1 개발제한구역, 온수동 99-6 등 주거지역, 안곡로 기준 산업기능 상실 지역 제척 및 「역곡3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람·공고(부천시 공고 제2017-1856호, 2017. 9. 20.)에 따른 면적 증가 반영

○ 용도지역(현황)

용도지역	용도지역세분	합 계(㎡, %)				서울지역(㎡, %)				부천지역(㎡, %)			
		기 정	변 경	변경후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구성비
도시지역	합 계	157,560	감)7,295.5	150,264.5	100.0	107,012	감)2,494	104,518	69.6	50,548	감)4801.5	45,746.5	30.4
주거지역	소 계	12,331	감)12	12,319.0	8.2	12,252	-	12,252	8.2	79	감)12	67	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2,331	감)12	12,319.0	8.2	12,252	-	12,252	8.2	79	감)12	67	0.0
상업지역	소 계	-	-	-	-	-	-	-	-	-	-	-	-
	일반상업지역	-	-	-	-	-	-	-	-	-	-	-	-
공업지역	소 계	145,229	감)7,283.5	137,945.5	91.8	94,760	감)2,494	92,266	61.4	50,469	감)4,789.5	45,679.5	30.4
	준공업지역	145,229	감)7,283.5	137,945.5	91.8	94,760	감)2,494	92,266	61.4	50,469	감)4789.5	45,679.5	30.4

○ 주요기반시설계획(현황)

– 교통시설(도로)

구 분	합 계		1류		2류		3류	
	개소	연장(m)	개소	연장(m)	개소	연장(m)	개소	연장(m)
합 계	5	873	1	11	4	862	–	–
광 로	–	–	–	–	–	–	–	–
대 로	–	–	–	–	–	–	–	–
중 로	–	–	–	–	–	–	–	–
소 로	5	873	1	11	4	862	–	–

○ 기타기반시설

구 분	현 황
용수	•취수원 : 서울지역은 영등포정수장 계통의 신정배수지, 부천지역은 까치울정수장 계통의 역곡배수지에서 공급 •공급능력 : 무제한 공급, 사용량 : 1,283㎥/일
오·폐수	•공장폐수는 개별공장 위탁처리하며, 생활오수는 인근대로에 매설된 오·폐수관(2@2.0×1.2)에 유입되어 처리
전력	•한국전력공사(구로·금천지점)에서 공급 •전력수요 : 4,021kVA, 최대부하 : 2,394kW
통신	•구로구 관내 통신사업자(KT)가 공급
산업폐기물	•지정업체 위탁처리
에너지공급시설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삼천리에서 공급

7.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기조성 완료된 지역으로 해당사항 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변경없음)

○ 기조성 완료된 지역으로 해당사항 없음

9.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 1970년~1971년에 기조성 완료된 지역으로 해당사항 없음

10.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 기조성 완료된 지역으로 주요시설 지원계획 해당사항 없음

11.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 주요유치업종

조항	분 류	내 용
1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른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
2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입주제한업종 제외)
3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 중 지식산업센터에 적합한 공장 및 산업집적법 제28조5제1항에 적합한 산업
4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임대업 : 표준산업분류상 68112 (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 공급업 : 68122(지식산업센터에 한 함)
5	기타업종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정되는 산업

○ 제한업종

– 서울온수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 제한업종

제한사유	내 용
용수다소비 업종	23311(시멘트 제조업), 23322(레미콘 제조업), 23991(아스콘 제조업)
입주부적격 업종	10110(도축업), 52109(보관 및 창고업), 45~47(도매 및 소매업), 10611(곡물도정업), 17110(펄프제조업), 19210(원유정제 처리업), 19221(윤활류 및 그리스 제조업), 52104(위험물품 보관업), 가상통화 채굴업(행위), 13401~3(염색 관련업), 25922~3(도금,도장 관련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지정 악취물질 및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지정악취물과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원료 등을 사용하는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환경관련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사전 협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사업장

12.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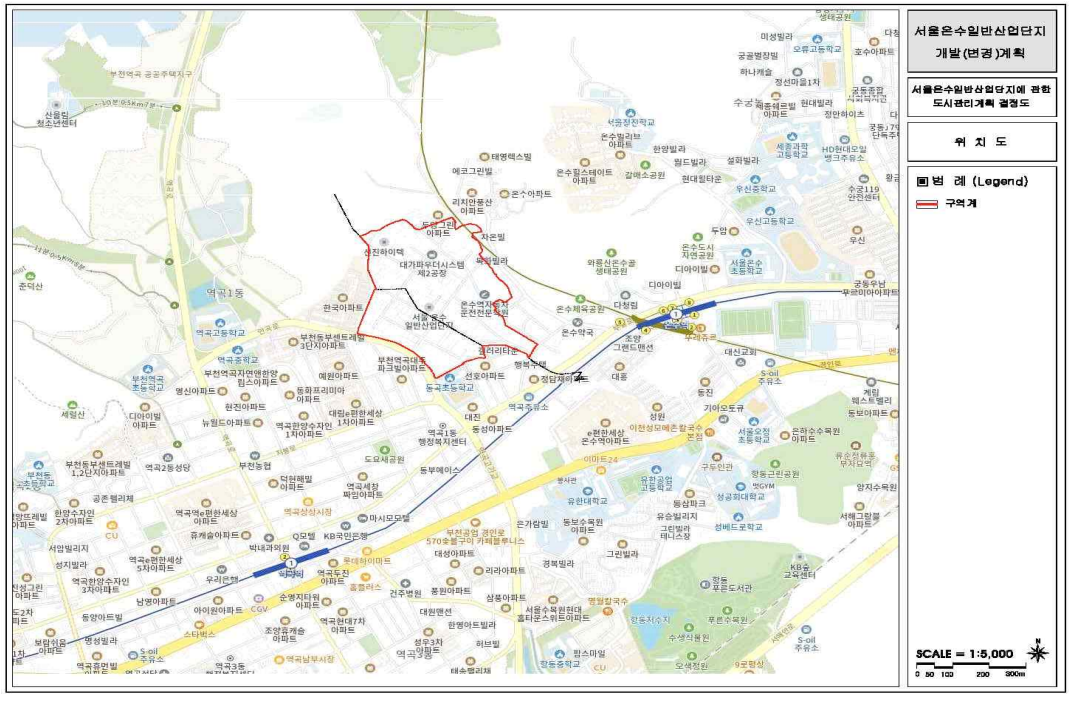
○ 대상지는 1970년~1971년 조성되어 분양이 완료된 지역으로, 입주 회원사 현황표(서울온수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2024년 4월 기준)에 등록되어있는 24개 업종, 총196개 업체 입주

○ 입주업종현황(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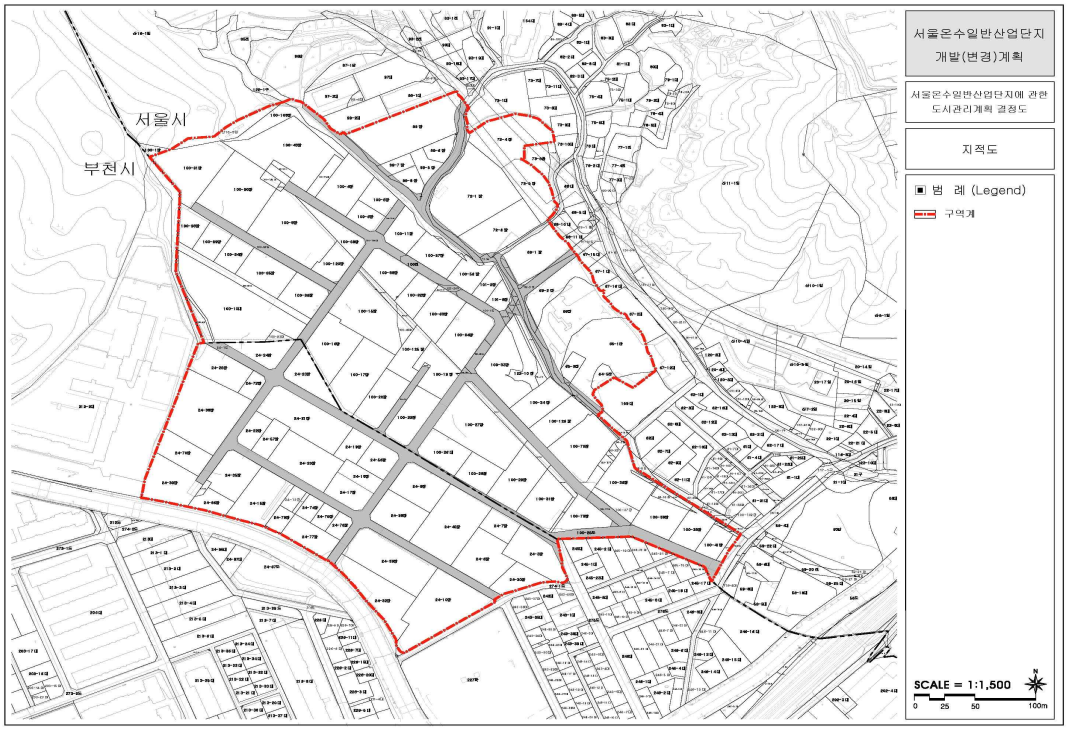
구 분	면 적		업 체 수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일반형공장		
	계	비율(%)	계	비율(%)	업체(개소)	비율(%)	업종(개)	업체(개소)	비율(%)	업종(개)
합 계	150,264.5	100.0	196	100.0	1	0.5	-	195	99.5	-
서울온수 일반산업단지	150,264.5	100.0	196	100.0	1	0.5	-	195	99.5	-
서울지역	104,518.0	69.6	119	60.7	-	-	-	119	60.7	20
부천지역	45,746.5	30.4	77	39.3	1	0.5	1	76	38.8	17
기타 (단지 외 지역 등록업체 등)	-	-	-	-	-	-	-	-	-	-

13. 관련 도면(변경)(첨부된 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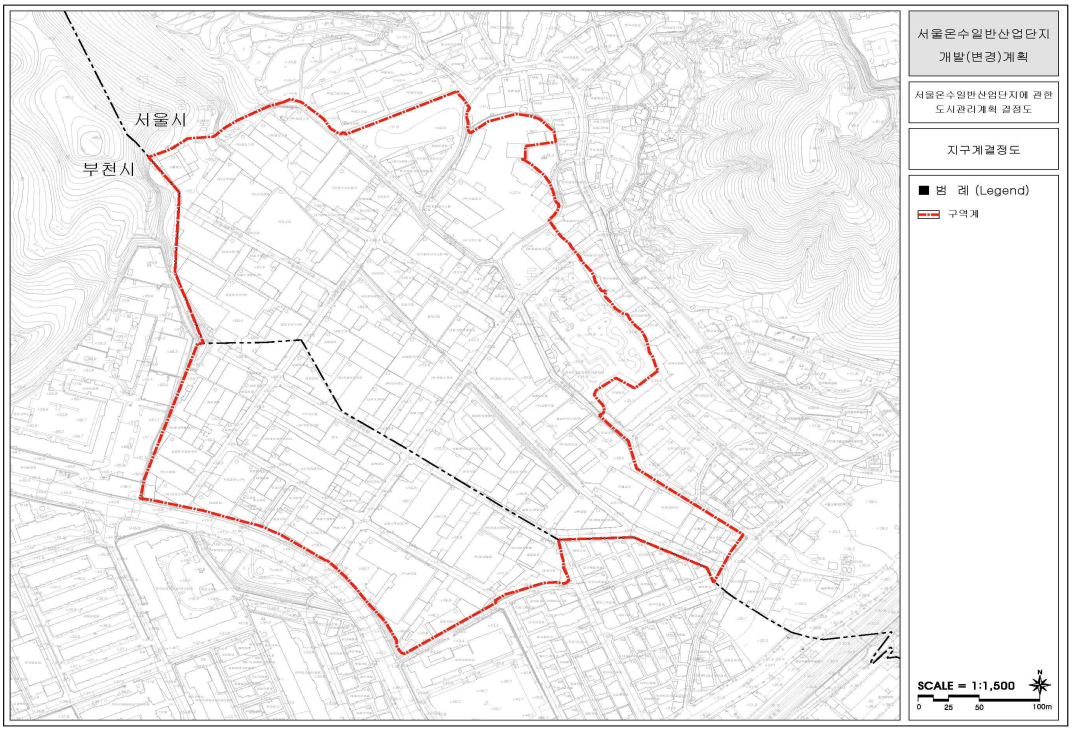
○ 서울온수일반산업단지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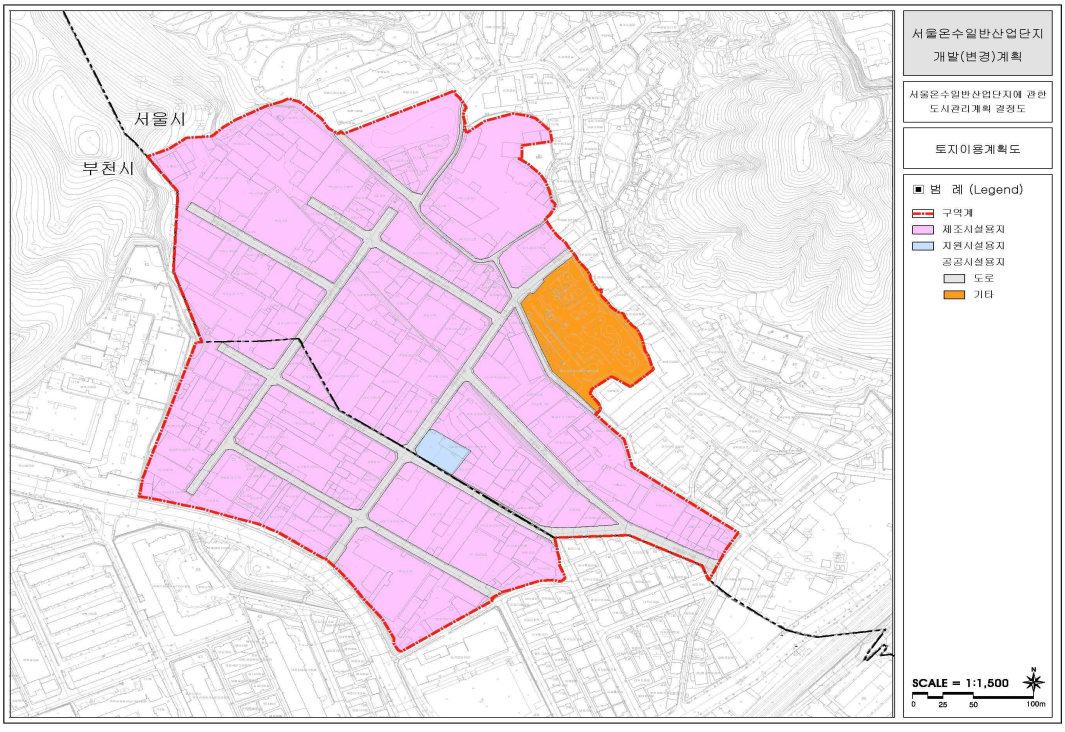
○ 서울온수일반산업단지 지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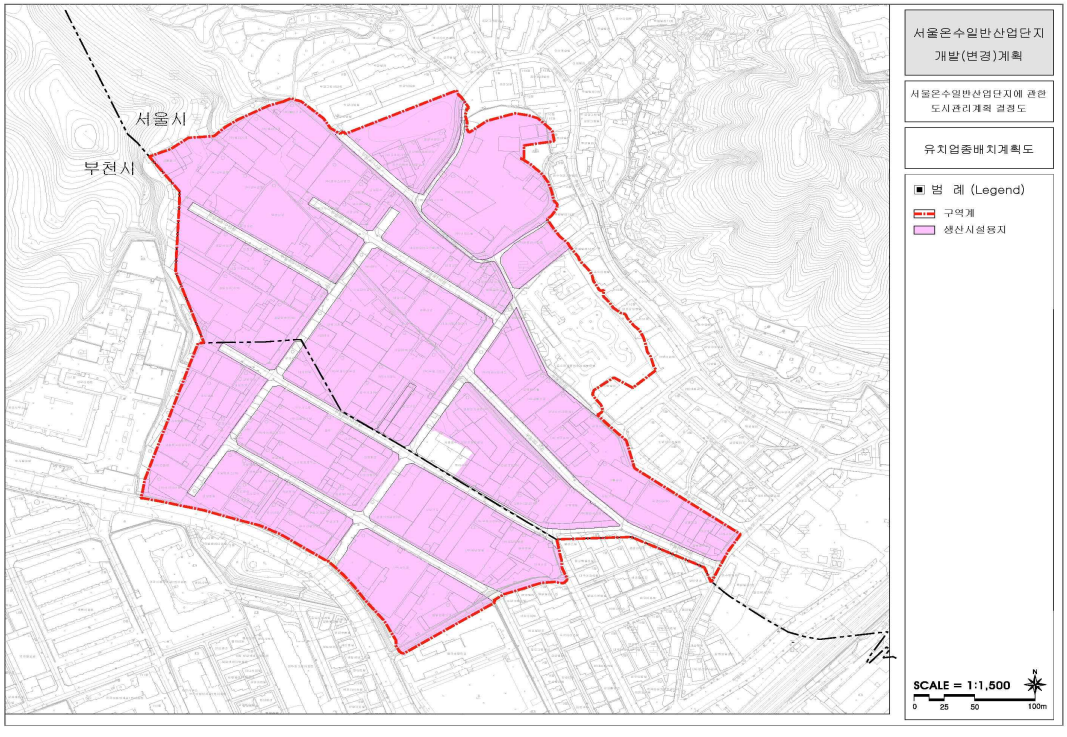
○ 서울온수일반산업단지 지구계결정도



○ 서울온수일반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



○ 서울온수일반산업단지 유치업종배치계획도



14. 관련 도서의 열람 방법

○ 관련 도서는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시청 산업입지과(☎02-2133-8593), 구로구청 지역경제과(☎02-860-2865), 부천시 전략담당관(☎032-625-2748)에 비치하고 있으며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공간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s://www.eum.go.kr) 등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0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5호(2013.1.9.)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으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66호(2016.3.10.)로 결정(변경)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10-2 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2025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5.5.7.)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주차장)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변경) 취지

○ (가칭)노유초 설립을 위해 '03년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하였으나 '12년 성동교육지원청의 도시계획시설(학교) 폐지 요청에 따라 부지 활용방안 마련, 대상지 현황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 자양동 10-2, 10-33 도시계획시설(학교) 폐지 후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신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가. 학교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폐지	-	학교	초등학교	광진구 자양동 9-4일대	1,313.1	감)1,313.1	-	서고 제5호 (2003.1.9.)	

- 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학교	◦ 학교시설 폐지 - 면적: 1,313.1㎡	◦ 학교설립 여건 변화에 따라 설립계획이 취소되어 도시계획시설 유지에 대한 필요성 상실, 대상지 현황 고려 주차장으로 결정

나. 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	주차장	광진구 자양동 10-2 외 1필지	-	증) 1,313.1	1,313.1	-	-

- 결정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면적: 1,313.1㎡	◦ 대상지 일대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차난 해소 및 공중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결정

3. 관계도면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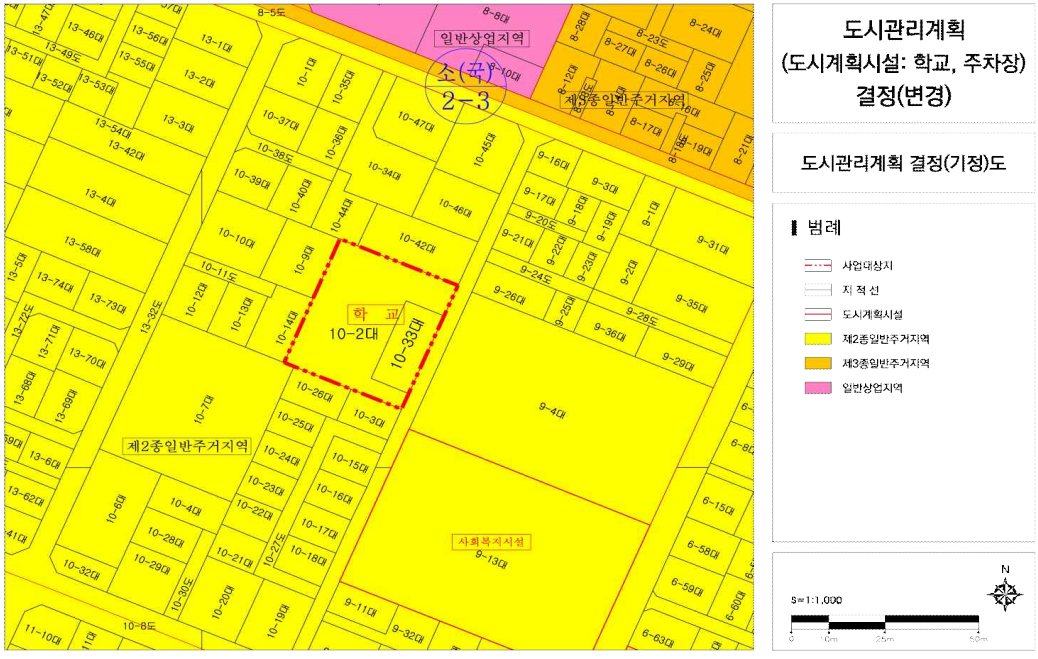
4. 관계도서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2133-8411)
- 광진구 도시계획과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민원복지동 5층(☏450-76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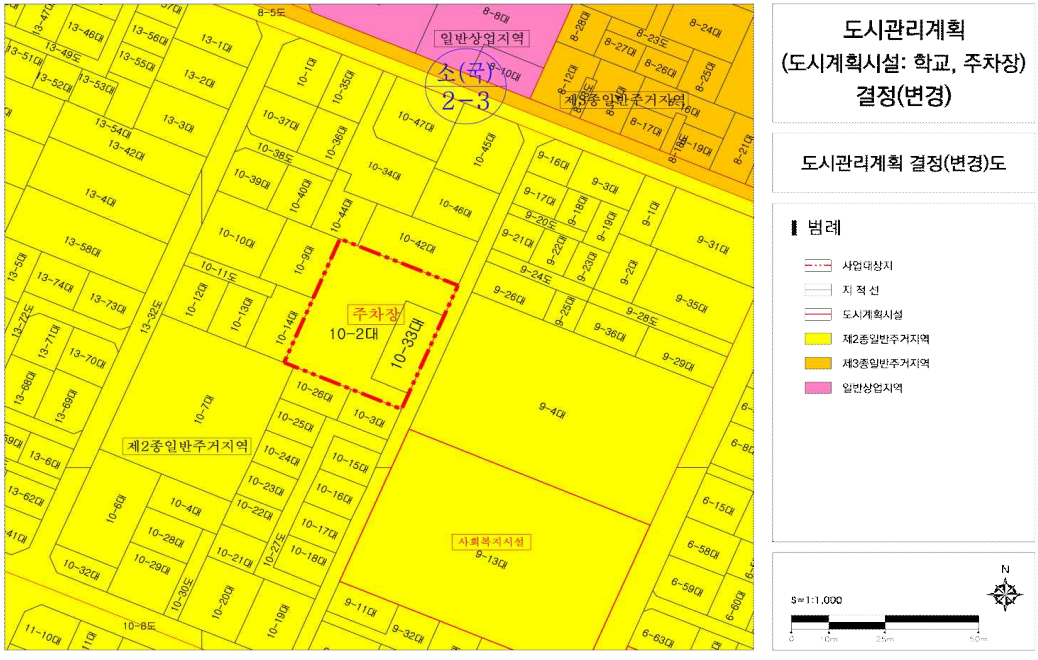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공간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붙 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주차장) 결정(변경)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도(기정)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08호

사당5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2011.10.20.)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0호(2017.03.02.)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97호(2021.02.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04호(2023.09.14.),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24-1호(2024.01.04.)호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사당5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2025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5.03.05.)를 거쳐 정비계획을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변경)·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사당5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20,265.0	증) 51.0	20,316.0	구역 내 신규 등록 토지(3필지, 51.0㎡) 반영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1) 추산액

<table>
<tr><td>추정
비례율
(a)</td><td>•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종전자산 총액 X 100%

• 추정비례율 : 104.15%
= (566,497,142천원 - 367,410,412천원) / 191,157,704천원 X 100 = 104.15%
- 총 수입 추정 : 566,497,142천원
- 총 지출 추정 : 367,410,412천원
- 종전자산 총액 추정 : 191,157,704천원</td></tr>
<tr><td>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b)</td><td>• 토지 및 건축물 종전자산 =
토지건물 62,653,767(천원) + 기타(도로 등) 4,371,879(천원) + 구분건물 128,033,235(천원)
-청산대상 추정가액 3,901,177
= 191,157,704(천원)</td></tr>
<tr><td>추정
분담금
산출</td><td>• 아파트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① 추정 권리가액[추정비례율(a) X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b)] - ②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③ 추정분담금
<table>
<tr><th>① 추정 권리가액</th><th colspan="2">②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th><th>③ 추정분담</th></tr>
<tr><td rowspan="4">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104.15%)</td><td>전용 44㎡형</td><td>182,486천원</td><td rowspan="4">추정 권리가액 - 권리자분양가 추정액
(+ : 환급 / - : 부담)</td></tr>
<tr><td>전용 59㎡형</td><td>367,080천원</td></tr>
<tr><td>전용 84㎡형</td><td>616,641천원</td></tr>
<tr><td>전용 99㎡형</td><td>857,760천원</td></tr>
</table>
※ 추정 권리가액 - 권리자분양가 추정액 (+ : 부담 / - : 환급)
※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기준은 600,000(천원)을 적용하여 계산 하였음
※ 추정비례율 산정 시 현재 공사비 계약 예상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td></tr>
</table>

※ 해당 분담금은 추정액으로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 공사비 변동,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산출근거

비례율 = (종후 대지 및 건축물 총 추산액(총수입) - 총사업비(총지출액)) /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토지등소유자)

= (566,497,142천원 - 367,410,412천원) / 191,157,704천원

= 104.15%

총수입 : 566,497,142천원

[공동주택 분양수입+근린생활시설 분양수입+임대주택 매각수입]

3.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20,265.0	증) 51.0	20,316.0	100.0	-

구 분	명 칭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정비기반시설	소 계	289.3	증) 1,189.6	1,478.9	7.3	-
	도 로	289.3	증) 164.5	453.8	2.2	-
	공공공지	-	증) 1,025.1	1,025.1	5.1	
획 지		19,975.7	감) 1,138.6	18,837.1	92.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20,265.0	증) 51.0	20,316.0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0,265.0	감) 20,265.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20,316.0	20,316.0	100.0	-

1)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20,316.0	• 주변 개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조화로운 경관 계획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2	12	8	국지도로	730 (17)	사당동 266-7	사당동 303-99	일반도로	-	서울특별시 고시 제54호 (73.04.20)	-
변경	소로	2	12	8	국지도로	796 (190)	사당동 266-7	사당동 303-172	일반도로	-	서울특별시 고시 제54호 (73.04.20)	연장 변경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45	사당동 708-543	사당동 303-51	일반도로	-	서울특별시 고시 제70호 (17.03.02)	-
변경	소로	3	2	6	국지도로	37	사당동 303-171	사당동 303-51	일반도로	-	서울특별시 고시 제70호 (17.03.02)	연장 및 선형 변경

※ ( )는 사당5 주택재건축사업 구역 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 2-12	소로 2-12	• 도로 연장 변경 (L = 730m→796m)	• 종점 변경 및 일부 구간 폭원 확보
소로 3-2	소로 3-2	• 도로 연장 변경 및 선형 변경 (L = 45m→37m)	• 기점 변경 • 공공공지 신설에 따른 선형 변경

2) 주차장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입체적 결정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관리청)
					용도	연면적 (㎡)	건폐율 /용적률	수직적 범위		
폐지	①	주차장	주차장	사당동 303-157번지 일대	공영 주차장	1,664.8	-	지하1층~지하2층	-	주차대수20대 (동작구청) ※마을버스회차공간 지하 2층
폐지	②	주차장	주차장	사당동 303번지 일대	공영 주차장	3,756.6	-	지하1층	-	주차대수 87대 (동작구청)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주차장①	• 주차장 폐지 - 위치 : 동작구 사당동 303-157번지 일대 - 연면적 : 1,664.8㎡(20대)	• 인근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주차장 수요 감소로 시설 폐지
주차장②	• 주차장 폐지 - 위치 :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 연면적 : 3,756.6㎡(87대)	

3) 공공공지 결정 조서 : 신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관리청)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공지	공공공지	사당동 303-159번지 일대	-	증) 1,025.1	1,025.1	-	서울특별시

■ 공공공지 결정 사유서 : 신설

구 분	변경 내용	변경 사유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위치 : 사당동 303-159번지 일대 - 연면적 : 1,025.1㎡	•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가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공지 계획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1) 주민공동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공동이용시설	소 계	획 지	4,009.26	증) 498.29	4,507.55	-
	경로당		225.08	증) 124.92	350.00	법정 330.00㎡ 이상
	어린이집		412.43	-	412.43	법정 330.00㎡ 이상
	작은도서관		206.61	-	206.61	법정 158.00㎡ 이상
	돌봄센터		181.15	증) 345.37	526.52	법정 66.00㎡ 이상 (무상임대)
	카페라운지		240.05	-	240.05	-
	어린이 놀이터		707.04	증) 28.0	735.04	법정 730.00㎡ 이상
	주민운동시설		450.00	-	450.00	-
	주민공동시설		503.77	-	503.77	-
	커뮤니티센터		1,083.13	-	1,083.13	-
관리사무소			322.37	-	322.37	법정 34.00㎡ 이상

※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시 변경될 수 있음

7.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 칭	면 적(㎡)	명 칭	면 적(㎡)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 정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0,265.0	획 지	19,975.7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79	-	-	79	-	-
변 경		20,316.0		18,837.1							

8. 건축물에 관한 계획

1)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table>
<tr><th rowspan="2">결정
구분</th><th colspan="2">구역구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치</th><th rowspan="2">주된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colspan="4">용적률(%)</th><th rowspan="2">높이(m)
(평균층수)</th></tr>
<tr><th>명칭</th><th>면적(㎡)</th><th>명칭</th><th>면적(㎡)</th><th>기준</th><th>허용</th><th>상한</th><th>법적상한
(계획)</th></tr>
<tr><td>기정</td><td rowspan="2">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td><td>20,265.0</td><td rowspan="2">획지</td><td>19,975.7</td><td rowspan="2">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td><td rowspan="2">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td><td>33%이하</td><td>190%</td><td>190%</td><td>198.7%
이하</td><td>210% 이하</td><td>37m이하
(평균10층이하)</td></tr>
<tr><td>변경</td><td>20,316.0</td><td>18,837.1</td><td>60%이하</td><td>199%
이하</td><td>221.33%
이하</td><td>234.31%
이하</td><td>250%
이하
(249.68)</td><td>63m이하
(최고20층이하)</td></tr>
<tr><td rowspan="2">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td><td colspan="2">기정</td><td colspan="8">• 총 건립 세대수 : 공동주택 510세대(분양 494세대, 소형주택 16세대)
•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table>
<tr><th colspan="2">구분(전용면적)</th><th>합계</th><th>분양주택</th><th>소형주택</th></tr>
<tr><td colspan="2">합계</td><td>510(100.0%)</td><td>494(96.9%)</td><td>16(3.1%)</td></tr>
<tr><td rowspan="3">공동주택</td><td>60㎡이하</td><td>393(77.1%)</td><td>377(73.9%)</td><td>16(3.1%)</td></tr>
<tr><td>60㎡~85㎡이하</td><td>117(22.9%)</td><td>117(22.9%)</td><td>-</td></tr>
<tr><td>85㎡초과</td><td>-</td><td>-</td><td>-</td></tr>
</table>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 건설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건설</td></tr>
<tr><td colspan="2">변경</td><td colspan="8">• 총 건립 세대수 : 공동주택 530세대
(분양 495세대, 임대주택 35세대(기부채납 16세대 포함))
•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table>
<tr><th colspan="2">구분(전용면적)</th><th>합계</th><th>분양주택</th><th>공공주택</th></tr>
<tr><td colspan="2">합계</td><td>530(100.0%)</td><td>495(93.4%)</td><td>35(6.6%)</td></tr>
<tr><td rowspan="3">공동주택</td><td>60㎡이하</td><td>355(67.0%)</td><td>325(61.3%)</td><td>30(5.7%)</td></tr>
<tr><td>60㎡~85㎡이하</td><td>170(32.1%)</td><td>165(31.2%)</td><td>5(0.9%)</td></tr>
<tr><td>85㎡초과</td><td>5(0.9%)</td><td>5(0.9%)</td><td>-</td></tr>
</table>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 건설</td></tr>
<tr><td colspan="3">심의완화사항</td><td colspan="8">• 2030 서울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현황용적률 인정 및 허용용적률 완화
-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로 인정 : 190% → 199.00%
- 허용용적률 = 218.58% → 221.33% (보정계수 1.38)
• 공공주택 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법적상한용적률 250% 이하 (계획 249.68%)</td></tr>
<tr><td rowspan="2">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2">기정</td><td colspan="8">• 획지 내 건축한계선 3m 지정(도면참고)</td></tr>
<tr><td colspan="2">변경</td><td colspan="8">• 획지 내 건축한계선 3m~5m 지정(도면참고)</td></tr>
<tr><td colspan="2">기타사항</td><td>기정</td><td colspan="8">• 공공보행통로 계획</td></tr>
</table>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평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준	허용	상한	법적상한 (계획)	
			- 남북간 보행 동선 연결을 위해 공공보행통로 계획 : 4m - 건축한계선을 통해 확보되는 보행공간 공공보행통로 계획 : 3m									
		변경	• 공공보행통로 계획 - 남북간 보행 동선 연결을 위해 공공보행통로 계획 : 폭원10m, 연장 92m - 공공보행통로는 열린단지와 연계할 수 있는 보행가로로 조성 • 전면공지 계획 -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되는 공간은 차량 또는 보행통로 계획 : 3m~5m									

※ 보도 및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설치시 구분지상권 설정

2) 용적률 계획

구 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토 지		건축물 (임대주택) 환산 부지면적	신설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대지(획지)내 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 (도로,공공공지)	건축물 토지지분 (임대주택)			
	20,316.0㎡	18,837.1㎡	1,478.9㎡	463.6㎡	423.9	72.8㎡	1,322.1㎡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 + 건축물 기부채납 토지지분 +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면적 - 신설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대지(획지)내 용도폐지되는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 1,478.9㎡ + 463.6㎡ + 423.9㎡ - 72.8㎡ - 1,322.1㎡ = 971.5㎡ • 순부담률: 구역면적대비 5.13% • 임대주택 대지지분 : 대지면적 x (기부채납 시설 연면적 / 전체 연면적) - 44형 : 202.8㎡ ① 지상 = 18,837.10㎡ x (531.8㎡ / 90,734.75㎡) = 110.4㎡ ② 지하 = 18,837.10㎡ x (445.0㎡ / 90,734.75㎡) = 92.4㎡ - 59형 : 260.8㎡ ① 지상 = 18,837.10㎡ x (661.2㎡ / 90,734.75㎡) = 137.3㎡ ② 지하 = 18,837.10㎡ x (595.2㎡ / 90,734.75㎡) = 123.6㎡ - 임대주택 대지지분 = 44형 임대주택 대지지분 + 59형 임대주택 대지지분 = 202.8㎡ + 260.8㎡ = 463.6㎡ • 건축물 환산부지면적 : (연면적 x 조성비기준액) / 부지가액 - 44형 : 189.4㎡ ① 지상 = (531.8㎡ x 2,087,955원/㎡) / 8,016,055원/㎡ = 138.5㎡ ② 지하 = (445.0㎡ x 917,273원/㎡) / 8,016,055원/㎡ = 50.9㎡ - 59형 : 234.4㎡ ① 지상 = (661.2㎡ x 2,016,591원/㎡) / 8,016,055원/㎡ = 166.3㎡ ② 지하 = (595.2㎡ x 917,273원/㎡) / 8,016,055원/㎡ = 68.1㎡ - 임대주택 대지지분 = 44형 건축물 환산부지면적 + 59형 건축물 환산부지면적 = 189.4㎡ + 234.4㎡ = 423.9㎡						

<table>
<tr><th>구 분</th><th>산정내용</th></tr>
<tr><td>기준용적률</td><td>
• 199%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로 인정)
<table>
<tr><th>전체 대상지 면적</th><th>현황용적률 초과 건축물이 포함된 대지면적</th><th>비 고</th></tr>
<tr><td>20,316㎡</td><td>1,452㎡</td><td>2종일반주거지역 200%</td></tr>
<tr><td colspan="3">= 1,452㎡ / 20,316㎡ = 7.15%</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조례 용적률 초과비율</th><th>0%</th><th>사잇값</th><th>50%이상</th></tr>
<tr><td rowspan="2">현황용적률</td><td>제2종일반주거지역</td><td>190%</td><td>199.0%</td><td>250%</td></tr>
<tr><td colspan="2">사잇값(직선보간 용적률)</td><td colspan="3">= (250%-190%)*2*7.15% = 8.58% = 9.0%</td></tr>
</table>
※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 세부기준」에 따라,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한 값을 적용함
</td></tr>
<tr><td>허용용적률</td><td>
• 220.83%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 × 사업성 보정계수)
= 199% + 16.18% × 1.38 = 221.33%
• 사업성 보정계수(1.38)
<table>
<tr><th>구 분</th><th>산정 내용</th><th>적용값</th></tr>
<tr><td>사업성
보정계수</td><td>○ 사업성 보정계수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 대상구역 평균 공시지가
= 5,969,319원/㎡ / 4,339,617원/㎡ = 1.38
※ 대상구역 평균 공시지가 : 2024년 기준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 2024년 기준
※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기준 적용</td><td>1.38</td></tr>
</table>
</td></tr>
<tr><td></td><td>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table>
<tr><th>구분</th><th>인센티브(용적률)</th><th>완화량</th><th>적용</th><th>보정
계수</th></tr>
<tr><td>열린단지</td><td>• 개방공간(광장,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 및 개방형 커뮤니티(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설치
• 단지 외곽 개방(담장 미설치) 및 연도형 상가 배치
※ 개방공간 정비계획 결정도 참조</td><td>5%</td><td>5.0%</td><td>6.9%</td></tr>
<tr><td>돌봄시설</td><td>• 지역에 필요한 놀이, 돌봄시설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제외)/주민공동시설면적)×a
(※ a=0.1이하)
= 190%×[(526.52㎡-66㎡)/1,656.3㎡]×0.1
= 5.3%</td><td>5% 이내</td><td>5.0%</td><td>6.9%</td></tr>
<tr><td>방재안전</td><td>• 화재, 소방, 침수, 피난 안전 등 공동주택 시설성능 개선을 통한 안전한 주거공간 조성
※ 추후 관련 위원회 심의 · 자문을 통해 적용(인정)</td><td>5% 이내</td><td>5.0%</td><td>6.9%</td></tr>
<tr><td>세입자 손실보상</td><td>•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주거사업과-4568호, 2019.04.25.)에 따라 적용
※ 향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규모를 확정하여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 계획 등을 재조정</td><td>10%
이내</td><td>1.18%</td><td>1.63%</td></tr>
<tr><td>합계</td><td>사업성 보정계수 1.38 적용</td><td>1.0~2.0
이내</td><td>16.18%</td><td>22.33%</td></tr>
</table>
※ 향후 건축 심의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 대해서 최종 결정함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및 「단독주택재건축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업무처리지침(주택건축본부_19.04)」에 따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td></tr>
</table>

구 분	산정내용	
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허용(완화)용적률 + (허용용적률 x 1.3 x 가중치 x α토지) + (허용용적률 x 1.0 x α임대주택) = 221.33% + (210% x 1.3 x 0.02980) + (210% x 1.0 x 0.02307) = 234.31%	
	• 가중치 = 1	
	• α토지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 후 대지면적 = (1,942.5㎡-72.8㎡-1,322.1㎡) / (20,316.0㎡-1,478.9㎡-463.6㎡) = 0.02980	
	• α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 후 대지면적 = 423.9㎡(임대주택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 (20,316.0㎡-1,478.9㎡-463.6㎡) = 0.02307	
법적상한용적률	• 공공주택 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 250% 이하 (계획 249.68%)	• 2030 서울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계획의 용도지역별 법적상한용적률 이하로서 통합(건축)심의에서 최종 확정

3)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건설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 산식		비 고
기 정	법적상한 및 정비계획 용적률 산정	법적상한 용적률	220.0%	-
		정비계획 용적률	198.7%	-
	증가된 용적률 50%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X 50% = 5.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0조
	연면적 환산	• 증가된 용적률의 50% X 대지면적= 5.7% X 19,975.7㎡ = 1,138.6㎡		공공주택 확보기준
	재건축소형주택 확보계획	• 연면적(공급면적) : 1,168.8㎡ • 세대수: 16세대		기준 이상 확보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적용 산식</th><th>비 고</th></tr>
<tr><td rowspan="5">변 경</td><td rowspan="2">법적상한 및 정비계획 용적률 산정</td><td>법적상한용적률</td><td>249.68%</td><td>-</td></tr>
<tr><td>정비계획 용적률</td><td>234.31%</td><td>-</td></tr>
<tr><td>증가된 용적률 50%</td><td colspan="2">(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X 50% = 7.685% 이상</td><td>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0조</td></tr>
<tr><td>연면적 환산</td><td colspan="2">• 증가된 용적률의 50%×대지면적= 7.685% X 18,837.1㎡ = 1,447.667㎡ 이상</td><td>공공주택 확보기준</td></tr>
<tr><td>국민주택규모주택 확보계획</td><td colspan="2">• 연면적(공급면적) : 1,540.930㎡
• 세대수: 19세대
<table>
<tr><th>전용면적(㎡)</th><th>공급면적(㎡)</th><th>세대수(세대)</th><th>연면적(㎡)</th></tr>
<tr><td>44.85</td><td>66.47</td><td>9</td><td>598.23</td></tr>
<tr><td>59.99</td><td>82.65</td><td>5</td><td>413.25</td></tr>
<tr><td>84.95</td><td>105.89</td><td>5</td><td>529.45</td></tr>
<tr><td colspan="3">합 계</td><td>1,540.93</td></tr>
</table></td><td>기준 이상 확보</td></tr>
</table>

■ 기부채납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table>
<tr><th rowspan="2">전용면적(㎡)</th><th rowspan="2">공급면적(㎡)</th><th rowspan="2">세대수(세대)</th><th colspan="2">기부채납 면적(㎡)</th></tr>
<tr><th>대지지분</th><th>연면적</th></tr>
<tr><td colspan="2">합 계</td><td>16</td><td rowspan="3">463.6㎡</td><td rowspan="3">2,233.1㎡
(환산 부지면적: 423.9㎡)</td></tr>
<tr><td>44.85</td><td>66.47</td><td>8</td></tr>
<tr><td>59.99</td><td>82.65</td><td>8</td></tr>
</table>

9.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항 목	지 점	개 선 방 안
가로 및 교차로	-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사항 반영 - 소로3-2호선(국지도로, B=6.0m)) 개설 - 공공공지, 공공보행통로, 건축한계선 내 전면공지 설치
	Ⓐ	•사당로16길(소로2-12호선) 차로운영방안 수립 - 왕복2차로(차도폭원 B=7.0m) 운영
	Ⓑ	•소로3-2호선(국지도로, B=6.0m) 개설 및 차로운영방안 수립 - 건축한계선 내 차도형 전면공지(B=1.0m) 설치 - 왕복2차로(차도폭원 B=7.0m) 운영
	Ⓒ	•사업지 북동측 남부순환로255바길(계단으로 인해 막다른길) 상에 차도 부속형 전면공지(B=1.2~1.8m) 설치로 차도폭원 확대(B=3.2~5.0→ 5.0m)
	Ⓓ	•사업지 남동측 남부순환로255다길 상에 차도 부속형 전면공지(B=1.6m) 설치로차도폭원 확대(B=5.4→ 7.0m) 및 노상주차면 삭제(건의)
	Ⓔ	•사업지 남서측 남부순환로255길 상에 차도 부속형 전면공지 설치(B=1.5m)로 차도폭원 확대(B=5.5→ 7.0m) 및 노상주차면 삭제(건의)
	Ⓕ	•사당로16길 상의 노상주차면 삭제 후 보도 설치 건의
	-	•사업지 인접 도로 최고제한속도 30km/h 지정 및 교통안전시설물(표지판 및 노면표시) 설치
	-	•분석대상 교차로 최적신호운영방안 제시 (2개소)
진출입 동선	Ⓖ	•사업지 진출입구 설치(2개소) 및 운영계획 수립 - 사업지 북서측 사당로16길에 접속(3지교차로 형성) - 사업지 진출입로 왕복3차로 설치 - 고원식 교차로 설치 및 점멸등 운영
	Ⓗ	•지상부(101동 서측) 주차장(6대) 진출입구(1개소) 설치 - 사업지 서측 소로3-2호선에 접속(4지교차로 형성) - 주차장 진출입로(B=6.0m) 설치 - 주차장(6대)는 상시 개방
	-	•사업지 진출입구 및 주변도로에 적정 회전반경 확보(R=6.0~8.0m)
	-	•비상차량 동선계획 수립 및 진출입로 상에 이동식 볼라드 설치
	-	•주차차단기는 지하주차장에 설치하고 진출입구에 평탄부 확보
대중교통 및 보행	Ⓘ	•공공공지내 마을버스 회차공간 설치방안 제시(안)
	Ⓙ	•마을버스 우회노선 제시(안) - 주변 개발사업 진행시 차도폭원 B=7.0 이상 확보 건의 - 일부구간 도로 선형 개선 건의
	Ⓚ	•사업지 내 공공보행통로 설치(B=10.0m)
	-	•건축한계선 내 보도 부속형 전면공지(B=2.0~3.8m) 설치

항 목	지 점	개 선 방 안
	-	•횡단보도 및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	•자전거보관소 설치 [법정주차대수의 20.0%(95대) 이상] - 편의시설(CCTV, 안내표지, 공기주입기, 이용안내문, 위치안내도 등) 설치
주 차	-	•법정주차 및 주차수요에 부합하는 계획주차대수 확보 - 법정주차 : 475대 - 주차수요 : 591대 (2029년, 원단위법) - 계획주차 : 763대 (법정대비 160.6%, 수요대비 129.1%)
교통안전 및 기타	-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설치
	-	•사업지 인접 도로 경사구간에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	•사당로16길 상에 방호울타리 설치
	-	•사업지 인접 교차로에 교차점 노면표시 설치
	-	•차량 진출입구에 주차안내시스템(입구종합상황판) 설치
	-	•차량경고등 설치 (램프 시종점부)
	-	•반사경 설치 (지상 및 지하주차장)
	-	•볼라드 설치
	-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	•노면표시 설치

1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필요한 조치사항	계 획
소음피해	• 학교주변 방음벽 설치	• 공사장 주변 방음벽 설치
	• 공사장비는 시험가동 후 소음 발생시 이동식 방음막 설치	• 설치함
	• 소음 유발공사는 수업종료 후 또는 방학 중 시행	• 수업종료 후 또는 방학 중 시행
비산먼지 피해	• 여름철 소음방지를 위한 냉방시설 설치 및 운영비 부담	• 필요시 설치 및 운영비 부담
	• 50~65dB이하 유지	• 유지
	• 살수차 운영 및 세륜기 설치	• 설치함
진동피해	• 학교시설물 정기적 청소	• 피해 시 청소
	• 65~70dB이하 유지	• 유지
	• 기초파일 박기. 건물발파철거 등은 수업종료 후 또는 방학 중 시행	• 수업종료 후 또는 방학 중 시행
		• 학교우회 통행 예정
인근지역 우범지대화	• 공사차량 및 장비는 학교우회 통행	• 펜스설치 및 통제요원 배치
	• 주민이주부터 건물철거까지의 기간 중 우범지대 방지를 위한 침입통제 펜스설치 및 통제요원 배치하여 출입통제	• 별도 설치 불필요
	• 학생 및 교직원 전용 통학로 별도 설치	• 통학로 주변 자재방치 금지
통학로 안전확보	• 통학로 주변 공사장비 및 자재방치 금지	• 안전막 설치
	• 공사 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벽(막)설치	• 주통학로 공사차량 통행안함
	• 주통학로의 공사차량 통행금지 및 통제요원 배치	
학교시설물 피해	• 공사과정에서 학교시설물 및 부속시설(담장, 가스관, 상하수도관 등 설치물)이 훼손되어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전에 정밀조사하고, 발생한 손해(손실)에 대하여 배상(보상)조치	• 학교경계로부터 20m이상 이격되어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학교시설물 및 부속시설 등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전에 정밀 조사하고, 발생한 손해(손실)에 대하여 보상 조치하겠음
	• 학교주변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학교건물의 변위 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변위감지시 즉시 공사중지 및 조치	• 학교 경계로부터 20m이상 이격되어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학교주변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변위 감지 시 조치하겠음

구 분	필요한 조치사항	계 획
교육환경 보호구역 금지시설 (행위)	• 교육환경법 9조 및 교육환경법시행령 22조 참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소각·매몰지, 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도축업 시설, 가축시장, 제한상영관, 「청소년 보호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시설, 고압가스·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담배자동판매기,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물 시설, 체육시설 중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경마장 및□장외발매소, 장외매장, 사행행위영업,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숙박업 및 호텔업 등	• 금지시설(행위)등을 하지 않겠음

11.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 내용	비 고
환경보전	• 환경성 검토를 통해 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에 의한 환경영향에 따라 영향 저감방안 강구 • 대부분이 주거지역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녹지 변동은 없으며, 사업시행 시 단지 내 녹화를 통해 최대한의 녹지 공간 확보	-
재난방지	•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화재에 대한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구역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지구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 지형적 영향으로 인한 재해방지를 위하여 경계부의 녹화옹벽설치, 우수합류지점을 최대한 확보하는 계획 수립	-

12. 환경성 검토 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1. 비오톱	비오톱 보전 등급 향상	○	•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개별비오톱 평가 제외 등급으로 조사됨	• 녹지공간의 확보 및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2. 생태 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 기존 시가지로 주변 녹지가 미미한 상태임	• 조경 등을 통해 녹지 확보 계획 반영
3. 동식물상	동식물상 보호	X	• 현존식생은 시가화지역, 생태·자연도 3등급 권역	-
4. 자연환경자산	자연환경 보호	X	• 대상지 주변 보호지역 없음(1㎞이격)	-
5.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조사	•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6.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 측정망 조사결과 기준 만족	•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 처리대책 수립
7. 지형·지질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 대상지내는 90%이상 불투수포장지역임	• 인도 및 보행로의 포장재료는 투수성 포장재 사용
8. 물순환, 수리·수문	생태면적률 30% 이상	○	• 대상지내는 90%이상 불투수포장 지역 • 공동주택 30%이상 계획	•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등을 적용하여 공동주택 생태면적률 30.83%로 계획
9. 수질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 수질 상태 확인 • 오염원 및 처리시설 현황 파악	• 수질 등급 유지 또는 오염 최소화 계획 수립
10.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	• 기존 시가지 지역으로 신축 건물로 바람길에 대한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
11. 열	열환경 영향 최소화	○	• 대상지내는 90%이상 불투수포장 지역임	• 투수성포장재 사용으로 인한 열섬효과 최소화
12. 대기질	대기오염 최소화	○	• 공사시 대기질 영향 예상	•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방안 수립
13. 악취	악취공해 해결	X	• 해당사항 없음	-
14.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 예상	• 공사시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 에너지절약 친환경 건축물 수립계획
15.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적정처리
16. 에너지	에너지자립률 상향계획 수립	○	•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 에너지 절약 설비 및 계획 고려	•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및 청정연료 사용
17. 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 공사시 소음영향 예상	• 저소음 장비 사용하여 소음·진동 최소화 (가설방진망+이동식방음벽 설치)
18. 경관	Skyline 보전	○	•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 및 색채계획을 통한 친환경적인 경관계획 수립
19.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 대상지는 시가지 지역으로 도로와 접함	• 대상지 내부에 오픈스페이스 및 단지내 조경녹지 계획으로 입주민 등의 휴식공간 마련
20. 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X	• 일조유발시설 없음	• 일조장해 영향 최소화하는 배치 계획수립
21. 보행친환경공간	보행자 보호계획 수립	○	• 대상지는 시가지 지역으로 주변에 사당로길, 남부순환로길 등이 위치함	• 보행동선과 차량동선 분리 • 폭 2m이상의 보행자 보도 설치
22. 전파장해	전파장해 영향 저감	X	• 해당사항 없음	-
23. 인구	인구 고려한 계획	X	• 해당사항 없음	-
24. 주거	주거 고려한 계획	X	• 해당사항 없음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25. 산업	산업 고려한 계획	X	• 해당사항 없음	-

13.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현황	증감	계획	
재건축사업	구역 지정(변경)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사당5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414세대	증) 116세대	530세대	-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 경	사당5 주택재건축 지구단위계획 구역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20,265.0	증) 51.0	20,316.0	구역 내 신규 등록 토지(3필지, 51.0㎡) 반영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 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20,265.0	증) 51.0	20,316.0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0,265.0	감) 20,265.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20,316.0	20,316.0	100.0	공동주택용지 및 공공공지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20,316.0	• 주변 개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조화로운 경관 계획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2	12	8	국지도로	730 (17)	사당동 266-7	사당동 303-99	일반도로	-	서울특별시 고시 제54호 (73.04.20)	-
변경	소로	2	12	8	국지도로	796 (190)	사당동 266-7	사당동 303-172	일반도로	-	서울특별시 고시 제54호 (73.04.20)	연장 변경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45	사당동 708-543	사당동 303-51	일반도로	-	서울특별시 고시 제70호 (17.03.02)	-
변경	소로	3	2	6	국지도로	37	사당동 303-171	사당동 303-51	일반도로	-	서울특별시 고시 제70호 (17.03.02)	연장 및 선형 변경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 2-12	소로 2-12	• 도로 연장 변경 (L = 730m→796m)	• 종점 변경 및 일부 구간 폭원 확보
소로 3-2	소로 3-2	• 도로 연장 변경 및 선형 변경 (L = 45m→37m)	• 기점 변경 • 공공공지 신설에 따른 선형 변경

2) 주차장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입체적 결정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관리청)
					용도	연면적 (㎡)	건폐율 /용적률	수직적 범위		
폐지	①	주차장	주차장	사당동 303-157번지 일대	공영 주차장	1,664.8	-	지하1층~지하2층	-	주차대수20대 (동작구청) ※마을버스회차공간 지하 2층
폐지	②	주차장	주차장	사당동 303번지 일대	공영 주차장	3,756.6	-	지하1층	-	주차대수 87대 (동작구청)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주차장①	• 주차장 폐지 - 위치 : 동작구 사당동 303-157번지 일대 - 연면적 : 1,664.8㎡(20대)	• 인근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주차장 수요 감소로 시설 폐지
주차장②	• 주차장 폐지 - 위치 :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 연면적 : 3,756.6㎡(87대)	

3) 공공공지 결정 조서 : 신설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관리청)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①	공공공지	공공공지	사당동 303-159번지 일대	-	증) 1,025.1	1,025.1	-	서울특별시

■ 공공공지 결정 사유서 : 신설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위치 : 사당동 303-159번지 일대 - 연면적 : 1,025.1㎡	•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가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공지 계획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획지	획지	20,265.0㎡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일대	19,975.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	획지	획지	20,316.0㎡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일대	18,837.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가 구	면 적	용 도	비 고
허용용도	획 지	18,837.1㎡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2호의 공동주택(공공임대주택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제외) -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 건폐율 계획

구 분	지 역	건폐율	비 고
획 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계획 건폐율 28.95%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공공지		60% 이하	-

■ 용적률 계획

구 분	용적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기 정	190.0%	190.0%	198.7% 이하	210.0% 이하	정비계획	허용용적률 190.0% 상한용적률 198.7% 법적상한용적률 210.0%
변 경	199% 이하	221.33% 이하	234.31% 이하	249.68% 이하	정비계획	허용용적률 221.33% 상한용적률 234.31% 법적상한용적률 249.68%

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 분	명 칭	용도지역	인센티브				비 고
			열린단지	방재안전	돌봄시설	세입자 손실보상	
변 경	공동주택용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	5.0%	5.0%	5.0%	1.18%	16.18%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5.0%+5.0%+5.0%+1.18%) x 1.38 = 22.33%				22.33% 적용

②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 분	명 칭	용도지역	용적률 완화		비 고
			공공시설 제공 (임대주택 토지지분 포함)	기부채납 공공임대	
변 경	공동주택용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	10.66%	2.33%	12.98%

■ 높이 계획

구 분		지 역	높이기준	비 고
획 지	기 정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7m 이하 (평균 10층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변 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63m 이하 (최고 20층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공공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관계 법령에 따름	-

3) 건축물의 건축선 및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 위치	계획 내용
건축한계선	북측 남부순환로255바길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후퇴
	남측 남부순환로255길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m 후퇴
	동측 남부순환로255다길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후퇴
	서측 사당로16길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 위치	계획 내용
전면공지	북측 남부순환로255바길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차도형 +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남측 남부순환로255길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차도형 +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동측 남부순환로255다길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차도형 +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서측 사당로16길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공공공지측은 차도형 + 보도형으로 조성)
공공보행통로	도면에 표기(1개소)	남북간 보행 동선 연결을 위해 공공보행통로 지정(폭원10m, 연장 92m)

※ 보도 및 차도 부속형 전면공지 설치시 구분지상권 설정

■ 열린단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결정내용	비고
열린단지	• 단지 외곽 개방(담장 미설치) 및 공공보행통로 설치 ※ 단지 외곽 개방공간 결정도 참조 • 사당로16길변 연도형 상가 배치(단지 북서측) • 사당로16길 및 남부순환로255바길 교차 부분 개방공간(광장 형태) 조성 • 남부순환로255길→공공보행통로 진입 통로변 개방형 커뮤니티(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설치	

4)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에 관한 계획

①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 공동주택 등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주택(법적상한욕적률 완화)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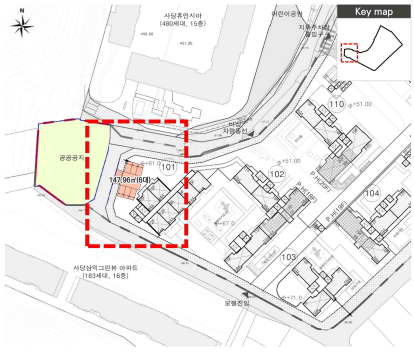
구 분		적용 산식		비 고
기 정	법적상한 및 정비계획 용적률 산정	법적상한 용적률	220.0%	-
		정비계획 용적률	198.7%	-
	증가된 용적률 50%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X 50% = 5.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0조
	연면적 환산	• 증가된 용적률의 50% X 대지면적= 5.7% X 19,975.7㎡ = 1,138.6㎡		공공주택 확보기준
	재건축소형주택 확보계획	• 연면적(공급면적) : 1,168.8㎡ • 세대수: 16세대		기준 이상 확보
변 경	법적상한 및 정비계획 용적률 산정	법적상한용적률	249.68%	-
		정비계획 용적률	234.31%	-
	증가된 용적률 50%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X 50% = 7.685% 이상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0조
	연면적 환산	• 증가된 용적률의 50%×대지면적= 7.685% X 18,837.1㎡ = 1,447.667㎡ 이상		공공주택 확보기준
	국민주택규모주택	• 연면적(공급면적) : 1,540.930㎡		기준 이상 확보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적용 산식</th><th>비 고</th></tr>
<tr><td></td><td>확보계획</td><td>• 세대수: 19세대
<table>
<tr><th>전용면적(㎡)</th><th>공급면적(㎡)</th><th>세대수(세대)</th><th>연면적(㎡)</th></tr>
<tr><td>44.85</td><td>66.47</td><td>9</td><td>598.23</td></tr>
<tr><td>59.99</td><td>82.65</td><td>5</td><td>413.25</td></tr>
<tr><td>84.95</td><td>105.89</td><td>5</td><td>529.45</td></tr>
<tr><td colspan="3">합 계</td><td>1,540.93</td></tr>
</table></td><td></td></tr>
</table>

■ 공공주택 혼합계획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비 율(%)	조합원 및 일반분양	공공주택	공공주택 비율(%)	
					전체 세대수 대비	전체 비율
합 계	530	100.0	495	35	6.6	100.0
60㎡ 이하	355	67.0	325	30	5.7	85.7
60㎡초과~85㎡이하	170	32.1	165	5	0.9	14.3
85㎡초과	5	0.9	5	-	0.0	0.0

Ⅲ. 2025년 제3차(2025.03.0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구 분	심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수정사항	▸ 공공공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계획은 사업부지와 동일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	▸ 공공공지는 미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가용지 활용과용도지역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사업부지와 동일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조정하였음	반영
조건사항	▸ 공공공지의 접근성 및 면적 등을 감안하면 주차장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공간을 공공에 기여하는 방안 검토	▸ 공공공지 주차장 추가확보 방안으로 공공공지와 연접한 공동주택 단지 지상부에 주차장 6면을 공공공지내 시설이용객에게 무상으로 상시 개방토록 조치하겠음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 시 동작구에 주차장 제공 확약서 제출 및 관리처분계획서상 명기예정	반영

Ⅳ.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기정/변경)
2. 용도지역 결정도(기정/변경)
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변경)
4. 정비계획 결정도(기정/변경)
5.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변경)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도서 :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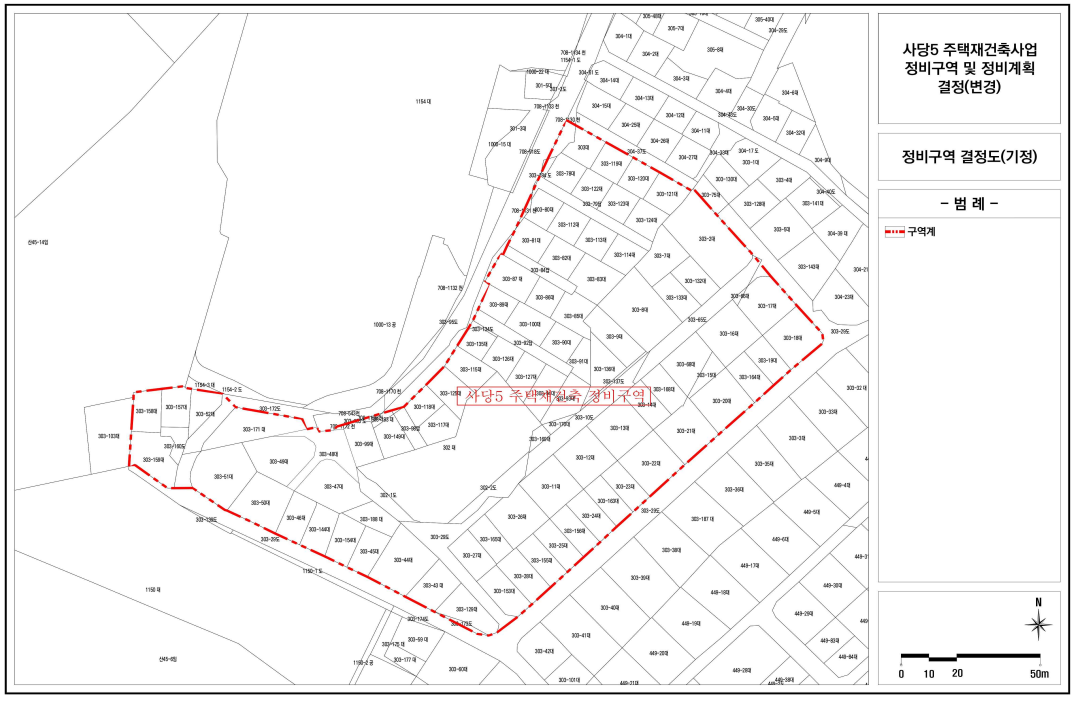
Ⅵ.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과 (☎ 02-2133-7224), 동작구 도시정비2과 (☎ 02-820-9776)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도서 등 관계 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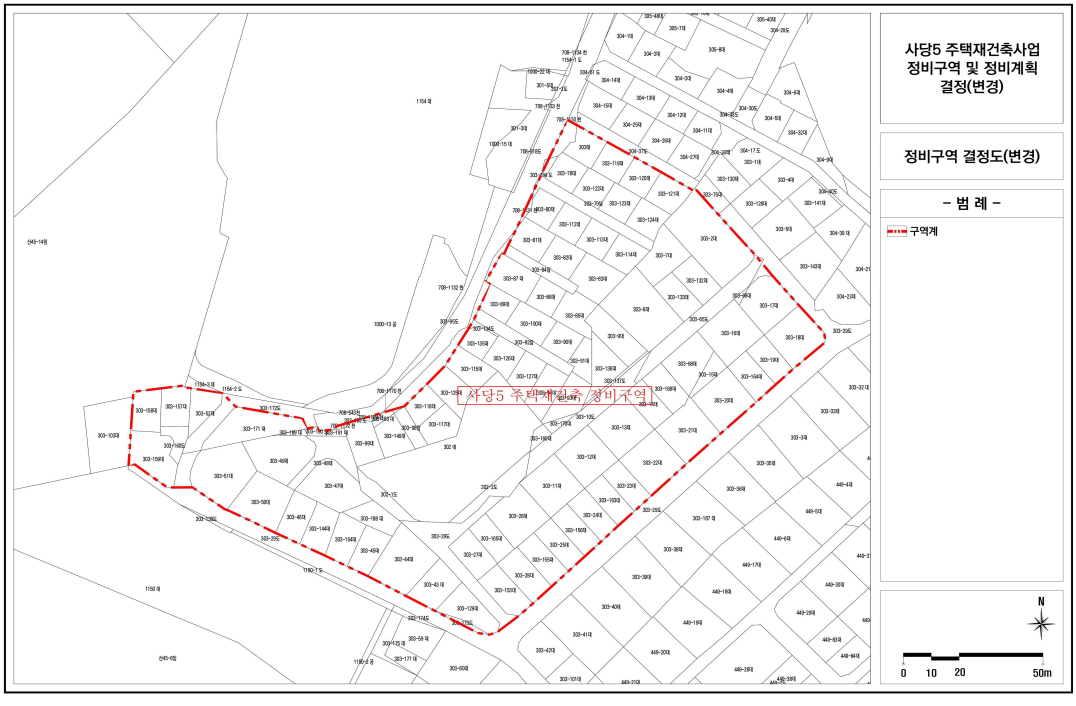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e음 (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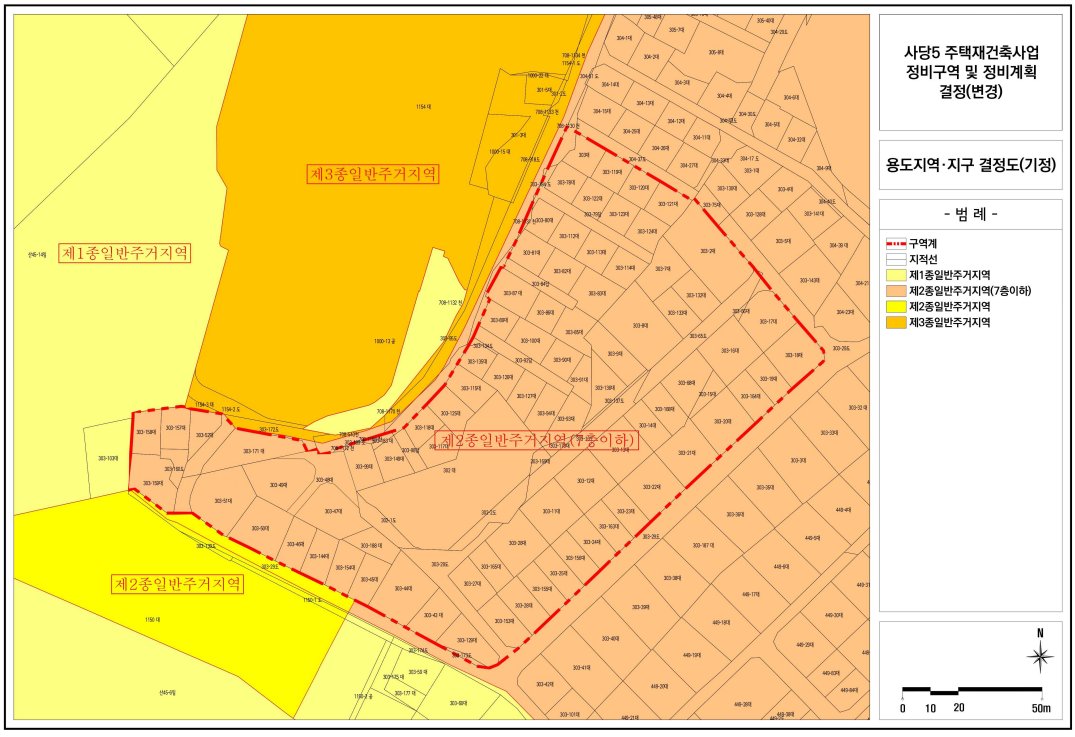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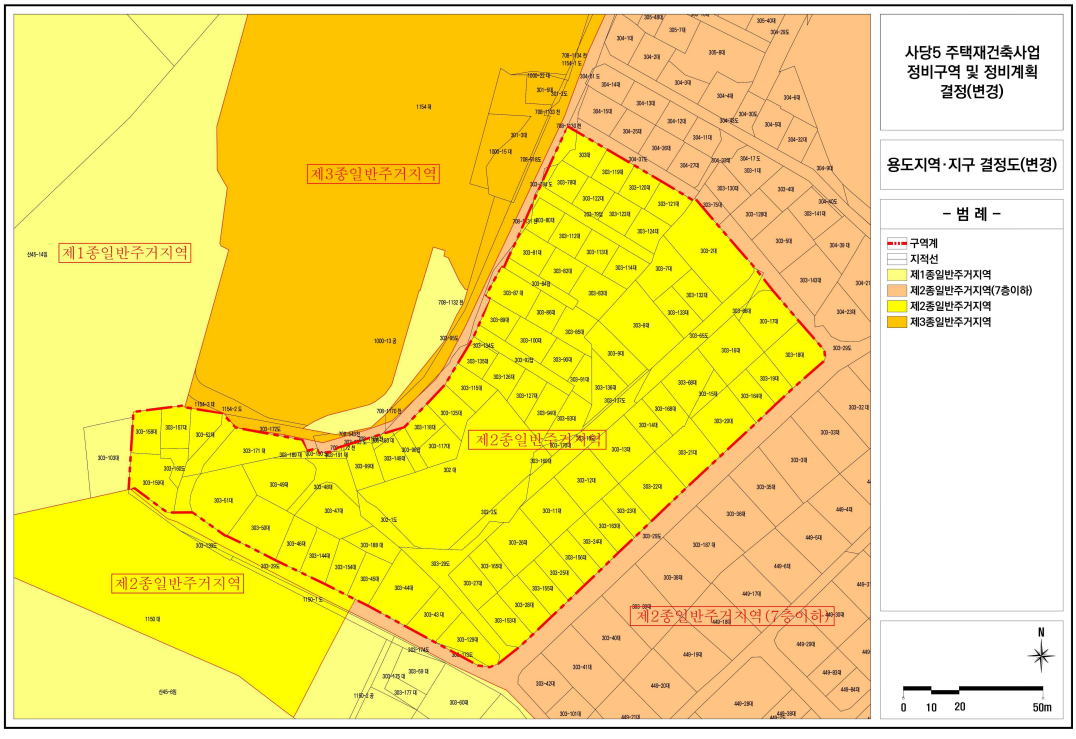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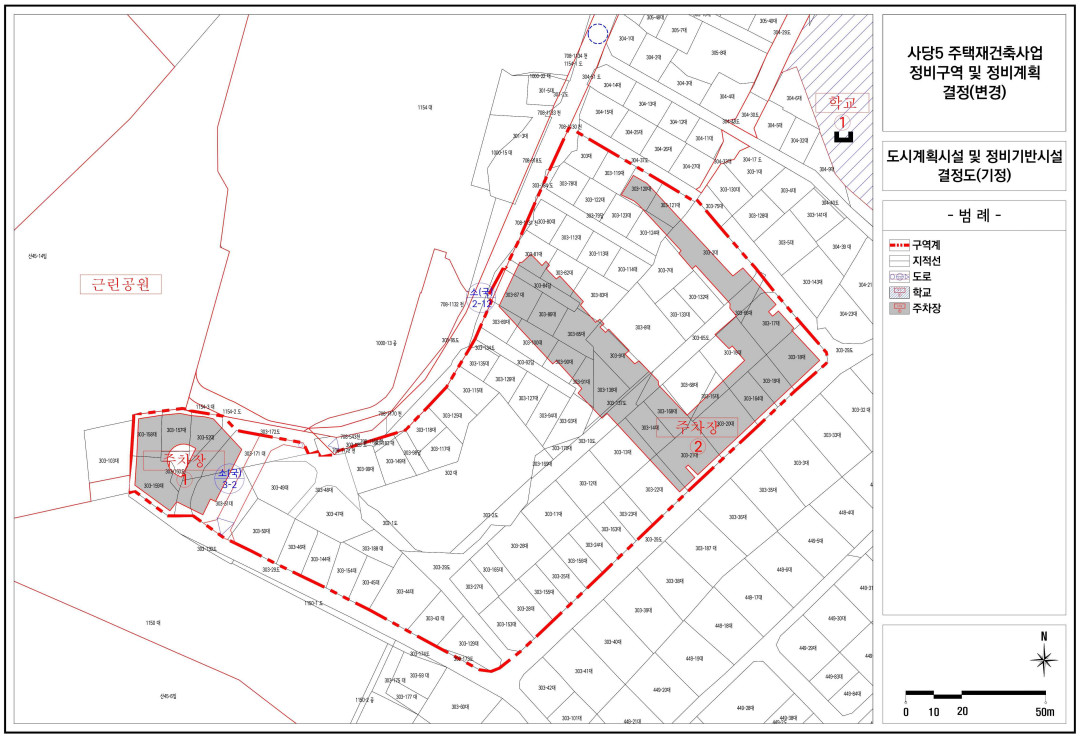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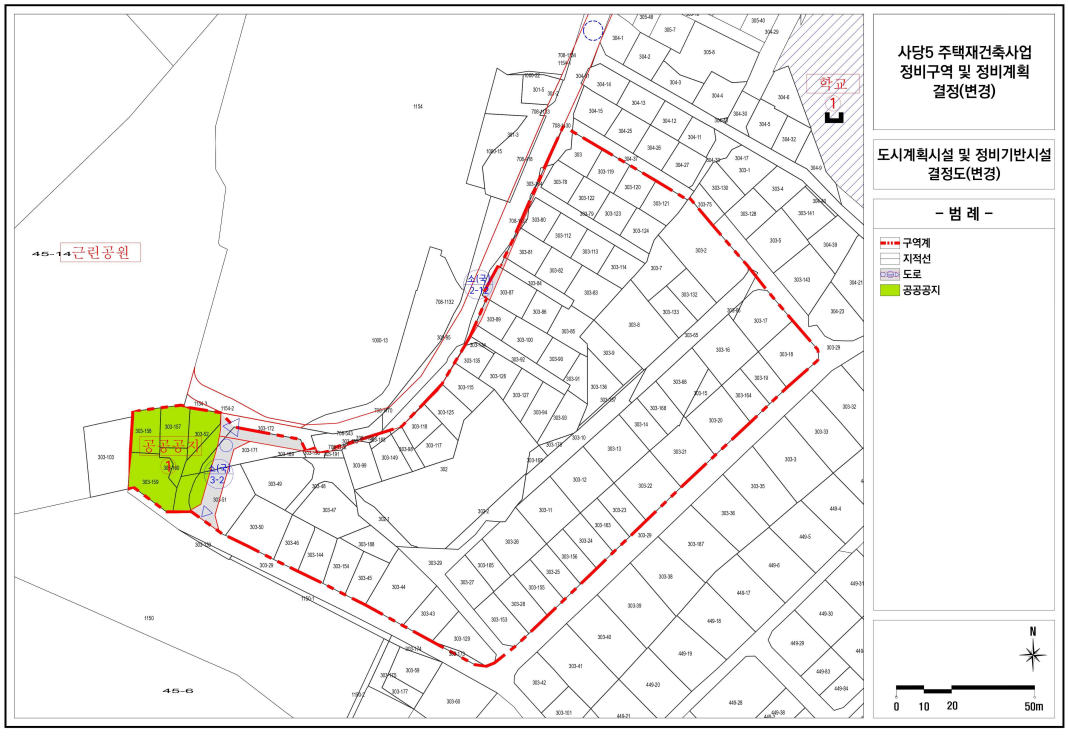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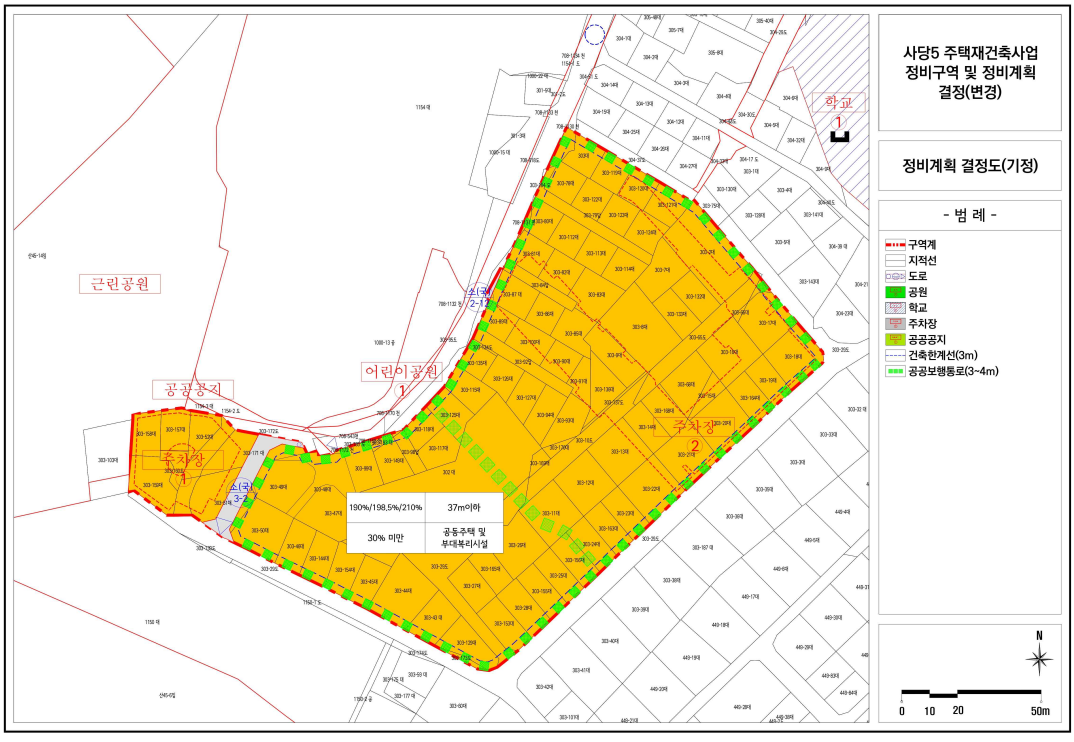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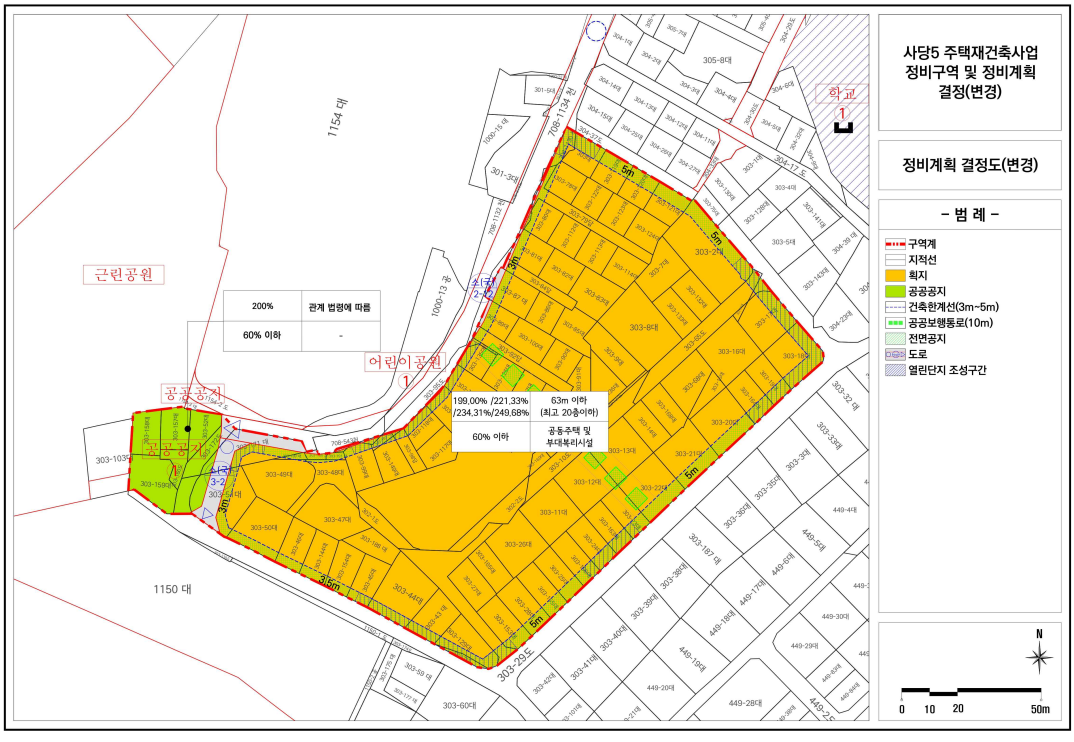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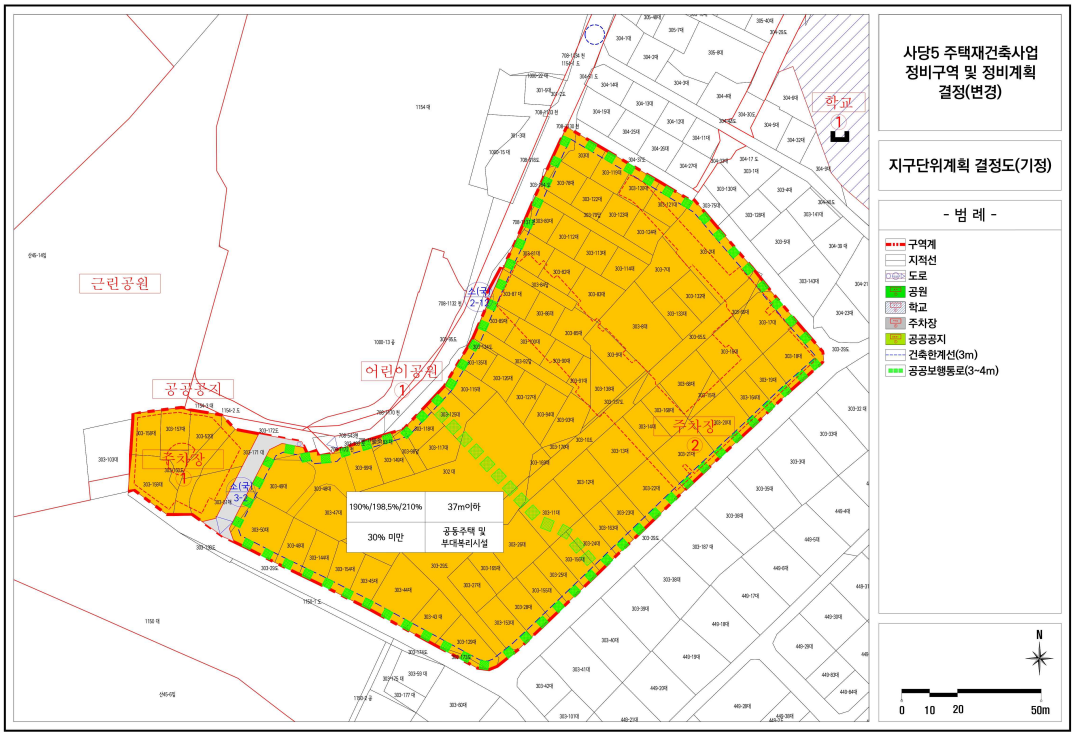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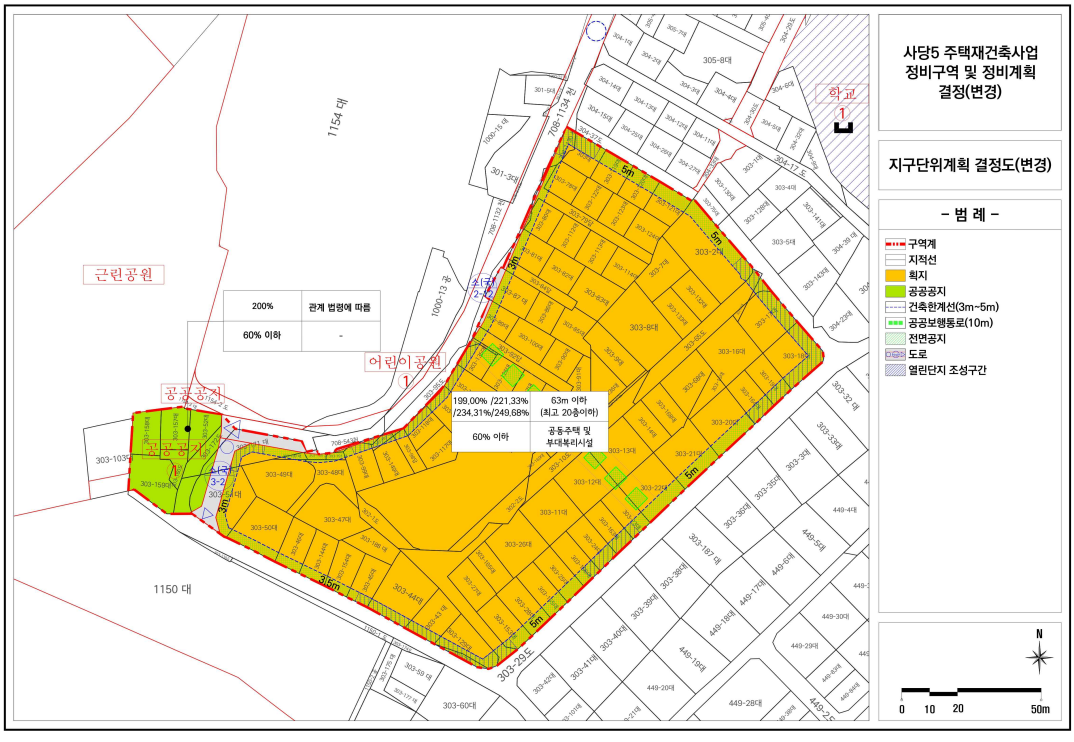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09호

중랑구 상봉동 109-28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16호(2021.07.01.)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280호(2024.06.07.)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된 중랑구 상봉동 109-28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24조, 제26조 및 제28조,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중랑구 상봉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중랑구 상봉동 109-28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4,069.00㎡
- 변경: 4,066.10㎡

2. 촉진지구 지정일(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 명 칭: 상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식회사
○ 대표자 성명: 이준성
○ 소재지
- 기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92라길 15-2, C동 204호(상봉동, 대성쉐르빌)
- 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43, 614동 6층 A51호(여의도동,한서리버파크)
○ 법인등록번호: 110111 - 7492286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1) 토지세목조서

– 기정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행정동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및 내용
1	상봉동 2동 (상봉동)	109-28	대	1,818.4	1818.4	[위탁자] 상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92라길 15-2, C동 204호(상봉동, 대성쉐르빌)	100%	-	-	-
2		109-29	대	705.5	705.5				-	-	-
3		109-53	대	875.5	875.5	[수탁자]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	-	-
4		109-62	대	669.6	669.6				-	-	-
합계				4,069.0	4,069.0	-					

– 변경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행정동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및 내용
1	상봉동 2동 (상봉동)	109-28	대	4,066.1	4,066.1	[위탁자] 상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43, 614동 6층 A51호(여의도동, 한서리버파크)	100%	-	-	-
						[수탁자]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합계				4,066.1	4,066.1	-					

2) 물건조서(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면목·상봉 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랑구 봉우재로20가길 58 일대	321,121.1	감)2.9	321,118.2	-

■ 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예정지측량 결과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변경

7.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02-2133-6292)와 중랑구 주거개선과(02-2094-28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 명 칭 : 중랑구 상봉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중랑구 상봉동 109-28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 4,069.00㎡
- 변경 : 4,066.10㎡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변경)

○ 명 칭 : 상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식회사

○ 대표자 성명 : 이준성

○ 소재지

- 기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92라길 15-2, C동 204호(상봉동, 대성쉐르빌)
- 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43, 614동 6층 A51호(여의도동,한서리버파크)

○ 법인등록번호 : 110111 - 7492286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 사업기간 :

- 기정 : 지구지정일 ~ 2024년
- 변경 : 지구지정일 ~ 2025년

○ 재원조달계획 : 자기자본 등

4. 토지이용계획 및 개략설계도서(변경)

○ 토지이용계획

- 기정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4,069.0	100.0	
주택건설용지	4,069.0	100.0	임대주택
기반시설용지	-	-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4,066.1	100.0	
주택건설용지	4,066.1	100.0	임대주택
기반시설용지	-	-	

5.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없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게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면목·상봉 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랑구 봉우재로20가길 58 일대	321,121.1	감)2.9	321,118.2	-

■ 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예정지측량 결과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변경

2)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사항(변경)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변경조서(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4,069.0	감) 2.9	4,066.1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4,069.0	감) 2.9	4,066.1	100.0	

■ 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4,069㎡ → 4,066.1㎡	예정지측량 결과에 따른 촉진지구 면적의 변경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해당사항 없음)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A1	A1	중랑구 상봉동 109-28번지 일원	4,069	감)2.9	4,066.1	

■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변경사유
A1	· 예정지측량 결과에 따른 촉진지구 면적의 변경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사항(변경없음)

다) 용적률 적용(의무사항)(변경)

- 기정

구분	사업조건 항목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고
기정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기본 공공기여율 - 25%(1,017.25㎡)이상 •추가 공공기여율 - 기본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 50%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대지지분	•공공임대주택 대지지분 - 20.08%(817.09㎡) •패션봉제시설 - 13.86%(564.12㎡) •주거안심센터 - 8.55%(347.79㎡) •총 공공기여 - 42.49%(1,729.00㎡)	기본 용적률 68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중랑구 상봉동 109-28 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 비율	•10% 이상	•5,048.73㎡(12.93%) - 지상 연면적 기준		
		주거비율	•90% 이하	•34,011.22㎡(87.07%) - 지상 연면적 기준		
	주택 건설 비중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 18㎡ 이상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공공임대(183세대) : SH선매입(199세대) : 민간임대(400세대) = 23.4% : 25.4% : 51.2% •공공임대주택 - 전용 23㎡, 48㎡ •민간임대주택 - 전용 23㎡, 39㎡, 48㎡		

구분	사업조건 항목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고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시 주택조례」	•1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 (세대수-299)×2.5㎡×1.25 = 1,509.38㎡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 = 1,515.78㎡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 변경

구분	사업조건 항목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고
변경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기본 공공기여율 - 25%(1,016.52㎡)이상 •추가 공공기여율 - 기본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 50%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대지지분	•공공임대주택 대지지분 - 20.06%(815.83㎡) •중랑문화원 - 16.05%(652.79㎡) •주거안심센터 - 8.65%(351.77㎡) •총 공공기여 - 44.77%(1,820.40㎡)	기본 용적률 68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중랑구 상봉동 109-2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 비율	•10% 이상	•5,102.99㎡(13.07%) - 지상 연면적 기준		
		주거비율	•90% 이하	•33,931.28㎡(86.93%) - 지상 연면적 기준		
	주택 건설 비중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 18㎡ 이상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공공임대(183세대) : SH선매입(199세대) : 민간임대(400세대) = 23.4% : 25.4% : 51.2% •공공임대주택 - 전용 23㎡, 48㎡ •민간임대주택 - 전용 23㎡, 39㎡, 48㎡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		

구분	사업조건 항목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고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시 주택조례」	•1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 (세대수-299)×2.5㎡×1.25 = 1,509.38㎡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 = 1,515.78㎡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라)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결정사항(변경없음)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사항(변경없음)

6) 공공기여계획(변경없음)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3. 방재계획(변경없음)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변경)

1) 토지세목조서(변경)

- 기정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행정동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및 내용
1	상봉동 2동 (상봉동)	109-28	대	1,818.4	1818.4	[위탁자] 상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92라길 15-2, C동 204호(상봉동, 대성쉐르빌)	100%	-	-	-
2		109-29	대	705.5	705.5				-	-	-
3		109-53	대	875.5	875.5	[수탁자]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	-	-
4		109-62	대	669.6	669.6				-	-	-
합계				4,069.0	4,069.0	-					

– 변경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행정동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및 내용
1	상봉동 2동 (상봉동)	109-28	대	4,066.1	4,066.1	[위탁자] 상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수탁자]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43, 614동 6층 A51호(여의도동, 한서리버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100%	-	-	-
합계				4,066.1	4,066.1	-					

2) 물건조서(변경없음)

3) 토지취득방법(변경없음)

4)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변경없음)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 분	내용	비 고
공공시설의 종류	•공공업무시설(패션봉제시설, 중랑주거안심종합센터)	-
위치	•중랑구 상봉동 109-28번지 일대	-
규모	•패션봉제시설 연면적 : 1,881.52㎡ •중랑주거안심종합센터 연면적 : 1,052.51㎡	-
계획기준 및 근거	•공공기여 내용 : 공공시설 조성 후 관리청(서울시)에 기부채납 : SH서울주택공사 위탁운영 ※공공기여 세부계획(관리부서, 시설·운영계획 등)은 공공기여 관리부서와 협의 등의 과정에서 변경(경미한 변경) 될 수 있음 •세부기준 : 공공기여량 산정방법 등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 및 「공공시설 등 기부채	-

구 분	내용	비 고
	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준용	
관리처분계획	•조성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	-

※ 추후 측량성과 및 감정평가 등에 의해 변경 가능

– 변경

구 분	내용	비 고
공공시설의 종류	•공공업무시설(중랑문화원, 중랑주거안심종합센터)	-
위치	•중랑구 상봉동 109-28번지 일대	-
규모	•중랑문화원 연면적 : 1,881.55㎡ •중랑주거안심종합센터 연면적 : 1,052.53㎡	-
계획기준 및 근거	•공공기여 내용 : 공공시설 조성 후 관리청(서울시 및 중랑구청)에 기부채납 : SH서울주택공사 위탁운영 ※공공기여 세부계획(관리부서, 시설·운영계획 등)은 공공기여 관리부서와 협의 등의 과정에서 변경(경미한 변경) 될 수 있음 •세부기준 : 공공기여량 산정방법 등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 및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준용	-
관리처분계획	•조성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 – 중랑문화원 : 중랑구청 – 중랑주거안심종합센터 : 서울시	-

※ 추후 측량성과 및 감정평가 등에 의해 변경 가능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4,069.0	100.0	-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주택건설용지	4,069.0	100.0	임대주택
기반시설용지	-	-	

※ 추후 측량성과에 의해 변경 가능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4,066.1	100.0	-
주택건설용지	4,066.1	100.0	임대주택
기반시설용지	-	-	

※ 추후 측량성과에 의해 변경 가능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11호

온수근린공원(문학지구)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465(1971.08.06.)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지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186(2025.04.10.)호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온수근린공원)에 대하여 2024년 제6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온수근린공원(문학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완료지에 생활밀착형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산5-85번지 일대 [온수근린공원(문학지구)]

3. 면 적 : 온수근린공원(문학지구) 26,766.70㎡

4.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02-2133-2076) 및 구로구 공원녹지과(☎ 02-860-3114), 양천구 공원녹지과(☎ 02-26203574)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온수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 온수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총괄표

구분		변경전						구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425,237.40	72,278.48	8	685.87	727.87	353	계	425,237.40	71,559.13	8	666.15	708.15	359	
원절공시구역	소 계	425,237.40	72,278.48	8	685.87	727.87	353	소 계	425,237.40	71,559.13	8	666.15	708.15	359	
	지양지구	80,208.90	14,847.73	1	37.51	37.51		지양지구	80,208.90	14,847.73	1	37.51	37.51		
	연의지구	28,155.50	4,792.88	1	72.60	72.60	78	연의지구	28,155.50	4,792.88	1	72.60	72.60	78	
	강신지구	15,463.20	1,710.26				9	강신지구	15,463.20	1,710.26				9	
	농업지구	48,695.10	7,017.72	1	207.00	249.00	43	농업지구	48,695.10	7,017.72	1	207.00	249.00	43	
	매봉지구	88,731.00	4,413.54				48	매봉지구	88,731.00	4,413.54				48	
	잣절지구	77,320.60	17,508.19	2	48.74	48.74		잣절지구	77,320.60	17,508.19	2	48.74	48.74		
	반달지구	1,529.20	726.14				17	반달지구	1,529.20	726.14				17	

구 분		변경 전						구 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문학지구	26,766.70	8,663.78	1	242.22	242.22	7	문학지구	26,766.70	7,944.43	1	222.50	222.50	13	
	텃골지구	6,026.00	1,534.90	1	23.80	23.80	34	텃골지구	6,026.00	1,534.90	1	23.80	23.80	34	
	궁동지구	868.00	485.62				1	궁동지구	868.00	485.62				1	
	벽산지구	26,074.70	3,767.60				36	벽산지구	26,074.70	3,767.60				36	
	온수골지구	7,985.30	2,060.77				10	온수골지구	7,985.30	2,060.77				10	
	온수체육지구	17,413.20	4,749.35	1	54.00	54.00	70	온수체육지구	17,413.20	4,749.35	1	54.00	54.00	70	
시설률 (법정40%이하)		72,278.48 / 425,237.40 x 100 = 17.00%						시설률 (법정40%이하)	71,559.13 / 425,237.40 x 100 = 16.83%						감) 0.17%
특정시설률 (시설면적20%이하)		8,576.32 / 72,278.48 x 100 = 11.87%						특정시설률 (시설면적20%이하)	9,198.84 / 71,559.13 x 100 = 12.85%						증) 0.99%
건폐율 (법정10%이하)		685.87 / 425,237.40 x 100 = 0.16%						건폐율 (법정10%이하)	666.15 / 425,237.40 x 100 = 0.16%						

온수근린공원(문학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온수근린공원(문학지구) 총괄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26,766.70	8,663.78	1	242.22	242.22	7	26,766.70	7,944.43	1	222.50	222.50	13	감) 719.35
기반시설	소 계	4,043.61	4,043.61					3,327.29	3,327.29					감) 716.32
	도 로	3,772.37	3,772.37					3,140.22	3,140.22					감) 632.15
	광 장	271.24	271.24					187.07	187.07					감) 84.17
조경시설		2,680.36	2,680.36					2,805.83	2,805.83					증) 125.47
휴양시설		501.34	501.34				7	167.69	167.69				13	감) 333.65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유희시설	196.50	196.50											감) 196.50
운동시설	761.78	761.78					1,384.30	1,384.30					증) 622.52
교양시설	282.99	282.99	1	242.22	242.22		222.50	222.50	1	222.50	222.50		감) 60.49
편익시설	197.20	197.20					36.82	36.82					감) 160.38
관리시설													
녹지 및 기타	18,102.92						18,822.27						증) 719.35

2. 온수근린공원(문학지구)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합 계				26,766.70	8,663.78	철골조	1	242.22	242.22	7			26,766.70	7,944.43	철골조	1	222.50	222.50	13	감) 719.35
기반시설	소계			4,043.61	4,043.61								3,327.29	3,327.29						감) 716.32
	도로(소계)			3,772.37	3,772.37								3,140.22	3,140.22						감) 632.15
	광장(소계)			271.24	271.24								187.07	187.07						감) 84.17
	광장	가	8개소	271.24	271.24						가	5개소	187.07	187.07						
	광장-1	가-1	오류동 산 5-88임	(24.53)	(24.53)						가-1	오류동 산 5-88임	(38.11)	(38.11)						변경
	광장-2	가-2	오류동 산 5-88임	(40.44)	(40.44)															폐지
	광장-3	가-3	오류동 산 5-88임	(49.27)	(49.27)															폐지
	광장-4	가-4	오류동 산 5-59임	(8.11)	(8.11)															폐지
	광장-5	가-5	오류동 산 5-59임	(42.65)	(42.65)						가-5	오류동 산 5-59임	(43.59)	(43.59)						변경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 축 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광장-6	가-6	오류동 산 5-18임	(9.54)	(9.54)															폐지
	광장-7	가-7	오류동 산 4임	(44.11)	(44.11)						가-7	오류동 산 4임	(33.93)	(33.93)						변경
	광장-8	가-8	오류동 산 4임	(52.59)	(52.59)						가-8	오류동 산 4임	(61.21)	(61.21)						변경
	광장-9										가-9	오류동 산 4임	(10.23)	(10.23)						신설
조경시설	소계			2,680.36	2,680.36						소계		2,805.83	2,805.83						증) 125.47
	전망데크	나	2개소	53.76	53.76						나	2개소	87.27	87.27						
	전망데크-1	나-1	오류동 산 5-59임	(39.84)	(39.84)						나-1	오류동 산 5-59임	(48.00)	(48.00)						변경
	전망데크-2	나-2	오류동 산 4임	(13.92)	(13.92)						나-2	오류동 산 5-59임	(39.27)	(39.27)						변경
	관찰데크	다	오류동 산 4임	16.94	16.94															폐지
	데크쉼터	라	2개소	214.30	214.30						라	1개소	207.73	207.73						
	데크쉼터-1	라-1	오류동 산 5-59임	(115.66)	(115.66)															폐지
	데크쉼터-2	라-2	오류동 산5-8임	(98.64)	(98.64)															폐지
	데크쉼터-3										라-3	오류동 산5-8임	(207.73)	(207.73)						신설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조경시설	잔디마당	마	3개소	1,022.55	1,022.55						마	2개소	682.09	682.09						
	잔디마당-1	마-1	오류동 산 5-59임	(404.93)	(404.93)						마-1	오류동 산 5-59임	(404.93)	(404.93)						
	잔디마당-2	마-2	오류동 산 5-59임	(277.16)	(277.16)						마-2	오류동 산 5-59임	(277.16)	(277.16)						
	잔디마당-3	마-3	오류동 산 4임	(340.46)	(340.46)														폐지	
	장미원	바	2개소	1,295.11	1,295.11						바	2개소	522.11	522.11						
	초화원-1	바-1	오류동 산 4임	(221.11)	(221.11)														폐지	
	장미원-2	바-2	오류동 산 5-63임 외	(1,074.00)	(1,074.00)						바-2	오류동 산 5-63임 외	(361.80)	(361.80)					명칭변경 (초화→장미)	
	장미원-3										바-3	오류동 산 5-63임 외	(160.31)	(160.31)					신설	
	이웃정원										가	오류동 산 5-88임	716.40	716.40					신설	
	문학정원										나	2개소	590.23	590.23						
	문학정원-1										나-1	오류동 산 4임	(373.17)	(373.17)					신설	
	문학정원-2										나-2	오류동 산 4임	(217.06)	(217.06)					신설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생태연못	사	오류동 산 4임	77.70	77.70															폐지
휴양시설	소계			501.34	501.34					7			167.69	167.69					13	감) 333.65
	휴게공간	아	8개소	501.34	501.34						아	3개소	86.69	86.69						
	휴게공간-1	아-1	오류동 산 5-63임	(47.59)	(47.59)						아-1	오류동 산 5-63임	(47.59)	(47.59)						
	휴게공간-2	아-2	오류동 산 5-48임	(138.03)	(138.03)															폐지
	휴게공간-3	아-3	오류동 1-23대 외	(113.45)	(113.45)															폐지
	휴게공간-4	아-4	오류동 산 4임	(80.13)	(80.13)															폐지
	휴게공간-5	아-5	오류동 산 4임	(67.04)	(67.04)															폐지
	휴게공간-6	아-6	오류동 산 5-43임	(10.00)	(10.00)						아-6	오류동 산 5-43임	(10.00)	(10.00)						
	휴게공간-7	아-7	오류동 산 5-80임	(16.00)	(16.00)															폐지
	휴게공간-8	아-8	오류동 산 5-81임	(29.10)	(29.10)						아-8	오류동 산 5-81임	(29.10)	(29.10)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휴양시설	스탠드										댜	오류동 산 5-48임 외	81.00	81.00						신설
	파고라	①	전지역							5	①	전지역							5	
	정자	②	전지역							2	②	전지역							2	
	등의자										③	전지역							6	신설
유희시설	소계			196.50	196.50															감) 196.50
	어린이놀이터	자	오류동 1-106대	196.50	196.50															폐지
운동시설	소계			761.78	761.78								1,382.20	1,382.20						증) 622.52
	다목적운동장	차	오류동 산 5-48임 외	479.12	479.12						차	오류동 산 5-48임 외	1,194.30	1,194.30						변경
	체력단련장	카	오류동 산 5-81임	190.00	190.00						카	오류동 산 5-81임	190.00	190.00						
	시니어운동공간	타	오류동 산 5-81임 외	92.66	92.66															폐지
교양시설	소계			282.99	282.99	철골조	1	242.22	242.22				222.50	222.50	철골조	1	222.50	222.50		감) 60.49
	야외무대	파	오류동 1-23대	40.77	40.77															폐지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책쉼터	1	오류동 산4임	242.22	242.22	철골조	1	242.22	242.22		1	오류동 산4임	222.50	222.50	철골조	1	222.50	222.50		명칭변경 (문화회관 → 책쉼터)
편익시설	소계			197.20	197.20								36.82	36.82						감) 160.38
	주차장	하	2개소	197.20	197.20						하	1개소	36.82	36.82						
	주차장-1	하-1	오류동 산 5-48임	(101.20)	(101.20)															폐지
	주차장-2	하-2	오류동 산 4임	(96.00)	(96.00)						하-2	오류동 산 4임	(36.82)	(36.82)						변경 (주차장 일반:1대 장애인:1대)
관리시설	소계																			
녹지 및 기타	소계			18,102.92									18,822.27							증) 719.35
	녹지			18,102.92									18,822.27							

3. 온수근린공원(문학지구)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 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m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1,998.79	3,772.37				
변경					1,460.83	3,140.22				
당초	소 로	계			136.83	695.37				
변경					72.68	357.45				
당초		3류	1	2.5~6.5	28.80	78.65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1	
변경		3류	1	2.5~6.5	15.65	59.50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1	
폐지		3류	2	6.0	26.00	156.00	연결도로	소로3-3	산책로-13	
당초		3류	3	4.0	22.83	91.32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3-2	
변경		3류	3	4.0	18.86	79.94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14	
당초		3류	4	3.0	45.00	270.00	연결도로	광장-7	산책로-23	
변경		3류	4	3.6~7.0	23.97	118.61	연결도로	광장-7	주차장-2	
당초		3류	5	6.0	14.20	99.40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36	
당초	산책로	계			1,861.96	3,077.00				
변경					1,388.15	2,782.77				
폐지		3류	1	2.0	6.40	12.80	산책로	소로3-1	휴게공간-2	
폐지		3류	2	1.5	31.60	47.40	산책로	광장-1	산책로-5	
폐지		3류	3	1.0	9.00	9.00	산책로	산책로-2	다목적운동장	
폐지		3류	4	1.0	11.70	11.70	산책로	산책로-2	다목적운동장	
폐지		3류	5	1.5	114.00	171.00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41	
폐지		3류	6	1.0	13.45	13.45	산책로	다목적운동장	산책로-5	
폐지		3류	7	1.5	14.00	21.00	산책로	광장-2	산책로-5	
폐지		3류	8	1.5	14.20	21.30	산책로	광장-2	산책로-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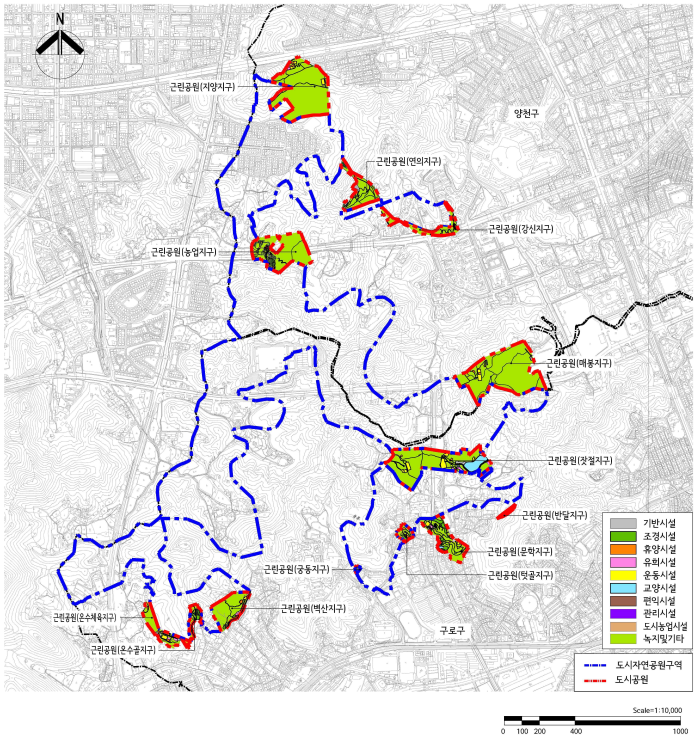
구분	등 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m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폐지		3류	9	1.2	12.50	15.00	산책로	광장-3	광장-2	
폐지		3류	10	2.0	2.40	4.80	산책로	다목적운동장	광장-2	
폐지		3류	11	2.0	3.10	6.20	산책로	다목적운동장	어린이놀이터	
폐지		3류	12	3.0	27.30	81.90	산책로	다목적운동장	산책로-14	
폐지		3류	13	1.2	10.80	12.96	산책로	소로3-2	휴게공간-2	
당초		3류	14	3.0	21.00	63.00	산책로	소로3-3	광장-3	
변경	산책로	3류	14	3.0	116.00	348.00	산책로	소로3-3	광장-1	
폐지		3류	15	1.5	21.00	31.50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14	
폐지		3류	16	1.8	6.80	12.24	산책로	광장-4	산책로-32	
당초		3류	17	1.2	101.50	121.80	산책로	산책로-36	광장-3	
변경		3류	17	1.5	101.68	152.53	산책로	산책로-14	산책로-36	
폐지		3류	18	1.5	11.80	17.70	산책로	산책로-32	광장-6	
당초		3류	19	1.5	53.80	80.70	산책로	산책로-22	산책로-32	
변경		3류	19	1.5	70.20	105.30	산책로	산책로-22	산책로-17	
폐지		3류	20	2.0	3.28	6.56	산책로	산책로-19	잔디마당-3	
폐지		3류	21	1.2	12.20	14.64	산책로	산책로-19	휴게공간-3	
당초		3류	22	1.5~4.0	14.83	49.32	산책로	광장-7	산책로-19	
변경		3류	22	3.0	19.40	58.20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19	
폐지		3류	23	1.2	104.25	125.10	산책로	소로3-4	산책로-19	
당초		3류	24	1.2	67.25	80.70	산책로	산책로-22	산책로-23	
변경		3류	24	1.2	109.70	132.30	산책로	소로3-4	산책로-22	
폐지		3류	25	1.2	29.00	34.80	산책로	산책로-24	산책로-19	

구분	등 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m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폐지		3류	26	1.2	11.25	13.50	산책로	산책로-25	산책로-23	
폐지		3류	27	1.2	32.30	38.76	산책로	산책로-23	산책로-23	
폐지		3류	28	1.5~4.5	5.00	8.65	산책로	산책로-23	잔디마당-3	
폐지		3류	29	3.0	2.65	7.95	산책로	산책로-23	휴게공간-5	
폐지		3류	30	2.0	3.10	6.20	산책로	휴게공간-5	산책로-32	
폐지		3류	31	1.2	141.80	170.16	산책로	산책로-44	산책로-23	
폐지		3류	32	1.8	291.20	524.16	산책로	산책로-33	광장-3	데크로드
당초		3류	33	2.5	73.90	184.75	산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3류	34	1.5	7.20	10.80	산책로	산책로-33	체력단련장	
당초		3류	35	1.0	3.00	3.00	산책로	체력단련장	산책로-33	
당초	산책로	3류	36	3.0	81.00	243.00	산책로	공원경계	광장-5	
당초		3류	37	3.0	6.50	19.50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36	
당초		3류	38	2.0	10.90	21.80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36	
당초		3류	39	1.0	43.00	43.00	산책로	산책로-36	산책로-41	
변경		3류	39	1.0	39.26	42.36	산책로	산책로-36	산책로-49	
당초		3류	40	3.0	3.40	10.20	산책로	공원경계	광장-5	
변경		3류	40	3.0	4.65	13.96	산책로	공원경계	광장-5	
당초		3류	41	1.5	120.00	180.00	산책로	산책로-5	공원경계	
변경		3류	41	3.0	76.65	230.40	산책로	광장-5	공원경계	
당초		3류	42	1.0	38.10	38.10	산책로	산책로-41	휴게공간-1	
변경		3류	42	1.0	46.20	49.10	산책로	산책로-41	휴게공간-1	

구분	등 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m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3류	43	1.8	220.20	396.36	산책로	산책로-9	데크쉼터-1	
변경		3류	43	2.0	173.00	349.90	산책로	산책로-48	휴게공간-1	데크로드
폐지		3류	44	1.8	50.30	90.54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32	데크로드
신설		3류	45	2.0	18.00	36.00	산책로	산책로-43	전망데크	데크로드
신설		3류	46	2.0	30.65	60.30	산책로	산책로-14	산책로-43	데크로드
신설		3류	47	2.0	33.70	69.15	산책로	산책로-14	산책로-43	데크로드
신설		3류	48	2.0	44.13	94.45	산책로	산책로-17	산책로-49	데크로드
신설		3류	49	1.5	38.45	65.90	산책로	광장-5	산책로-451	
신설		3류	50	1.5	14.50	21.80	산책로	전망데크	산책로-49	
신설		3류	51	1.5	56.00	88.10	산책로	산책로-41	산책로-42	
신설		3류	52	1.5	17.78	26.67	산책로	산책로-51	산책로-42	
신설		3류	53	2.0	7.40	14.95	산책로	광장-9	산책로-23	
신설		3류	54	1.2	34.30	37.40	산책로	광장-8	산책로-24	
신설		3류	55	2.0	144.40	288.75	산책로	산책로-19	데크쉼터-3	데크로드
신설		3류	56	1.0	9.60	14.40	산책로	산책로-55	산책로-33	

조성계획도 [변경전]

온수근린공원



■ 총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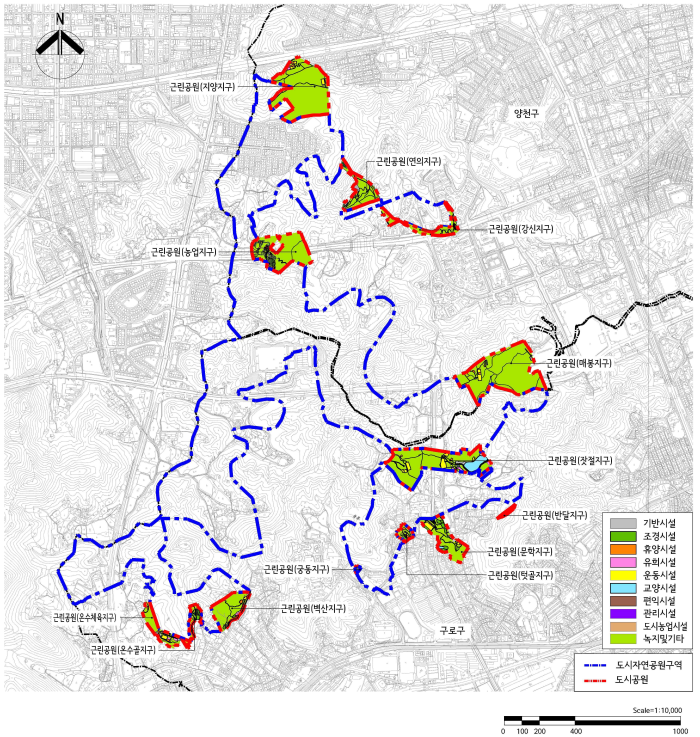
구분		총계	지양지구	연의지구	강신지구	농업지구	매봉지구
부지 총 면적		425,237.40	80,208.90	28,155.50	15,463.20	48,695.10	88,731.00
시설 총 면적		72,278.48	14,847.73	4,792.88	1,710.26	7,017.72	4,413.54
기반시설	소계	32,835.08	5,496.91	3,983.44	1,256.02	4,550.72	2,812.61
	도로	27,838.63	5,345.17	2,778.61	1,256.02	3,285.72	2,486.11
	광장	4,996.45	151.74	1,204.83	-	1,265.00	326.50
조경시설		9,186.03	-	650.72	353.35	1,734.00	-
휴양시설		4,101.91	1,014.00	-	54.20	526.00	411.52
유희시설		1,998.88	207.64		-	-	-
운동시설		8,576.32	1,435.37	-	46.69	-	1,189.41
고양시설		14,830.29	6,656.30	-	-	-	-
편익시설		346.74	-	-	-	-	-
관리시설		403.23	37.51	158.72	-	207.00	-
녹지 및 기타		352,958.92	65,361.17	23,362.62	13,752.94	41,677.38	84,317.46
건축물 바닥면적	동수(동)	8	1	1	-	1	-
	연면적	727.87	37.51	72.60	-	249.00	-
공작물(기)		353	-	78	9	43	48
비고							

구분		잣절지구	반달지구	문학지구	텃골지구	궁동지구	벽산지구	온수골지구	온수체육지구
부지 총 면적		77,320.60	1,529.20	26,766.70	6,026.00	868.00	26,074.70	7,985.30	17,413.20
시설 총 면적		17,508.19	726.14	8,663.78	1,534.90	485.62	3,767.60	2,060.77	4,749.35
기반시설	소계	4,629.16	276.99	4,043.61	503.30	139.07	2,428.50	676.41	2,038.34
	도로	3,590.58	276.99	3,772.37	434.60	99.90	2,292.43	644.79	1,575.34
	광장	1,038.58	-	271.24	68.70	39.17	136.07	31.62	463.00
조경시설		995.25	6.00	2,680.36	475.80	-	397.03	1,384.36	509.16
휴양시설		300.17	112.32	501.34	272.80	177.81	244.54	-	487.21
유희시설		281.00	196.62	196.50	-	145.82	433.66	-	537.64
운동시설		3,339.87	134.21	761.78	259.20	22.92	263.87	-	1,123.00
고양시설		7,891.00	-	282.99	-	-	-	-	-
편익시설		71.74	-	197.20	23.80	-	-	-	54.00
관리시설		-	-	-	-	-	-	-	-
녹지 및 기타		59,812.41	803.06	18,102.92	4,491.10	382.38	22,307.10	5,924.53	12,663.85
건축물 바닥면적	동수(동)	2	-	1	1	-	-	-	1
	연면적	48.74	-	242.22	23.80	-	-	-	54.00
공작물(기)		-	17	7	34	1	36	10	70
비고									

* 공원시설률 : 72,278.48 / 425,237.40 x 100 = 17.00%
* 특정시설률(도서관·문화예술회관·청소년수련시설·노인복지관 및 운동시설물)
  : 8,576.32 / 72,278.48 x 100 = 11.87%
* 건폐율 : 685.87 / 425,237.40 x 100 = 0.16%

조성계획도 [변경후]

온수근린공원



■ 총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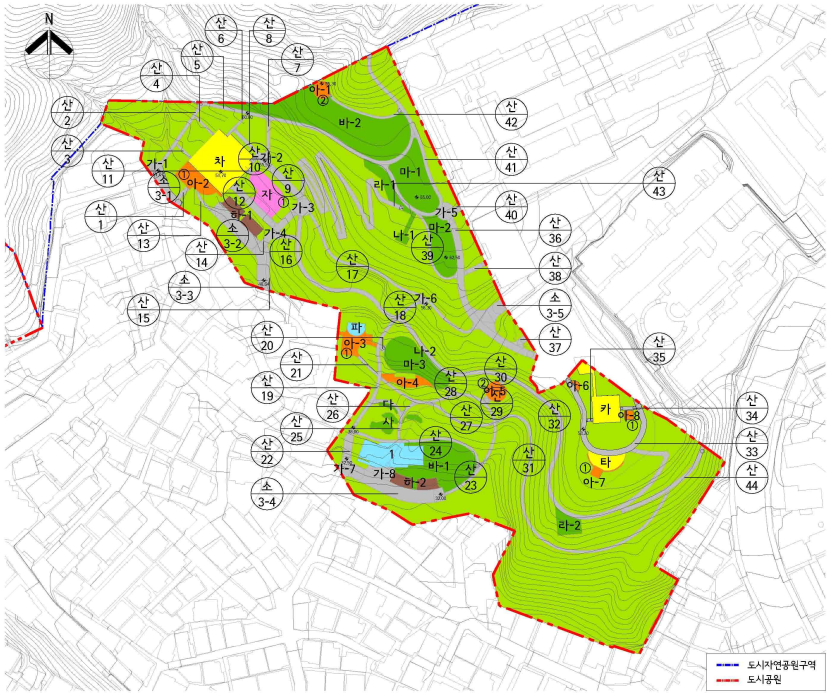
구분		총계	지양지구	연의지구	강신지구	농업지구	매봉지구
부지 총 면적		425,237.40	80,208.90	28,155.50	15,463.20	48,695.10	88,731.00
시설 총 면적		71,559.13	14,847.73	4,792.88	1,710.26	7,017.72	4,413.54
기반시설	소계	32,118.76	5,496.91	3,983.44	1,256.02	4,550.72	2,812.61
	도로	27,206.48	5,345.17	2,778.61	1,256.02	3,285.72	2,486.11
	광장	4,912.28	151.74	1,204.83	-	1,265.00	326.50
조경시설		9,311.50	-	650.72	353.35	1,734.00	-
휴양시설		3,768.26	1,014.00	-	54.20	526.00	411.52
유희시설		1,802.38	207.64		-	-	-
운동시설		9,198.84	1,435.37	-	46.69	-	1,189.41
교양시설		14,769.80	6,656.30	-	-	-	-
편익시설		186.36	-	-	-	-	-
관리시설		403.23	37.51	158.72	-	207.00	-
녹지 및 기타		353,678.27	65,361.17	23,362.62	13,752.94	41,677.38	84,317.46
건축물 바닥면적	동수(동)	8	1	1	-	1	-
	연면적	708.15	37.51	72.60	-	249.00	-
공작물(기)		359	-	78	9	43	48
비고							

구분		잣절지구	반달지구	문학지구	텃골지구	궁동지구	벽산지구	온수골지구	온수체육지구
부지 총 면적		77,320.60	1,529.20	26,766.70	6,026.00	868.00	26,074.70	7,985.30	17,413.20
시설 총 면적		17,508.19	726.14	7,944.43	1,534.90	485.62	3,767.60	2,060.77	4,749.35
기반시설	소계	4,629.16	276.99	3,327.29	503.30	139.07	2,428.50	676.41	2,038.34
	도로	3,590.58	276.99	3,140.22	434.60	99.90	2,292.43	644.79	1,575.34
	광장	1,038.58	-	187.07	68.70	39.17	136.07	31.62	463.00
조경시설		995.25	6.00	2,805.83	475.80	-	397.03	1,384.36	509.16
휴양시설		300.17	112.32	167.69	272.80	177.81	244.54	-	487.21
유희시설		281.00	196.62	-	-	145.82	433.66	-	537.64
운동시설		3,339.87	134.21	1,384.30	259.20	22.92	263.87	-	1,123.00
교양시설		7,891.00	-	222.50	-	-	-	-	-
편익시설		71.74	-	36.82	23.80	-	-	-	54.00
관리시설		-	-	-	-	-	-	-	-
녹지 및 기타		59,812.41	803.06	18,822.27	4,491.10	382.38	22,307.10	5,924.53	12,663.85
건축물 바닥면적	동수(동)	2	-	1	1	-	-	-	1
	연면적	48.74	-	222.50	23.80	-	-	-	54.00
공작물(기)		-	17	13	34	1	36	10	70
비고									

* 공원시설률 : 71,559.13 / 425,237.40 x 100 = 16.83%
* 특정시설률(도서관·문화예술회관·청소년수련시설·노인복지관 및 운동시설률)
  : 9,198.84 / 71,559.13 x 100 = 12.85%
* 건폐율 : 666.15 / 425,237.40 x 100 = 0.16%

조성계획도 [변경전]

온수근린공원(문학지구)



■ 시설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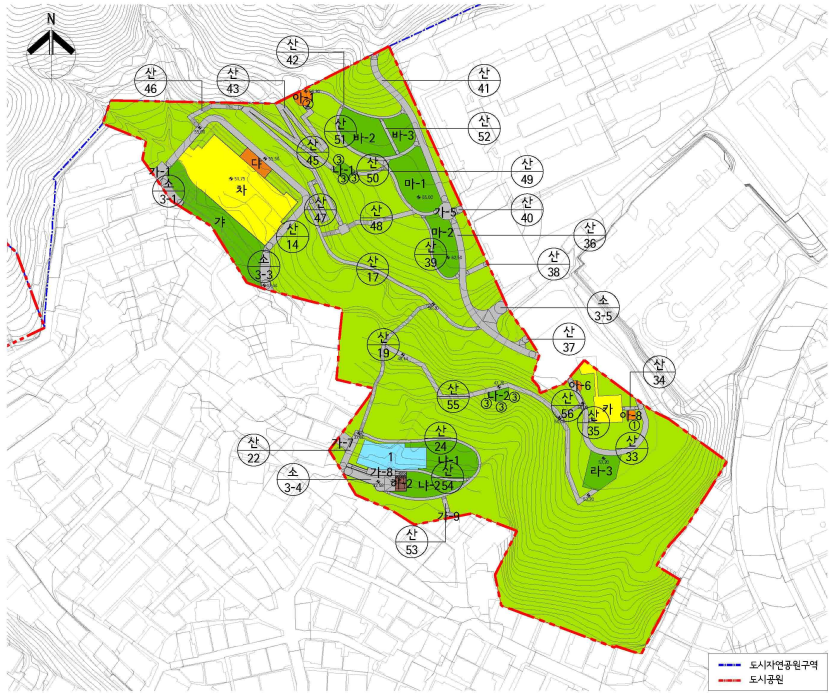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26,766.70	8,663.78	철골조	1	242.22	242.22	7	
기반시설	소계		4,043.61	4,043.61	-	-	-	-	-	
	도로(소계)		3,772.37	3,772.37	-	-	-	-	-	
	광장(소계)		271.24	271.24	-	-	-	-	-	
	광장	가	271.24	271.24	-	-	-	-	-	
	광장-1	가-1	(24.53)	(24.53)	-	-	-	-	-	
	광장-2	가-2	(40.44)	(40.44)	-	-	-	-	-	
	광장-3	가-3	(49.27)	(49.27)	-	-	-	-	-	
	광장-4	가-4	(8.11)	(8.11)	-	-	-	-	-	
	광장-5	가-5	(42.65)	(42.65)	-	-	-	-	-	
	광장-6	가-6	(9.54)	(9.54)	-	-	-	-	-	
	광장-7	가-7	(44.11)	(44.11)	-	-	-	-	-	
	광장-8	가-8	(52.59)	(52.59)	-	-	-	-	-	
조경시설	소계		2,680.36	2,680.36	-	-	-	-	-	
	전망데크	나	53.76	53.76	-	-	-	-	-	
	전망데크-1	나-1	(39.84)	(39.84)	-	-	-	-	-	
	전망데크-2	나-2	(13.92)	(13.92)	-	-	-	-	-	
	관찰데크	다	16.94	16.94	-	-	-	-	-	
	데크쉼터	라	214.30	214.30	-	-	-	-	-	
	데크쉼터-1	라-1	(115.66)	(115.66)	-	-	-	-	-	
	데크쉼터-2	라-2	(98.64)	(98.64)	-	-	-	-	-	
	잔디마당	마	1,022.55	1,022.55	-	-	-	-	-	
	잔디마당-1	마-1	(404.93)	(404.93)	-	-	-	-	-	
	잔디마당-2	마-2	(277.16)	(277.16)	-	-	-	-	-	
	잔디마당-3	마-3	(340.46)	(340.46)	-	-	-	-	-	
	초화원	바	1,295.11	1,295.11	-	-	-	-	-	
	초화원-1	바-1	(221.11)	(221.11)	-	-	-	-	-	
	초화원-2	바-2	(1,074.00)	(1,074.00)	-	-	-	-	-	
	생태연못	사	77.70	77.70	-	-	-	-	-	
휴양시설	소계		501.34	501.34	-	-	-	-	7	
	휴게공간	아	501.34	501.34	-	-	-	-	-	
	휴게공간-1	아-1	(47.59)	(47.59)	-	-	-	-	-	
	휴게공간-2	아-2	(138.03)	(138.03)	-	-	-	-	-	
	휴게공간-3	아-3	(113.45)	(113.45)	-	-	-	-	-	
	휴게공간-4	아-4	(80.13)	(80.13)	-	-	-	-	-	
	휴게공간-5	아-5	(67.04)	(67.04)	-	-	-	-	-	
	휴게공간-6	아-6	(10.00)	(10.00)	-	-	-	-	-	
	휴게공간-7	아-7	(16.00)	(16.00)	-	-	-	-	-	
	휴게공간-8	아-8	(29.10)	(29.10)	-	-	-	-	-	
	파고라	①	-	-	-	-	-	-	5	
	정자	②	-	-	-	-	-	-	2	
유희시설	소계		196.50	196.50	-	-	-	-	-	
	어린이놀이터	자	196.50	196.50	-	-	-	-	-	
운동시설	소계		761.78	761.78	-	-	-	-	-	
	다목적운동장	차	479.12	479.12	-	-	-	-	-	
	체력단련장	카	190.00	190.00	-	-	-	-	-	
	시니어운동공간	타	92.66	92.66	-	-	-	-	-	
교양시설	소계		282.99	282.99	철골조	1	242.22	242.22	-	
	야외무대	파	40.77	40.77	-	-	-	-	-	
	문화휴게공간(문학의집)	1	242.22	242.22	철골조	1	242.22	242.22	-	
편익시설	소계		197.20	197.20	-	-	-	-	-	
	주차장	하	197.20	197.20	-	-	-	-	-	
	주차장-1	하-1	(101.20)	(101.20)	-	-	-	-	-	
	주차장-2	하-2	(96.00)	(96.00)						
녹지 및 기타	소계		18,102.92	-	-	-	-	-	-	
	녹지		18,102.92	-	-	-	-	-	-	

Scale=1:800

0 10 20 40 80

조성계획도 [변경후]

온수근린공원(문학지구)



■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26,766.70	7,344.43	철골조	1	222.50	222.50	13	
기반시설	소계		3,327.29	3,327.29	-	-	-	-	-	
	도로(소계)		3,140.22	3,140.22	-	-	-	-	-	
	광장(소계)		187.07	187.07	-	-	-	-	-	
	광장	가	187.07	187.07	-	-	-	-	-	
	광장-1	가-1	(38.11)	(38.11)	-	-	-	-	-	
	광장-5	가-5	(43.59)	(43.59)	-	-	-	-	-	
	광장-7	가-7	(33.93)	(33.93)	-	-	-	-	-	
	광장-8	가-8	(61.21)	(61.21)	-	-	-	-	-	
	광장-9	가-9	(10.23)	(10.23)						
조경시설	소계		2,805.83	2,805.83	-	-	-	-	-	
	전망데크	나	87.27	87.27	-	-	-	-	-	
	전망데크-1	나-1	(48.00)	(48.00)	-	-	-	-	-	
	전망데크-2	나-2	(39.27)	(39.27)	-	-	-	-	-	
	데크쉼터	라	207.73	207.73	-	-	-	-	-	
	데크쉼터-3	라-3	(207.73)	(207.73)	-	-	-	-	-	
	잔디마당	마	682.09	682.09	-	-	-	-	-	
	잔디마당-1	마-1	(404.93)	(404.93)	-	-	-	-	-	
	잔디마당-2	마-2	(277.16)	(277.16)	-	-	-	-	-	
	장미원	바	522.11	522.11	-	-	-	-	-	
	장미원-2	바-2	(361.80)	(361.80)	-	-	-	-	-	
	장미원-3	바-3	(160.31)	(160.31)	-	-	-	-	-	
	이웃정원	가	716.40	716.40	-	-	-	-	-	
	문학정원	나	590.23	590.23	-	-	-	-	-	
	문학정원-1	나-1	(373.17)	(373.17)	-	-	-	-	-	
	문학정원-2	나-2	(217.06)	(217.06)	-	-	-	-	-	
휴양시설	소계		167.69	167.69	-	-	-	-	13	
	휴게쉼간	아	86.69	86.69	-	-	-	-	-	
	휴게쉼간-1	아-1	(47.59)	(47.59)	-	-	-	-	-	
	휴게쉼간-6	아-6	(10.00)	(10.00)	-	-	-	-	-	
	휴게쉼간-8	아-8	(29.10)	(29.10)	-	-	-	-	-	
	스탠드	다	81.00	81.00	-	-	-	-	-	
	파고라	①	-	-	-	-	-	-	5	
	정자	②	-	-	-	-	-	-	2	
	등의자	③	-	-	-	-	-	-	6	
운축시설	소계		1,384.30	1,384.30	-	-	-	-	-	
	다목적운동장	차	1,194.30	1,194.30	-	-	-	-	-	
	체력단련장	카	190.00	190.00	-	-	-	-	-	
공당시설	소계		222.50	222.50	철골조	1	222.50	222.50	-	
	책쉼터	1	222.50	222.50	철골조	1	222.50	222.50	-	
편의시설	소계		36.82	36.82	-	-	-	-	-	
	주차장	하	36.82	36.82	-	-	-	-	-	
	주차장-2	하-2	(36.82)	(36.82)	-	-	-	-	-	
녹지 및 기타	소계		18,822.27	-	-	-	-	-	-	
	녹지		18,822.27	-	-	-	-	-	-	

Scale=1:800
0 10 20 40 80

구 분	입안 및 결정권자				
	작성자			확인자	
직 위	주무관	공원정책팀장	공원녹지과장	주 무 관	주제공원팀장
직 급	지방녹지서기	지방녹지주사	지방녹지사무관	지방녹지주사	지방녹지사무관
성 명	오 주 연	윤 정 화	손 희 남	기 덕 윤	장 창 수
확인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13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조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별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연번	자치구	구역명(가칭)	대상		권리산정기준일	
			위 치	건 축 물	전	후
1	구로구	가리봉1	가리봉동 133-56외 2필지 (133-62, 133-63)	공동주택(다세대주택, 17세대)	2022.01.28.	2022.10.05.
			가리봉동 133-57외 1필지 (133-58)	공동주택(다세대주택, 14세대)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호)	2022.01.28.	2022.07.22.
2	용산구	서계동 33일대	서계동 33-233외 2필지 (33-274, 33-295)	공동주택(다세대주택, 16세대)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호)	2022.01.28.	2022.12.07.
3	성북구	성북3	성북동 145-52	공동주택(다세대주택, 12세대)	2022.01.28.	2022.06.21.

2. 조정사유

○ 투기의도가 없는 현금청산대상 건축물을 소유한 민간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서울시 정비사업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상기 대상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을 건축물 사용승인일로 조정하여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구제함.

3.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자동 실효하며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도 자동 실효

※ 후보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자동 실효

4. 관계도면 : 붙임 참조

5. 안내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02-2133-7236) 또는 아래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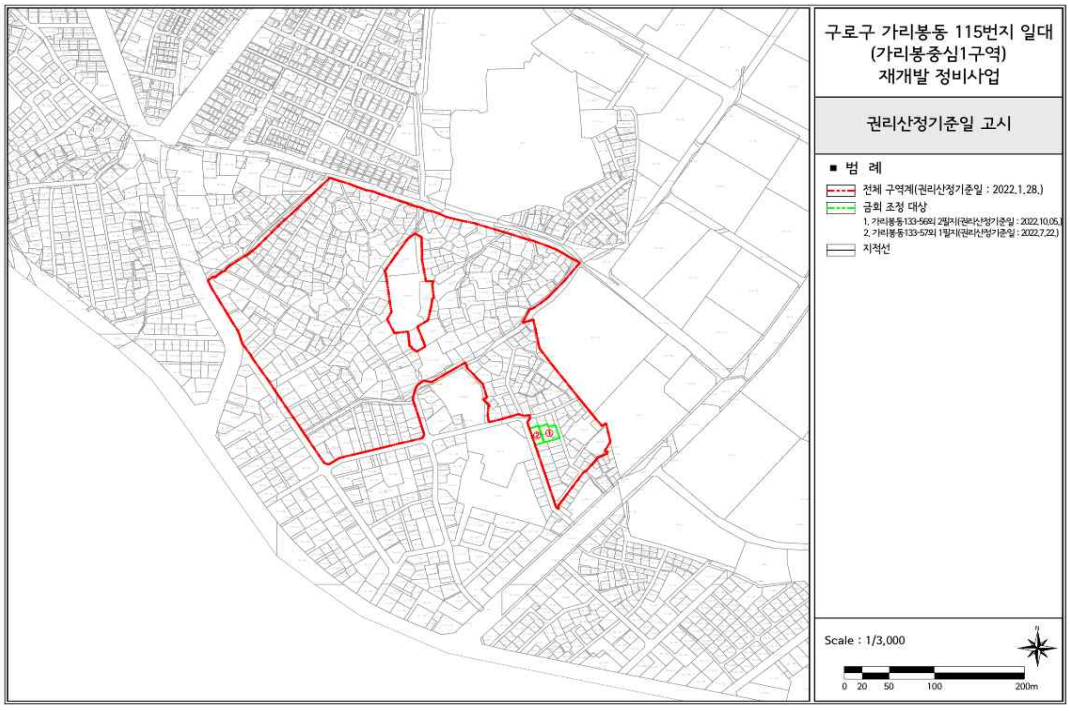
자치구	부서명	연락처	비고
구로구	도시개발과	02-860-2534	
용산구	재정비사업과	02-2199-7462	
성북구	도시정비신속추진단	02-2241-2783	

※ 본 고시는 향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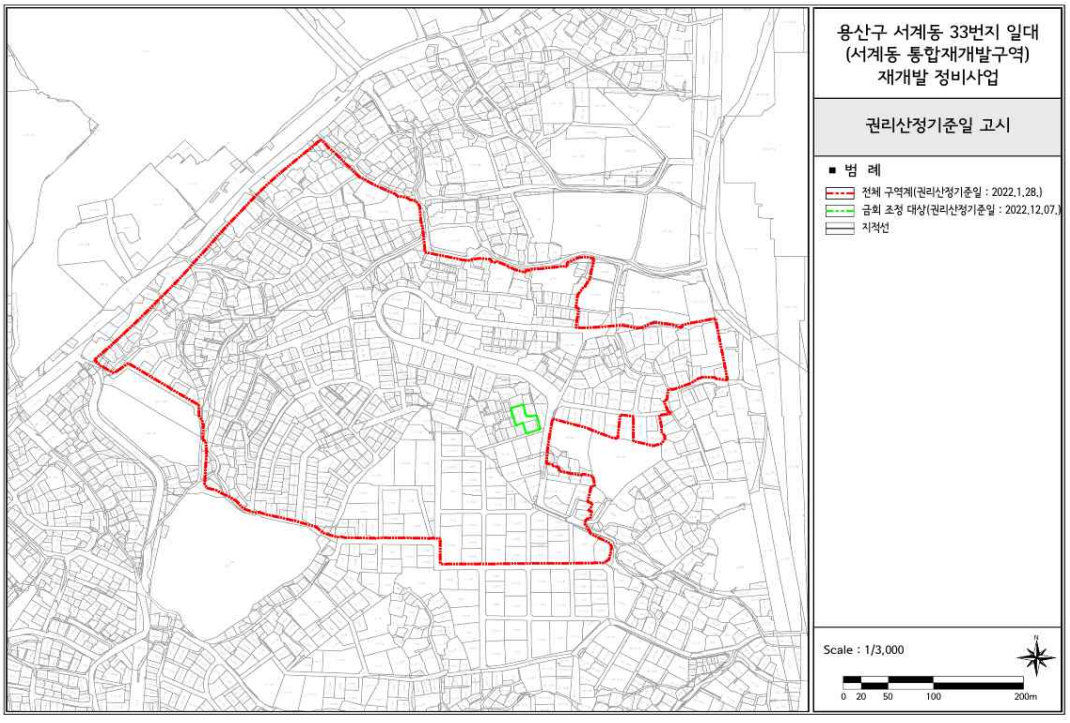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관계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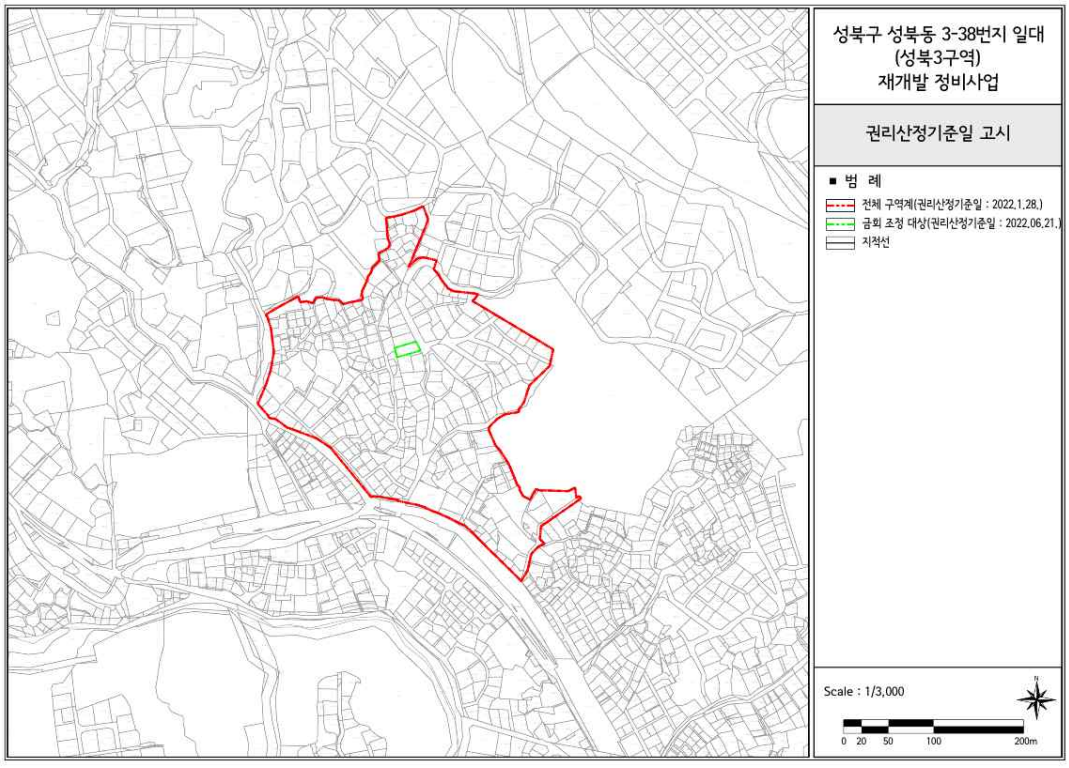
○ 구로구 가리봉동 133-56외 2필지 등 2개소



○ 용산구 서계동 33-233외 2필지



○ 성북구 성북동 145-52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15호

건축허가등 제한 지형도면 고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후보지(선정,미선정)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착공을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축허가 등 제한

가. 제한목적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공모 후보지(선정,미선정) 내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실시하고자 함

나. 제한근거 : 「건축법」 제18조 제2항

다. 제한기간 : (최초)제한공고(고시)일로부터 2년
(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

라. 제한구역

1) ’ 25년 제2차(4월) 주택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선정 및 미선정구역)

연번	자치구	위치(가칭)	제한면적(㎡)	금번 선정여부	비고(이력)
1	영등포구	신길동 3922일대	33,896.7	선정	-
2	용산구	청파동1가 97-35일대	49,210.8	선정	-
3	양천구	신정4동 922일대	84,186.6	선정	-
4	관악구	신림동 610-200일대	196,841.0	선정	-
5	관악구	신림동 119-1일대	16,899.0	선정	-
6	도봉구	쌍문동 26일대	39,499.8	선정	-
7	성북구	장위동 219-90일대	131,226.4	선정	-
8	성북구	장위동 224-12일대	110,641.8	선정	-
9	성북구	정릉동 710-81일대	24,137.6	선정	-
10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일대	28,691.9	미선정	-
11	동대문구	용두동 39일대	75,728.6	미선정	-
12	구로구	가리봉동 2-92일대	25,776.0	미선정	-
13	구로구	온수동 62일대	10,923.0	미선정	-
14	양천구	신월1동 229일대	44,332.4	미선정	-

※ 주택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던 미선정 구역이 이후 신속통합기획 또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① 미선정 당시의 구역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며, ② 아래 '마. 제한대상 및 제한 제외 대상'의 **선정구역**으로 변경

(既지정된 구역의 건축제한 기간에는 변동 없이 최초 고시일로부터 2년 유지됨)

2) 구역면적을 확대한 주택재개발 후보지

연번	자치구	위치	구역면적(㎡)	금회 확대면적(㎡)	비고(이력)
1	관악구	신림동 650 일대	106,845	439	'22년 신통재개발 2차(미선정) '24년 신통재개발 1차(선정)
2	도봉구	쌍문동 81 일대	64,316	4,419.5	'22년 신통재개발 2차(미선정) 24년 신통재개발 2차(선정)

▸ '22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2차) 건축허가 제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8호 (2023.1.17.)

▸ '24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1차) 건축허가 제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87호 (2024.2.14.)

▸ '24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2차) 건축허가 제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29호 (2024.5.1.)

마. 제한대상 및 제한제외 대상

선정구역

1) 제한대상

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나)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다)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

라)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마)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제한제외 대상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

다)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라)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단, 제한제외대상은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 :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허가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등의 행위

미선정구역

1) 제한대상

가)「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나)「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다)「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

라)「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마)「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단, 제한대상은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에 한함

2) 제한제외 대상

가)「건축법」제11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나)「건축법」제14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

다)「건축법」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라)「재난안전관리기본법」및「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단, 제한제외대상은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2. 지형도면 :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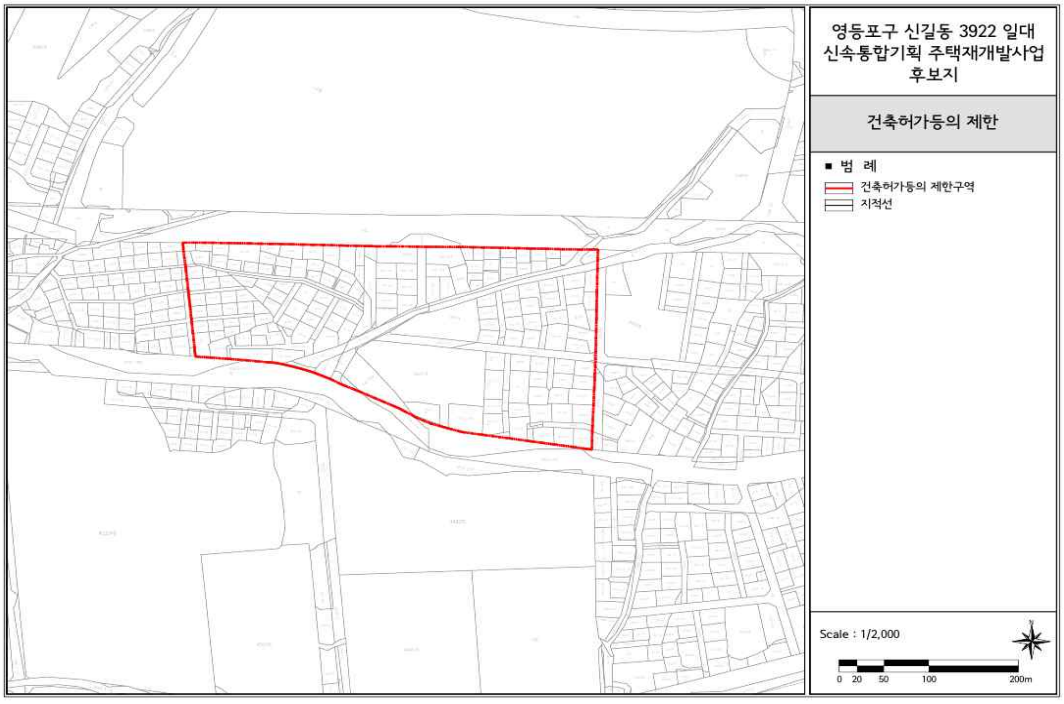
3. 안내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2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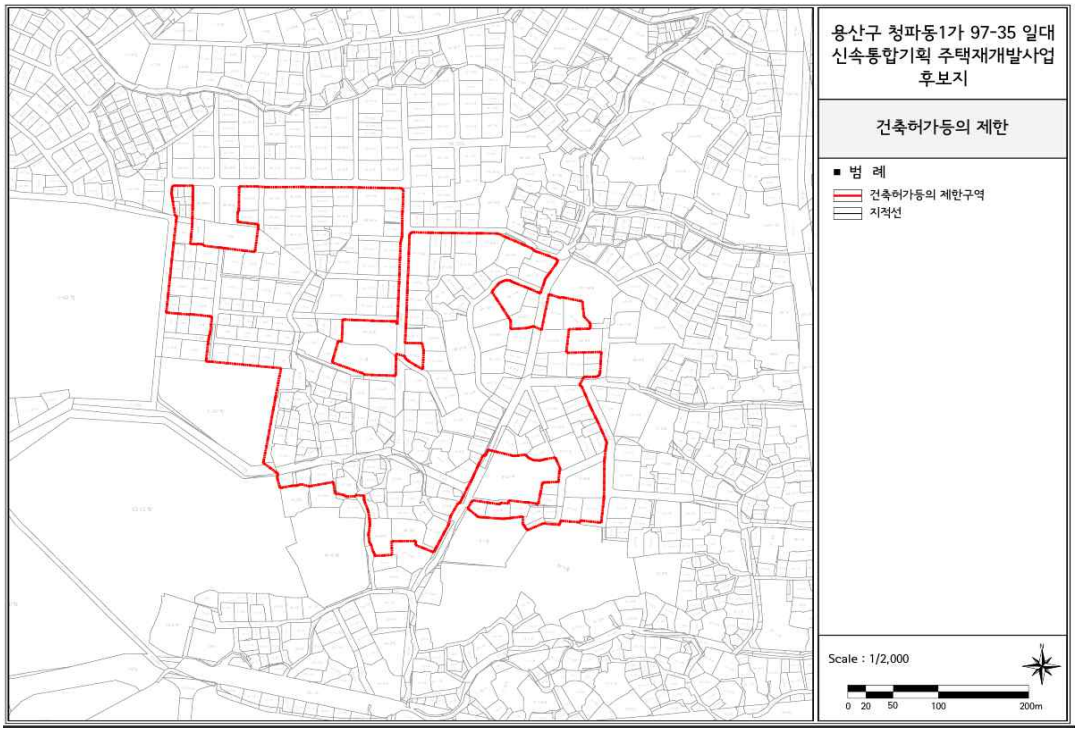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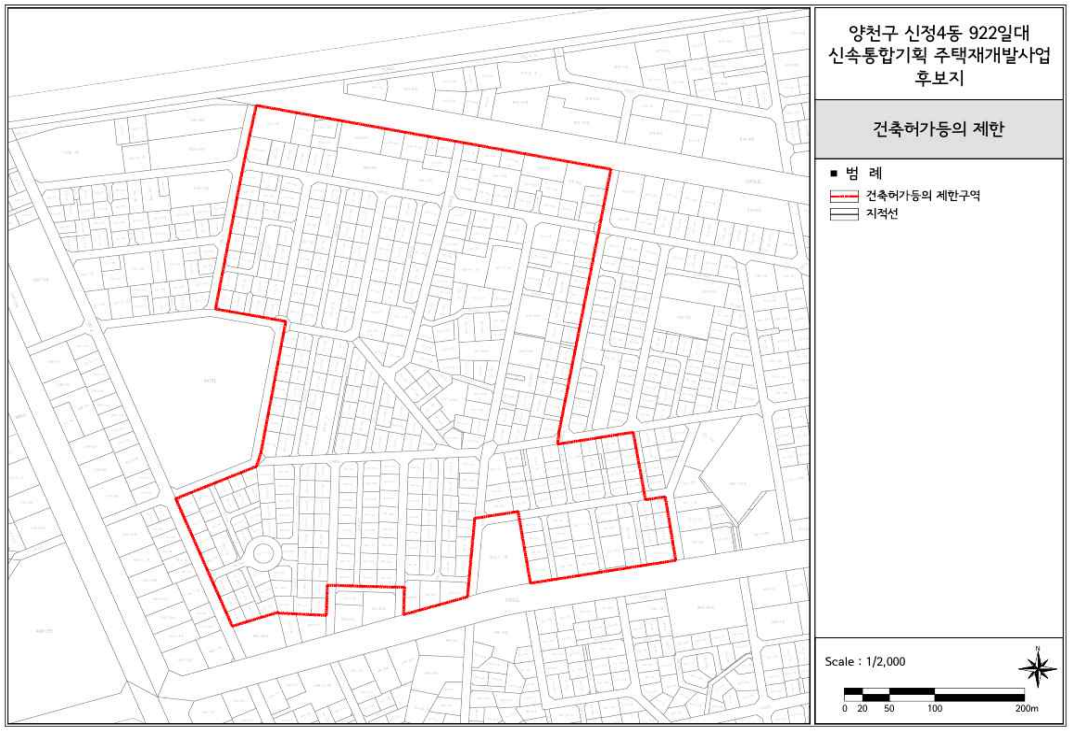
○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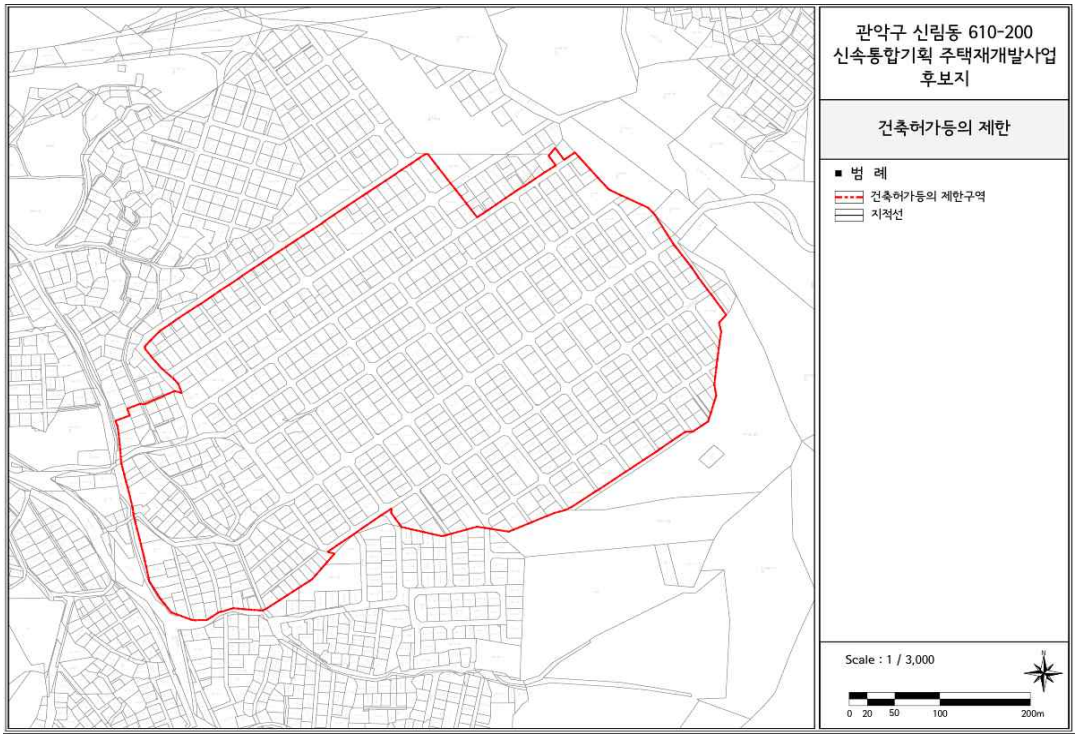
○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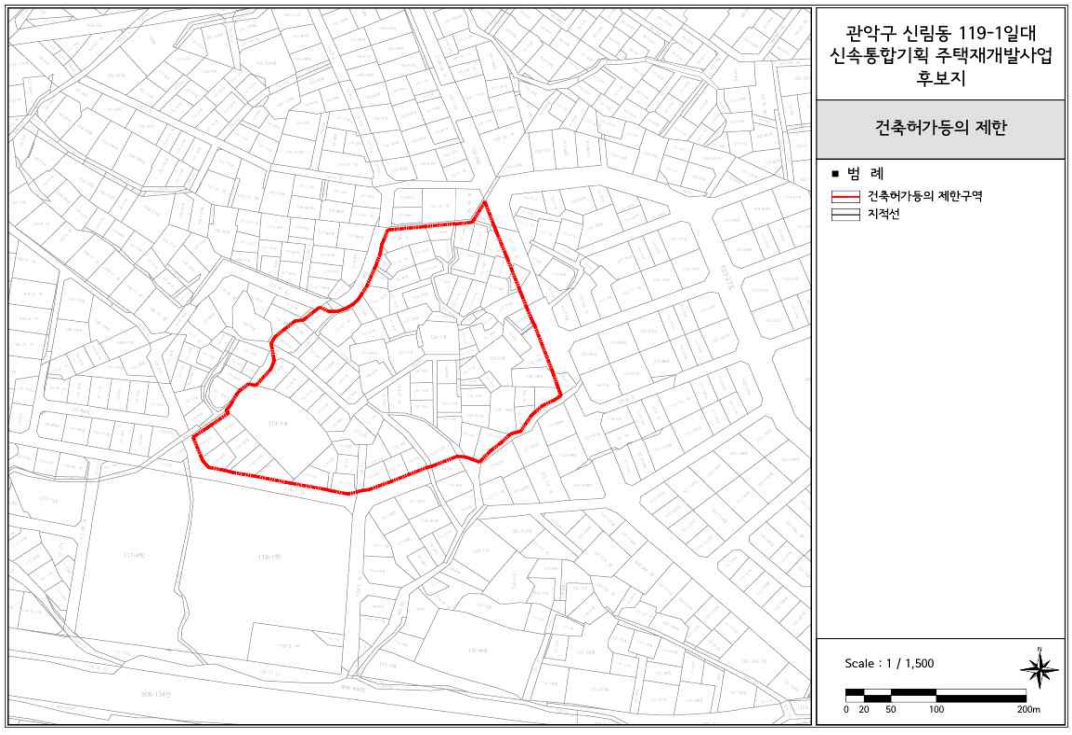
○ 양천구 신정4동 922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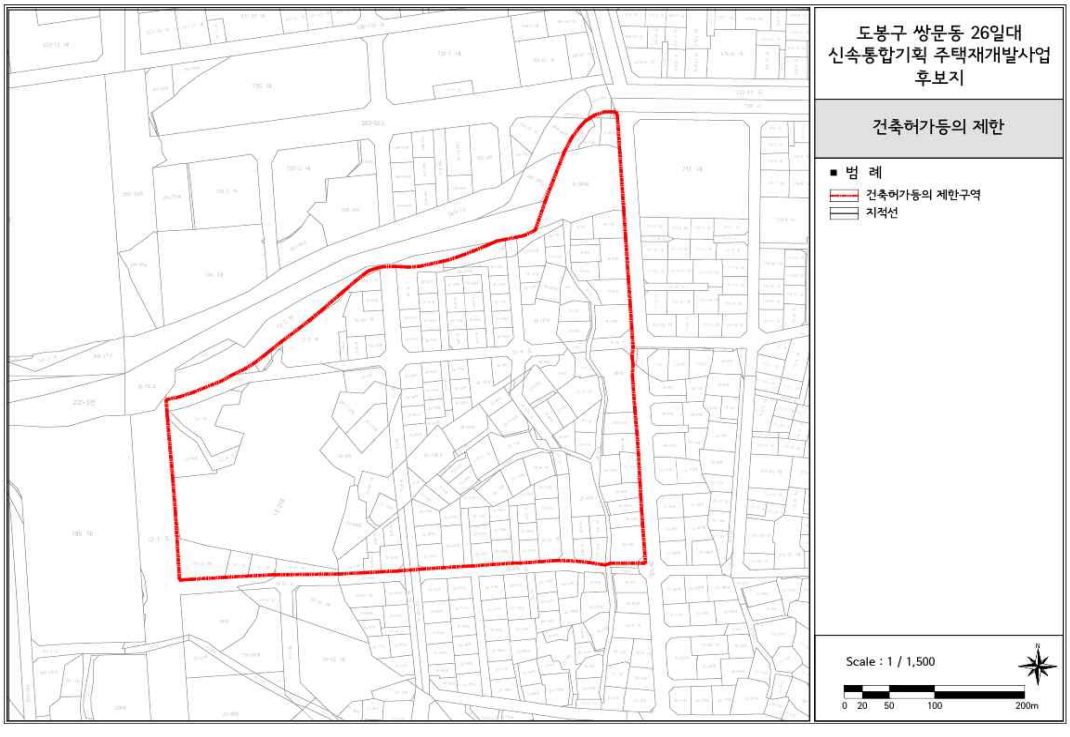
○ 관악구 신림동 610-200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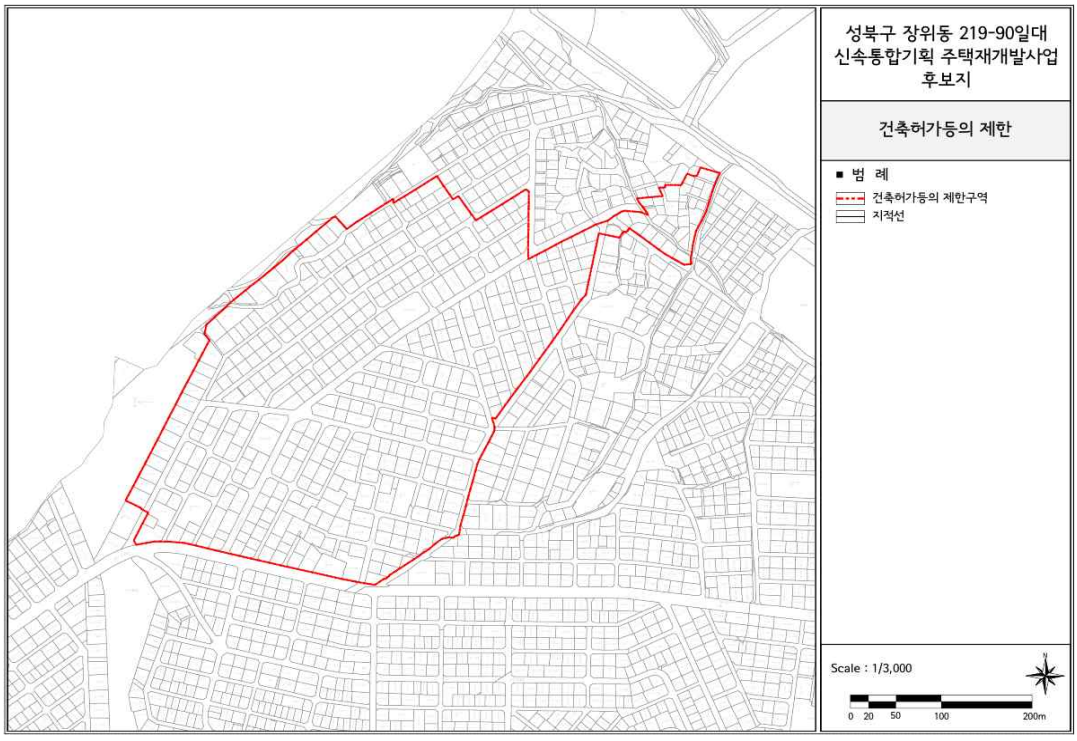
○ 관악구 신림동 119-1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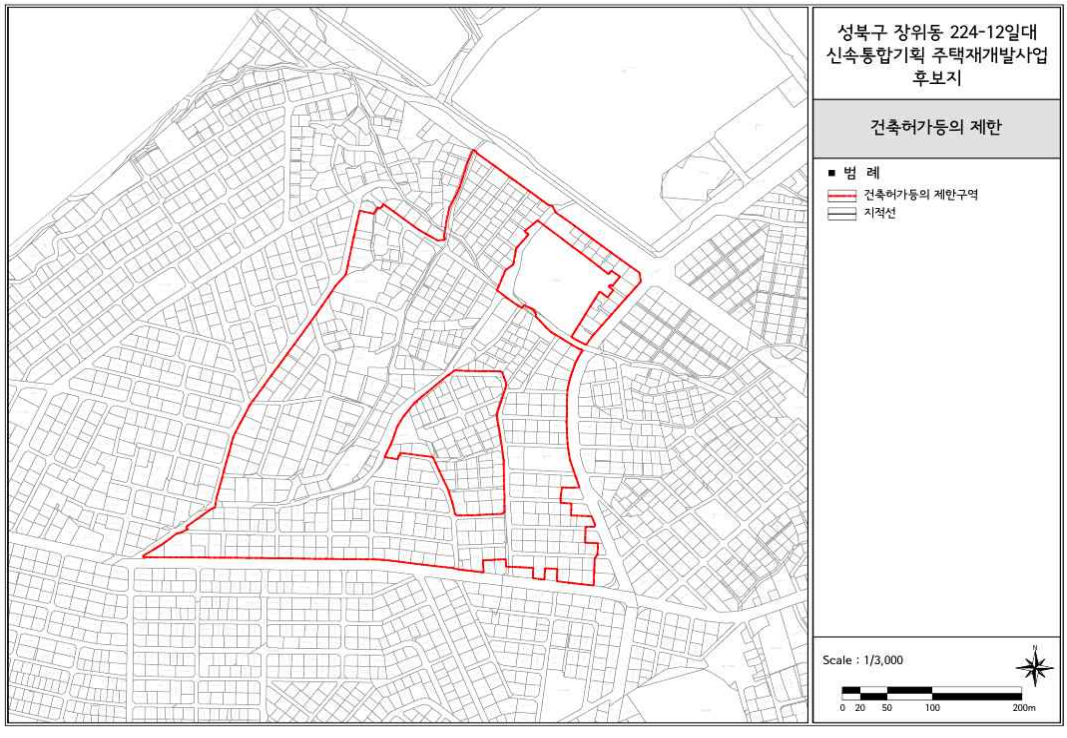
○ 도봉구 쌍문동 26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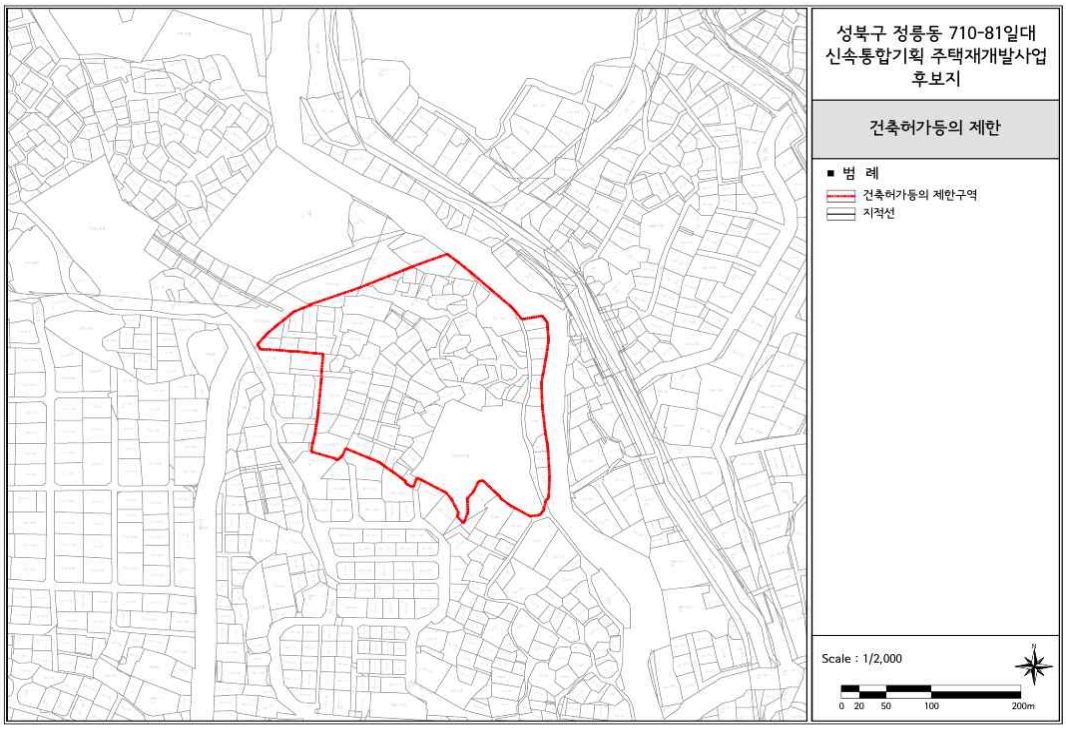
○ 성북구 장위동 219-90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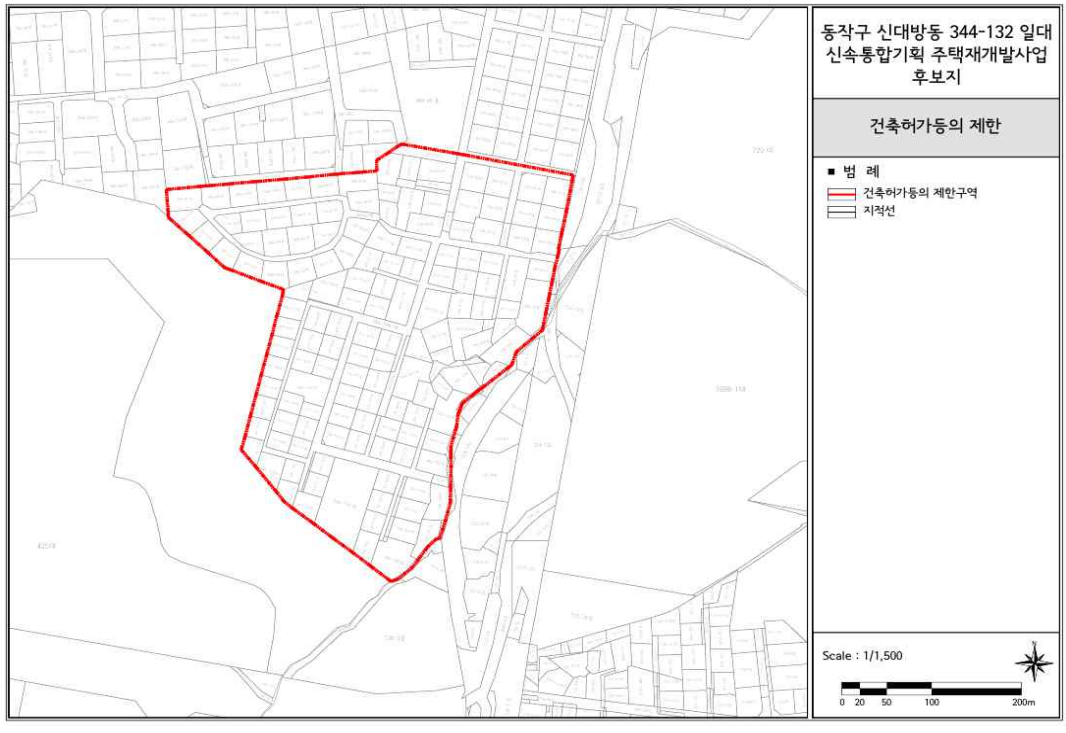
○ 성북구 장위동 224-12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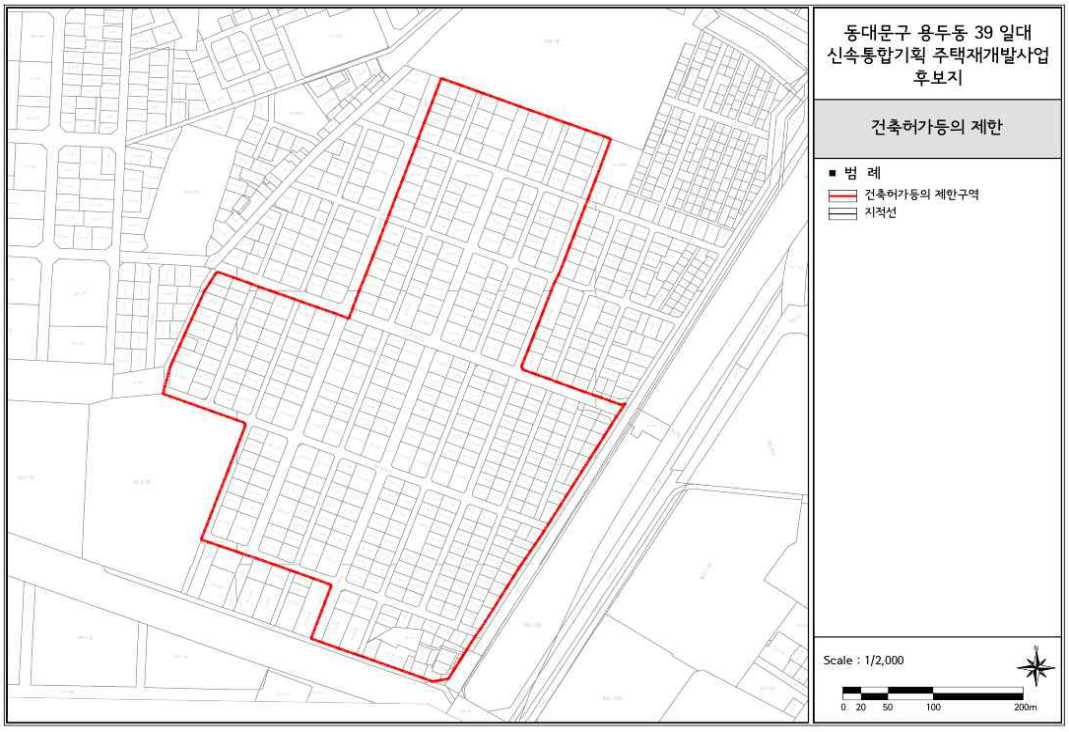
○ 성북구 정릉동 710-81 일대



○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 일대



○ 동대문구 용두동 39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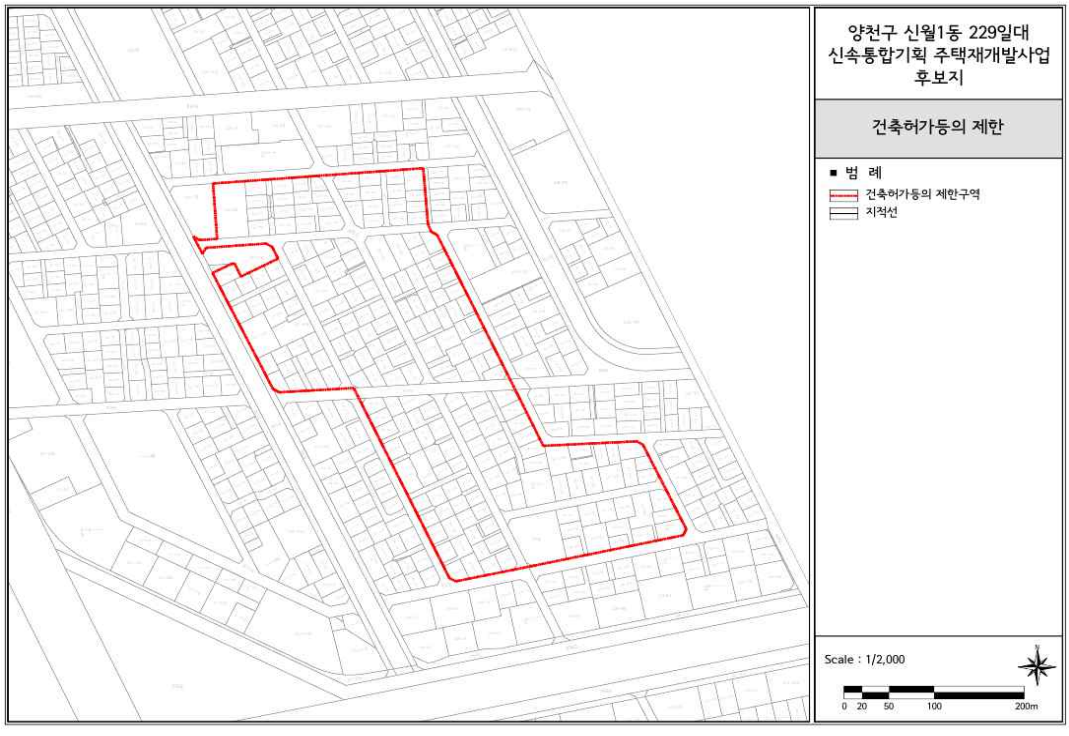
○ 구로구 가리봉동 2-92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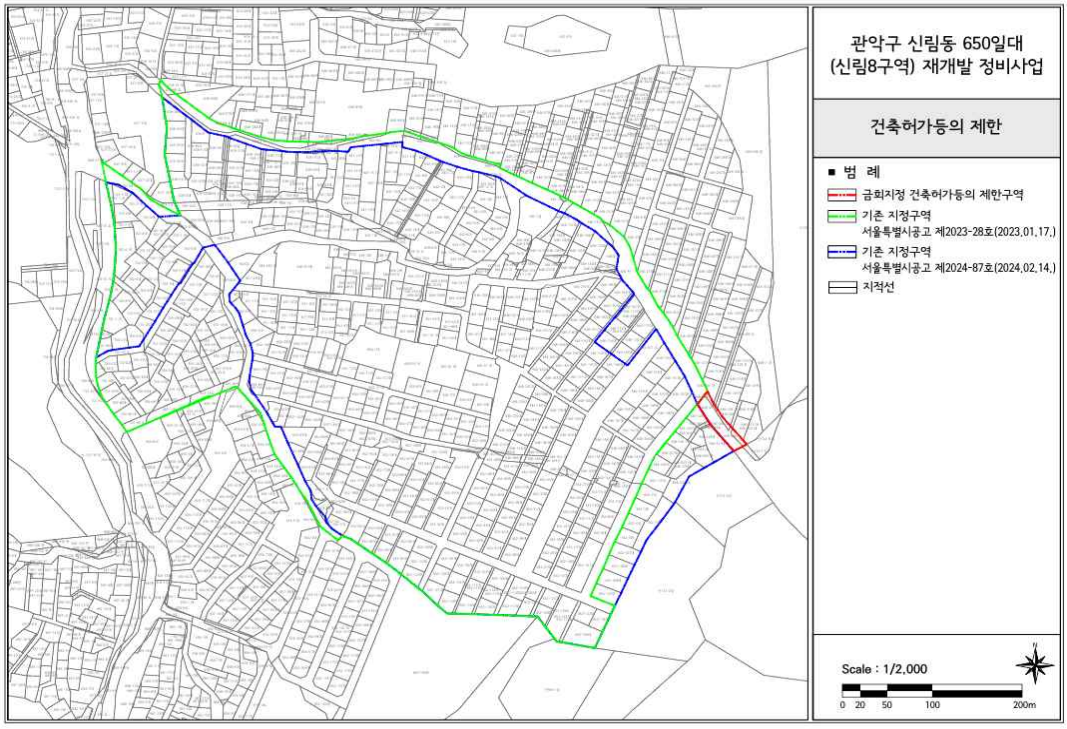
○ 구로구 온수동 62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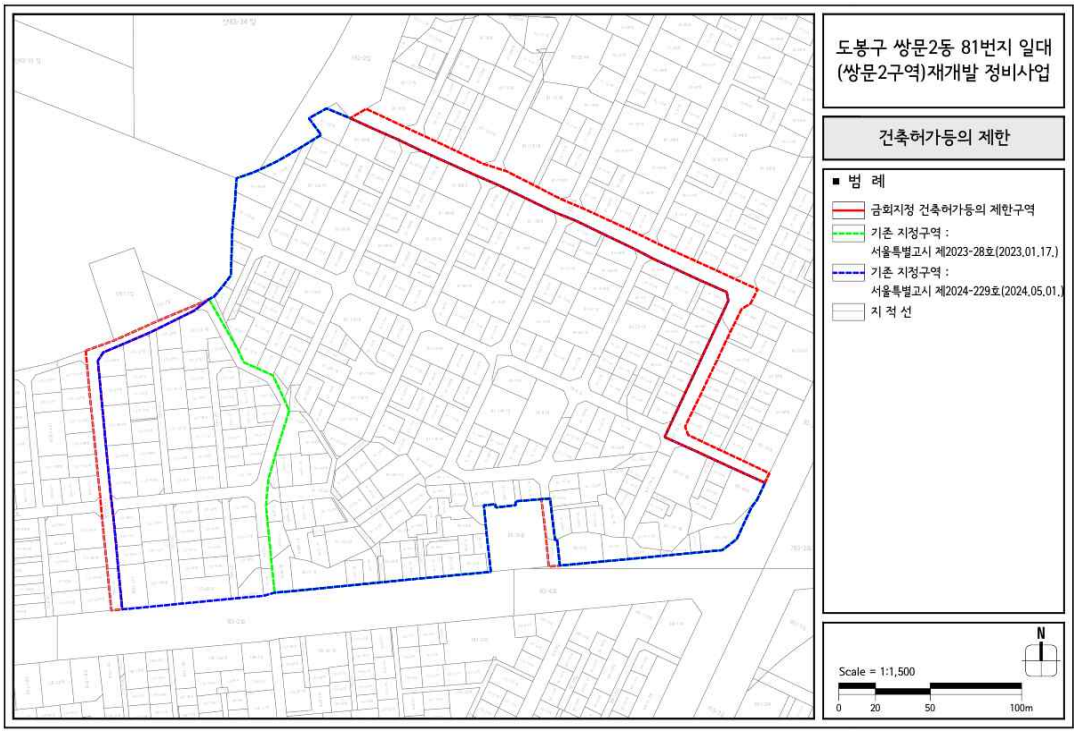
○ 양천구 신월1동 229 일대



○ 관악구 신림동 650 일대



○ 도봉구 쌍문동 81 일대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688호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예고 및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및 가산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서 및 재산압류 통지서를 체납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명: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예고 및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부동산)

2. 공고기간: 2025. 6. 12. ~ 2025. 6. 26.(15일간)

3. 공시송달내용
   1) 체납자: 라○규(820410-1******)
   2) 소재지번(사용본거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106 광진월드메르디앙 1차 제4층 제401호
   3) 처분원인: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지연(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4) 체납액: 금1,066,000(과태료 1,000,000원, 가산금 66,000원)
      * 기준일 2025. 4. 30.으로 실체 체납금액이 다를 수 있음.
   5) 압류재산: 부동산(집합건물지)
   6) 등기번호: 11403-0159-7445(재산압류통지서)
   7) 송달불능사유: 폐문 부재

4. 지방세외수입 체납으로 인한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며,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통지하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02-6981-669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689호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예고 및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및 가산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서 및 재산압류 통지서를 체납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명: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예고 및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부동산)

2. 공고기간: 2025. 6. 12. ~ 2025. 6. 26.(15일간)

3. 공시송달내용
   1) 체납자: 라○규(820410-1******)
   2) 소재지번(사용본거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106 광진월드메르디앙 1차 제4층 제401호
   3) 처분원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이행계획 미이행
   4) 체납액: 금2,132,000(과태료 2,000,000원, 가산금 132,000원)
      * 기준일 2025. 4. 30.으로 실체 체납금액이 다를 수 있음.
   5) 압류재산: 부동산(집합건물지)
   6) 등기번호: 11403-0159-7445(재산압류통지서)
   7) 송달불능사유: 폐문 부재

4. 지방세외수입 체납으로 인한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며,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통지하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02-6981-669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690호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예고 및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및 가산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서 및 재산압류 통지서를 체납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명: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예고 및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부동산)

2. 공고기간: 2025. 6. 12. ~ 2025. 6. 26.(15일간)

3. 공시송달내용
   1) 체납자: 이○용(650210-1******)
   2) 소재지번(사용본거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158-29
   3) 처분원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기한 초과(10일 이상 1개월 미만)
   4) 체납액: 금1,162,000(과태료 1,000,000원, 가산금 162,000원)
      * 기준일 2025. 4. 30.으로 실체 체납금액이 다를 수 있음.
   5) 압류재산: 부동산(토지)
   6) 등기번호: 11403-0159-7444(재산압류통지서)
   7) 송달불능사유: 폐문 부재

4. 지방세외수입 체납으로 인한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며,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통지하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02-6981-669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691호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예고 및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및 가산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서 및 재산압류 통지서를 체납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명: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예고 및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부동산)

2. 공고기간: 2025. 6. 12. ~ 2025. 6. 26.(15일간)

3. 공시송달내용
   1) 체납자: 이○용(650210-1******)
   2) 소재지번(사용본거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158-29
   3) 처분원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기한 초과(1개월 이상)
   4) 체납액: 금2,588,000(과태료 2,000,000원, 가산금 588,000원)
      * 기준일 2025. 4. 30.으로 실체 체납금액이 다를 수 있음.
   5) 압류재산: 부동산(토지)
   6) 등기번호: 11403-0159-7444(재산압류통지서)
   7) 송달불능사유: 폐문 부재

4. 지방세외수입 체납으로 인한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며,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통지하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02-6981-669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720호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위한 열람공고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39호(2018.9.5.) 사업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83호(2019.6.7.) 사업계획변경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15호(2020.3.25.) 사업계획변경 정정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09호(2020.7.14.) 사업계획변경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09호 중 정정(2020.7.17.),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 제2021-2호(2021.2.18.) 사업계획 변경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14호(2021.9.27.) 사업계획 변경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74호(2022.9.2.) 사업계획 변경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25호(2023.06.0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92호(2023.11.20.) 사업계획 변경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11호(2024.12.20.) 사업계획 변경승인 된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도시철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통지받을 대상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불능 등으로 미수령 한 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가.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오남읍 양지리·오남리. 별내동 일원
나. 규모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도시계획시설 면적 393,970.45㎡ - 차량기지 면적 197,400㎡ ※ 추가 수용필지 발생 - 인입선 연장 4.9㎞ - 비상대피선 및 장비유치선 0.608㎞ - 우회터널 신설 0.377㎞ 및 현업 사무실 4,805.5㎡ ※ 기존 도로 매입 717.8㎡	도시계획시설 면적 388,806.15㎡ - 차량기지 면적 197,400㎡ - 인입선 연장 4.9㎞ - 비상대피선 및 장비유치선 0.608㎞	· 금회제외 (우회터널 신설 및 기존도로 매입) · 위치 및 부지변경(현업사무실 및 옥외자재적치장 등)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류 : 도시철도사업
 나. 명칭 :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없음)
 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나. 성명 : 서울특별시장

4. 사업시행기간 : 사업계획승인일~2025년 12월 31일(변경없음)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가. 결정취지 :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철 도
  □ 도시·군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	비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기정	가	철도	일반철도 (인입선)	진접읍 금곡리 853-2	진접읍 금곡리 산50-12	-	4,768	71,416.15	변경없음
기정	나	철도	일반철도 (차량기지)	진접읍 금곡리 산50-12	진접읍 금곡리 산37-4	-	1,329	305,063	변경없음
기정	다	철도	도시철도 (유치선)	별내동 산207-25	별내동 산237-12	-	608	9,661	변경없음
기정	라	철도	도시철도 (관리소)	별내동 산239-5	별내동 산239-5	-	43	2,826.4	
변경	라	철도	도시철도 (관리소)	별내동 산255	별내동 산255	-	41	2,666.0	위치 및 규모 변경
폐지	마	철도	도시철도 (우회터널)	별내동 산237-12	별내동 산239-4	-	377	4,286.1	미 신설

□ 도시·군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가	일반철도 (인입선)	- 변경없음 ·면적 : 71,416.15㎡ ·연장 : 4,768m	· 변경없음
나	일반철도 (차량기지)	- 변경없음 ·면적 : 305,063㎡ ·연장 : 1,329m	· 변경없음
다	도시철도 (유치선)	- 변경없음 ·면적 : 9,661㎡ ·연장 : 608m	· 변경없음
라	도시철도 (관리소)	- 변경 ·면적 : 2,826.4㎡ → 2,666.0㎡ ·연장 : 43m → 41m	· 우회터널 미 신설에 따른 현업사무실(관리소) 위치 및 부지 변경
마	도시철도 (우회터널)	- 폐지 ·면적 : 4,286.1㎡ → 0㎡ ·연장 : 377m → 0㎡	· 우회터널 미 신설

나) 도 로

□ 도시·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268	중로2-14	별내동 산235-53	일반도로		건고514호 (06.12.7)	
변경	소로	3	1	6	국지도로	268	중로2-14	별내동 산235-53	일반도로			기존 녹지부 복원

□ 도시·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1	소로3-1	- 변경 · 연장 : 268m · 면적 : 1,647.1㎡ → 1,619.0㎡ 감) 28.1㎡	· 현업사무실(관리소) 진입로 원상복구에 따른 면적 변경

2) 공간시설

□ 도시·군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1	녹지	경관녹지	별내동 805-3	1,827.4	증)28.1	1,855.5	국고5호 (15.01.12)	

□ 도시·군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1	경관녹지	-변경 면적 : 1,827.4㎡ → 1,855.5㎡ 증) 28.1㎡	· 현업사무실(관리소) 진입로 원상복구에 따른 면적 변경

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참조)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관계인 주소·성명
   : 별첨조서 참조
◦ 변경사유
   -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우회터널 미신설 및 현업사무실 위치 변경 등

7.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20일간

8. 열람도서 : 토지조서, 종·평면도, 용지도 등

9.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02-2133-2238)

10. 기타사항 :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있음)

○ 사 업 명 :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

○ 소 재 지 : 경기도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지상권	비고
						수용	사용 (지하)	사용 (지상)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주 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m~()m까지	
본선(변경없음)															
1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산207-25	임	566,975	-	1,645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716 목련타운아파트 102-506	김유년	지상권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해수면(+100) 152.18m ~ 126.82m	터널
									경기도 하남시 춘궁로 37번길 49-20	김기정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120길 52-5, 101동 701호	김기수	구분지상권		국토교통부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0, 102동 3002호	정도혁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산207-25	임	566,975	-	1,645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716 목련타운아파트 102-506	김유년	지상권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해수면(+100) 152.18m ~ 126.82m	터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95, 425동 1601호(이매동,아름마을)	김기정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120길 52-5, 101동 701호	김기수	구분지상권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58,401호 (송파동,잠실아르누보팰리스)	정도혁					
2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산237-1	임	911,482	-	7,294		서울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200-16, 303호 (한남동,힐탑트레져2동)	김기수	지상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해수면(+100) 143.72m ~ 121.72m	터널
											구분지상권		국토교통부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산237-1	임	911,316	-	7,294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7나길 30 (이태원동)	김기수	지상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해수면(+100) 143.72m ~ 121.72m	터널
											구분지상권		국토교통부		
3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산237-12	임	58,384	-	722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57번길 7, 401호(별내동)	안종윤	구분지상권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국토교통부	해수면(+100) 143.24m ~ 121.24m	터널, 경사갱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지상권	비고
						수용	사용 (지하)	사용 (지상)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주 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m~()m까지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산237-12	임	58,384	-	72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62, 305동 804호(공릉동, 공릉해링턴플레이스)	안선무	구분지상권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국토교통부	해수면(+100) 143.24m ~ 121.24m	터널, 경사갱
									경기도 남양주시 송산로307번길 16, 5313동 404호 (별내동, 별내하우스토리아파트)	안선아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1로 6, 101동 1302호(별내동, 힐스테이트별내역)	안정아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469번길 60, 503동 401호 (반정동,반정아이파트캐슬5단지)	안태주					
계				기정	1,536,841	-	9,661								
				변경	1,536,675	-	9,661								
관리소(추가:위치이동)							-								
1	기정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산255	임	33,591.0	2,666.0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117-64	죽산안씨 내승공파 종중	구분지상권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관리소
2	기정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산255-11	임	2,606.0	-	-	990.0	국토교통부	국					관리소
계				기정	-	-	-								
				변경	36,197.0	2,666.0	-	990.0							
관리소(제외:위치이동)															
1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2189	답	694.0	602.2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3(별내동)	이정희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2189	답	694.0	0.0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3(별내동)	이정희					위치이동
2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산238-12	임	2,370.0	122.6	-		건설교통부	국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지상권		비고
						수용	사용(지하)	사용(지상)	주소	성명	권리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m~()m까지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산238-12	임	2,370.0	0.0	-		건설교통부	국							위치이동
3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산239-5	임	16,513.0	1,803.6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6(별내동)	이효근	구분지상권	국토교통부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 33길 80(상봉동)	이효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63, 3702동 303호 (별내동,쌍용예가아파트)	이도연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71(별내동)	황창석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3(별내동)	이정희							
									경기도 남양주시 송산로307번길 16, 5313동 602호(별내동,별내하우스토리아파트)	박진혜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6(별내동)	이정모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산239-5	임	16,513.0	0.0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6(별내동)	이효근	구분지상권	국토교통부	국				위치이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 33길 80(상봉동)	이효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63, 3702동 303호 (별내동,쌍용예가아파트)	이도연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71(별내동)	황창석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3(별내동)	이정희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청군로 2993	정환희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6(별내동)	이정모							
4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산240	임	298.0	298.0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3 (별내동)	이정희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지상권	비고
						수용	사용 (지하)	사용 (지상)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주 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m~()m까지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산240	임	298.0	0.0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3 (별내동)	이정희					위치이동
계				기정	19,875.0	2,826.4	-								
				변경	19,875.0	0.0	-								
우회터널(제외:미신설)															
1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산237-12	임	58,384.0	-	367.6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57번길 7, 401호(별내동)	안종윤	지상권, 구분지상권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국토교통부	해수면(+100) 145.05m ~ 156.16m	터널, 우회터널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산237-12	임	58,384.0	-	0.0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62, 305동 804호(공릉동, 공릉해링턴플레이스)	안선무	지상권, 구분지상권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국토교통부	해수면(+100) 145.05m ~ 156.16m	터널, 우회터널
									경기도 남양주시 송산로307번길 16, 5313동 404호 (별내동, 별내하우스토리아파트)	안선아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1로 6, 101동 1302호(별내동, 힐스테이트별내역)	안정아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469번길 60, 503동 401호 (반정동,반정아이파트캐슬5단지)	안태주					
2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산237-85	임	3,306.0	-	261.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로 15, 5703동104호(창곡동,힐스테이트이례)	김재현	구분지상권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국토교통부	해수면(+100) 145.09m ~ 152.95m	우회터널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18, 1동 1803호(도곡동,우성캐릭터199.)	김범준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산237-85	임	3,306.0	-	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로 15, 5703동104호(창곡동,힐스테이트이례)	김재현	구분지상권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국토교통부	해수면(+100) 145.09m ~ 152.95m	우회터널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18, 1동 1803호(도곡동,우성캐릭터199.)	김범준					
3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산239	임	15,235.0	1,824.6	809.9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3 (별내동)	이정희	구분지상권	국토교통부	국	해수면(+100) 155.40m ~ 170.09m	우회터널. 갱구부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지상권	비고
						수용	사용(지하)	사용(지상)	주소	성명	권리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m~○m)까지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산239	임	15,235.0	0.0	0.0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3 (별내동)	이정희	구분지상권	국토교통부	국	해수면(+100) 155.40m ~ 170.09m	우회터널, 갱구부
4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산239-3	임	7,636.0	139.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107, 112동1501호(장안동,장안현대홈타운)	이정희					우회터널, 갱구부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산239-3	임	7,636.0	0.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107, 112동1501호(장안동,장안현대홈타운)	이정희					우회터널, 갱구부
5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산239-4	임	807.0	412.7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3(별내동)	이정희	지역권				우회터널, 갱구부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6(별내동)	이정모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산239-4	임	807.0	0.0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3(별내동)	이정희	지역권				우회터널, 갱구부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6(별내동)	이정모					
6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산239-5	임	16,513.0	-	469.9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6(별내동)	이효그	구분지상권	국토교통부	국	해수면(+100) 150.78m ~ 160.78m	우회터널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33길 80 (상봉동)	이효그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63, 3702동 303호 (별내동,쌍용예가아파트)	이도연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71(별내동)	황창석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3(별내동)	이정희					
									경기도 남양주시 송산로307번길 16, 5313동 602호 (별내동,별내하우스토리아파트)	박진혜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6(별내동)	이정모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산239-5	임	16,513.0	-	0.0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6(별내동)	이효그	구분지상권	국토교통부	국	해수면(+100)	우회터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지상권	비고
						수용	사용 (지하)	사용 (지상)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주 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m~()m까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33길 80 (상봉동)	이효근				150.78m ~ 160.78m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63, 3702동 303호 (별내동,쌍용예가아파트)	이도연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71(별내동)	황창석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3(별내동)	이정희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청군로 2993	정환희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6(별내동)	이정모					
계				기정	101,881.0	2,377.2	1,908.9								
				변경	101,881.0	0.0	0.0								
기존 도로(제외)															
1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805-3	공	1,855.5	28.1	-		남양주시	공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805-3	공	1,855.5	0.0	-		남양주시	공					
2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산238-47	임	446.0	144.2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2로6번길 28-5, 202호(별내동)	조정제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산238-47	임	446.0	0.0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2로6번길 28-5, 202호(별내동)	조정제					
3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산238-48	임	150.0	150.0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74(별내동)	조정제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산238-48	임	150.0	0.0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74(별내동)	조정제					
4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산238-53	임	258.0	66.2	-		경기도 남양주시 식송1로 254-38(별내동)	안원주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6(별내동)	이정모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지상권		비고
						수용	사용(지하)	사용(지상)	권리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 )m~( )m까지		
5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산238-53	임	258.0	0.0	-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산239-4	임	807.0	9.9	-		지역권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3(별내동)	이정희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6(별내동)	이정모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산239-4	임	807.0	0.0	-		지역권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3(별내동)	이정희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6(별내동)	이정모			
6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산239-5	임	16,513.0	50.2	-		구분지상권	국토교통부	국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산239-5	임	16,513.0	0.0	-		구분지상권	국토교통부	국			

소유자			
주소	성명		
경기도 남양주시 삼송1로 254-38(별내동)	안원주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6(별내동)	이정모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3(별내동)	이정희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6(별내동)	이정모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3(별내동)	이정희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6(별내동)	이정모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6(별내동)	이효그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33길 80 (상봉동)	이효그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63, 3702동 303호(별내동,쌍용예가아파트)	이도연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71(별내동)	황창석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3(별내동)	이정희		
경기도 남양주시 송산로307번길 16, 5313동 602호(별내동,별내하우스토리아파트)	박진혜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6(별내동)	이정모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6(별내동)	이효그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33길 80 (상봉동)	이효그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63, 3702동 303호 (별내동,쌍용예가아파트)	이도연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지상권	비고
						수용	사용 (지하)	사용 (지상)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주 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m~()m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71(별내동)	황창석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3(별내동)	이정희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청군로 2993	정환희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6(별내동)	이정모					
7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2189-4	도	300.0	111.1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3(별내동)	이정희	지역권				
									경기도 남양주시 식송1로 254-38(별내동)	안원주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2189-4	도	300.0	0.0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3(별내동)	이정희	지역권				
									경기도 남양주시 식송1로 254-38(별내동)	안원주					
8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2189-6	임	220.0	158.1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3(별내동)	이정희	지역권				
									경기도 남양주시 식송1로 254-38(별내동)	안원주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2189-6	임	220.0	0.0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3(별내동)	이정희	지역권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6(별내동)	이정모					
계				기정	20,549.5	717.8	-								
				변경	20,549.5	0.0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783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5.6.12.~2025.6.26.
5. 의견제출 안내 : 위 공고대상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가. 의견제출기간 : 2025.6.12.~2025.7.11.
 나.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서식은 별첨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참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다. 의견제출처 및 의견제출방법
 (의견제출 첩수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4층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 과태료과징팀)
  - 전화번호 : 02-2133-4621~4622
 (의견제출 방법)
  - 팩스제출 : 02-2133-1446 / 이메일 제출 : green5@seoul.go.kr
  - 인터넷 제출 : https://oksign.seoul.go.kr
6. 유의사항
 가. 사전의견제출기한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에서 사전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서에 고지된 과태료 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에서 100분에 20이 감경된 금액입니다.
 다.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7. 과태료 자진 납부

- 납부기한 : 2025.7.11.
- 납부방법 : 공고대상자는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등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납부: https://etax.seoul.go.kr.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가능)

※ 의견제출, 납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단속반(☎02-2133-4621~4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주요 의견제출대상 및 의견제출서 작성서식 1부.

연번	과태료	납세자주민번호	발송납세자명	차량번호	주소		본세금액	발송일자	납부기한	단속일자	단속장소
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920623-1******	김**	52*0231	서울특별시	용산구	160,000	2025-04-04	2025-05-03	2025-04-03 08:38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700501-1******	성**	10*5217	경기도	안양시	160,000	2025-04-04	2025-05-03	2025-04-03 14:02	백범광장(소월로3길)
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710704-1******	이**	04*1701	서울특별시	동작구	80,000	2025-04-14	2025-05-13	2025-04-13 14:39	경희궁(새문안로)
4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761127-1******	한**	95*9824	충청남도	천안시	160,000	2025-04-14	2025-05-10	2025-04-10 13:19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5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671010-1******	김**	04*682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60,000	2025-04-14	2025-05-12	2025-04-12 14:25	흥인지문(종로, 진입)
6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660408-1******	김**	28*2922	경상북도	영주시	160,000	2025-04-14	2025-05-12	2025-04-12 17:21	경희궁(새문안로)
7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10111-5******	(주)하니스	89*7051	경기도	용인시	160,000	2025-04-15	2025-05-14	2025-04-14 13:59	경희궁(새문안로)
8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860307-1******	윤**	34*4327	경기도	수원시	80,000	2025-04-15	2025-05-15	2025-04-14 18:45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9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790601-1******	최**	16*9040	서울특별시	서초구	80,000	2025-04-17	2025-05-15	2025-04-15 09:28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10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671010-1******	김**	04*682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60,000	2025-04-25	2025-05-22	2025-04-22 14:25	흥인지문(종로, 진입)
1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620315-1******	오**	경기*1로6401	경기도	시흥시	80,000	2025-04-25	2025-05-25	2025-04-20 11:29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1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671010-1******	김**	04*682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60,000	2025-04-25	2025-05-19	2025-04-19 17:23	흥인지문(종로, 진입)
1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330725-1******	이******(****)	28*1042	인천광역시	서구	160,000	2025-04-25	2025-05-18	2025-04-18 15:43	경희궁(새문안로)
14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690325-1******	박**	89*3994	경기도	남양주시	160,000	2025-04-25	2025-05-18	2025-04-18 07:28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15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10111-1******	(주)하나*앤엘	경기*0거1582	경기도	수원시	160,000	2025-04-25	2025-05-24	2025-04-24 11:25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16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24-8*-*****	가교 *엔씨(주)	10*2973	경기도	화성시	160,000	2025-04-30	2025-05-29	2025-04-29 06:48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17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124-8*-*****	가교 *엔씨(주)	10*2973	경기도	화성시	160,000	2025-04-30	2025-05-29	2025-04-25 16:53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18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360601-1******	손**	서울*2구36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80,000	2025-05-02	2025-05-31	2025-05-01 10:50	윤동주문학관(창의문로)
19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530212-1******	최**	92*5760	경기도	고양시	80,000	2025-05-02	2025-05-31	2025-04-30 13:28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주요 의견제출 대상 및 의견제출서 작성서식

□ 주요 의견제출 대상(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준거)

구 분	증빙서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취한 차량	인증시험 확인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중인 자동차)	긴급자동차 지정증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補綴用)·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관련법령에 따른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국가유공자사용자동차 표지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구 분	증빙서류
그 밖에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하는 자동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2019.10.31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자동차(2020.6.30일까지 적용 보류) ※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자동차’ 라 함은 각 지자체의 저공해 사업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 완료를 통보받은 차량을 의미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이 인증 · 보급되지 않은 자동차와 저감장치 장착불가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동차는 2020.12.31.일까지 적용보류(단,「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보류하지 않는다.) ※ ‘저감장치 장착불가확인서’ 이라 함은 저감장치 제작사가 발급하는 확인서를 의미함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 의견제출서 작성서식(예시)

의 견 제 출 서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20 년 월 일 시 분	
제출의견 (단속된 사안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내용을 기재)		
※의견제출방법 1. 팩스 2133-1446 2. 이메일 green5@seoul.go.kr 3. 인터넷 https://oksign.seoul.go.kr		
제 출 자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휴대전화번호) : ○ 제출일 :		

서울특별시장 귀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제외)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동의함 □ 동의안함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784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지방세기본법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같은 법 제33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5.6.12.~2025.6.26
5. 공고내용
   가. 이의제기기간 :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까지
   나. 이의제기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서식은 별첨 '이의제기 작성예시' 참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이의제기 접수처 및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접수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4층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 과태료과징팀)
   - 전화번호 : 02-2133-4621~4622
   (이의제기 방법)
   - 팩스 제출 : 02-2133-1446
   - 이메일 제출 : green5@seoul.go.kr
   - 인터넷 제출 : https://oksign.seoul.go.kr
6.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되며, 아울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재산에 대한 압류 등)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납부기한 : 2025.7.31
  - 공고대상자는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등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납부 : https://etax.seoul.go.kr.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가능)

  ※ 납부기한, 체납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단속반(☎02-2133-4621~4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주요 이의제기 대상 및 이의제기 작성서식 1부.

순번	상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	단속장소
1	부과	680610-*******	함*옥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4	수시분	000245	01*4449	200,000	2025-04-08	2025-05-31	2024-12-14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2	부과	660722-*******	김*철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4	수시분	000246	서울*8바4644	100,000	2025-04-08	2025-05-31	2024-12-14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3	부과	110111-*******	(*)수*사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4	수시분	000247	서울*1더1215	200,000	2025-04-08	2025-05-31	2024-12-15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4	부과	110111-*******	대*메디칼-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4	수시분	000248	80*9782	200,000	2025-04-08	2025-05-31	2024-12-15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5	부과	781226-*******	박*화	경기도	성남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4	수시분	000251	86*4962	200,000	2025-04-08	2025-05-31	2024-12-21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6	부과	110111-*******	(*)수*사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4	수시분	000253	서울*1더1215	200,000	2025-04-08	2025-05-31	2024-12-22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7	부과	671010-*******	김*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4	수시분	000259	04*6820	200,000	2025-04-08	2025-05-31	2025-01-02	흥인지문(종로, 진입)
8	부과	670820-*******	김*형	경기도	파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4	수시분	000263	81*1012	200,000	2025-04-08	2025-05-31	2025-02-04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9	부과	570830-*******	김*기	충청남도	당진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4	수시분	000240	88*0221	100,000	2025-04-08	2025-05-31	2024-12-07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10	부과	620702-*******	이*영	부산광역시	강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4	수시분	000241	11*2092	100,000	2025-04-08	2025-05-31	2024-12-09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11	부과	110111-*******	(*)예일*엔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4	수시분	000243	83*6331	200,000	2025-04-08	2025-05-31	2024-12-10	흥인지문(청계천로, 진입)
12	부과	651028-*******	변*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4	수시분	000249	04*1776	100,000	2025-04-08	2025-05-31	2024-12-15	백범광장(소월로3길)
13	부과	110111-*******	(*)한국청*년교육 방송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4	수시분	000250	56*8831	200,000	2025-04-08	2025-05-31	2024-12-20	남산2호터널 북측(녹사평대로58길)

순번	상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	단속장소
14	부과	110111-*******	대*메디칼-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4	수시분	000252	80*9782	200,000	2025-04-08	2025-05-31	2024-12-21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15	부과	110111-*******	(*)포커*이엔티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4	수시분	000256	70*2859	200,000	2025-04-08	2025-05-31	2024-12-31	남산2호터널 북측(녹사평대로58길)
16	부과	800315-*******	이*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4	수시분	000257	서울*8사7194	100,000	2025-04-08	2025-05-31	2025-01-01	회현역(퇴계로)
17	부과	110111-*******	(*)예일*엔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4	수시분	000239	83*6331	200,000	2025-04-08	2025-05-31	2024-12-05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18	부과	620702-*******	이*영	부산광역시	강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4	수시분	000242	11*2092	100,000	2025-04-08	2025-05-31	2024-12-10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19	부과	691012-*******	김*	경기도	파주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4	수시분	000244	22*0266	100,000	2025-04-08	2025-05-31	2024-12-12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퇴계로, 진입)
20	부과	301811-7437	한*산업(주)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4	수시분	000254	93*6047	100,000	2025-04-08	2025-05-31	2024-12-25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안내

□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행정청(서울시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서는 당사자 주소지의 관할법원으로 이송되며, 관련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에 의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습니다.

○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당사자에게 그 처리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 제출서류

○ 이의제기 신청서(아래붙임), 과태료고지서, 이의제기 관련 적법·타당성을 증명할만한 자료

□ 제출방법

○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팩스로 접수하신 민원인께서는 반드시 접수여부를 유선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주소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동 4층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과태료과징팀)
- 팩스번호 : 02-2133-1446, 전화번호 : 02-2133-4621~2
- Email 주소 : green5@seoul.go.kr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table>
<tr><td rowspan="2">신 청 인</td><td>성 명
※ 법인일 경우 법인명 또는 사업자명</td><td></td><td>주 민 번 호
※ 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2">(Email)</td><td>연락처</td><td></td></tr>
<tr><td rowspan="2">위반차량</td><td>차량번호</td><td></td><td>차 종</td><td colspan="2"></td></tr>
<tr><td>소 유 자</td><td colspan="4">(신청인과의 관계)</td></tr>
<tr><td rowspan="3">과 태 료
처 분</td><td>처분근거</td><td colspan="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시행령 제48조,시행규칙 제7조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458호(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td></tr>
<tr><td>납부번호
(부과일자)</td><td>(년 월 일)</td><td>과태료 금액</td><td colspan="2"></td></tr>
<tr><td>위반일시</td><td></td><td>처분사유</td><td colspan="2">서울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td></tr>
<tr><td>과 태 료
처 분
불복사유</td><td colspan="5">※ 내용이 많을 경우 요약 기재후 별지에 작성

※ 증빙자료 1. 과태료 부과 고지서
2. 이의제기에 대한 증빙자료 등</td></tr>
</table>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제외)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동의함 □ 동의안함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785호

녹색교통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를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과태료 고지서 교부(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기간 : 2025.6.12. ~ 2025.6.26.
5. 공고내용
   가.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에서 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대상자는 납부기한내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 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되며, 아울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납부안내
   가. 납부기한 : 2025.6.30.
   나. 납부방법 :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단속반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등으로 납부
   다. 인터넷 납부 : https://etax.seoul.go.kr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가능)
7. 공고 확인 및 안내 :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단속반(☎02-2133-4621~4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순번	상태	수취인 주민번호	수취인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	단속장소
1	체납	601022-******	민*홍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02	80*4509	200,000	2025-01-08	2025-05-31	2024-09-01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2	체납	770928-******	배*주	경기도	안산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03	24*7696	100,000	2025-01-08	2025-05-31	2024-09-02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3	체납	601022-******	민*홍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04	80*4509	200,000	2025-01-08	2025-05-31	2024-09-02	회현역(퇴계로)
4	체납	761127-******	한*희	충청남도	천안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05	95*9824	200,000	2025-01-08	2025-05-31	2024-09-04	숭례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5	체납	110111-******	(*)우주*크놀러지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06	37*9919	200,000	2025-01-08	2025-05-31	2024-09-04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6	체납	800315-******	이*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10	서울*8사7194	100,000	2025-01-08	2025-05-31	2024-09-09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7	체납	110111-******	(*)예일*엔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11	83*6331	100,000	2025-01-08	2025-05-31	2024-09-09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8	체납	110111-******	(*)한국*소년교육방송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15	56*8831	200,000	2025-01-08	2025-05-31	2024-09-13	삼청공원(삼청로)
9	체납	110111-******	(*)하*스	경기도	용인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16	89*7051	200,000	2025-01-08	2025-05-31	2024-09-13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10	체납	670808-******	김*하	울산광역시	남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18	04*1354	200,000	2025-01-08	2025-05-31	2024-09-16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11	체납	110111-******	주*인성*이엔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20	서울*2러3120	200,000	2025-01-08	2025-05-31	2024-09-17	남산2호터널 북측(녹사평대로58길)
12	체납	120111-******	주*회사우*마트	인천광역시	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21	91*6333	200,000	2025-01-08	2025-05-31	2024-09-20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13	체납	530505-******	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07	92*4270	200,000	2025-01-08	2025-05-31	2024-09-04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순번	상태	수취인 주민번호	수취인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	단속장소
14	체납	671010-** *****	김*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08	04*6820	200,000	2025-01-08	2025-05-31	2024-09-06	흥인지문(종로, 진입)
15	체납	680610-** *****	함*옥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09	01*4449	200,000	2025-01-08	2025-05-31	2024-09-07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16	체납	680610-** *****	함*옥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13	01*4449	200,000	2025-01-08	2025-05-31	2024-09-11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17	체납	680610-** *****	함*옥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14	01*4449	200,000	2025-01-08	2025-05-31	2024-09-12	경희궁(새문안로)
18	체납	110111-** *****	(*)비엠*오토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17	85*6682	200,000	2025-01-08	2025-05-31	2024-09-15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북측(마장로)
19	체납	120111-** *****	주*회사 우*마트	인천광역시	서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12	91*6333	200,000	2025-01-08	2025-05-31	2024-09-11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20	체납	670110-** *****	이*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19	80*7783	200,000	2025-01-08	2025-05-31	2024-09-16	한양도성박물관(율곡로)
21	체납	610620-** *****	조*훈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22	05*4266	100,000	2025-01-08	2025-05-31	2024-09-21	남산2호터널 북측(녹사평대로58길)
22	체납	110111-** *****	(*)비엠*오토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23	85*6682	200,000	2025-01-08	2025-05-31	2024-09-22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북측(마장로)
23	체납	680610-** *****	함*옥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24	01*4449	200,000	2025-01-08	2025-05-31	2024-09-23	회현역(퇴계로)
24	체납	391105-** *****	황*선	경상남도	김해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25	30*5641	200,000	2025-01-08	2025-05-31	2024-09-24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퇴계로, 진입)
25	체납	110111-** *****	(*) 우주*크놀러지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26	37*9919	200,000	2025-01-08	2025-05-31	2024-09-25	회현역(퇴계로)
26	체납	110111-** *****	(*)기준*엔씨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28	01*7564	200,000	2025-01-08	2025-05-31	2024-09-26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순번	상태	수취인 주민번호	수취인명	주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구분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단속일	단속장소
27	체납	600920-******	전*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29	80*3134	200,000	2025-01-08	2025-05-31	2024-09-26	흥인지문(청계천로, 진입)
28	체납	680417-******	위*석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31	92*3904	200,000	2025-01-08	2025-05-31	2024-09-27	윤동주문학관(창의문로)
29	체납	110111-******	(*)예일*엔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32	83*6331	100,000	2025-01-08	2025-05-31	2024-09-27	남산2호터널 북측(녹사평대로58길)
30	체납	710105-******	허*구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34	95*5690	100,000	2025-01-08	2025-05-31	2024-09-28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31	체납	560117-******	오*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35	서울*8로5617	200,000	2025-01-08	2025-05-31	2024-09-28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퇴계로, 진입)
32	체납	710105-******	허*구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36	95*5690	200,000	2025-01-08	2025-05-31	2024-09-29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33	체납	601022-******	민*홍	경기도	수원시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37	80*4509	200,000	2025-01-08	2025-05-31	2024-09-29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34	체납	671010-******	김*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38	04*6820	200,000	2025-01-08	2025-05-31	2024-10-01	흥인지문(종로, 진입)
35	체납	110111-******	주*회사 세계*임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41	99*2443	100,000	2025-01-08	2025-05-31	2024-11-02	숭례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36	체납	621222-******	박*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45	49*1757	100,000	2025-01-08	2025-05-31	2024-11-08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37	체납	110111-******	주*회사 세계*임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46	99*2443	100,000	2025-01-08	2025-05-31	2024-11-09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38	체납	700507-******	권*상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특별]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025-01	수시분	000048	48*7741	200,000	2025-01-08	2025-05-31	2024-11-19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786호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건설기술인에게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명 :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 동법 제91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5. 6. 12. ~ 2025. 6. 25.(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기간 : 2025. 6. 26. ~ 2025. 7. 9.
   나.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별첨 서식), 의견제출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다. 의견제출처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 4층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4, E-mail : kys82@seoul.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우편, 전자메일(kys82@seoul.go.kr)

6. 과태료 자진 납부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 납부기한 : 2025. 7. 9.
   나. 납부방법
   - 고지서 : 공고대상자는 서울특별시청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등으로 납부
   - 인터넷 : https://etax.seoul.go.kr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가능)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청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사전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서에 고지된 과태료 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에서 100분의 20이 감경된 금액입니다.

다.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기술심사담당관(☎02-2133-85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제출서 작성 서식 1부.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기한 내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내역

순번	위반자		위반사항	과태료 금 액	반 송 내 역		발송물 구 분
	성명	주소			반송사유	반송일자	
1	정*수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헌**길 **, ***호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폐문부재	2025-05-22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2	전*창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현로 **, ***동 ****호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폐문부재	2025-05-22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3	최*웅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가길 **, ***호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폐문부재	2025-05-22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800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및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분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25. 6. 12. ~ 2025. 6. 26.(14일간)

5. 이의신청 및 납부안내
   가. 공영주차장 사용자의 사용료 이의신청은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FAX 02-2290-6444번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의신청 기간 : 최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다. 공영주차장 사용료 미납 확인 후 인터넷(https://etax.seoul.go.kr) 통하여 납부 가능

6.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미납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하여 자동차 등에 압류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서울시설공단 ☎02-2290-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차종	납세번호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시각	출차일자	출차시간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금액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기한
	20건																
1	20228672	109서9012	Mercedes-AMG GLC 43 4MATIC Coupe	000047339214201 20250225009851	한강진역	0000:15	2025-01-08	20:14	2025-01-08	20:29	1,200	0	1,200	양*텔*	서울특별시중구만리동2가	폐문부재	2025-06-20
2	20228703	74호5295	스타리아 (STARIA)	000047339214201 20250225009690	마포유수지	0008:20	2025-01-09	06:17	2025-01-09	14:37	15,800	0	15,800	블*시9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체육관로	폐문부재	2025-06-20
3	20228746	175하8076	아반떼(AVANTE)	000047339214201 20250225009432	신설동	0001:32	2025-01-11	16:26	2025-01-11	17:58	4,900	0	4,900	정*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폐문부재	2025-06-20
4	20228820	179하6085	GV70	000047339214201 20250225008713	마포유수지	0001:55	2025-01-07	11:25	2025-01-07	13:20	2,500	0	2,500	솔*션*트*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로	폐문부재	2025-06-20
5	20228863	143무9500	CADILLAC ESCALADE ESV	000047339214201 20250225008292	한강진역	0000:16	2025-01-12	14:16	2025-01-12	14:32	1,600	0	1,600	주*회*신*성*대	인천 중구 관창로	폐문부재	2025-06-20
6	20228889	157호5679	G80	000047339214201 20250225008070	마포유수지	0000:49	2025-01-13	12:18	2025-01-13	13:07	2,200	0	2,200	(*)프*임*로*	경기도 부천시 삼정동	주소불명	2025-06-20
7	20228926	51조4889	Model Y Standard Range	000047339214201 20250225007704	신방화역	0002:14	2025-01-17	12:05	2025-01-17	14:19	2,200	0	2,200	양*준	서울 은평구 불광로	폐문부재	2025-06-20
8	20228946	10하0440	카니발	000047339214201 20250225007506	천왕역	0003:49	2025-01-20	06:03	2025-01-20	09:52	7,800	0	7,800	이*성	경기도용인시기흥구흥덕로	폐문부재	2025-06-20
9	20228963	02하9298	아이오닉5 (IONIQ5)	000047339214201 20250225007339	종묘	0001:29	2025-01-22	11:59	2025-01-22	13:28	3,600	0	3,600	최*욱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이사불명	2025-06-20
10	20229000	192호4717	투싼(TUCSON)	000047339214201 20250225006960	서울글로벌센터	0001:52	2025-01-31	14:15	2025-01-31	16:07	16,100	0	16,100	J*RR* LE*	서울마포구월드컵북로	주소불명	2025-06-20
11	20229013	310나6905	디펜더 110 D250	000047339214201 20250325003628	한강진역	0004:06	2025-02-02	14:43	2025-02-02	18:49	19,600	0	19,600	(*)디*이*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수취인불명	2025-06-20
12	20229200	175하8076	아반떼(AVANTE)	000047339214201 20250325003344	신대방역	0007:53	2025-02-07	01:06	2025-02-07	08:59	18,700	0	18,700	정*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폐문부재	2025-06-20
13	20229259	77허3900	그랜드 스타렉스(GRAND STAREX)	000047339214201 20250325002953	천호역	0009:55	2025-02-14	06:28	2025-02-14	16:23	18,700	0	18,700	박*	경기도안성시석정길	수취인불명	2025-06-20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차종	납세번호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시각	출차일자	출차시간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금액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기한
14	20229297	29하5095	Model 3 Standard Range Plus RWD	000047339214201 20250325002587	중곡1동	0001:33	2025-02-21	16:47	2025-02-21	18:20	1,900	0	1,900	최*웅	서울 광진구 능동로	폐문부재	2025-06-20
15	20229306	172하3314	아반떼(AVANTE)	000047339214201 20250325002495	용산주차빌딩	0001:05	2025-02-22	15:10	2025-02-22	16:15	3,900	0	3,900	김*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폐문부재	2025-06-20
16	20229317	169하3711	티볼리	000047339214201 20250325002389	구로디지털단지역	0008:00	2025-02-17	03:01	2025-02-17	11:01	9,300	0	9,300	용*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폐문부재	2025-06-20
17	20229353	160허7049	모닝	000047339214201 20250325002069	개화산역	0008:09	2025-02-26	18:52	2025-02-27	03:01	6,100	0	6,100	청*정*기*(주)	서울 강남구 논현로	수취인불명	2025-06-20
18	20229437	187루7629	BMW X5 xDrive40i	000047339214201 20250325001433	마포유수지	0002:16	2025-02-13	21:40	2025-02-13	23:56	6,100	0	6,100	주*회*인*이*로	서울 종로구 창신길	수취인불명	2025-06-20
19	20229463	29하9680	아이오닉5 (IONIQ5)	000047339214201 20250325001196	뱉우물	0001:37	2025-02-21	21:22	2025-02-21	22:59	1,300	0	1,300	이*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폐문부재	2025-06-20
20	20229539	193허9530	그랜저 하이브리드(GRANDEUR HYBRID)	000047339214201 20250325000483	동대문	0002:30	2025-02-05	16:12	2025-02-05	18:42	5,400	0	5,400	데*스*름	서울 강남구 논현로	수취인불명	2025-06-2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811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743호(2024.10.4.)로 열람공고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 2025.5.7.)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 재열람장소 : 서울시청 시설계획과(☎ 02-2133-8457~9)
3. 재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안)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안)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69,002,466.2		69,002,466.2	100.0%	
주거지역	11,879,253.9	감) 4,775,203.8	7,104,050.0	10.3%	
상업지역	67.2	감) 67.2	0.0	-	
공업지역	21,210.0	-	21,210.0	0.0%	
녹지지역	57,101,935.1	증) 4,775,271.0	61,877,206.1	89.7%	

※ 금회 용도구역 경계조정을 반영한 도시자연공원구역(국·공유지) 68개소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안)

구 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북악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외 38개소	성북구 성북동 산25-1일대 외 38개소	69,297,374.0	감) 294,907.8	69,002,466.2	

4.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5. 의견제출 :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 서면제출, 서울도시공간포털열람공고에서 주민의견서 제출
6. 기타 안내사항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해 관계도서 및 의견서 제출 서식 등을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서울도시공간포털(http://urban.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815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6. 12. ~ 2025. 6. 26.(14일간)
2. 처분대상 및 내용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1	㈜랜드앤아키 (정홍석)	건축공사업 01-4415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8길 2, 2층(수유동, 광덕빌딩) (수유동)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 2025. 2. 26. 담보권실행(출자좌수일부취득)	법 제10조 제4호	영업정지 5개월 (2025.6.27.~2025.11.26.)	법 제83조 제3호
2	에이알지종합건설㈜ (이철승)	건축공사업 01-336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246, 502호(개포동) (개포동)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 2025. 3. 7. 담보권실행(출자좌수일부취득)	법 제10조 제4호	영업정지 5개월 (2025.6.27.~2025.11.26.)	법 제83조 제3호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28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816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6. 12. ~ 2025. 6. 26.(14일간)

2. 처분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형인산업개발㈜ (석근)	건축공사업 01-016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2길 107 ,10층(장안동, 형인타워)	○ 하도급대금 미지급 · 현 장 명: 서울 중랑구 상봉동 근린시설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 · 하수급인: 쏠디자인컴퍼니 · 체불금액: 24,138,090원	법 제34조 제1항	〈시정명령〉 2025년 6월 30일(월)까지 쏠디자인컴퍼니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24,138,090원을 지급할 것.	법 제81조 제4호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28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828호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8호(2010.12.2.)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재정비)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나진상가 10 · 11동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 02-2133-8380)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 02-2199-7412)

3. 열람내용

[1]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안)
0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0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

1)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유통업무설비	한강로2가 15일대	119,703.1	감) 3,085.9	116,617.2	건고-제332호 (85.07.31.)	-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마. 방재시설 : 변경없음

바. 보건위생시설 : 변경없음

03.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사항 : 신설

1.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신설)조서

가.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4 공공기여 계획

구분	공공기여기준	비고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 공공기여율 17.5% 이상 ※ 공공기여율은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것으로 상한용적률 미적용 (단,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 15% 상한용적률 적용) ※ 「신산업용도」 30% 도입을 고려한 공공기여율 결정	-

0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 규모 결정(변경)조서

■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4 : 신설(기재생략)

2.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 용도계획 : 변경없음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 계획 : 변경없음

다. 건축물 높이계획 : 변경없음

라. 건축물의 배치계획 : 변경(기재생략)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기재생략)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결정(신설)조서

■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4 ㊿ : 신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㊿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4	한강로3가 1-3 일대	-	증) 3,085.9	3,085.9	-	-

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신설

구분		계획지침	비고
위치		• 한강로3가 1-3 일원	-
면적		• 3,085.9㎡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용도지구		-	-
가구 및 획지		• 획지 : 3,085.9㎡	-
밀도	건폐율	• 60% 이하 ※ 공중공공보행통로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인정 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가능	-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허용 610% 이하, 상한 800% 이하 ※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등 설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다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녹색건축 인증·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시 800% 초과 가능	-
높이		• 100m + α ※ α는 계획내용을 고려(디자인 특화, 개방형녹지 확보)하여 높이 완화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결정	-
건축물 용도	불허용도	• 장례식장,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지정용도	• 신산업용도,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시행자는 신산업용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계획서 제출 ※ 신산업용도 : ICT기반의 정보통신산업·소프트웨어·디지털 콘텐츠, 연구개발업 등 ※ 지정용도는 제시된 용도 중 택할 수 있음	전체 연면적의 30% 이상
	권장용도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가로활성화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7호 판매시설 중 식품, 잡화, 의류, 서적 등 일용품소매점 / 제1종, 제2종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서점(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가로변에 접한 외벽길이의 1/2이상 연접 배치) • 제13호의 운동시설 • 신산업용도	

구분			계획지침		비고
건축선	건축한계선		• 청파로 변 및 이면부 : 3m ※ 전면공지 내 연결브릿지 설치 검토 가능		-
배치 및 형태	건축물 형태		• 저층부 높이는 전자상가 내 건축물과 연계 및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 고층부 탑상형 건축을 통해 시각적 개방감 및 도시환경 개선 유도 • 가로활성화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개방적 형태의 건축물 권장 (캐노피, 아케이드, 어닝 등의 적극적 활용으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공개 공지	공통	• 공개공지 최소 폭 5m 이상 확보 및 필로티형 공개공지의 유효높이는 9m 이상 확보 • 대상지 입지특성에 따른 보행체계 분석을 통해 일반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실효성 있고 개방적인 형태로 조성		-
		개별	• 청파로 변 가각부 공개공지 위치 지정 • 공중공공보행통로 등과 저층부 판매시설 등 가로활성화 용도와 연계 조성하고 일반인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3m) 보도 및 녹화공간 조성		-
	공중공공 보행통로		• 청파로 변 조성 ※ 공중공공보행통로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인정 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가능		-
	연결브릿지		청파로, 새창로 각 1개소	• 특별계획구역 5,6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 계획	-
			이면부 1개소	• 특별계획구역 3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 계획	
			※ 공중공공보행통로 및 연결브릿지 설치는 “용산전자상가 입체보행 가이드라인(안)” 을 따름 ※ 연결브릿지는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약을 통해 민간에서 운영관리 검토 ※ 연결브릿지는 특별계획구역 간 지형의 고저차와 우선 설치 현황을 고려, 동일 레벨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		
교통처리계획			• 청파로 변 등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 공공기여율 : 17.5% 이상 ※ 공공기여율은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것으로 상한용적률 미적용 단,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 15% 상한용적률 적용 ※ 「신산업용도」 30% 도입을 고려한 공공기여율 결정 • 공공기여 사항 ① 주차장 ② 공공청사(공공시설(취·창업지원센터 등))		-

구분	계획지침	비고
기타	• 주거비율 : 지상 연면적의 50% 이하(전용 60㎡ 이하, 전체 20% 이상) • 특별계획구역간 유연한 통합 허용 • 개방형녹지 20% 이상 확보 ※ 건축인·허가 전 서울시 조경과 등 관련부서와 토심, 수종, 식재수량 등 구체적 계획 적정성 검토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폐지	-

05.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 기재생략 (열람장소 비치)

4. 관계도서 : 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5. 기타사항
-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 02-2133-83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829호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6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8호(2010.12.2.)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재정비)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나진상가 14동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6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02-2133-8380)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02-2199-7412)

3. 열람내용

[1]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안)

0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0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 신설

1) 주차장 결정(신설)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한강로3가 1외 3필지	-	증) 1,493.5	1,493.5	-	•중복결정 - 공공청사, 주차장

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

1)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유통업무설비	한강로2가 15일대	119,703.1	감) 4,654.4	115,048.7	건고-제332호 (85.07.31.)	-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 신설

1) 공공청사 결정(신설)조서 : 신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청사	한강로3가 1 외 3필지	-	증) 1,493.5	1,493.5	-	• 중복결정 - 공공청사, 주차장

■ 건축물의 범위

도면표시 번호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비 고
①	60.0%	600.0%이하	11층 이하	공공시설(취·창업지원센터 등)

마. 방재시설 : 변경없음

바. 보건위생시설 : 변경없음

03.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사항 : 신설

1.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신설)조서

가.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6 공공기여 계획

구분	공공기여기준	비고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 공공기여율 17.5% 이상 ※ 공공기여율은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것으로 상한용적률 미적용 (단,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 15% 상한용적률 적용) ※ 「신산업융도」 30% 도입을 고려한 공공기여율 결정	-

0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 규모 결정(변경)조서

■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6 : 신설(기재생략)

2.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 용도계획 : 변경없음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 계획 : 변경없음

다. 건축물 높이계획 : 변경없음

라. 건축물의 배치계획 : 변경(기재생략)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기재생략)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결정(신설)조서

■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6 ㊷ : 신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㊷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6	한강로3가 1-1일대	-	감) 3,160.9	3,160.9	-	-

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신설

구분		계획지침	비고
위치		• 한강로3가 1-1일원	-
면적		• 3,160.9㎡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용도지구		-	-
가구 및 획지		• 획지 : 3,160.9㎡	-
밀도	건폐율	• 60%이하 ※ 공중공공보행통로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인정 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가능	-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허용 610% 이하, 상한 800% 이하 ※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등 설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다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녹색건축 인증·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시 800% 초과 가능	-
높이		• 100m + α ※ α는 계획 내용을 고려(디자인 특화, 개방형 녹지 확보)하여 높이 완화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가능	-

구분			계획지침	비고
건축물 용도	불허용도		• 장례식장,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지정용도		• 신산업용도,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시행자는 신산업용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계획서 제출 ※ 신산업용도 : ICT기반의 정보통신산업 · 소프트웨어 · 디지털 콘텐츠, 연구개발업 등 ※ 지정용도는 제시된 용도 중 택할 수 있음	전체 연면적의 30% 이상
	권장용도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가로활성화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7호 판매시설 중 식품, 잡화, 의류, 서적 등 일용품소매점 / 제1종, 제2종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서점(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가로변에 접한 외벽길이의 1/2이상 연접 배치) • 제13호의 운동시설 • 신산업용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청파로 변 및 이면부 : 3m ※ 전면공지 내 연결브릿지 설치 검토 가능	-
배치 및 형태	건축물 형태		• 저층부 높이는 전자상가 내 건축물과 연계 및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 고층부 탑상형 건축을 통해 시각적 개방감 및 도시환경 개선 유도 • 가로활성화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개방적 형태의 건축물 권장 (캐노피, 아케이드, 어닝 등의 적극적 활용으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공개 공지	공통	• 공개공지 최소 폭 5m 이상 확보 및 필로티형 공개공지의 유효높이는 9m 이상 확보 • 대상지 입지특성에 따른 보행체계 분석을 통해 일반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실효성 있고 개방적인 형태로 조성	-
		개별	• 청파로 변 가각부 공개공지 위치 지정 • 용산전자상가 사거리에 개방적인 형태로 조성 • 공중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등과 저층부 판매시설 등 가로활성화 용도와 연계 조성하고 일반인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3m) 보도 및 녹화공간 조성	-

구분		계획지침		비고
	공중공공 보행통로	• 청파로 변 조성 ※ 공중공공보행통로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인정 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가능		-
	연결브릿지	새창로 1개소	• 특별계획구역 4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 계획	-
		이면부 1개소	• 특별계획구역 8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 계획	
		※ 공중공공보행통로 및 연결브릿지 설치는 “용산전자상가 입체보행 가이드라인(안)” 을 따름 ※ 연결브릿지는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약을 통해 민간에서 운영관리 검토 ※ 연결브릿지는 특별계획구역 간 지형의 고저차와 우선 설치 현황을 고려, 동일 레벨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		
교통처리계획		• 청파로 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 공공기여율 : 17.5% 이상 ※ 공공기여율은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것으로 상한용적률 미적용 단,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 15% 상한용적률 적용 ※ 「신산업용도」 30% 도입을 고려한 공공기여율 결정 • 공공기여 사항 ① 인근 공용주차장 부지 ② 주차장 ③ 공공청사(공공시설(취·창업지원센터 등))		-
기타		• 주거비율 : 지상 연면적의 50% 이하(전용 60㎡ 이하, 전체 20% 이상) • 특별계획구역 간 유연한 통합 허용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인근 공용주차장 통합개발 검토(통합개발 허용) • 개방형 녹지 20% 이상 확보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폐지		-

05.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6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 기재생략 (열람장소 비치)

4. 관계도서 : 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5. 기타사항
-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02-2133-83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830호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용산전자상가지구 나진19 · 20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8호(2010.12.2.)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재정비)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나진상가 19 · 20동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용산전자상가지구 나진19 · 20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 02-2133-8380)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 02-2199-7412)

3. 열람내용

[1]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안)

0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봉래동~ 용산구 한강로 일대	3,478,941.16	감) 6,335.2	3,472,605.96	서고 제1995-53호 ('95.03.10.)	-

0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478,941.16	감) 6,335.2	3,472,605.96	100.0	-
주거지역	소계	2,365,398.26	-	2,365,398.26	68.1	-
	제1종일반주거지역	87,000.00	-	87,000.00	2.5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509,382.80	-	509,382.80	14.7	-
	제2종일반주거지역	493,545.05	-	493,545.05	14.2	-
	제3종일반주거지역	1,104,486.31	-	1,104,486.31	31.8	-
	준주거지역	170,984.10	-	170,984.10	4.9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978,381.70	감) 6,335.2	972,046.50	28.0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35,161.20	-	135,161.20	3.9	-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0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 규모 결정(변경)조서

■ 전자상가지구 : 변경

구분	가구번호	위치		면적(㎡)			비고
		동	지번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전2	한강로2가	16-8대 외 15필지	26,708.0	감) 6,335.2	20,372.8	한강로2가 15-13대 제척

2.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5.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용산전자상가지구 나진19 · 20동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안)

0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신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용산전자상가지구 나진19 · 20 지구단위계획구역	한강로2가 15-13	-	증) 6,335.2	6,335.2	나진상가 19 · 20동

0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6,335.2	-	6,335.2	100.0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6,335.2	-	6,335.2	100.0	-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

1)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유통업무설비	한강로2가 15일대	119,703.1 (6,335.2)	감) 6,335.2 (감 6,335.2)	113,367.9 (-)	건고-제332호 (85.07.31.)	-

※ ( ) 면적은 나진상가 19 · 20동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포함되어 있는 면적임

03.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사항 : 신설

1.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신설)조서

가. 특별계획구역10 공공기여 계획

구분	공공기여 기준	비고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 공공기여율 24.5% 이상 ※ 공공기여율은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것으로 상한용적률 미적용 (단,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 15% 상한용적률 적용) ※ 「신산업용도」 30% 도입을 고려한 공공기여율 결정	-

0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 규모 결정(변경)조서

■ 특별계획구역10 : 신설(기재생략)

2.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설)조서 : 신설(기재생략)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설)조서 : 신설(기재생략)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결정(신설)조서

■ 특별계획구역10 : 신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특별계획구역 10	한강로2가 15-13	-	증) 6,335.2	6,335.2	-	-

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신설

구분		계획지침	비고
위치		• 한강로2가 15-13	-
면적		• 6,335.2㎡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용도지구		-	-
가구 및 획지		• 획지 : 6,335.2㎡	-
밀도	건폐율	• 60% 이하 ※ 창의·혁신디자인을 통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적용 완화 (최대 70%까지 완화) ※ 공중공공보행통로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인정 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가능	-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허용 610% 이하, 상한 800% 이하 ※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등 설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녹색건축 인증·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시 800% 초과 가능 ※ 창의·혁신디자인 적용 인센티브는 2025년 제1차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위원회 개최결과 및 사업자가 제시한 감성디자인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에 따라 향후 통합심의 (건축위원회)에서 최대 107.8%p까지 상향 가능	-
높이		• 120m + α ※ α는 계획내용을 고려(디자인 특화, 개방형 녹지 확보)하여 높이 완화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가능 ※ 창의·혁신디자인을 통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 완화	-
건축물 용도	불허용도	• 장례식장,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구분			계획지침	비고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건축물 용도	지정용도		• 신산업용도,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시행자는 신산업용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계획서 제출 ※ 신산업용도 : ICT기반의 정보통신산업 · 소프트웨어 · 디지털 콘텐츠, 연구개발업 등 ※ 지정용도는 제시된 용도 중 택할 수 있음	전체 연면적의 30% 이상
	권장용도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가로활성화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7호 판매시설 중 식품, 잡화, 의류, 서적 등 일용품소매점 / 제1종, 제2종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서점(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가로변에 접한 외벽길이의 1/2이상 연접 배치) • 제13호의 운동시설 • 신산업용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청파로 변 및 이면부 : 3m ※ 전면공지 내 연결브릿지 설치 검토 가능	-
배치 및 형태	건축물 형태		• 저층부 높이는 전자상가 내 건축물과 연계 및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 고층부 탑상형 건축을 통해 시각적 개방감 및 도시환경 개선 유도 • 가로활성화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개방적 형태의 건축물 권장 (캐노피, 아케이드, 어닝 등의 적극적 활용으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공개공지	공통	• 공개공지 최소 폭 5m 이상 확보 및 필로티형 공개공지의 유효높이는 9m 이상 확보 • 대상지 입지특성에 따른 보행체계 분석을 통해 일반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실효성 있고 개방적인 형태로 조성	-
		개별	• 청파로 변 공개공지 위치 지정 • 공중공공보행통로 등과 저층부 판매시설 등 가로활성화 용도와 연계 조성하고 일반인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3m) 보도 및 녹화공간 조성	-
	공공보행통로		• 청파로-유수지 간 지상부 보행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시 · 종점 지정	-
	연결브릿지		청파로 1개소 • 특별계획구역 8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 계획 이면부 1개소 • 특별계획구역 9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 계획 ※ 공중공공보행통로 및 연결브릿지 설치는 “용산전자상가 입체보행 가이드라인(안)” 을 따름 ※ 연결브릿지는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약을 통해 민간에서 운영관리 검토 ※ 연결브릿지는 특별계획구역 간 지형의 고저차와 우선 설치 현황을 고려, 동일 레벨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	-
교통처리계획			• 청파로 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 공공기여율 : 24.5% 이상 ※ 공공기여율은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것으로 상한용적률 미적용 단,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 15% 상한용적률 적용 ※ 「신산업용도」 30% 도입을 고려한 공공기여율 결정	-

구분	계획지침	비고
	• 공공기여 사항 ①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제공 ※ 건축허가 시점에 결정권자, 사업자 2개 감정평가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최종 인센티브량 결정	
기타	• 주거비율 : 지상 연면적의 50% 이하(전용 60㎡ 이하, 전체 20% 이상) • 특별계획구역간 유연한 통합 허용 • 개방형녹지(녹화공간) 20% 이상 확보 ※ 건축인·허가 전 서울시 조경과 등 관련부서와 토심, 수종, 식재수량 등 구체적 계획 적정성 검토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폐지	-

05.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 신설(기재생략)

2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 기재생략 (열람장소 비치)

4. 관계도서 : 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5. 기타사항
-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 02-2133-83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831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일부 조정 포함) 및 지정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1,434,573.6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차	88,760.6	
			개포우성2차		
			선경	78,636.2	
			쌍용1차	47,659.0	
			쌍용2차	24,484.4	
			우성1차	29,874.0	
			은마	243,552.6	
			미도	195,080.4	
		삼성동, 청담동	진흥	51,035.5	
		청담동	현대(1차)	7,004.1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358,077.0	
			우성1·2·3차	120,354.0	
			우성4차	31,631.0	
			아시아선수촌	158,424.8	

※ 면적정정 : 삼성 · 청담동 진흥(18,916.1 → 51,035.5㎡), 잠실동 주공5단지(353,987 → 358,077㎡), 아시아선수촌(118,649.5 ㎡→158,424.8㎡)

- 지정기간 : 2025. 6. 23. ~ 2026. 6. 22.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 ▸ 건축물 용도(아파트) : 대치동 개포우성1차, 개포우성2차, 선경, 쌍용1차, 쌍용2차, 우성1차, 은마, 삼성동·청담동 진흥, 청담동 현대1차, 잠실동 주공5단지, 우성 1·2·3차, 우성4차, 아시아선수촌 등 13개 아파트
    ※ 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호가목인 경우로 한정
  - ▸ 모든 부동산 : 대치동 미도아파트

2.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849,066.7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380 일대	121,830.6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 11개소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일대	33,896.7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일대	49,210.8	
	양천구	신정동 922 일대	84,186.6	
	은평구	응암동 675 일대	40,696.4	
	관악구	신림동 610-200 일대	196,841.0	
		신림동 119-1 일대	16,899.0	
	도봉구	쌍문동 26 일대	39,499.8	
	성북구	장위동 219-90 일대	131,226.4	
		장위동 224-12 일대	110,641.8	
		정릉동 710-81 일대	24,137.6	

- 지정기간 : 2025. 6. 17. ~ 2026. 8. 30.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재지정, 지정 공통사항)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 초과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에서 확인 *
* 기타정보-토지거래허가-토지거래허가구역(서울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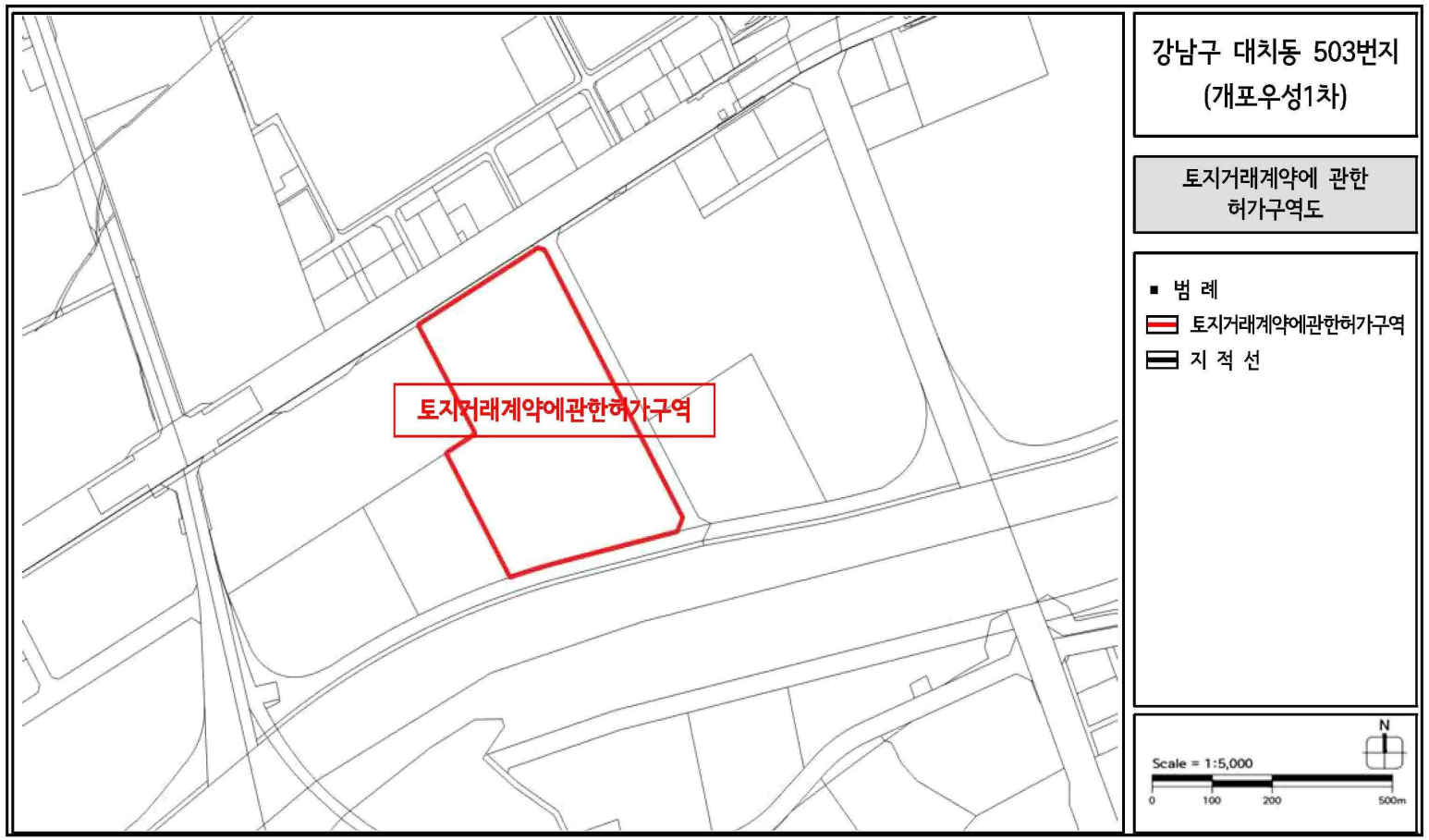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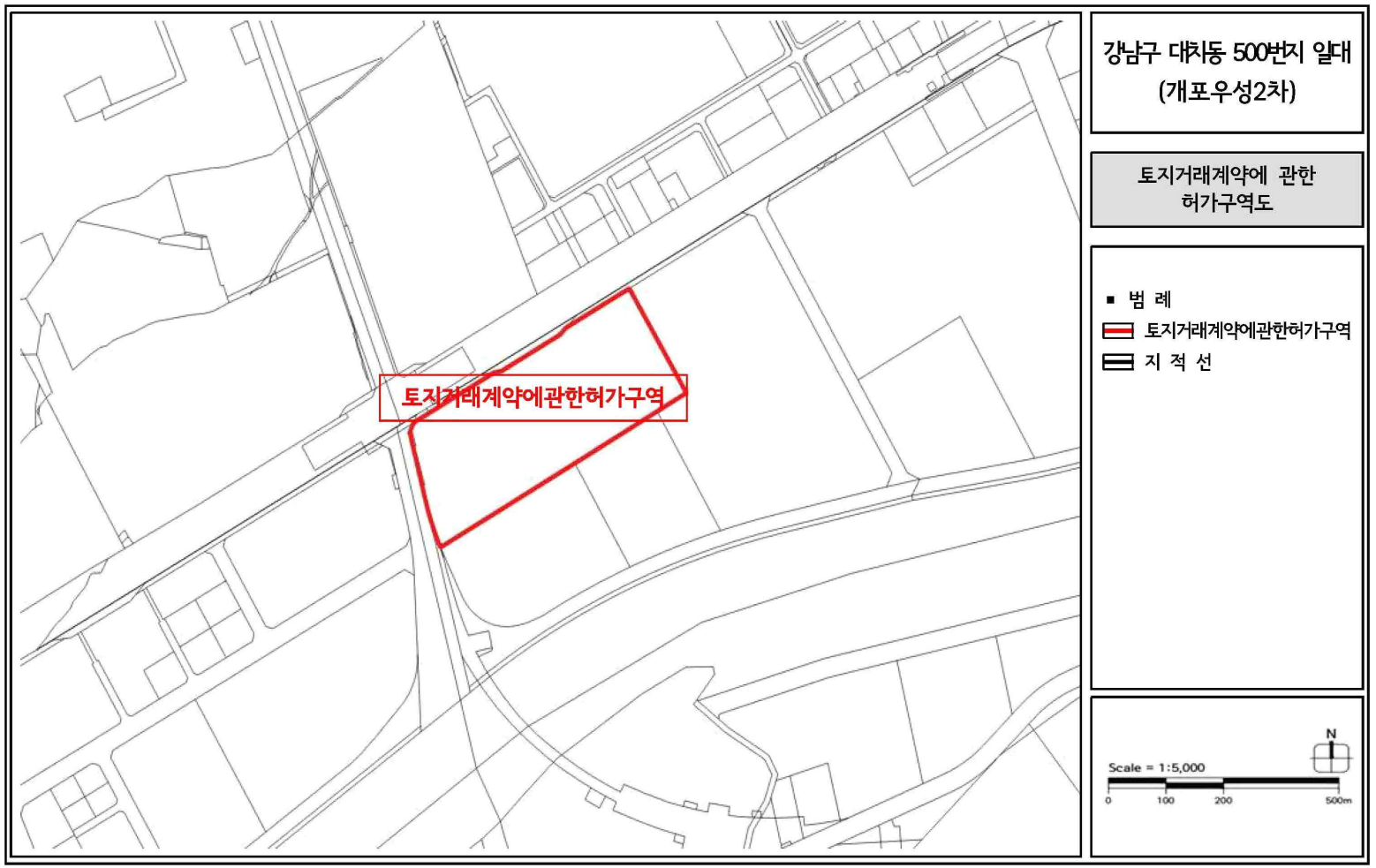
※ 토지e음(http://www.eum.go.kr),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세부정보를 확인

붙임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14개 재건축 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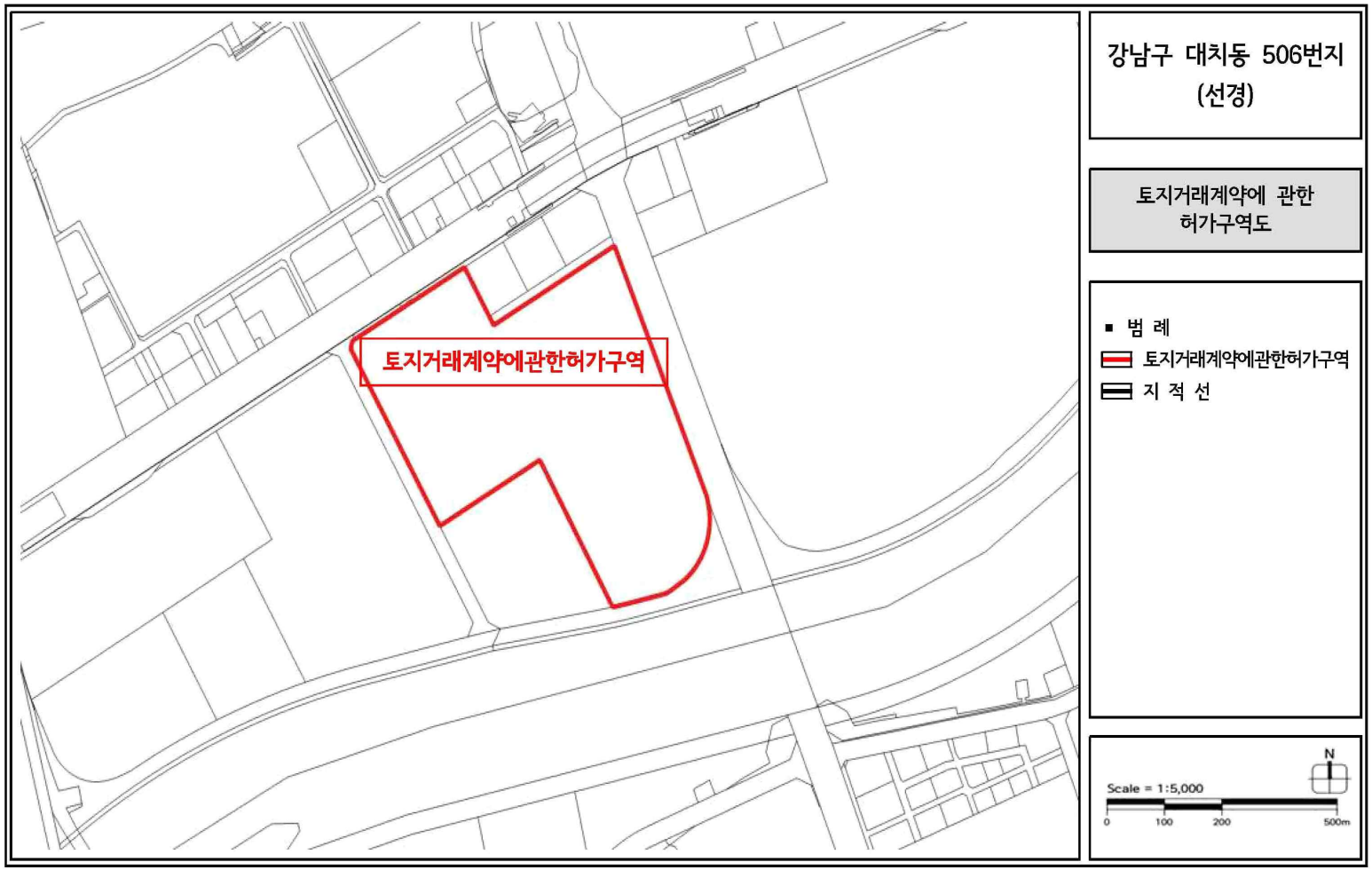
1. 강남구 대치동 503번지 (개포우성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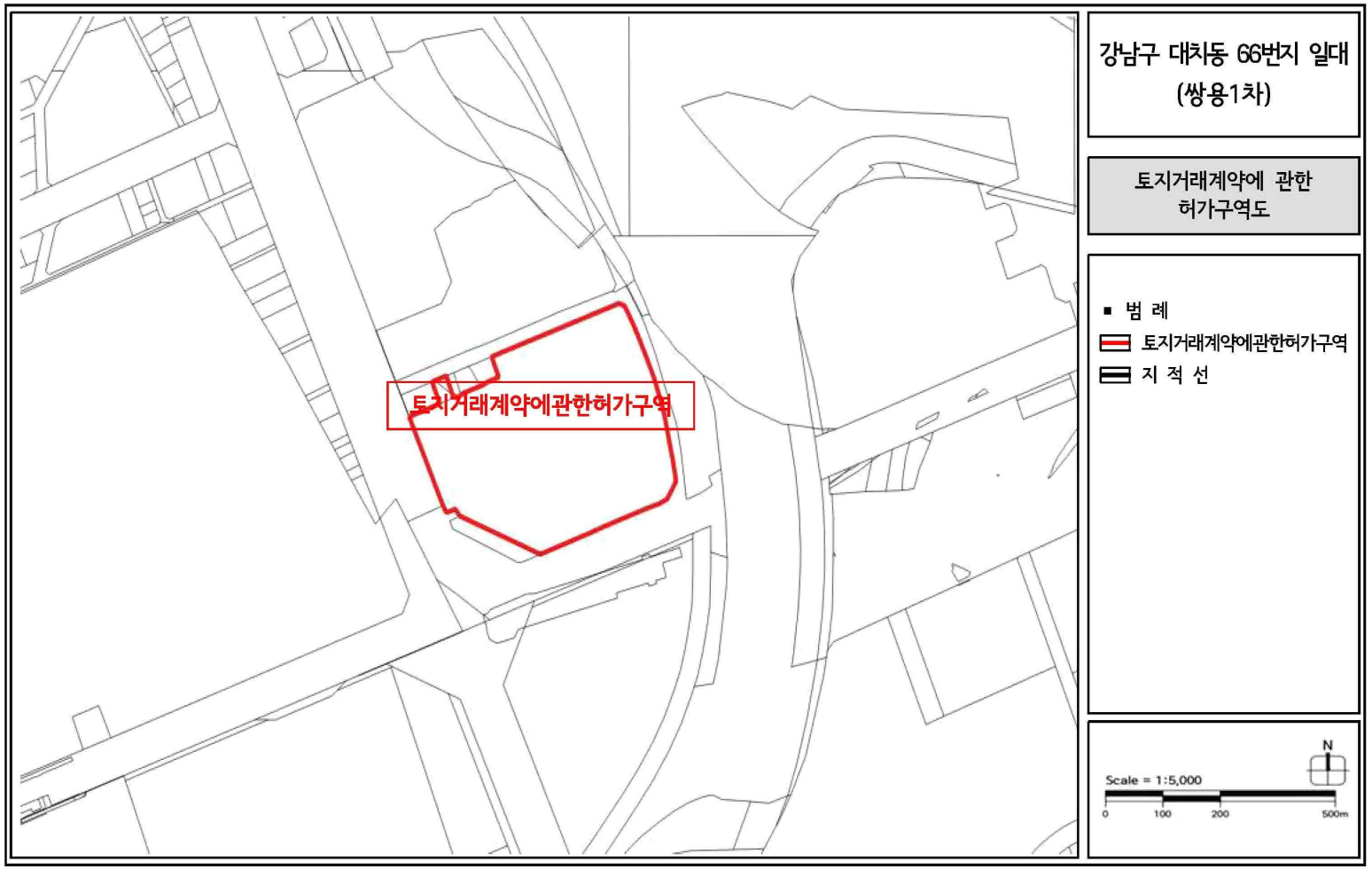
2. 강남구 대치동 500번지 일대 (개포우성2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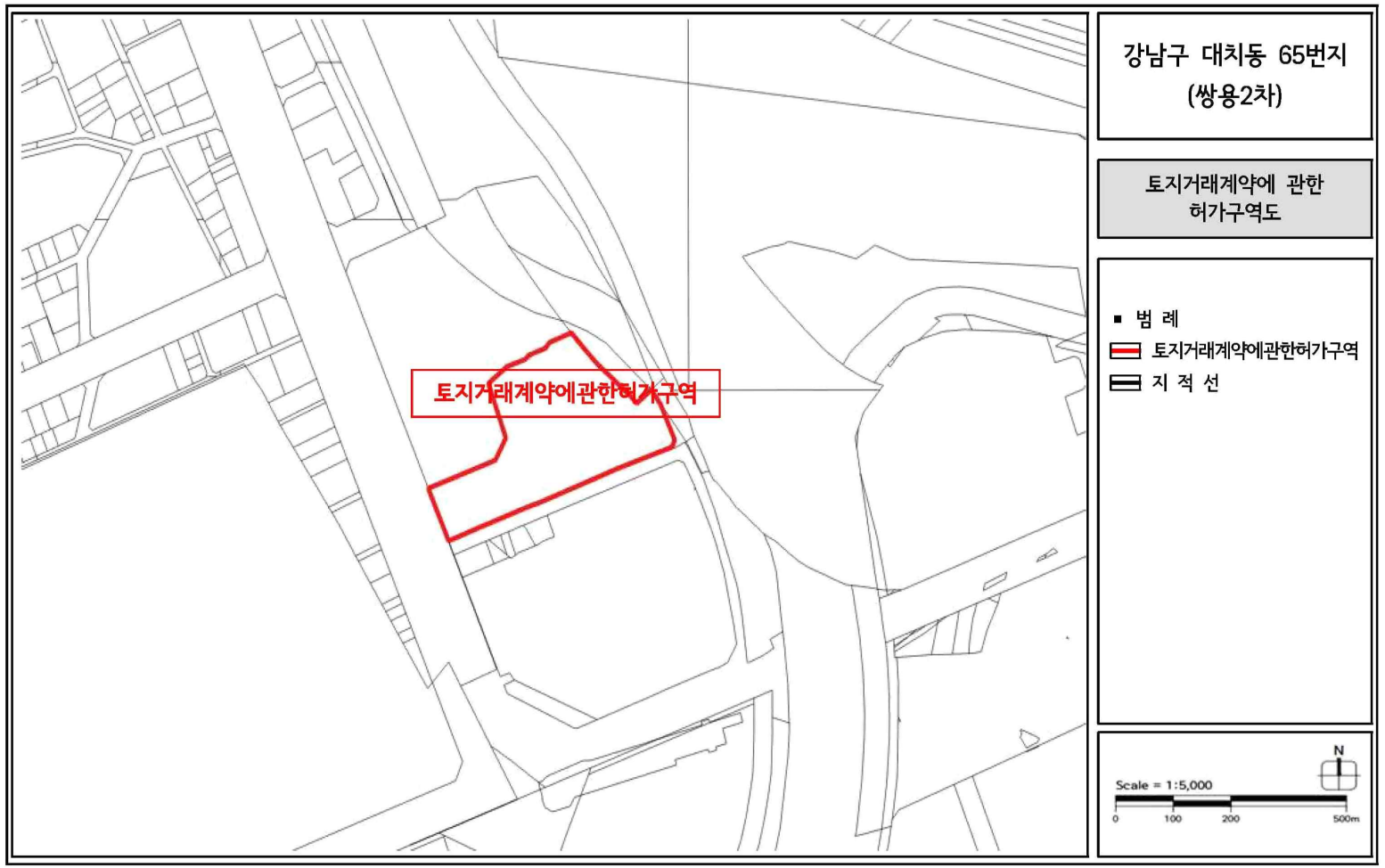
3. 강남구 대치동 506번지 (선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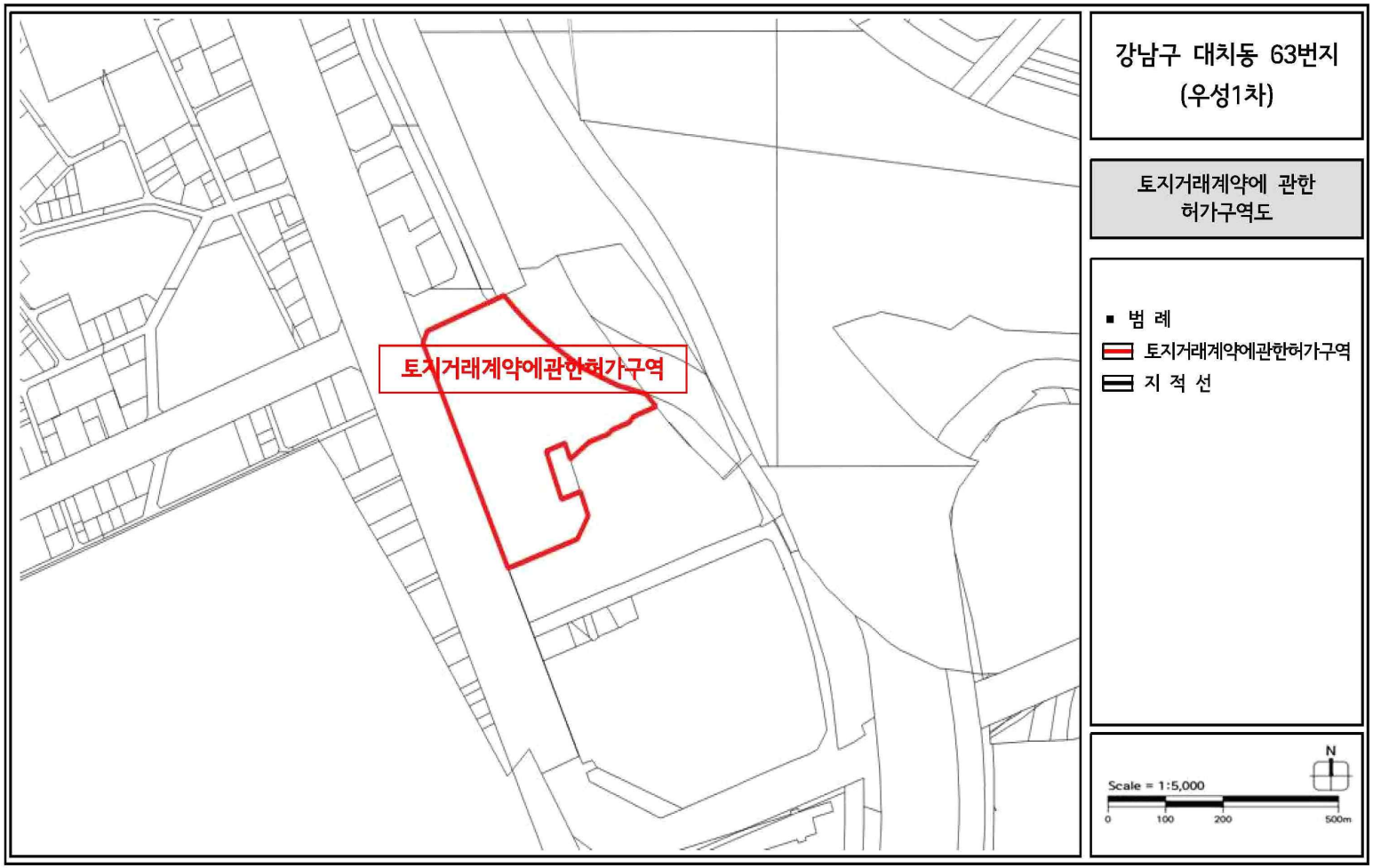
4. 강남구 대치동 66번지 일대 (쌍용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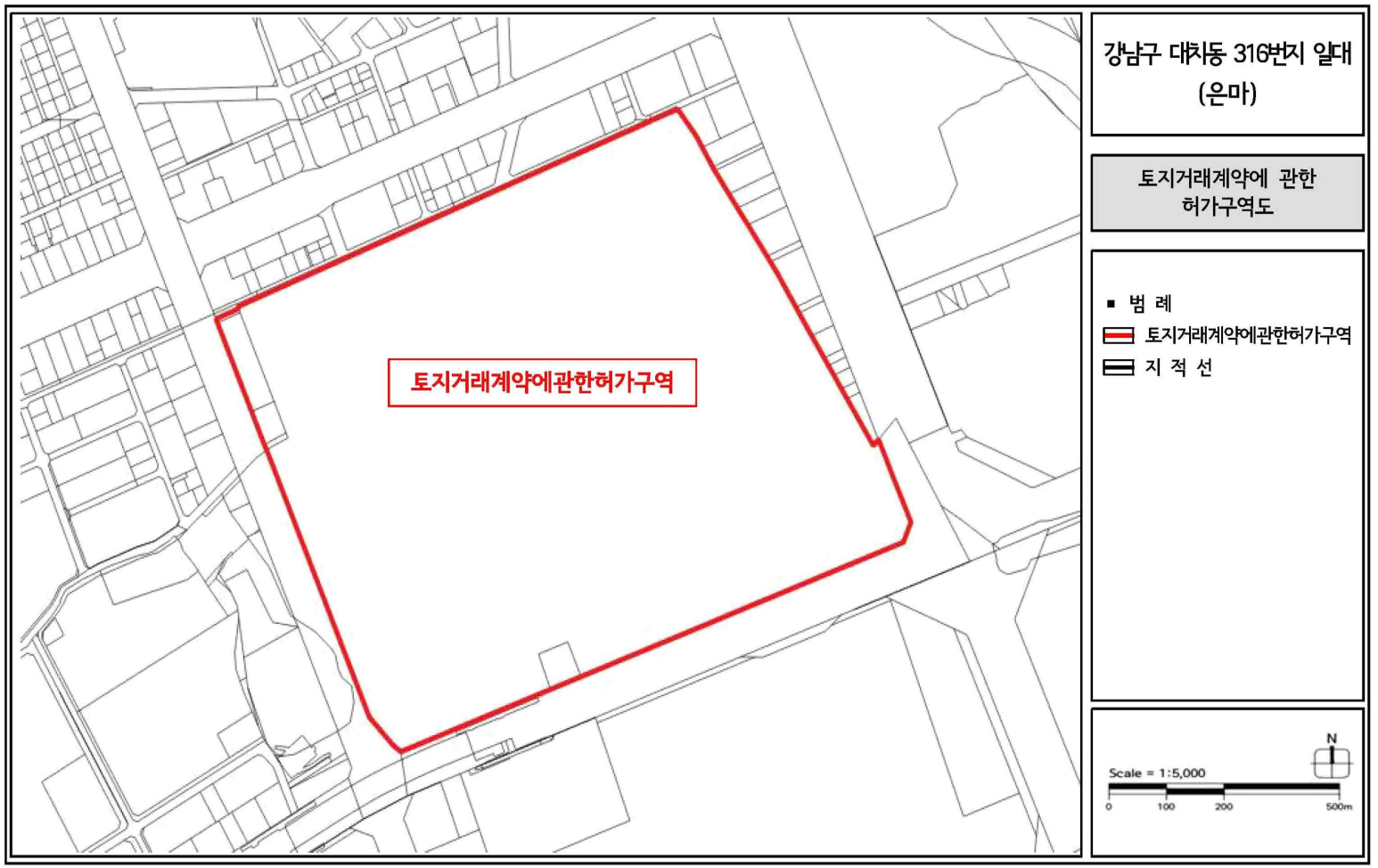
5. 강남구 대치동 65번지 (쌍용2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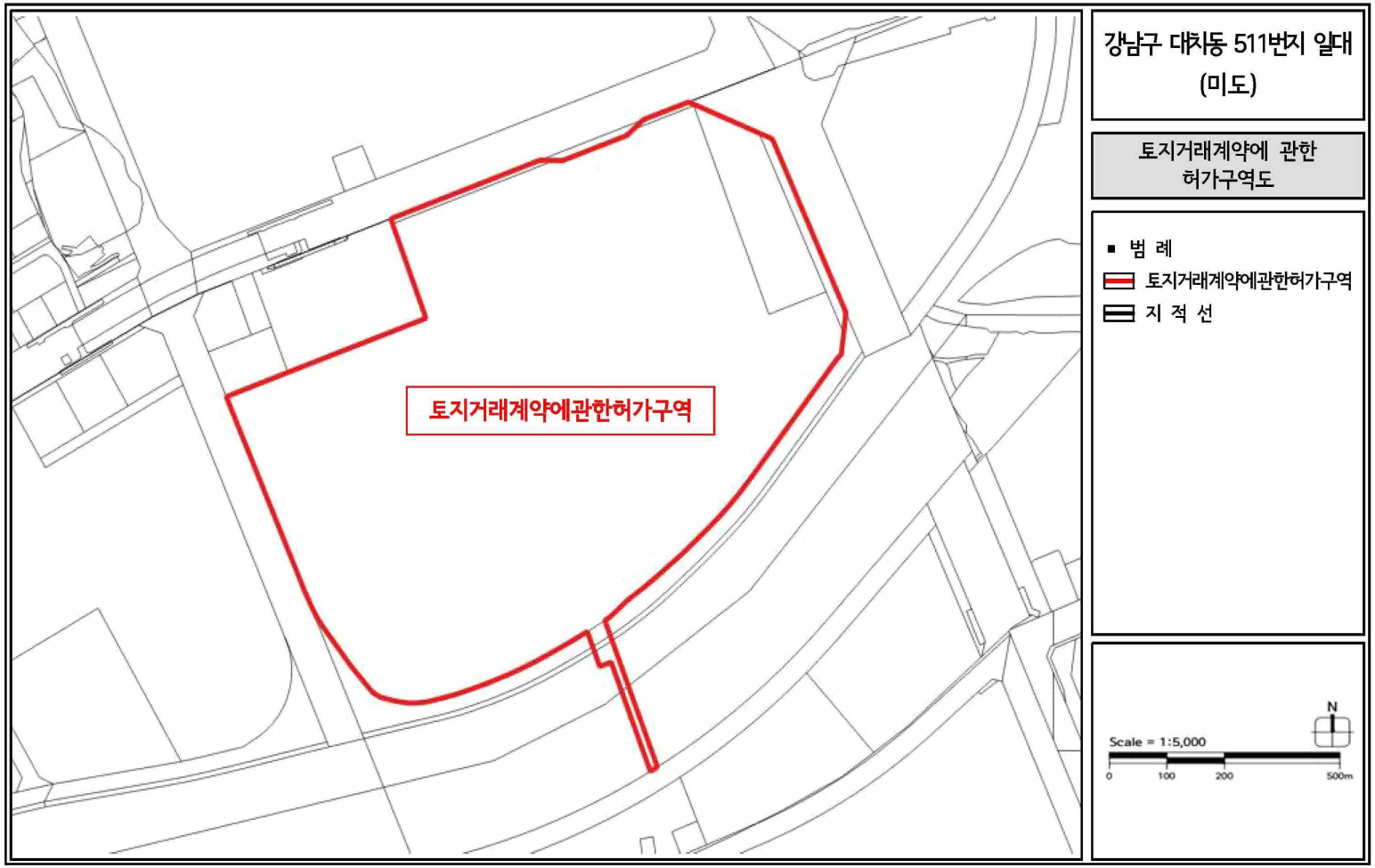
6. 강남구 대치동 63번지 (우성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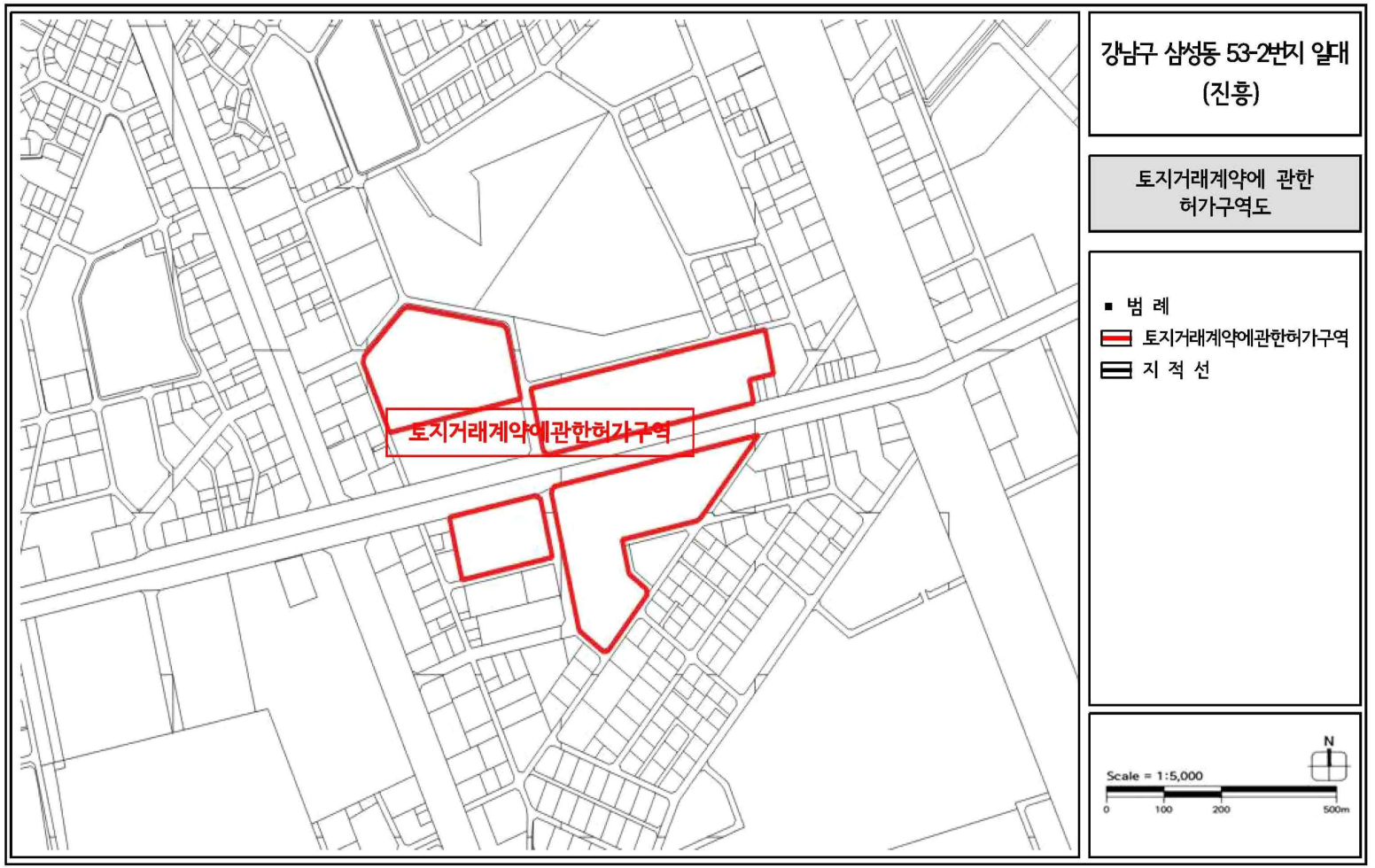
7. 강남구 대치동 316번지 일대 (은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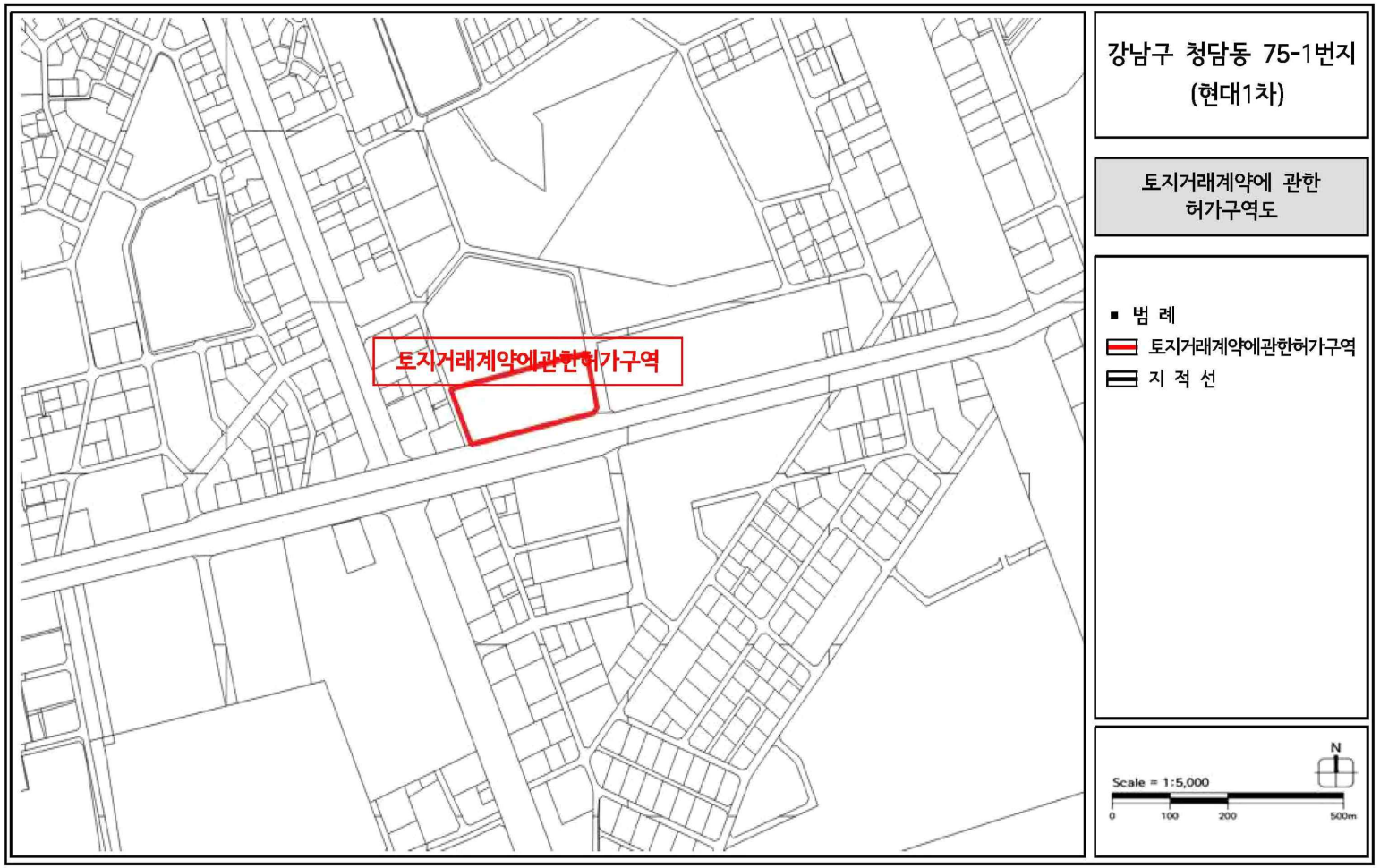
8. 강남구 대치동 511번지 일대 (미도)(신속통합기획 주택재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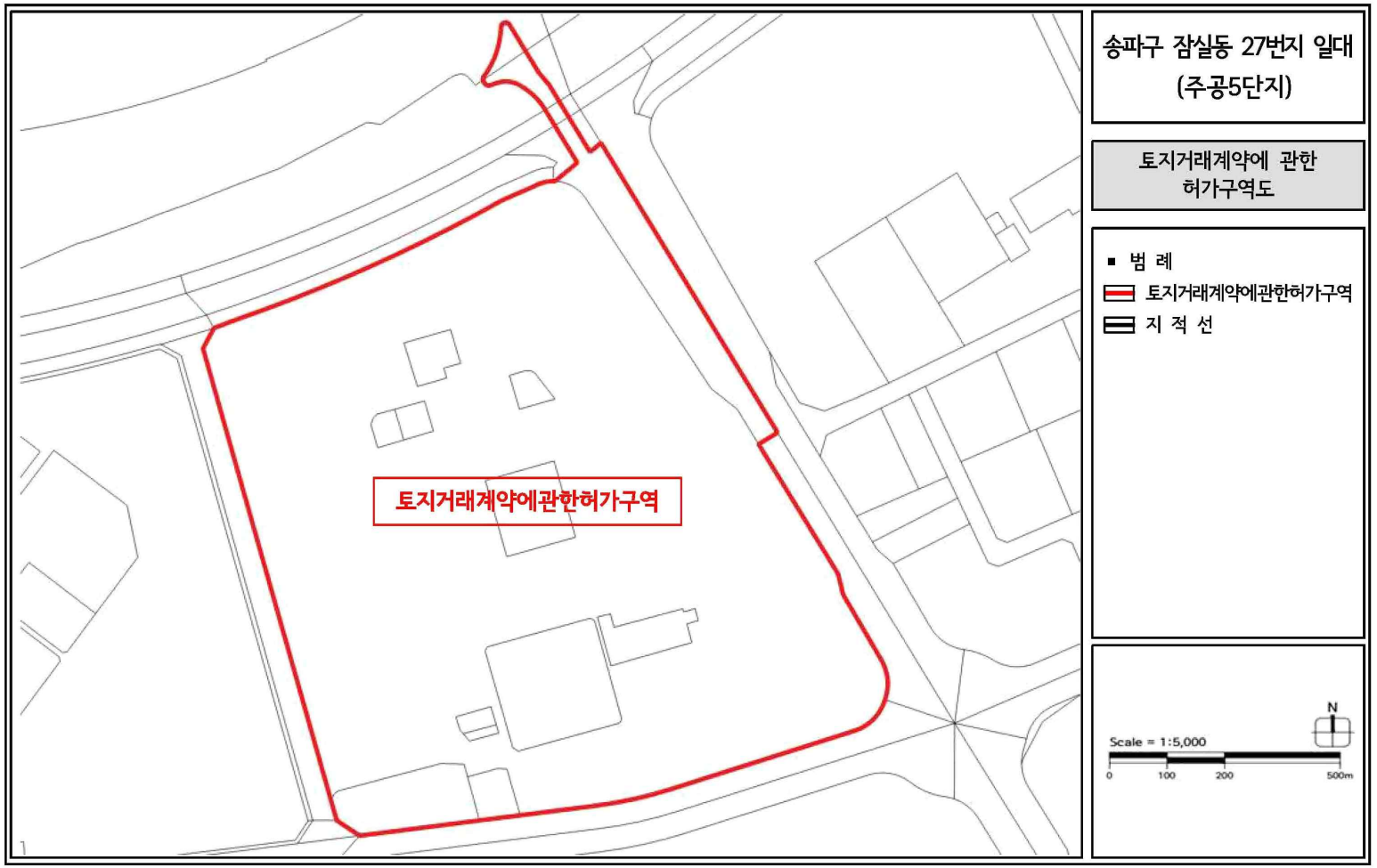
9. 강남구 삼성동 53-2번지 일대 (진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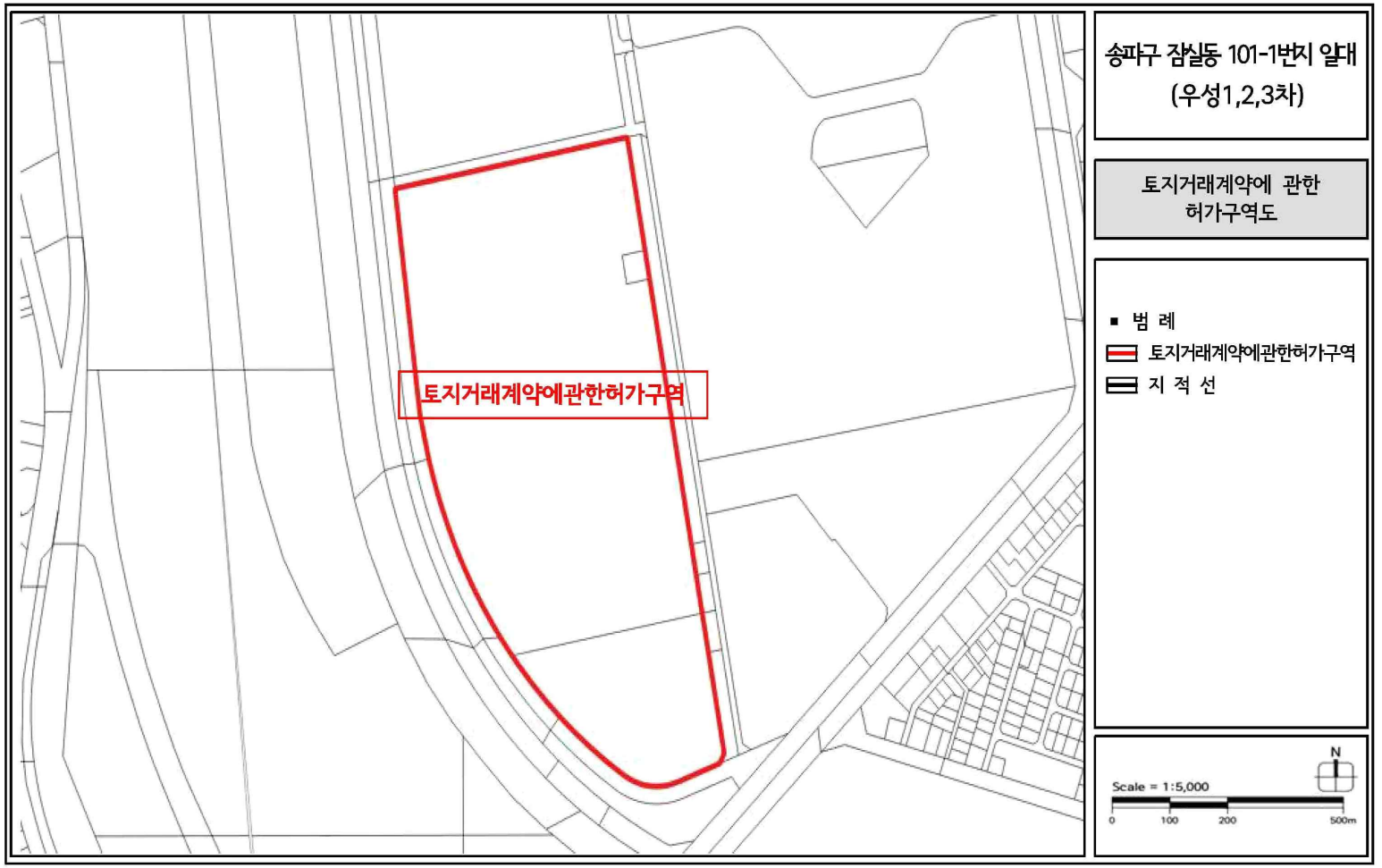
10. 강남구 청담동 75-1번지 (현대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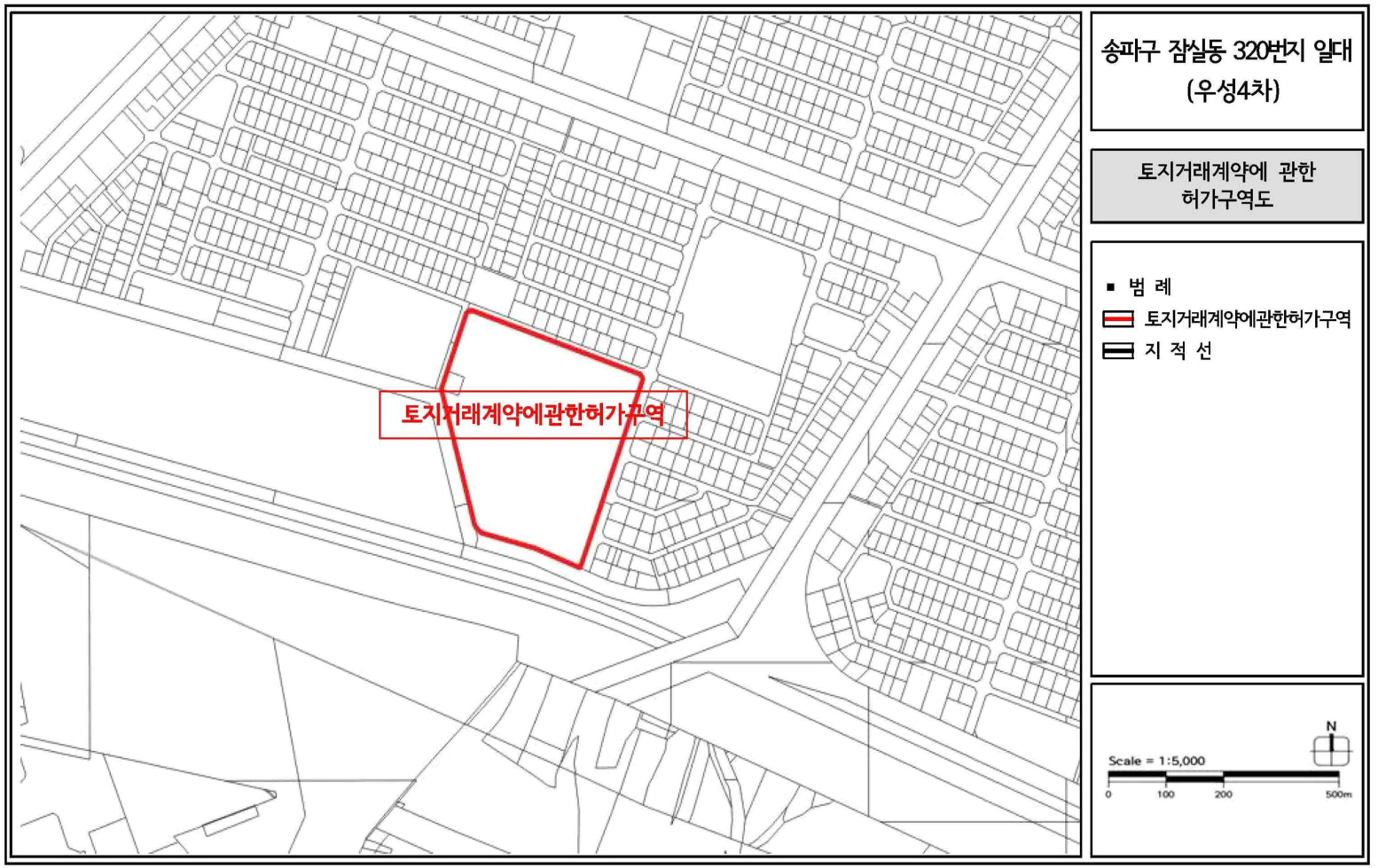
11. 송파구 잠실동 27번지 일대 (주공5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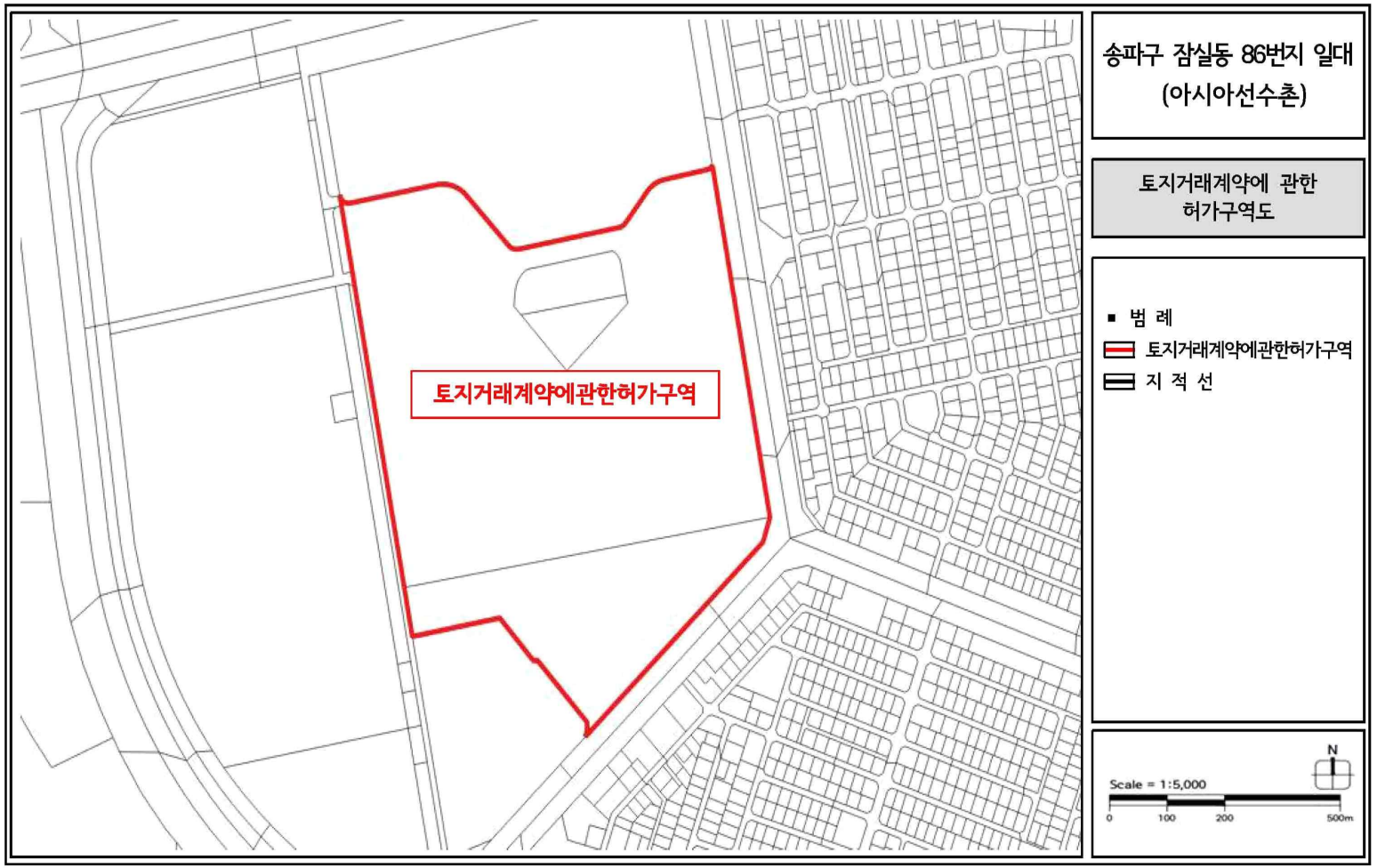
12. 송파구 잠실동 101-1번지 일대 (우성 1, 2, 3차)



13. 송파구 잠실동 320번지 일대 (우성4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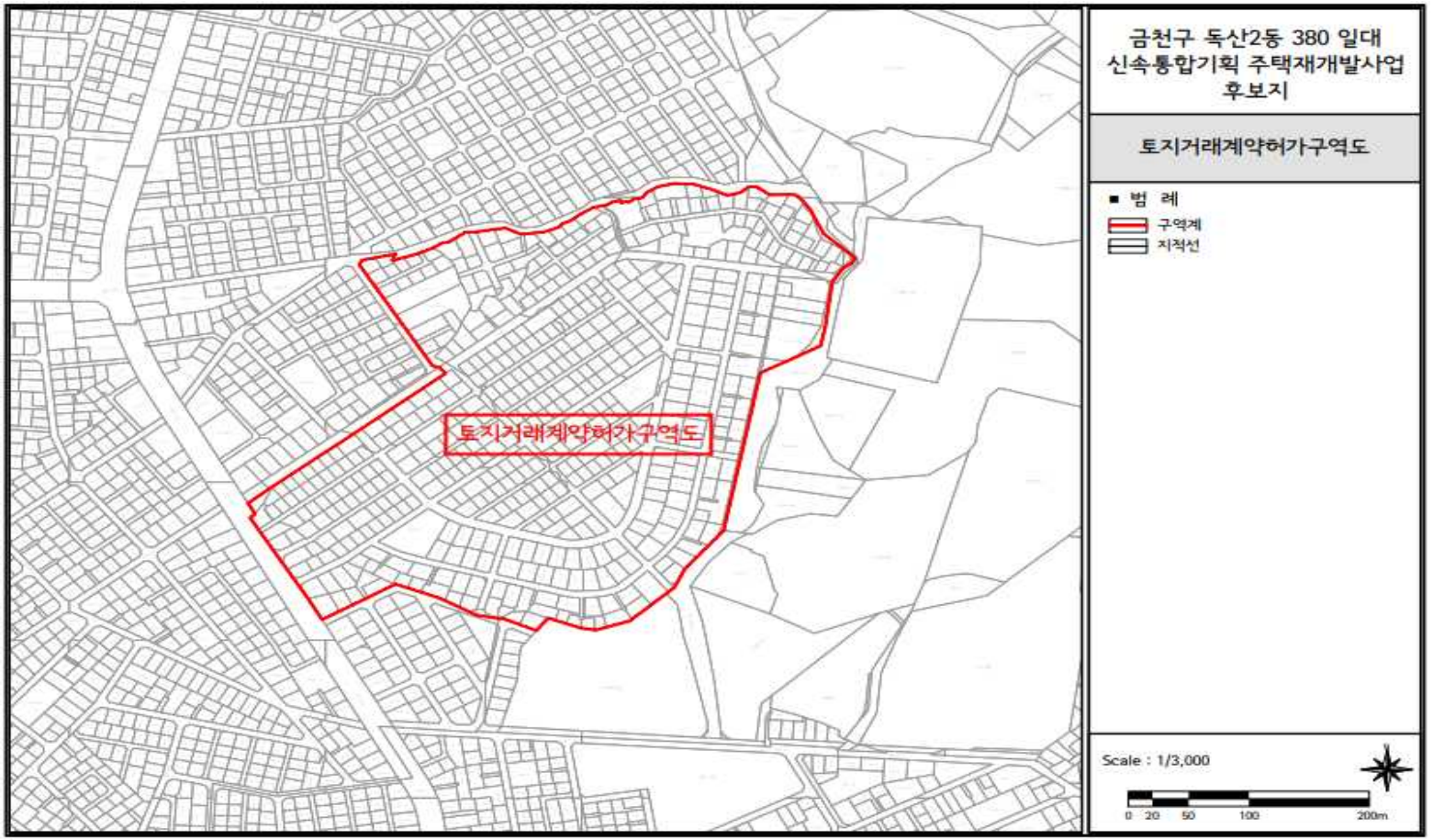


14. 송파구 잠실동 86번지 일대 (아시아선수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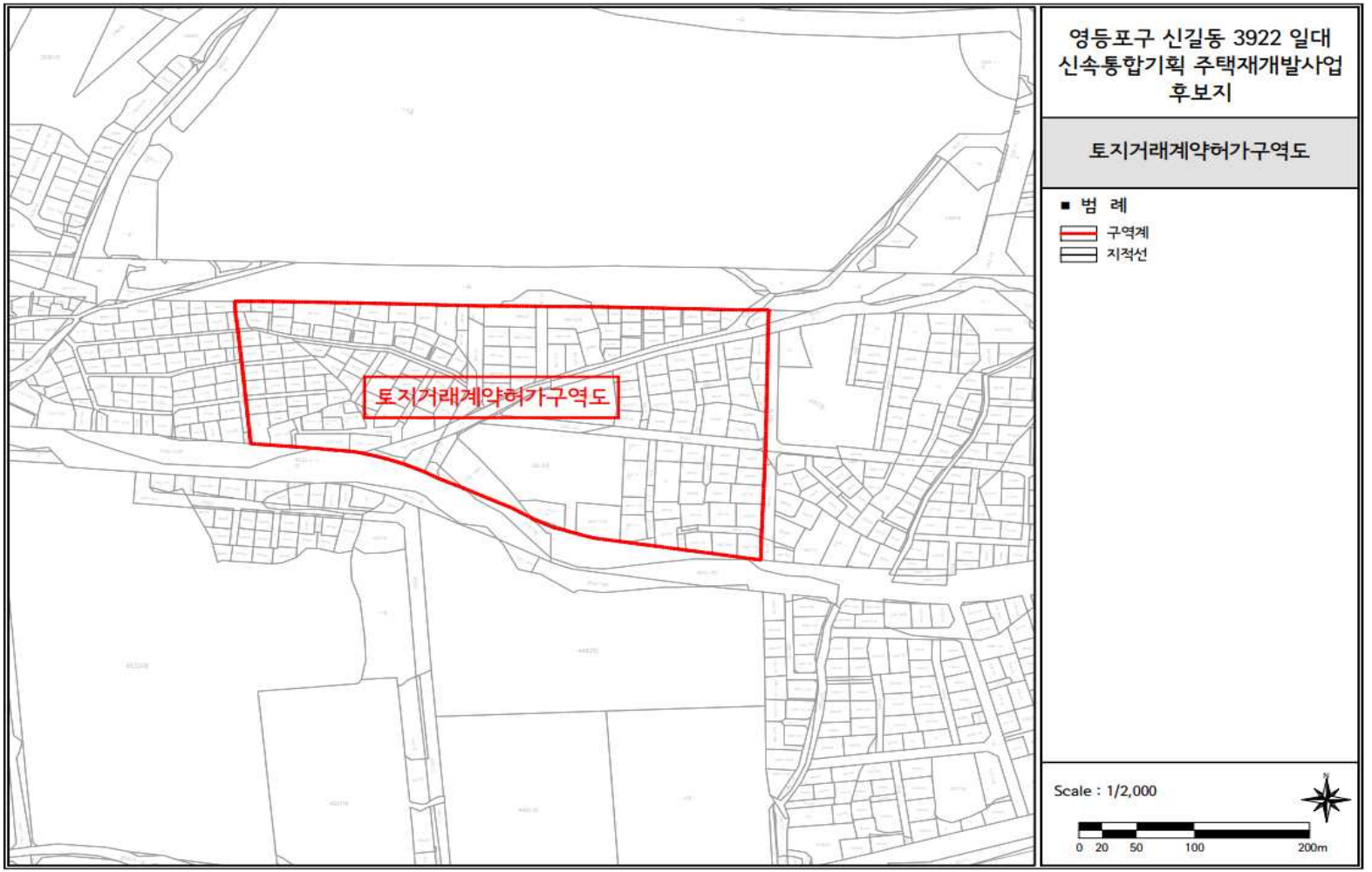


붙임 1-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신규 11개소(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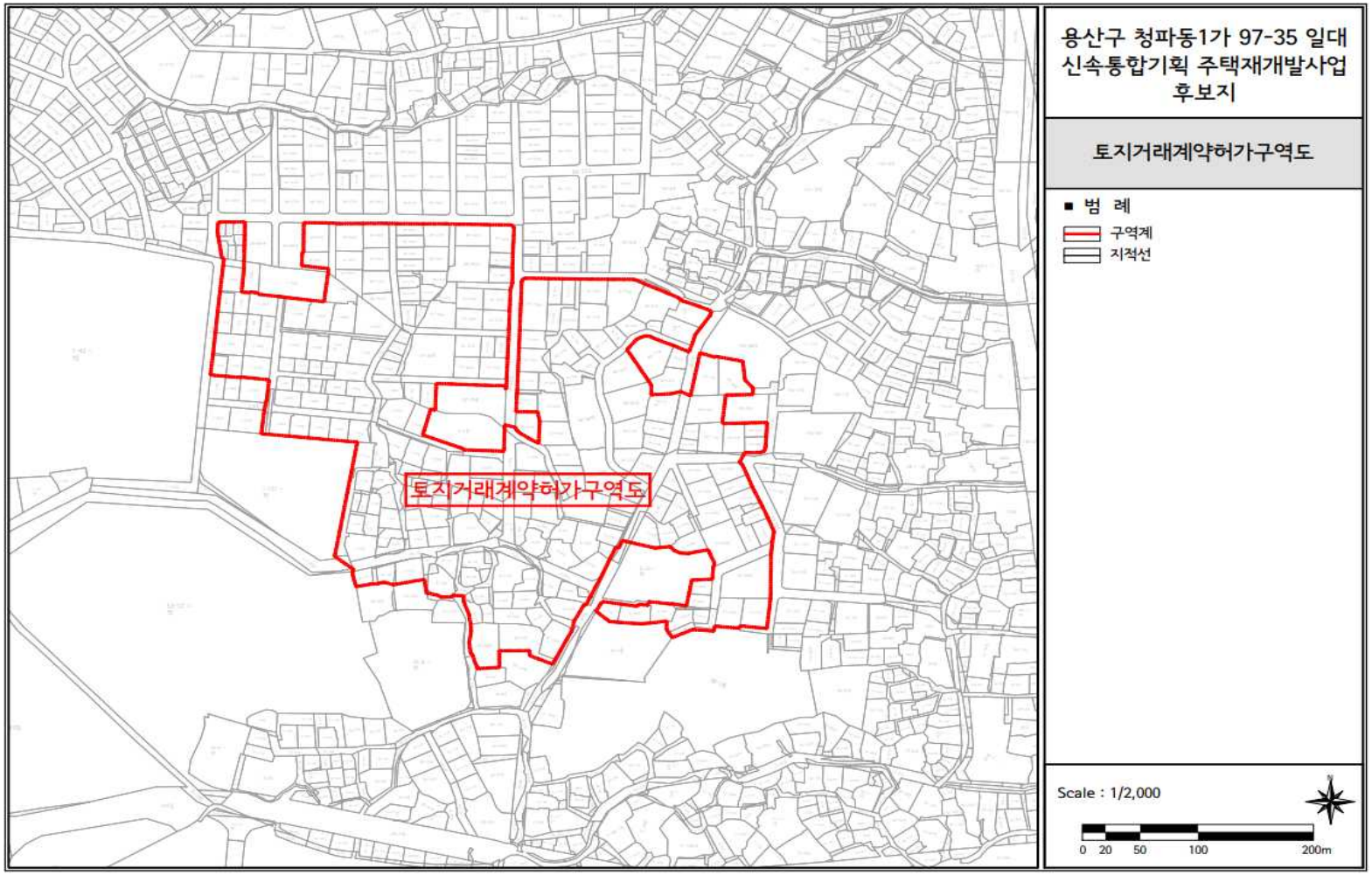
1. 금천구 독산동 38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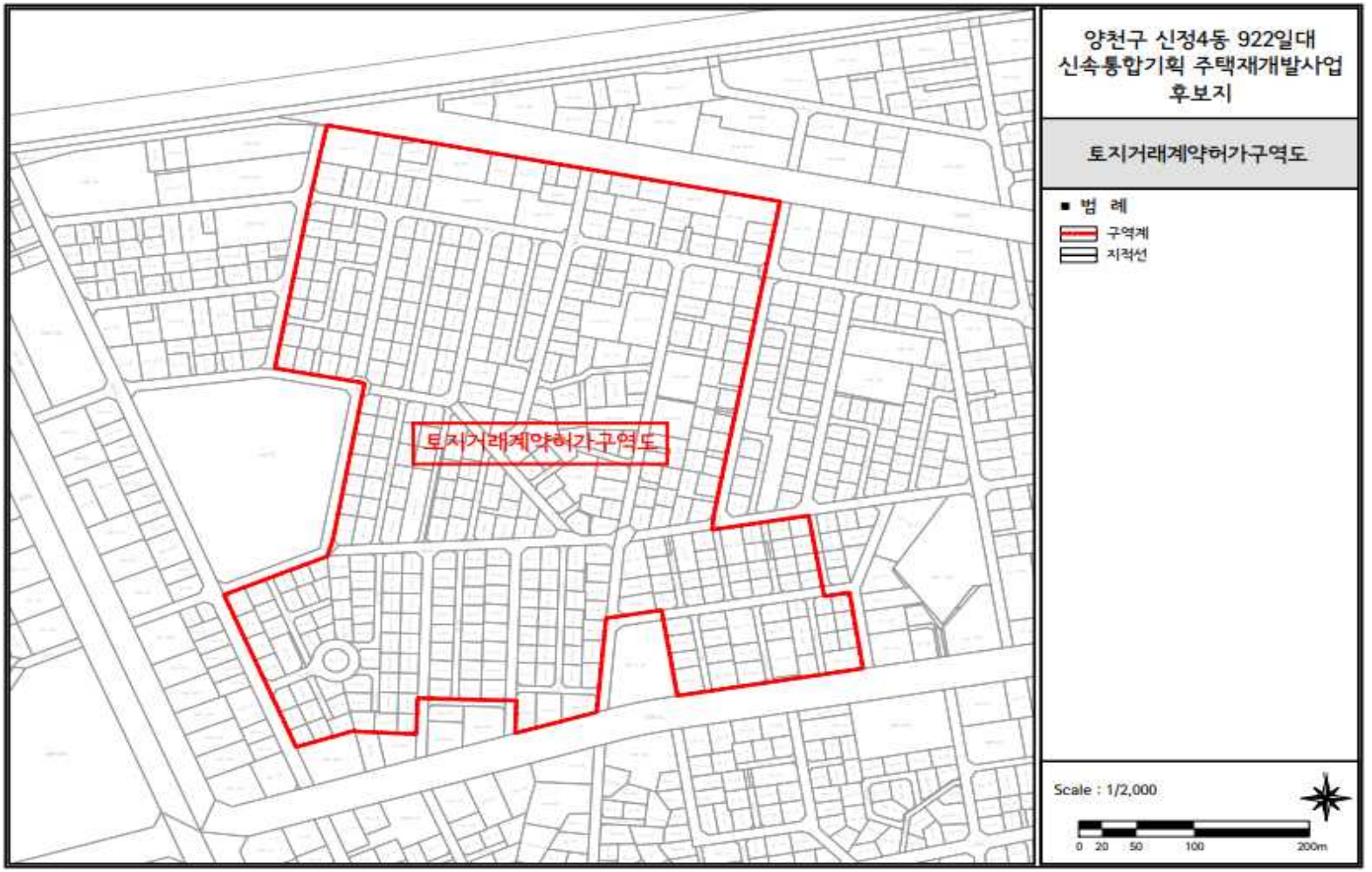
2.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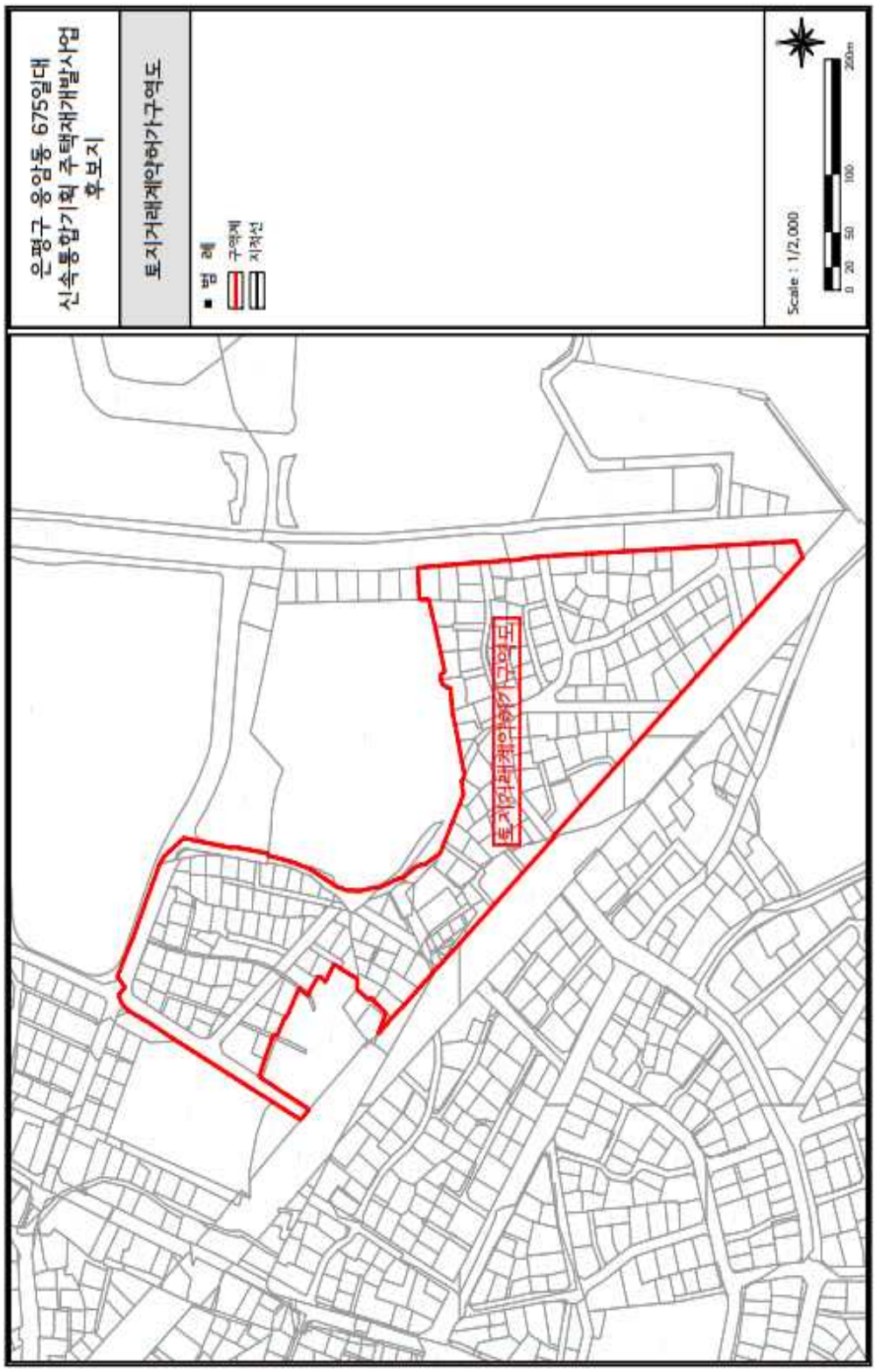


3.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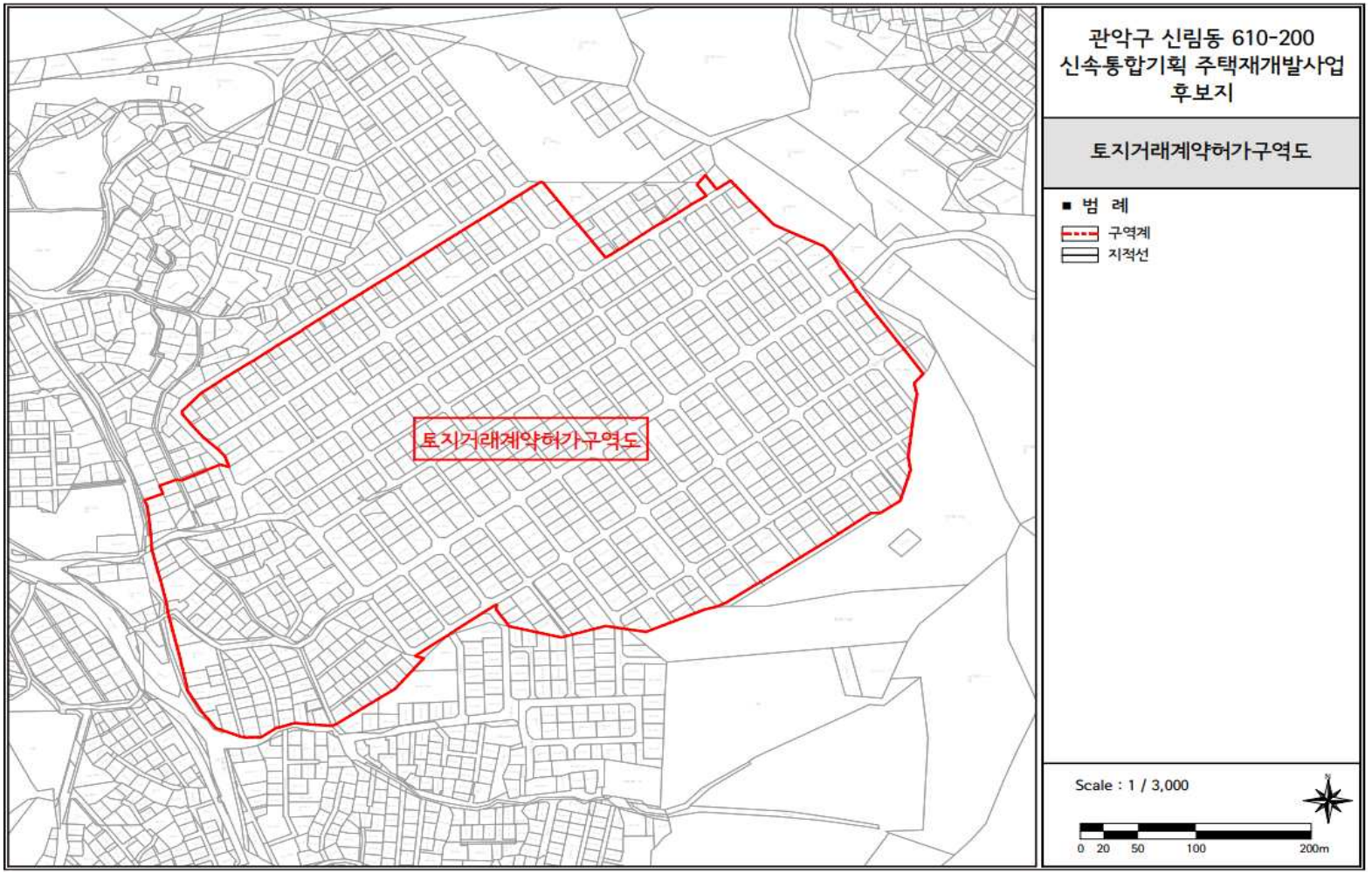
4. 양천구 신정동 922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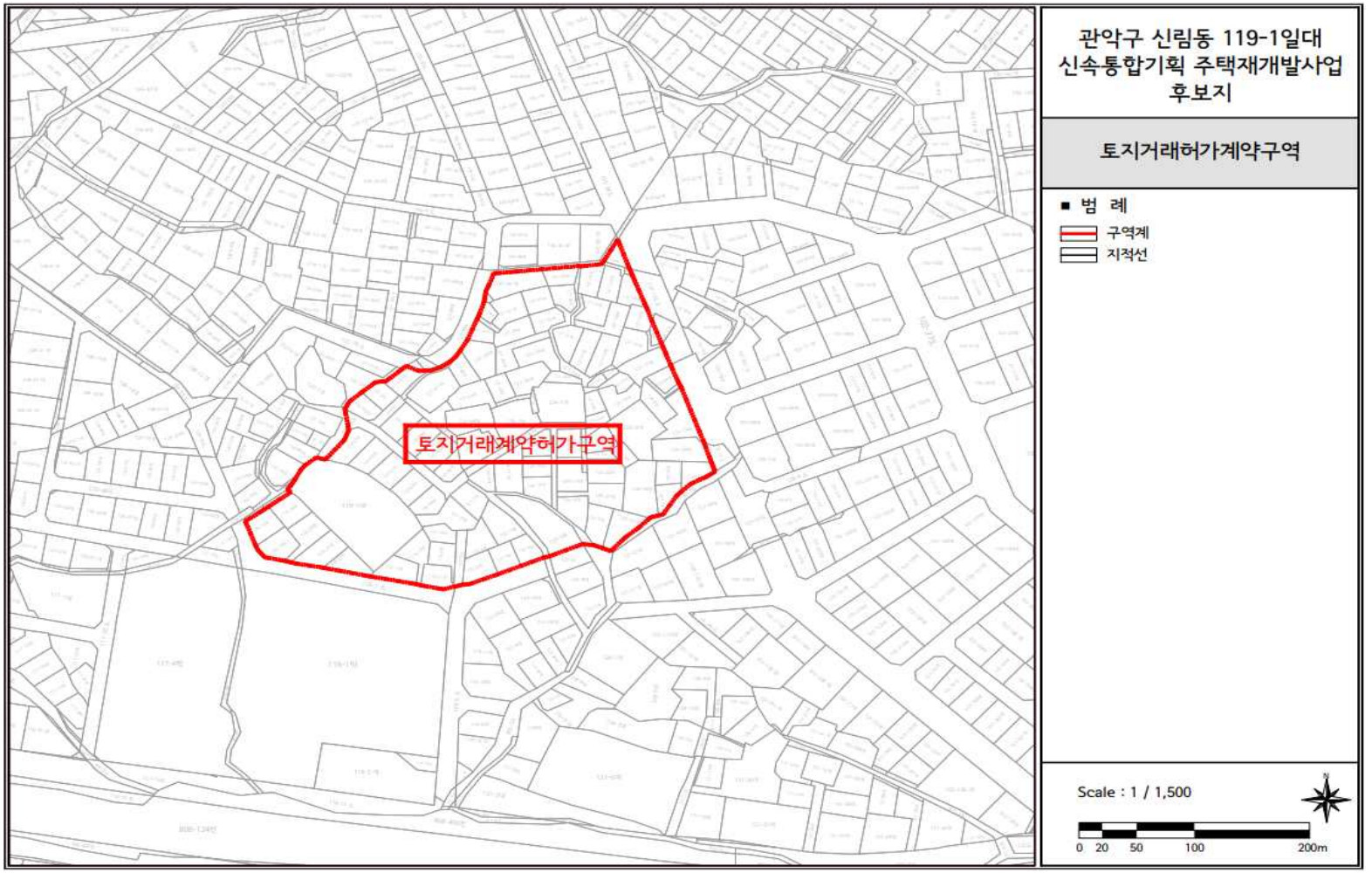


5. 은평구 응암동 675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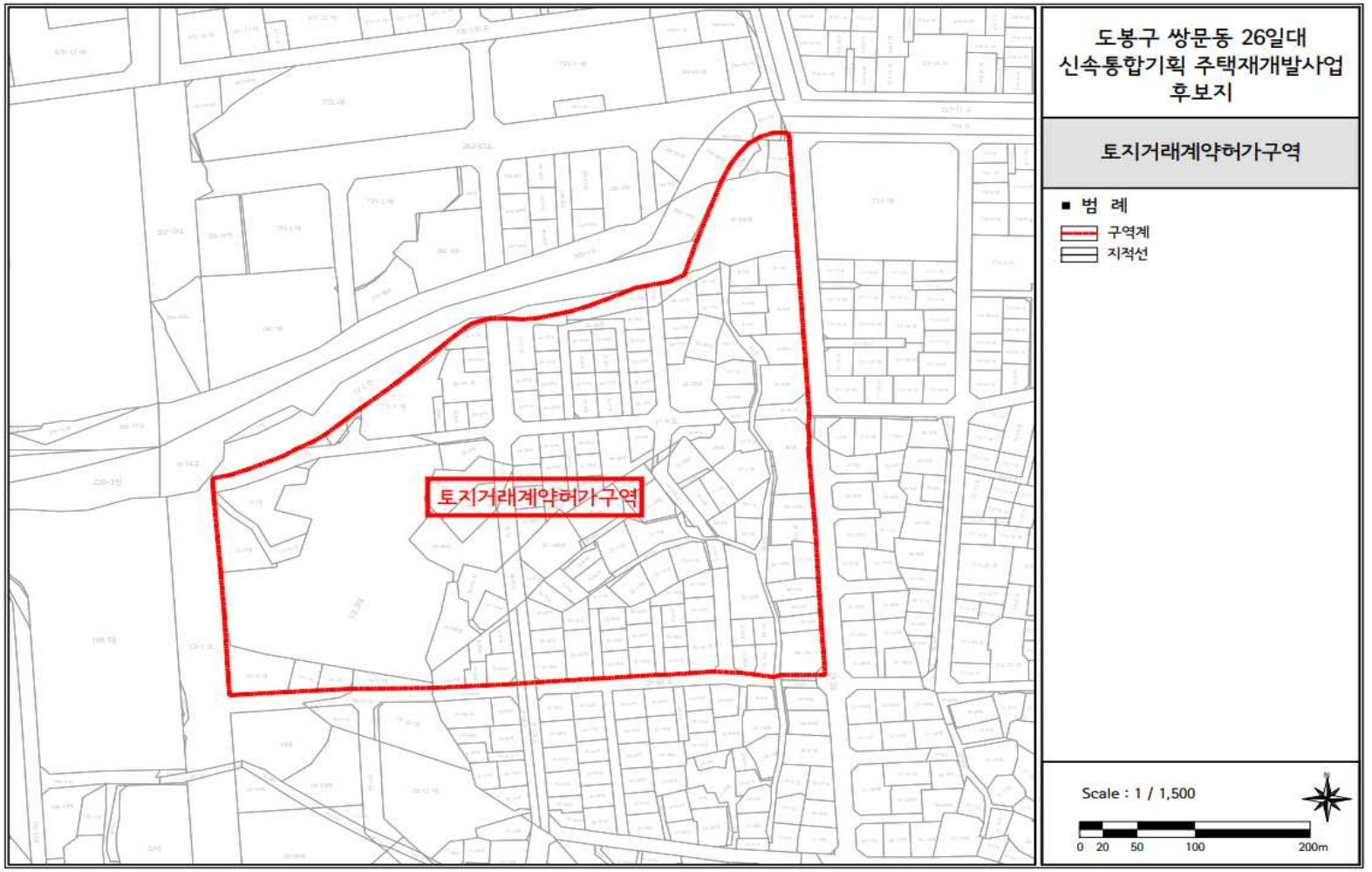
6. 관악구 신림동 610-200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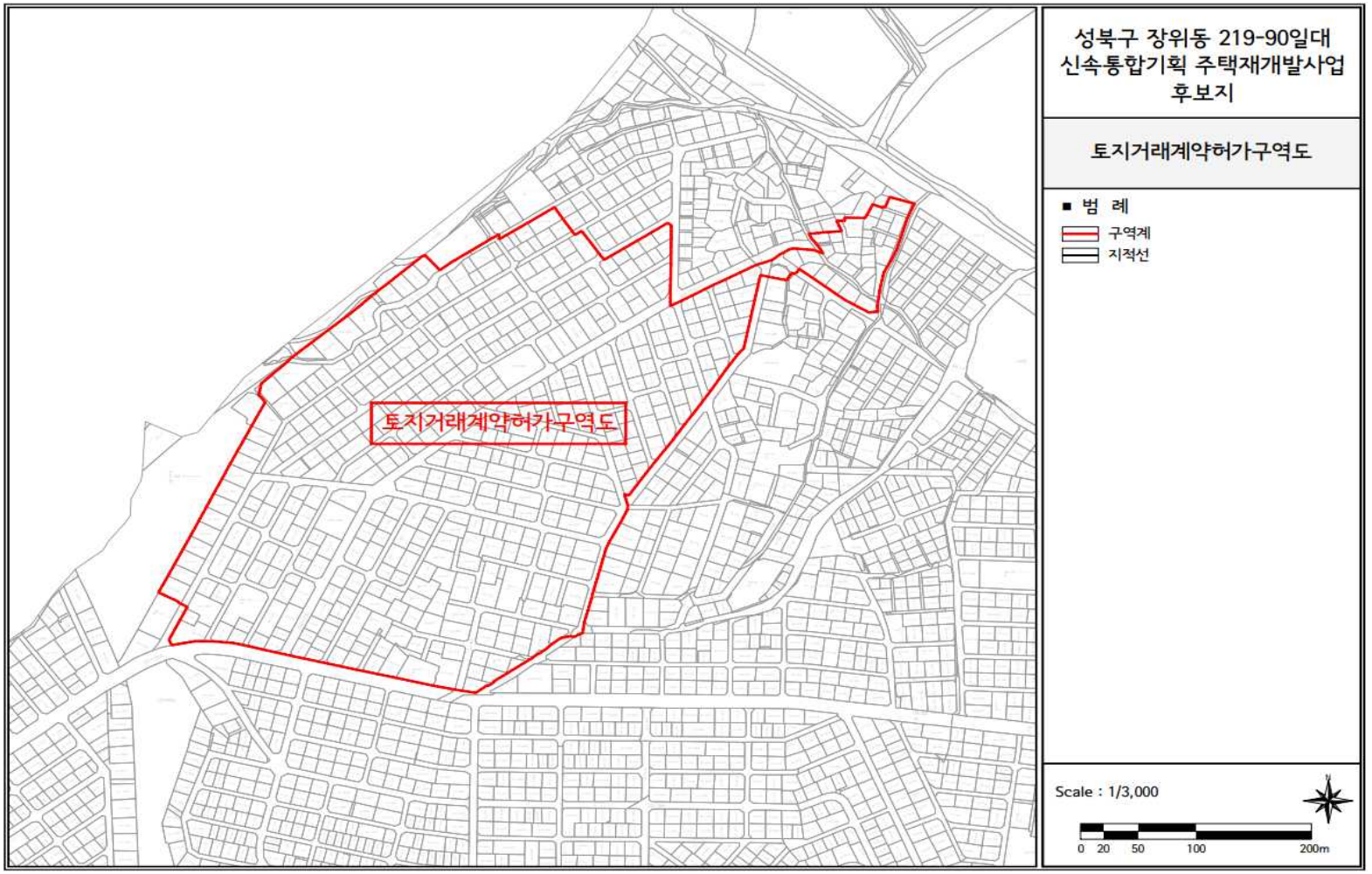
7. 관악구 신림동 119-1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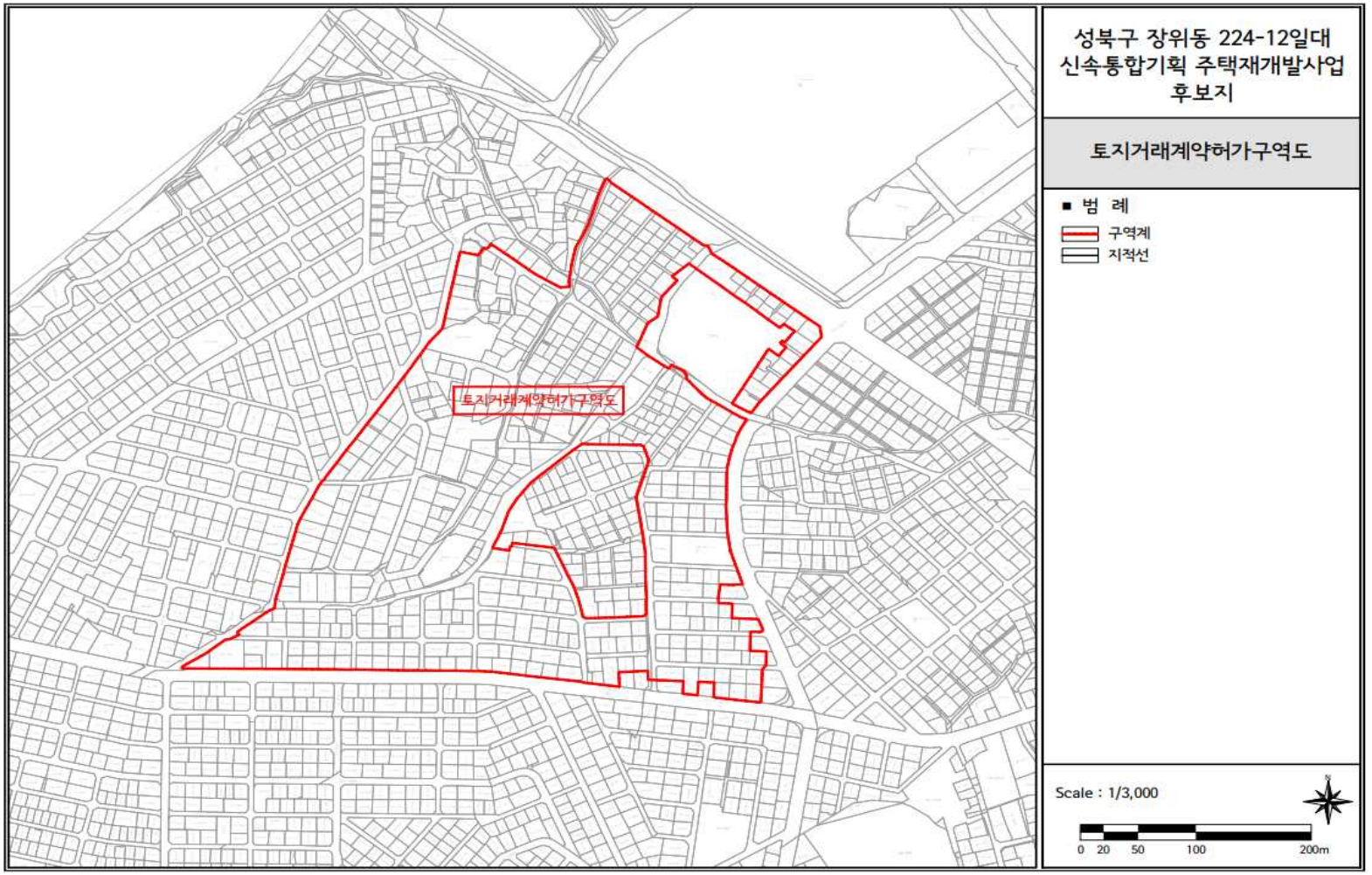
8. 도봉구 쌍문동 26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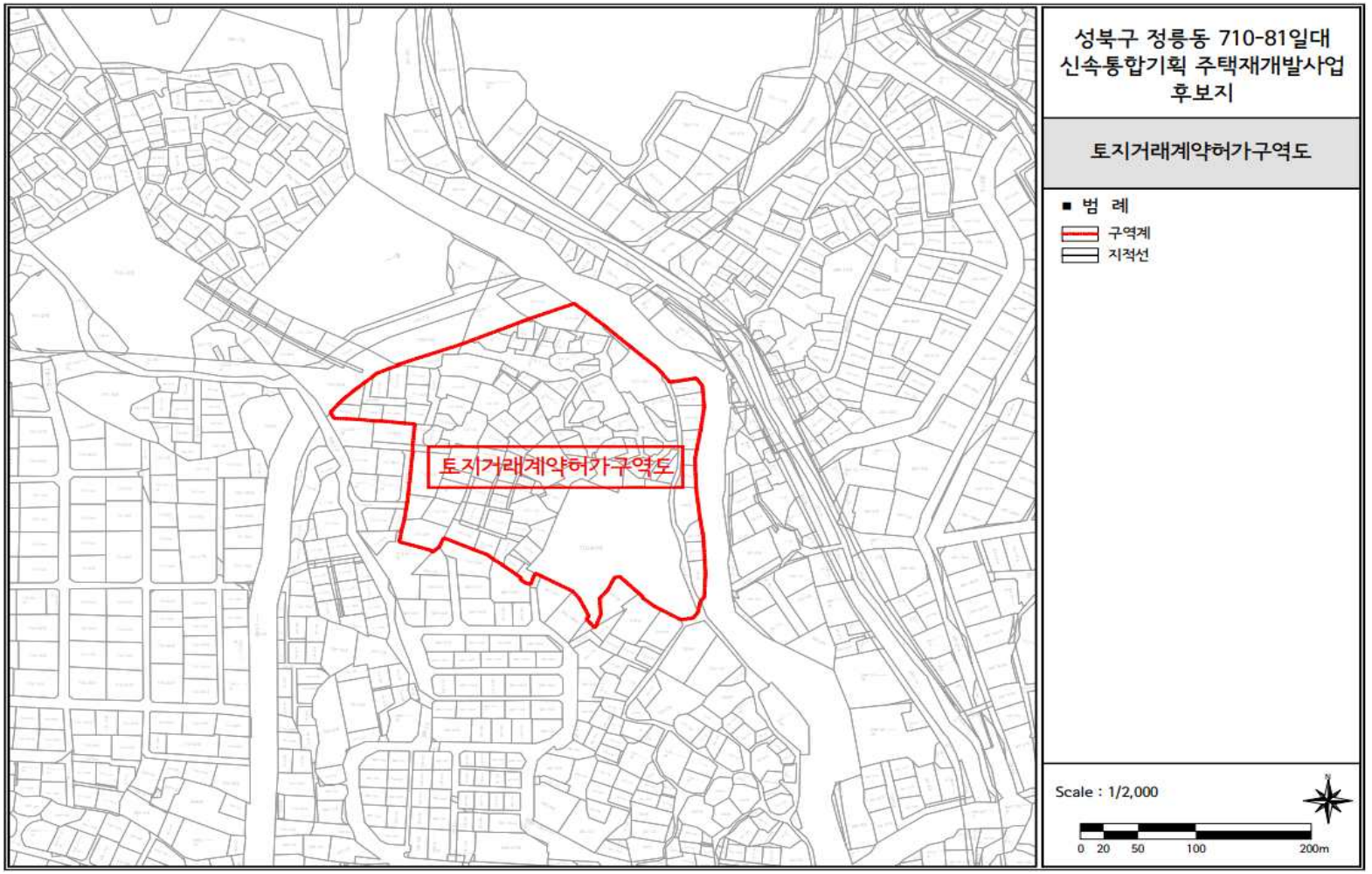
9. 성북구 장위동 219-90 일대



10. 성북구 장위동 224-12 일대



11. 성북구 정릉동 710-81 일대



서울특별시의회공고

◈ 서울특별시의회공고 제2025-393호

주식매각신고사항 공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및 제5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식매각공개목록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시의원	의회의원	유정인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진양제약	2,950	매각	21,945	2025-01-14	하나증권
본인	진양제약	4,250	매각	30,523	2025-01-15	하나증권
본인	진양제약	2,114	매각	14,457	2025-01-16	하나증권
본인	진양제약	2,873	매각	18,726	2025-01-17	하나증권
본인	진양산업	3,850	매각	35,031	2025-01-20	하나증권
본인	효성오앤비	5	매각	37	2025-01-20	하나증권
본인	코오롱모빌리티그룹	600	매각	1,744	2025-01-31	하나증권
본인	코오롱모빌리티그룹	3,550	매각	11,218	2025-02-03	하나증권
본인	코오롱모빌리티그룹	2,574	매각	8,118	2025-02-03	하나증권
본인	SG글로벌	3,060	매각	11,566	2025-02-04	하나증권
본인	진양산업	4,050	매각	39,949	2025-02-04	하나증권
본인	코오롱모빌리티그룹	1,100	매각	3,176	2025-02-04	하나증권
본인	SG글로벌	2,648	매각	10,062	2025-02-04	하나증권
본인	코오롱모빌리티그룹	8,003	매각	23,480	2025-02-04	하나증권
본인	진양산업	700	매각	8,215	2025-02-05	하나증권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시의원	의회의원	유정인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진양산업	30,561	매각	334,917	2025-02-06	하나증권
본인	진양산업	6,550	매각	72,652	2025-02-07	하나증권
본인	진양산업	1,009	매각	11,209	2025-02-07	하나증권
본인	코오롱모빌리티그룹	5,644	매각	16,678	2025-02-07	하나증권
본인	코오롱모빌리티그룹	7,259	매각	21,450	2025-02-07	하나증권
본인	대상홀딩스	7,000	매각	74,718	2025-02-11	하나증권
본인	대상홀딩스	7,700	매각	81,951	2025-02-11	하나증권
본인	대상홀딩스	535	매각	5,732	2025-02-13	하나증권
본인	코오롱모빌리티그룹	550	매각	1,545	2025-02-13	하나증권
본인	대상홀딩스	14,100	매각	152,970	2025-02-14	하나증권
본인	코오롱모빌리티그룹	5,550	매각	15,301	2025-02-14	하나증권
본인	대상홀딩스	3,300	매각	35,880	2025-02-14	하나증권
본인	대상홀딩스	11,606	매각	126,644	2025-02-17	하나증권
본인	코오롱모빌리티그룹	6,412	매각	17,036	2025-02-17	하나증권
본인	대상홀딩스	10,647	매각	116,733	2025-02-17	하나증권
본인	대상홀딩스	6	매각	65	2025-02-18	하나증권
본인	대상홀딩스	5,167	매각	56,418	2025-02-18	하나증권
본인	대상홀딩스	2,000	매각	22,060	2025-02-18	하나증권
본인	대상홀딩스	7,500	매각	87,262	2025-02-21	하나증권
본인	코오롱모빌리티그룹	5,376	매각	14,622	2025-02-21	하나증권
본인	코오롱모빌리티그룹	5,124	매각	13,624	2025-02-24	하나증권
본인	진양산업	12,210	매각	129,670	2025-02-25	하나증권
본인	진양산업	18,700	매각	191,375	2025-02-26	하나증권
본인	진양산업	5,700	매각	57,627	2025-02-26	하나증권
본인	진양산업	1,381	매각	14,148	2025-02-26	하나증권
본인	대상홀딩스	500	매각	6,315	2025-02-26	하나증권
본인	진양산업	8,110	매각	83,727	2025-02-26	하나증권
본인	진양산업	4,000	매각	40,952	2025-02-27	하나증권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시의원	의회의원	유정인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진양산업	8,716	매각	88,824	2025-02-27	하나증권
본인	대상홀딩스	8,818	매각	96,301	2025-02-27	하나증권
본인	대상홀딩스	2,250	매각	27,668	2025-02-28	하나증권
본인	대상홀딩스	11,400	매각	137,495	2025-03-04	하나증권
본인	대상홀딩스	10,100	매각	123,442	2025-03-05	하나증권
본인	진양화학	260	매각	1,170	2025-03-05	하나증권
본인	대상홀딩스	700	매각	8,452	2025-03-05	하나증권
본인	진양산업	900	매각	8,027	2025-03-10	하나증권
본인	대상홀딩스	11,142	매각	131,029	2025-03-11	하나증권
본인	진양산업	18,500	매각	158,212	2025-03-11	하나증권
본인	진양화학	12,271	매각	52,151	2025-03-11	하나증권
본인	진양산업	1,575	매각	13,828	2025-03-18	하나증권
본인	진양산업	4,235	매각	37,445	2025-03-19	하나증권
본인	진양산업	6,410	매각	56,324	2025-03-20	하나증권
본인	진양산업	1,600	매각	14,072	2025-03-20	하나증권
본인	대상홀딩스	11,816	매각	137,183	2025-03-21	하나증권
본인	대상홀딩스	1,373	매각	15,954	2025-03-21	하나증권
본인	진양산업	5,620	매각	46,134	2025-03-21	하나증권
본인	진양화학	3,111	매각	12,714	2025-03-21	하나증권
본인	대상홀딩스	4,760	매각	54,868	2025-03-24	하나증권
본인	진양산업	33,733	매각	249,050	2025-03-24	하나증권
본인	진양화학	10,818	매각	38,522	2025-03-24	하나증권
본인	대상홀딩스	7,401	매각	85,585	2025-03-24	하나증권
본인	진양산업	27,600	매각	201,894	2025-03-24	하나증권
본인	진양화학	11,738	매각	41,212	2025-03-24	하나증권
본인	진양산업	12,350	매각	91,760	2025-03-26	하나증권
본인	SG글로벌	5,000	매각	12,285	2025-03-28	하나증권
본인	진양산업	800	매각	6,032	2025-03-28	하나증권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시의원	의회의원	유정인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진양화학	2,000	매각	7,238	2025-03-28	하나증권
본인	진양화학	4,139	매각	14,834	2025-03-28	하나증권
본인	대상홀딩스	5,300	매각	70,018	2025-03-31	하나증권
본인	SG글로벌	10,579	매각	23,813	2025-03-31	하나증권
본인	대상홀딩스	13,004	매각	166,802	2025-03-31	하나증권
본인	진양산업	6,350	매각	46,805	2025-03-31	하나증권
본인	SG글로벌	14,333	매각	33,410	2025-03-31	하나증권
본인	대상홀딩스	4,986	매각	62,090	2025-03-31	하나증권
본인	SG글로벌	4,531	매각	10,276	2025-04-01	하나증권
본인	진양산업	2,000	매각	14,200	2025-04-01	하나증권
본인	진양산업	14,759	매각	105,408	2025-04-01	하나증권
본인	진양화학	4,000	매각	13,260	2025-04-01	하나증권
본인	진양산업	16,550	매각	113,681	2025-04-02	하나증권
본인	진양산업	11,341	매각	84,501	2025-04-03	하나증권
본인	진양화학	5,269	매각	17,919	2025-04-03	하나증권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시의원	의회의원	이승복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삼성전자우	220	매각	12,086	2025-04-21	우승석
배우자	노드메이슨	700	매각	3,360	2025-04-21	우승석
배우자	노드메이슨	5,300	매각	26,554	2025-04-25	우승석

서울특별시교육청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5-24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이유
   가.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나.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마련(안 제5조)
   나.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안 제4조)
   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위원 구성 조건 추가(안 제2조)
   라. 원활한 회의 추진을 위해 부위원장 근거 조항 마련(안 제2조 및 제3조)
   마. 소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구성 인원 변경(안 제8조)
   바. 위원회의 심의 대상 구체화(안 제9조)

3. 의견 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교육청 (담당부서: 교육시설안전과)
         O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 2가)
         O 연락처 : 전화 02-399-9655

○ 이메일 : black0@sen.go.kr

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행정정보-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전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교육시설물의 설계와 시공의 적정성 및 그 밖의 학교시설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학교시설 업무와 관련된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5급 이상인 자
2. 교육연구관(장학관)의 경력이 있는 자
3.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4. 대학에서 관련분야(건축, 토목, 구조, 설비, 환경)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5. 학교시설과 관련된 연구단체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직에 있는 자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7. 학교시설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 경력이 있는 자
8. 그 밖에 학교시설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
9.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직접 설계, 감리 또는 시공한 건설공사가 부실하거나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통보는 7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된다.
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심의 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물의 신축과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으로 종합계획수립이 필요한 증·개축 사업 설계의 타당성 및 시공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기본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건축 디자인에 대한 자문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4.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 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7.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및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의결한다.

1. 원안 채택: 설계 및 해당 의안에 결함이 없거나 그 결함이 경미하여 원안 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의결
2. 조건부 채택: 설계 및 해당 의안의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의결, 이 경우 기본설계를 심의할 때 실시설계의 전부 또는 부분을 심의받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말한다.
3. 재심의(부결): 설계 및 해당 의안의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 및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의안의 채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의결, 이 경우 위원회는 다른 대안을 채택하거나 그 밖의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자문사항 결과처리) 교육감은 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3조(비밀유지) 위원은 심의한 내용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

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세부 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성 명 : (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제(개)정안	수정요구안	사 유
제0조(00)	제0조(00)	○ –

2025년 월 일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5-25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에서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여 규칙명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일관성 확보

❍ 문해교육심사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로, 행정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난 균형 있는 참여체계 마련

2. 주요내용

❍ 명칭 정비를 통한 자치법규의 정확성 제고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문자해득교육'을 '문해교육'으로 명칭 변경하여, 관련 규칙명과 조문의 법령 체계 통일성과 최신성을 확보하고자 함

❍ 문해교육심사위원회 구성 개선
제5조(문해교육심사위원회 구성)에 따라 위원 수는 유지하되, 위촉직 위원의 참여 비율을 확대하여 현장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심의·자문 기능 구현

3.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교육청 (담당부서: 평생교육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 2가)

○ 연락처: 전화 02-399-9523, FAX 02-6973-9935

○ 이메일: lamer@sen.go.kr

다.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새소식/공지] -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교육청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을 “문해교육”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서울특별시 평생교육담당관”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제76조제2항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해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문해교육심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문해교육 ----------.
제5조(문해교육심사위원회 구성) ①·② (생 략)	제5조(문해교육심사위원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평생진로교육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서울특별시 평생교육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③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과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구 고 시

◈ 종로구고시 제2025-843호

도시계획시설(북한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08.0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5호(2019.04.18.)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03호(2024.02.29.)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종로구고시 제2020-93호(2020.06.29.)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종로구고시 제2024-54호(2024.5.16.)로 최종인가 고시된 북한산근린공원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고자 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종 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기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동 33-12 외 4필지
(변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동 33-12 외 3필지
나. 사업의 종류 · 명칭 및 사업면적
1)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명 칭: 북한산근린공원 조성사업
3) 사업내용: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및 조성
4) 사업면적: (기정) 4필지 1,202㎡ / (변경) 3필지 1,093㎡
다. 변경사유: 행정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사건토지(홍지동 36-19)의 사업시행지에서 제외
라.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마. 시설관리청: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최초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붙임참조
아.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종로구청 도시녹지과
자.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종로구청 도시녹지과(☎02-2148-28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관계도면: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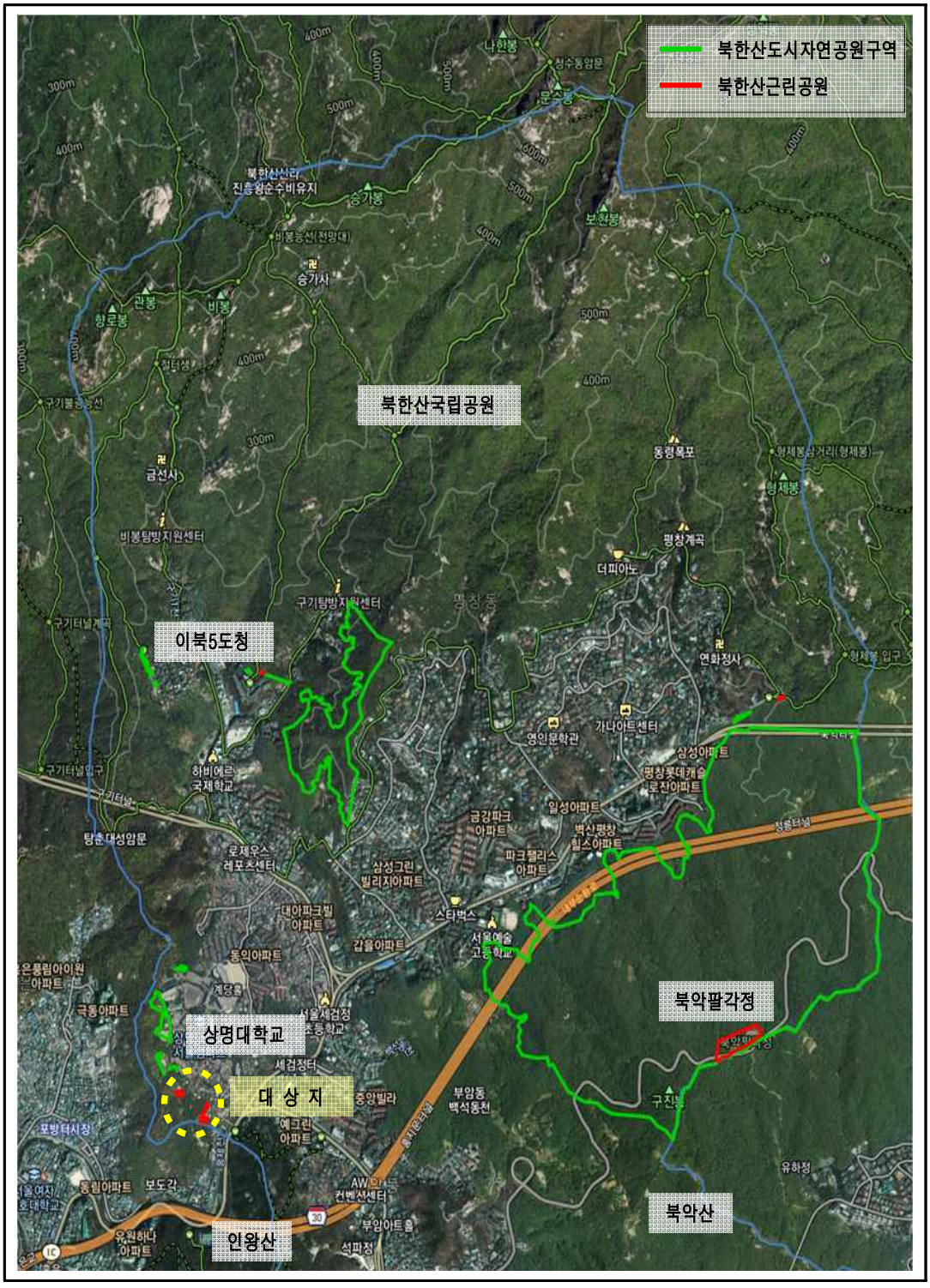
구분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공유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기정	계	5필지		1,491	1,202							
	1	홍지동 33-12	대	659	65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	홍지동 35-9	대	6	6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	홍지동 36-19	대	337	109	장*익	1/2	종로구 세*정로 20*-1*				
						고*선	1/2	종로구 세*정로 20*-1*	주식회사 **은행	중구 남*문로 8* (****리지점)	근저당권	
	4	홍지동 36-21	대	489	428	박*옥	단독	종로구 세*정로 20*-1*	남*희	종로구 홍*동 3*-2*	근저당권	
									주식회사 **은행	중구 태평로*가 1*0 (**동지점)	근저당권	
변경	계	4필지		1,154	1,093							
	1	홍지동 33-12	대	659	65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	홍지동 35-9	대	6	6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	홍지동 36-21	대	489	428	박*옥	단독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정로 20*-1*	남*희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동 3*-2*	근저당권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중구 태평로*가 1*0 (**동지점)	근저당권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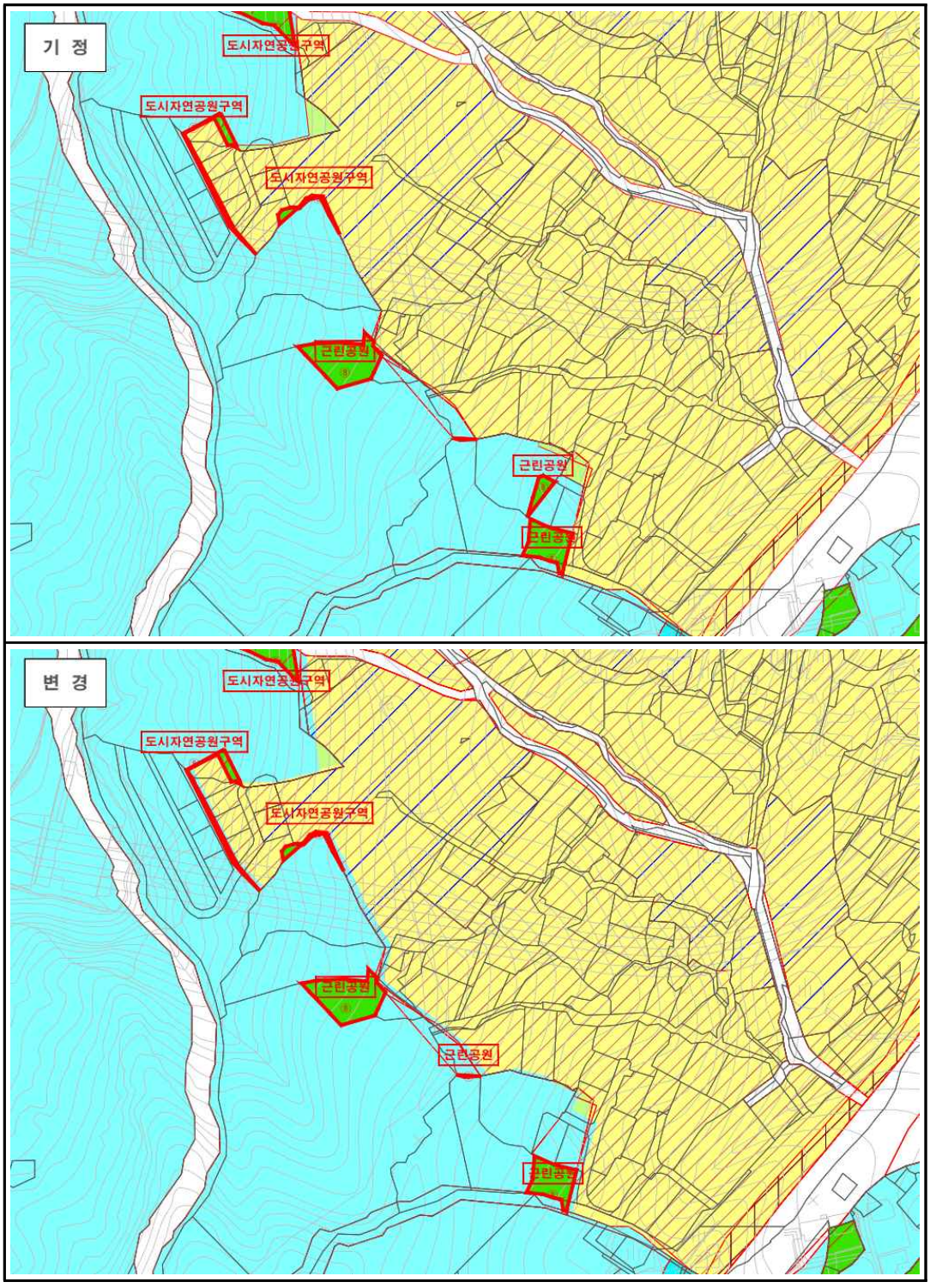
구분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전체면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성명	소유자 소유지분	소유자 주소	이해관계인 성명	이해관계인 주소	이해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기정	1	홍지동 33-12	무허가	벽돌조	110	11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무허가	판넬	16	16							
			무허가	판넬	2	2							
			화단	2*2.5	1식								
			장독대	5*3	1식								
			수목	감나무	H7.0*R35	1주							
			수목	감나무	H5.0*R30	2주							
			수목	감나무	H2.0*R8	1주							
			수목	앵두나무	H1.0*R5	1주							
			수목	오가피	H1.5*R8	1주							
			수목	대추나무	H2.0*R7	1주							
			수목	대추나무	H3.0*R20	1주							
			수목	살구나무	H6.0*R35	1주							
			수목	살구나무	H2.0*R10	1주							
			수목	뽕나무	H5.0*R8	1주							
			수목	음나무	H2.0*R4	2주							
			수목	자두나무	H3.0*R15	1주							
			수목	황매화	H1.0*W0.6	12㎡							
			수목	목단	H1.5*W1.0	1주							
			수목	명자나무	H1.5*W0.6	1주							
			수목	수수꽃다리	H1.0*R30	1주							
			수목	수수꽃다리	H1.5*R19	1주							
			수목	수수꽃다리	H1.0*W0.6	3㎡							
			수목	주목	H0.6*W0.6	1주							
			수목	사철나무	H1.0*R5	3주							
			수목	사철나무	H1.0*R14	2주							
			수목	사철나무	H1.0*W0.6	5㎡							
			수목	개나리	H1.0*W0.6	3㎡							
	2	홍지동 36-19	일반 건축물	철근 콘크리트구조	98.1	41.79	장*익	1/2	종로구 세*정로 20*-1*				
							고*선	1/2	종로구 세*정로 20*-18	주식회사 **은행	중구 남*문로 8* (****리지점)	근저당권	
	3	홍지동 36-21	무허가	-	37	16	박*옥	단독	종로구 세*정로 20*-1*				

구분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전체면적	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성명	소 유 자 소유지분	소 유 자 주소	이해관계인 성명	이해관계인 주소	이해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변경	1	홍지동 33-12	무허가	벽돌조	110	11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무허가	판넬	16	16							
			무허가	판넬	2	2							
			화단	2*2.5	1식	1식							
			장독대	5*3	1식	1식							
			수목	감나무	H7.0*R35	1주							
			수목	감나무	H5.0*R30	2주							
			수목	감나무	H2.0*R8	1주							
			수목	앵두나무	H1.0*R5	1주							
			수목	오가피	H1.5*R8	1주							
			수목	대추나무	H2.0*R7	1주							
			수목	대추나무	H3.0*R20	1주							
			수목	살구나무	H6.0*R35	1주							
			수목	살구나무	H2.0*R10	1주							
			수목	뽕나무	H5.0*R8	1주							
			수목	음나무	H2.0*R4	2주							
			수목	자두나무	H3.0*R15	1주							
			수목	황매화	H1.0*W0.6	12㎡							
			수목	목단	H1.5*W1.0	1주							
			수목	명자나무	H1.5*W0.6	1주							
			수목	수수꽃다리	H1.0*R30	1주							
			수목	수수꽃다리	H1.5*R19	1주							
			수목	수수꽃다리	H1.0*W0.6	3㎡							
			수목	주목	H0.6*W0.6	1주							
			수목	사철나무	H1.0*R5	3주							
			수목	사철나무	H1.0*R14	2주							
			수목	사철나무	H1.0*W0.6	5㎡							
			수목	개나리	H1.0*W0.6	3㎡							
	2	홍지동 36-21	무허가	-	37	16	박*옥	단독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정로 20*-1*				

위 치 도



지 형 도


기 정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근린공원
근린공원
변 경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근린공원
근린공원

◈ 노원구고시 제2025-56호

도시계획시설사업(불암산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 7. 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83호(2019. 8. 29.)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되어, 노원구고시 제2019-121호(2019. 10. 24.)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고 노원구고시 제2021-181호(2021. 11. 18.)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산30-20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사업(불암산 근린공원)에 대하여
2.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산30-20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2) 명　　칭 : 불암산 근린공원
  3) 사업내용 :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다. 사업면적 : 17,215㎡
라.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
마.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
바. 사업기간
  - 당초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간
  - 변경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10년간
사. 공시방법 : 구보 및 시보게재
아. 열람장소 : 노원구청 푸른도시과(☎02-2116-3943)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자 등 권리명세 : 따로 붙임.

토 지 조 서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불암산도시자연공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중계동 산30-20	임야	2,673	2,673	서울특별시					
2	중계동 산30-25	임야	1,352	1,352	서울특별시					
3	중계동 산139-4	임야	1,450	1,450	서울특별시					
4	하계동 산12-26	임야	805	805	서울특별시					
5	하계동 산12-25	임야	805	805	서울특별시					
6	하계동 3-3	임야	201	201	서울특별시					
7	하계동 3-12	대지	84	84	서울특별시					
8	하계동 9-5	대지	263	263	서울특별시					
9	하계동 9-6	전	335	335	서울특별시					
10	하계동 산12-17	임야	361	361	서울특별시					
11	하계동 9-8	전	559	559	서울특별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및 권리의 종류 내용	
12	하계동 13-3	전	34	34	서울특별시					
13	하계동 산12-27	임야	812	812	서울특별시					
14	하계동 9-11	전	125	125	서울특별시					
15	하계동 35-2	답	17	17	서울특별시					
16	하계동 산16-76	임야	681	681	서울특별시					
17	하계동 산16-66	임야	1,593	1,593	서울특별시					
18	상계동 72-183	대	12	12	서울특별시					
19	중계동 산49	임야	1,091	1,091	서울특별시					
20	중계동 산94	임야	3,962	3,962	서울특별시					

◈ 노원구고시 제2025-57호

도시계획시설사업(불암산 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 7. 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93호(2020. 5. 14.)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되어, 노원구고시 제2020-61호(2020. 6. 18.)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고 노원구고시 제2021-182호(2021. 11. 18.) 및 노원구고시 제2022-78호(2022. 5. 26.)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63-1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불암산 근린공원)에 대하여
2.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63-1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2) 명　　칭 : 불암산 근린공원
  3) 사업내용 :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다. 사업면적 : 14,844㎡
라.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
마.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
바. 사업기간
  - 당　초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간
  - 변　경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10년간
사. 고시방법 : 구보 및 시보게재
아. 열람장소 : 노원구청 푸른도시과(☎02-2116-3943)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자 등 권리명세 : 따로 붙임.

토지조서

□ 사 업 명 : 불암산 근린공원 조성
□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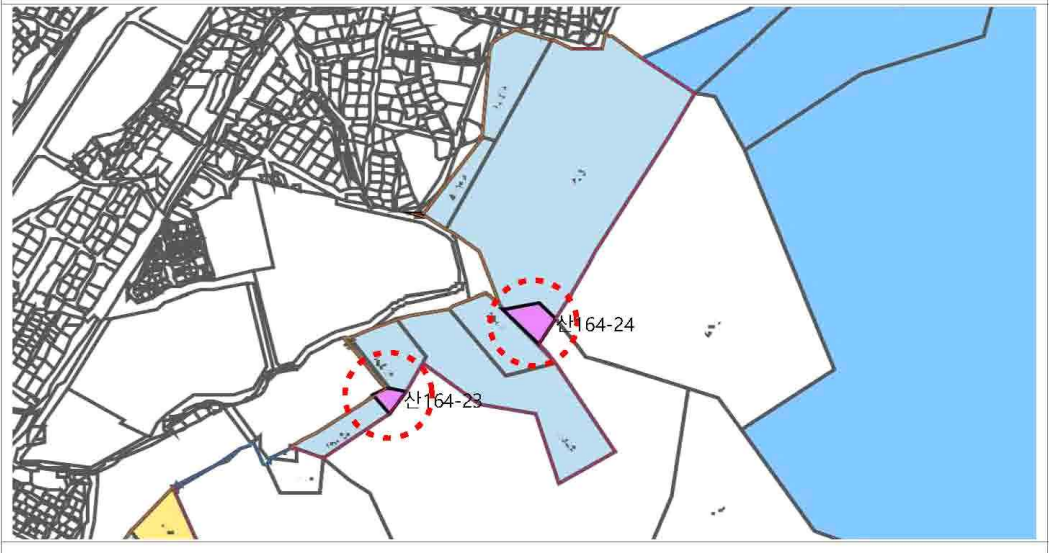
연번	소재지번	지목	현실적인 이용상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지분)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12개 필지			14,844.0	14,844.0						
1	노원구 중계동 363-13	전		1,215.8	1,215.8	서울특별시					
2	노원구 중계동 363-12	과수원		7,584.2	7,584.2	서울특별시					
3	노원구 중계동 산127-4	임야		661.0	661.0	서울특별시					
4	노원구 하계동 5-2	전		1,378.0	1,378.0 (1/2)	서울특별시					
5	노원구 하계동 5-1	임야		195.0	195.0	서울특별시					
6	노원구 하계동 5-30	전		438.0	438.0	서울특별시					
7	노원구 하계동 5-29	전		251.0	251.0	서울특별시					

연번	소재지번	지목	현실적인 이용상황	공부면적(㎡)	편입면적(㎡)(지분)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및 권리의 종류 내용	
8	노원구 하계동 5-23	전		90.0	90.0	서울특별시					
9	노원구 하계동 4-2	대		1.0	1.0	서울특별시					
10	노원구 하계동 산12-28	임야		1,314.0	1,314.0	서울특별시					하계동 산12-2 에서 분할
11	노원구 상계동 산164-23	임야		461.0	461.0	서울특별시					상계동 산164-1에서 분할
	노원구 상계동 산164-24	임야		1,255.0	1,255.0						

보상용지도



하계동 산12-28 외 9필지



상계동 산164-23 외 1필지

◈ 노원구고시 제2025-59호

도시계획시설(학교:태강삼육초등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355호(1983.07.15.)로 최초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442호(2007.12.06.)로 건축범위 일괄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89호(2008.06.05.)로 변경결정, 노원구고시 제60호(2008.10.23.)호로 변경결정 된 노원구 공릉동 26-39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태강삼육초등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노 원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을 위해 도시계획시설(학교:태강삼육초등학교)의 건축범위(건폐율)을 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학교	초등학교	노원구 공릉동 26-39 일대	11,014	-	11,014	서고시 제355호 (1983. 7. 15.)	태강삼육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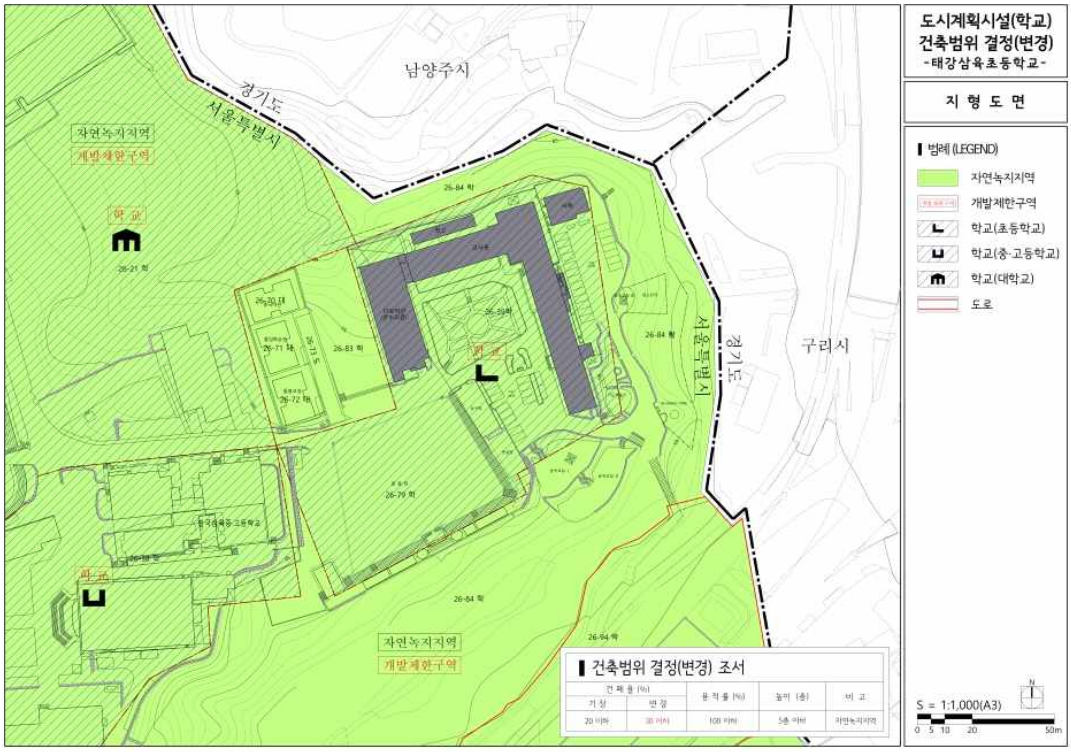
- 건축범위 결정(변경)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비고
기정	변경			
20 이하	30 이하	100 이하	5층 이하	- 자연녹지지역

- 변경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학교	건폐율 변경 - 20%이하 → 30%이하(증10%)	〈급식실 및 체육관 신축〉 열악한 급식환경과 체육교육 환경 개선 〈기존건물 철거〉 창고건물 철거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본 결정(변경)은 건축범위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선형 변경 없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등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노원구청 도시관리과(☎02-2116-386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공간포털(https://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

◈ 서대문구고시 제2025-83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96호(2001.12.05.)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최초 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11호(2024.10.31.)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90-1 일대 도시계획시설사업(중앙여중·고 다목적관 증축공사)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건축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6월 12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90-1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2) 사업의 명칭 : 중앙여자중·고등학교 다목적관 증축공사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1) 건축면적 및 연면적

구분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추계예술대학교	12,035.04	13,049.23	56,997.71	60,459.94	46.633.46	48,891.93	
증·감	증) 1.014.19		증) 3,462.23		증) 2,258.47		

2) 건폐율 및 용적률

구분	건폐율(%)		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추계예술대학교	26.32	28.57	102.09	107.04	
증·감	증) 2.25		증) 4.95		

3) 변경 건축물 조서

연번	건물번호	건물명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연면적(㎡)		층수(지하/지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	15	신관	269.45	307.32	1,285.68	1,361.42	1,040.88	1,116.62	1/4	1/4	연결통로 증축
2	16	쓰레기하치장	23.40	-	23.40	-	23.40	-	0/1	-	철거
3	17	다목적관	-	999.72	-	3,409.89	-	2,206.13	-	1/4	금회증축
합계			292.85	1,307.04	1,309.08	4,771.31	1,064.28	3,322.75			
증·감			증) 1,014.19		증) 3,462.23		증) 2,258.47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학교법인 추계학원
-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11가길 7 (중앙여자중·고등학교)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6.06.25.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공부상 면적	결정 면적		성명	주소	권리종류 및 내용
1	서대문구 북아현동	190-1	학교용지	45,573.7	45,573.7	학교법인 추계학원	-	-	-
2		251-89	도로	51.0	5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	-
3		251-94	도로	55.7	55.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	-
합 계				45,680.4	5,680.4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위치도 및 인가도면 : 서대문구청 건축과 비치도면과 같음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 건축과(☎02-330-19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초구고시 제2025-86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108호(1975.06.23.)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로 결정되고, 서초구고시 제2022-210호(2022.11.24.), 서초구고시 제2023-56호(2023.4.20.) 및 서초구고시 제2024-218호(2024.11.21.)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되었으며, 서초구고시 제2025-1002호(2025.5.8.)로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공고 된 반포동 19-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의거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12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9-3, 19-12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명칭 : 호남선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증축 및 대수선)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전체 면적 및 규모

구 분	내 용							비 고
지역,지구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여객자동차정류장							-
대지면적	59,149.40 ㎡							-
건축규모	지하 5층, 지상 32층							-
주 용 도	운수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등							-
구 분	기존	변경인가1차 (2022.11)	변경인가2차 (2023.4)	변경인가3차 (2024.11)	변경인가4차 (금회)	증 감-1 (금회-기존)	증 감-2 (금회-인가3)	-
건축면적	25,738.34㎡	25,738.34㎡	25,738.34㎡	25,798.69㎡	25,738.34㎡	-	-60.35㎡	금회변경
연 면 적	288,322.22㎡	288,048.33㎡	287,976.86㎡	288,174.45㎡	287,986.90㎡	-335.32㎡	-187.55㎡	금회변경
용 적 률 산정연면적	162,658.92㎡	162,410.40㎡	162,335.89㎡	162,533.48㎡	162,345.93㎡	-312.99㎡	-187.55㎡	금회변경
건 폐 율	43.51%	43.51%	43.51%	43.62%	43.51%	-	-0.11 %	금회변경
용 적 율	275.00%	274.58%	274.45%	274.78%	274.47%	- 0.53 %	-0.31 %	금회변경
주차대수	법정(최고) : 2,475 대							금회 지하2층 10대 증가
	계획:2,459대	계획:2,438대	계획:2,435대	계획:2,425대	계획:2,435대	- 24 대	+ 10 대	

구 분	내 용							비 고
호텔 객실수	379실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
조 경	법정 : 8,872.41 ㎡ (15.00 %)							금회변경
	계획) 9,282.92㎡ (15.69%)	계획) 9,282.92㎡ (15.69%)	계획) 9,243.22㎡ (15.63%)	계획) 9,178.61㎡ (15.52%)	계획) 9,275.92㎡ (15.68%)	-7.00㎡ (-0.01%)	+97.31㎡ (+0.16%)	
공개공지	법정 : 5,914.94 ㎡ (10.00 %)							금회변경
	계획) 5,953.12㎡ (10.06%)	계획) 5,953.12㎡ (10.06%)	계획) 5,953.12㎡ (10.06%)	계획) 5,958.63㎡ (10.07%)	계획) 5,953.12㎡ (10.06%)	-	-5.51㎡ (-0.01%)	

- 층별 면적

층 별	층 별 면 적 (㎡)							비 고
	기 존	경인가1차 (2022.11)	경인가2차 (2023.4)	변경인가3차 (2024.11)	변경인가4차 (금 회)	증 감-1 (금회-기존)	증 감-2 (금회-인가3)	
지하 5층	7,303.69	7,303.69	7,303.69	7,303.69	7,303.69	0.00	0.00	금회 변경없음
지하 4층	23,750.79	23,750.79	23,750.79	23,750.79	23,750.79	0.00	0.00	
지하 3층	29,043.09	29,043.09	29,043.09	29,043.09	29,043.09	0.00	0.00	
지하 2층	29,197.33	29,197.33	29,197.33	29,197.33	29,197.33	0.00	0.00	
지하 1층	35,050.21	35,024.84	35,027.88	35,027.88	35,027.88	-22.33	0.00	
지하 1층중층	913.18	913.18	913.18	913.18	913.18	0.00	0.00	
지하층 소계	125,258.29	125,232.92	125,235.96	125,235.96	125,235.96	-22.33	0.00	
지상 1층	25,395.79	25,278.82	25,247.55	25,435.10	25,247.55	-148.24	-187.55	증축 (인가취하)
지상 1층중층	9,505.78	9,399.60	9,354.08	9,364.12	9,364.12	-141.66	0.00	금회 변경없음
지상 2층	12,524.57	12,499.20	12,501.48	12,501.48	12,501.48	- 23.09	0.00	
지상 3층	12,244.73	12,244.73	12,244.73	12,244.73	12,244.73	0.00	0.00	
지상 4층	12,031.86	12,031.86	12,031.86	12,031.86	12,031.86	0.00	0.00	
지상 5층	11,913.97	11,913.97	11,913.97	11,913.97	11,913.97	0.00	0.00	
지상 6층	10,789.06	10,789.06	10,789.06	10,789.06	10,789.06	0.00	0.00	
지상 7층	10,500.65	10,500.65	10,500.65	10,500.65	10,500.65	0.00	0.00	
지상 8층	9,732.77	9,732.77	9,732.77	9,732.77	9,732.77	0.00	0.00	
지상 9층	9,580.07	9,580.07	9,580.07	9,580.07	9,580.07	0.00	0.00	
지상 10층	9,586.51	9,586.51	9,586.51	9,586.51	9,586.51	0.00	0.00	
지상 11층	5,017.50	5,017.50	5,017.50	5,017.50	5,017.50	0.00	0.00	
지상 12층	1,172.09	1,172.09	1,172.09	1,172.09	1,172.09	0.00	0.00	
지상 13층	1,172.09	1,172.09	1,172.09	1,172.09	1,172.09	0.00	0.00	
지상 14층	1,172.09	1,172.09	1,172.09	1,172.09	1,172.09	0.00	0.00	
지상15~30층	18,753.44	18,753.44	18,753.44	18,753.44	18,753.44	0.00	0.00	

층 별	층별 면적 (㎡)							비 고
	기 존	경인가1차 (2022.11)	경인가2차 (2023.4)	변경인가3차 (2024.11)	변경인가4차 (금 회)	증 감-1 (금회-기존)	증 감-2 (금회-인가3)	
지상 31층	1,172.09	1,172.09	1,172.09	1,172.09	1,172.09	0.00	0.00	
지상 32층	798.87	798.87	798.87	798.87	798.87	0.00	0.00	
지상층 소계	163,063.93	162,815.41	162,740.90	162,938.49	162,750.94	-312.99	-187.55	
총 계	288,322.22	288,048.33	287,976.86	288,174.45	287,976.86	-335.32	-187.55	

※ 지상층 면적은 용적률산정시 제외면적 포함 임.
(지상2층 캐노피면적(주차공간) 198.88㎡, 지상12층 피난안전구역 206.13㎡)

– 시설별 면적

구분	시설용도		기 존	변경인가1차 (2022.11)	변경인가2차 (2023.4)	변경인가3차 (2024.11)	변경인가4차 (금 회)	증감(㎡) (금회 -기존)	증감(㎡) (금회 -인가2)	시설내비율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기 존	금회
운수시설	주시설	대합실	9,796.35	9,812.76	9,812.76	9,799.99	9,799.99	+3.64	0.00	77.05	77.31
		승강장1) (승차 대기장) 실내	1,436.73	1,436.73	1,436.73	1,436.73	1,436.73	0.00	0.00		
		승강장1) (승차 대기장) 실외	536.30	536.30	536.30	536.30	536.30	0.00	0.00		
		정류장소2) (승하차장) 실내	117.23	117.23	117.23	117.23	117.23	0.00	0.00		
		정류장소2) (승하차장) 실외	2,224.42	2,224.42	2,224.42	2,224.42	2,224.42	0.00	0.00		
		사무실	1,428.32	1,428.32	1,428.32	1,539.23	1,539.23	+110.91	0.00		
		세차장3) 실내	265.74	265.74	265.74	265.74	265.74	0.00	0.00		
		세차장3) 실외	301.23	301.23	301.23	301.23	301.23	0.00	0.00		
		박차장4)	13,995.69	13,995.69	13,995.69	13,995.69	13,995.69	0.00	0.00		
		전체공유	3,621.56	3,621.56	3,621.56	3,621.56	3,621.56	0.00	0.00		
	부대 시설	정비고	927.07	927.07	927.07	927.07	927.07	0.00	0.00	10.43	10.43
		주유소	210.69	210.69	210.69	210.69	210.69	0.00	0.00		
		부속시설 (매표소 등)	3,385.59	3,385.59	3,385.59	3,385.59	3,385.59	0.00	0.00		
		가스정압실	42.00	42.00	42.00	42.00	42.00	0.00	0.00		
	편익 시설	소화물취급소	164.38	164.38	164.38	164.38	164.38	0.00	0.00	12.52	12.26
		식당,소매 등	5,314.75	5,299.75	5,299.75	5,201.61	5,201.61	-113.14	0.00		

구분	시설용도	기 존	변경인가1차 (2022.11)	변경인가2차 (2023.4)	변경인가3차 (2024.11)	변경인가4차 (금 회)	증감(㎡) (금회 -기존)	증감(㎡) (금회 -인가2)	시설내비율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기 존	금회
	운수시설 소계	43,768.05	43,769.46	43,769.46	43,769.46	43,769.46	+1.41	0.00	100.00	100.00
비운수시설	숙박시설	43,588.74	43,576.32	43,575.31	43,575.31	43,575.31	-13.43	0.00	16.66	16.68
	판매시설	143,458.56	143,470.75	143,221.53	143,691.43	143,343.20	-115.36	-348.23	54.84	54.86
	문화 및 집회	3,023.71	3,023.71	3,023.71	3,023.71	3,023.71	0.00	0.00	1.16	1.16
	업무시설	3,583.76	3,583.76	3,506.28	3,506.28	3,506.28	-77.48	0.00	1.37	1.34
	운동시설	9,954.44	9,954.44	9,954.44	9,954.44	9,954.44	0.00	0.00	3.81	3.81
	자동차관련시설	123.93	123.93	123.93	123.93	123.93	0.00	0.00	0.05	0.05
	근린생활시설	654.72	654.72	910.96	910.96	910.96	256.24	0.00	0.25	0.35
	주차장	57,223.95	56,948.88	56,948.88	56,676.57	56,837.25	-386.70	+160.68	21.86	21.75
	소 계	261,611.81	261,336.51	261,265.04	261,462.63	261,275.08	-336.73	-187.55	100.00	100.00
합 계 (운수+비운수)		305,379.86	305,105.97	305,034.50	305,232.09	305,044.54	-335.32	-187.55		
합계-1 (옥외시설제외)		288,322.22	288,048.33	287,976.86	288,174.45	287,986.90	-335.32	-187.55		

※ 승강장, 정류장소, 박차장, 세차장 실외면적은 시설면적에 산입 되나, 건물연면적 산정시 제외. (주 1,2,3,4)
※ 운수시설 면적은 '여객자동처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7' 에 따른 별표의 시설기준이상 확보 함.

라. 변경사항 상세

- 증축 (금회변경사항)

구 분	해당층	시설용도	면적(㎡)	비 고
증축	지상1층	판매시설	- 187.55	비시설 변경사항 (증축 미진행, 현황유지)
	합 계		- 187.55	

※ 금회 증축 변경에 따라 건축면적 -60.35㎡ 증가 (현황유지)

- 대수선 (금회변경사항)

구 분	해당층	시설용도	비 고
대수선	지하2층	방화구획 변경 (신설 공조실 현황유지(주차장))	비시설 변경사항
	지하1층	방화구획 변경 (내부 레이아웃 현황유지, 방화도어 위치조정)	
	지상3층	방화구획 변경 (방화재료 변경 현황유지)	

– 용도변경 (금회변경사항)

구 분	해당층	시설용도	면적(㎡)	비 고
용도변경	지하2층	판매시설 → 주차장	160.68	비시설 변경사항
	합 계		160.68	

– 기타 (금회변경사항)

구 분	분야	변 경 사 항	비 고
기 타	주 차	- 지하2층 주차대수 10대 증가 (신설 공조실 현황유지(주차장))	비시설 변경사항
	조 경	- 지상1층 조경면적 59.74㎡ 증가 (증축부 현황유지) - 지상2층 조경면적 37.57㎡ 증가 (현황유지)	
	공개공지	- 지상1층 5.51㎡ 감소 (증축부 현황유지)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신세계센트럴 대표 박주형[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76(반포동)]

바.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변경)인가 완료일 ~ 2025. 12. 31.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사용 또는 수용할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 권리자 성명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반포동	19-3	대	58,432.00	58,432.00	㈜신세계 센트럴시티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76(반포동)			
반포동	19-12	대	717.40	717.40	㈜신세계 센트럴시티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76(반포동)			
계			59,149.40	59,149.40					

구 공 고

◈ 노원구공고 제2025-921호

도시계획시설사업(불암산근린공원 조성) 완료 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93호(2020.5.14.)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되고, 노원구고시 제2022-86호(2022.6.16.)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220번지 불암산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완료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220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명　　칭 : 불암산근린공원 조성
  3) 사업내용 : 토지보상
다. 사업면적 : 85㎡
라.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마.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바. 사업기간 : 2022.6.16. ~ 2024.6.15.
사.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번	지목	현실적인 이용상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내용	
1	노원구 중계동 220	임야	공원	8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아. 관계도서 : 노원구청 푸른도시과 비치(☎02-2116-3943)

◈ 금천구공고 제2025-1160호

도시관리계획(G밸리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535-47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열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12일
금 천 구 청 장

1. 공 고 일 : 2025.06.12.(목)

2.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 금천구청 도시계획과(02-2627-2063)

4. 열람내용

가. 도시관리계획(G밸리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G밸리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산동 535-47번지 일대	-	증) 89,508	89,508	-	-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생략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생략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생략

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 생략

다)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생략

라) 건축물 배치·형태 및 대지내공지에 관한 계획 : 생략

4)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생략
5)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생략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본문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재

5. 관련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6. 기타사항 : 결정조서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02-2627-20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초구공고 제2025-1184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공사완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82-50호(1982.2.3.)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84-251호(1984.5.2.), 서울특별시고시 제1987-126호(1987.3.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12호(2018.7.12.),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25-2(2025.1.2.) 및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25-24호(2025.2.13.)로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25-62호(2025.4.17.)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동덕여자중·고등학교(서초구 방배동 산82번지 일대)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공사완료 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산82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명칭 : 도시계획시설(학교) 내 산림(식생) 이전 및 복원공사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교지(학교시설) 합계	35,016.4	감) 292	34,724.4	100.0	
체육장	9,171	-	9,171	26.4	
교사용대지	25,845.5	감) 292	25,553.4	73.6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 성명 : 학교법인 동덕학원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3길 60(하월곡동 23-1)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초구공고 제2025-1204호

도시관리계획(사당역세권(방배동 452-1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2-365호(2022.08.25.)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4-1709호(2024.08.08.)로 열람공고한 「사당역세권(방배동 452-1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5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 초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사당역 역세권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방배동 452-1일원	5,140.9	-	5,140.9	-
변경	사당역세권(방배동 452-1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역명칭 변경

나.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다. 도시기반시설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라.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마.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바.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2. 재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3. 재열람장소: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3),
 방배2동 주민센터(☎02-2155-7797)
4. 관련도서: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자료 및 홈페이지 게시자료와 같음)
5. 기타사항: 본 계획(안)은 최종 결정사항이 아니며,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음
6.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방문, Fax 02-2155-6819, 이메일 sb0038@seocho.go.kr)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고시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25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 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하천 명칭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 기간	
서울특별시 미래한강 본부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2 등	- 도선장 619.8㎡ - 공작물 503.6㎡ - 토 지 187.2㎡	수상교통 활성화를 위한 선착장 조성	2025. 6. 1. ~ 7. 31.	2025. 6. 2.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126-1 등	- 도선장 619.8㎡ - 공작물 450.5㎡ - 토 지 257.2㎡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86 등	- 도선장 427.0㎡ - 공작물 432.4㎡ - 토 지 165.6㎡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80-1 등	- 도선장 619.8㎡ - 공작물 501.1㎡ - 토 지 211.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5-1 등	- 도선장 619.8㎡ - 공작물 125.9㎡ - 토 지 340.2㎡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205-8 등	- 도선장 619.8㎡ - 공작물 390.1㎡ - 토 지 148.5㎡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441 등	- 도선장 427.0㎡ - 공작물 261.9㎡ - 토 지 63.8㎡			
㈜한강버스 (대표 김선직)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93-9, 4층	한강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2 등	- 도선장 600㎡ - 공작물 136㎡ - 토 지 521㎡	도선장(전기충전시설) 설치	2025. 5. 23. ~ 7. 31.	2025. 5. 23.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443 등	- 도선장 600㎡ - 공작물 49㎡ - 토 지 242㎡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25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 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마린포레스트서울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길 **-**, *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1 일대 (여의도 한강공원내)	수상(15,000㎡), 둔치(7,374㎡)	유선 및 수상레저사업, 마리나업	2025.5.1.~ 2026.4.30.	2025. 6.4.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25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시설공단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서울시계내 한강(청담대교)	426.16㎡	정밀안전점검	’25. 06. 09. ~ ’25. 08. 09.	’25. 06. 04.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25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수허가자		하천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로얄마리나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121-9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121-9	53㎡	관로매설	2025. 06. 01. ~ 2025. 12. 31.	2025. 05. 29.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25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수허가자		하천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로얄마리나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121-9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121-9	유선:카약1~3호,구조선한산마리나14호, 마리나선박7척	계류시설	2025. 06. 01. ~ 2025. 12. 31.	2025. 05. 29.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25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수허가자		하천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로얄마리나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121-9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121-9	2,348.64㎡	계류시설	2025. 06. 01. ~ 2025. 12. 31.	2025. 05. 29.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25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수개발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56 LG팰리스 ****호	서울시계내 한강 (마포구 상암동 496-119번지상 한강)	(선박35척) 7,847.09㎡	공사 투입을 위한 선박 정박대기장소	'25. 06. 01. ~ '25. 06. 30.	'25. 05. 29.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26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신호개발	서울시 중구 왕십리로 ***	서울시계내 한강 (강서구 개화동 174-1)	(선박3척) 608.22㎡	공사 투입을 위한 선박 정박대기장소	'25. 06. 01. ~ '25. 06. 30.	'25. 05. 29.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26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수허가자		하천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국사회체육 진흥회 수상스키 중앙연합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나루길 29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나루길 296	26㎡ (수상레저기구 6척)	수상레저사업 운영	2025. 6. 5. ~ 2025. 11. 15.	2025. 6. 5.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26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수허가자		하천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장애인 수상스키협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2198 (자양동 133-2)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2198 (자양동 133-2)	34㎡ (수상레저기구 10척)	수상레저사업 운영	2025. 6. 5. ~ 2025. 10. 31.	2025. 6. 5.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26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교량안전과	서울시계내 한강 (한강대교)	426.16㎡	한강대교 및 양화교 정밀안전점검	'25. 06. 09. ~ '25. 08. 09.	'25. 05. 29.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26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교량안전과	서울시계내 한강 (동작대교)	426.16㎡	동작대교 외 1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25. 06. 09. ~ '25. 08. 09.	'25. 06. 05.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26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신호개발	서울시 중구 왕십리로 415-3	서울시계내 한강 (반포대교 남단)	(선박2척) 353.64㎡	서울웨이브 자재이송	'25. 06. 05. , '25. 06. 09. ~ '25. 06. 12.	'25. 06. 05.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26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교량안전과	서울시계내 한강 (천호대교,광진교)	308.91㎡	천호대교 및 광진교 정밀안전점검	'25. 06. 09. ~ '25. 06. 30.	'25. 06. 05.

기 타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5-218호

하천점용(변경)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 기반시설과(02-3780-0674)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3. 점용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614-2번지 등 26필지
 - 면 적 : 51,13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 목 적 : 암사초록길 조성
 - 개 요 : (당초) 지하차도(RC BOX), 상부공원조성 6,300㎡, 신설제방축조 568m, 게이트펌프실 등
 (변경) 지하차도(RC BOX), 상부공원조성 6,300㎡, 신설제방축조 568m, 게이트펌프실, 전망대(포켓쉼터) 설치(78.5㎡) 등

5. 점용기간 : 2025.03.11.~2030.03.10. ※변경없음

정 정

◈ 서울시특별시고시 제2025-312호

도시관리계획(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서울특별시 공고 제1988-596호(1988.8.26.)로 도시설계지구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 419호(2008.11.2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290호(2025.5.29.)로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율곡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일부 오기사항이 있어 이를 정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율곡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정정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정사유

- 2025-290호(2025.5.29.)로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적용대상 명칭,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에 대한 일부 내용 및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에 일부 표기 누락 등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함

Ⅱ. 정정사항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최대개발규모(변경)

2) 최대개발규모 결정(변경)조서

<정정 전>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일대(변경)

※ 효제동, 종로5·6가동 일대 적용 제외

□ 효제동, 종로5·6가동 일대(변경없음)

<정정 후>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이화동, 효제동(일부), 종로6가(일부) 일대(변경)

※ 적용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형도면을 따름(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조)

□ 효제동(일부), 종로5·6가동(일부) 일대(변경없음)

<정정사유>

구분	정정사유
변경사항 적용대상 명칭 정정	○ 변경사항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상지 명칭 구체화 등 표기사항 정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에 적용대상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개념도 표기

나. 최소개발규모(변경)

2) 최소개발규모 결정(변경)조서

<정정 전>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일대(변경)

※ 효제동, 종로5·6가동 일대 적용 제외

□ 효제동, 종로5·6가동 일대(변경없음)

<정정 후>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이화동, 효제동(일부), 종로6가(일부) 일대(변경)

※ 적용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형도면을 따름(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조)

□ 효제동(일부), 종로5·6가동(일부) 일대(변경없음)

<정정사유>

구분	정정사유
변경사항 적용대상 명칭 정정	○ 변경사항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상지 명칭 구체화 등 표기사항 정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에 적용대상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개념도 표기

다. 가구 및 획지(변경)

2)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조서

<정정 전>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일대(변경)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A-6	5,865.1	인의동	7-7	6.6	공동개발 지정	인접국공유지
			7-6	28.0		동일소유자
			56	46.3		
			57-2	188.4		
			59-5	216.1		
			59-6	379.8		
			59-7	32.1		
			59-8	479.3		
			101-13	44.8		
			101-14	10.7		인접국공유지
			59	254.5		동일소유자
			63	33.1		

□ 효제동, 종로5 · 6가동 일대(변경없음)

<정정 후>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이화동, 효제동(일부), 종로6가(일부) 일대(변경)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A-6	5,865.1	인의동	7-6	28.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56	46.3		
			57-2	188.4		
			59-5	216.1		
			59-6	379.8		
			59-7	32.1		
			59-8	479.3		
			101-13	44.8		
			59	254.5		
			63	33.1		
			7-7	6.6	-	-
			101-14	10.7	-	-

□ 효제동(일부), 종로5 · 6가동(일부) 일대(변경없음)

<정정사유>

구분	정정사유
변경사항 적용대상 명칭 정정	○ 변경사항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상지 명칭 구체화 등 표기사항 정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에 적용대상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개념도 표기
공동개발 지정사항 오기 정정	○ 공동개발 지정과 관련하여 결정도와 결정조서 상 불일치 부분 정정 (인의동 7-7, 101-14번지를 공동개발 지정에서 제외)

2. 건축물 용도 결정(변경)조서

나. 건축물의 권장용도 결정(변경)

2) 권장용도 결정(변경)조서

<정정 전>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일대(변경)

※ 효제동, 종로5 · 6가동 일대 적용 제외

□ 효제동, 종로5 · 6가동 일대(변경없음)

<정정 후>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이화동, 효제동(일부), 종로6가(일부) 일대(변경)

※ 적용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형도면을 따름(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조)

□ 효제동(일부), 종로5 · 6가동(일부) 일대(변경없음)

<정정사유>

구분	정정사유
변경사항 적용대상 명칭 정정	○ 변경사항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상지 명칭 구체화 등 표기사항 정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에 적용대상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개념도 표기

3. 건축물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나. 건축물의 용적률 결정(변경)

2) 건축물의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정정 전>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일대(변경)

※ 효제동, 종로5 · 6가동 일대 적용 제외

□ 효제동, 종로5 · 6가동 일대(변경없음)

<정정 후>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이화동, 효제동(일부), 종로6가(일부) 일대(변경)

※ 적용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형도면을 따름(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조)

□ 효제동(일부), 종로5 · 6가동(일부) 일대(변경없음)

<정정사유>

구분	정정사유
변경사항 적용대상 명칭 정정	○ 변경사항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상지 명칭 구체화 등 표기사항 정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에 적용대상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개념도 표기

다.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

2)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조서

<정정 전>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일대(변경)

※ 효제동, 종로5 · 6가동 일대 적용 제외

□ 효제동, 종로5 · 6가동 일대(변경없음)

<정정 후>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이화동, 효제동(일부), 종로6가(일부) 일대(변경)

※ 적용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형도면을 따름(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조)

□ 효제동(일부), 종로5 · 6가동(일부) 일대(변경없음)

<정정사유>

구분	정정사유
변경사항 적용대상 명칭 정정	○ 변경사항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상지 명칭 구체화 등 표기사항 정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에 적용대상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개념도 표기

4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배치 결정(변경)
2) 건축물의 배치 결정(변경)조서
<정정 전>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일대(변경)
※ 효제동, 종로5·6가동 일대 적용 제외
□ 효제동, 종로5·6가동 일대(변경없음)
<정정 후>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이화동, 효제동(일부), 종로6가(일부) 일대(변경)
※ 적용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형도면을 따름(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조)
□ 효제동(일부), 종로5·6가동(일부) 일대(변경없음)
<정정사유>

구분	정정사유
변경사항 적용대상 명칭 정정	○ 변경사항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상지 명칭 구체화 등 표기사항 정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에 적용대상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개념도 표기

6. 인센티브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건폐율 완화계획 결정(변경)
2)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변경)조서
<정정 전>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일대(변경)
※ 효제동, 종로5·6가동 일대 적용 제외
□ 효제동, 종로5·6가동 일대(변경없음)
<정정 후>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이화동, 효제동(일부), 종로6가(일부) 일대(변경)
※ 적용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형도면을 따름(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조)
□ 효제동(일부), 종로5·6가동(일부) 일대(변경없음)
<정정사유>

구분	정정사유
변경사항 적용대상 명칭 정정	○ 변경사항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상지 명칭 구체화 등 표기사항 정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에 적용대상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개념도 표기

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계획 결정(변경)
2)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계획 결정(변경)조서
<정정 전>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일대(변경)
※ 효제동, 종로5·6가동 일대 적용 제외
□ 효제동, 종로5·6가동 일대(변경없음)
<정정 후>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이화동, 효제동(일부), 종로6가(일부) 일대(변경)
※ 적용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형도면을 따름(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조)
□ 효제동(일부), 종로5·6가동(일부) 일대(변경없음)
<정정사유>

구분	정정사유
변경사항 적용대상 명칭 정정	○ 변경사항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상지 명칭 구체화 등 표기사항 정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에 적용대상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개념도 표기

다. 상한용적률 인센티브계획 결정(변경)
2) 상한용적률 인센티브계획 결정(변경)조서
<정정 전>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일대(변경)
※ 효제동, 종로5·6가동 일대 적용 제외
□ 효제동, 종로5·6가동 일대(변경없음)
<정정 후>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이화동, 효제동(일부), 종로6가(일부) 일대(변경)
※ 적용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형도면을 따름(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조)
□ 효제동(일부), 종로5·6가동(일부) 일대(변경없음)
<정정사유>

구분	정정사유
변경사항 적용대상 명칭 정정	○ 변경사항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상지 명칭 구체화 등 표기사항 정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에 적용대상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개념도 표기

라. 높이 완화 인센티브계획 결정(변경)
2) 높이 완화 인센티브(변경)조서
<정정 전>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일대(변경)
※ 효제동, 종로5·6가동 일대 적용 제외
□ 효제동, 종로5·6가동 일대(변경없음)
<정정 후>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이화동, 효제동(일부), 종로6가(일부) 일대(변경)

※ 적용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형도면을 따름(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조)

□ 효제동(일부), 종로5·6가동(일부) 일대(변경없음)

<정정사유>

구분	정정사유
변경사항 적용대상 명칭 정정	○ 변경사항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상지 명칭 구체화 등 표기사항 정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에 적용대상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개념도 표기

④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나.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결정(변경)

2)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결정(변경)조서

<정정 전>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일대(변경)

※ 효제동, 종로5·6가동 일대 적용 제외

□ 효제동, 종로5·6가동 일대(변경없음)

<정정 후>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이화동, 효제동(일부), 종로6가(일부) 일대(변경)

※ 적용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형도면을 따름(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조)

□ 효제동(일부), 종로5·6가동(일부) 일대(변경없음)

<정정사유>

구분	정정사유
변경사항 적용대상 명칭 정정	○ 변경사항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상지 명칭 구체화 등 표기사항 정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에 적용대상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개념도 표기

다. 특화가로 색채 및 가로환경개선계획 결정(신설)

1) 특화가로 색채 및 가로환경개선계획 결정조서

<정정 전>

※ 효제동, 종로5·6가동 일대 적용 제외

<정정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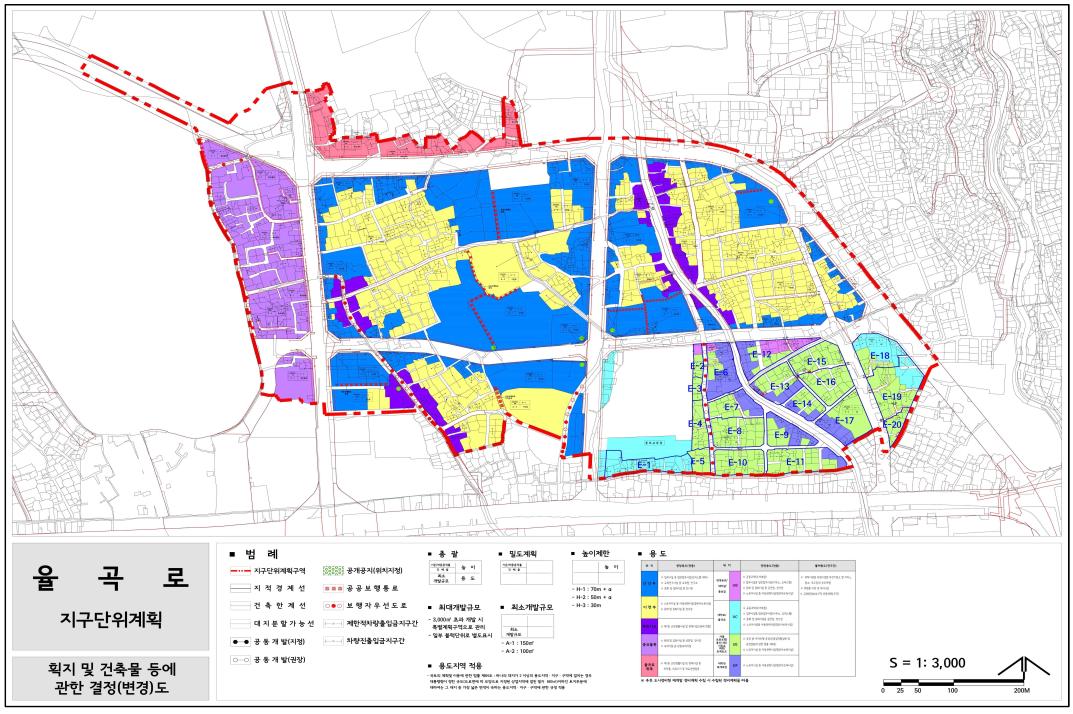
※ 적용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형도면을 따름(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조)

<정정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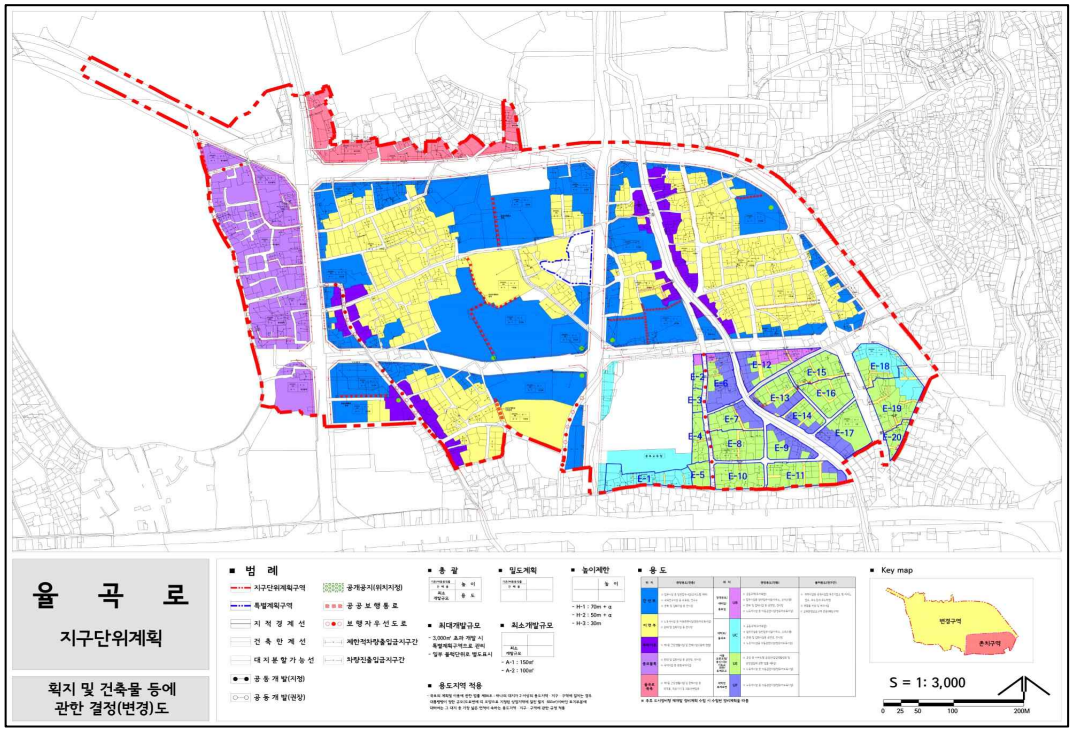
구분	정정사유
변경사항 적용대상 명칭 정정	○ 변경사항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상지 명칭 구체화 등 표기사항 정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에 적용대상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개념도 표기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정정 전>



<정정 후>



<정정사유>

구분	정정사유
결정도 표기 누락사항 정정	○ 2023.1.19. 결정된 효제동 21-3번지 특별계획구역의 도면 표기 누락사항 정정
변경사항 적용대상 명칭 정정	○ 변경사항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상지 명칭 구체화 등 표기사항 정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에 적용대상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개념도 표기

Ⅲ.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정정고시 전문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을곡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종로구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효제동, 충신동, 종로 5 · 6가동 일대	446,340	-	446,340	-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446,340	-	446,340	100.00	-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585	-	2,585	0.58	-
	제2종일반주거지역	108	-	108	0.02	-
	제3종일반주거지역	6,129	-	6,129	1.38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437,518	-	437,518	98.02	-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21	13,378 (6,566)	296,211 (123,440)	4	3,864 (1,599)	73,645 (28,652)	4	4,260 (1,967)	117,829 (61,418)	13	5,254 (3,000)	104,737 (33,370)
광로	1	1,500 (536)	51,901 (12,742)	-	- (-)	- (-)	-	- (-)	- (-)	1	1,500 (536)	51,901 (12,742)
대로	3	5,400 (1,884)	154,192 (67,302)	-	- (-)	- (-)	2	3,800 (1,507)	114,192 (57,781)	1	1,600 (377)	40,000 (9,521)
중로	2	3,400 (1,135)	68,436 (23,443)	2	3,400 (1,135)	68,436 (23,443)	-	- (-)	- (-)	-	- (-)	- (-)
소로	15	3,078 (93,011)	21,682 (19,930)	2	464 (464)	5,209 (5,209)	2	460 (460)	3,637 (3,637)	11	2,154 (2,087)	12,836 (11,084)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로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66	22~40	주간선도로	1,500 (536)	종로5가	혜화동 로타리	일반도로	건고제145호 (78.5.15)	-
기정	대로	2	6	27~30	주간선도로	2,600 (1,403)	안국동광장	동대문광장	일반도로	서고제26호 (78.1.28)	-
기정	대로	2	59	30	주간선도로	1,200 (104)	원남동 네거리	혜화동광장	일반도로	건고제244호 (78.10.2)	-
기정	대로	3	2	25	주간선도로	1,600 (377)	원남동광장	충무로5가	일반도로	층고시-722 (36.12.26)	-
기정	중로	1	4	20	집산도로	600 (189)	종로6가 청계천변	충신동	일반도로	층고시-722 (36.12.26)	-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75	20~23	집산 도로	2,800 (946)	세종로동 82-14	충신동 27-64	일반도로	서고제39호 (78.2.10)	-
기정	소로	1	5	10	집산 도로	163 (163)	충신동 136-11	충신동 179-4	일반도로	건고제432호 (63.7.1)	-
기정	소로	1	-	10~12	국지 도로	301 (301)	연건동 187-1	효제동 126-2	일반도로	서고제2008-419호 (08.11.20)	-
기정	소로	2	-	8~16	국지 도로	272 (272)	효제동 133-7	효제동 175-1	일반도로	서고제2008-419호 (08.11.20)	-
기정	소로	2	16	6~8	국지 도로	188 (188)	이화동 107-1	충신동 120	일반도로	건고제432호 (63.7.1)	-
기정	소로	3	2	5~10	국지 도로	281 (214)	연지동 168	종로5가 124-4	일반도로	건고제432호 (63.7.1)	-
기정	소로	3	114	6	국지 도로	87 (87)	인의동 59-5	인의동 49-1	일반도로	건고제432호 (63.7.1)	-
기정	소로	3	118	6	국지 도로	390 (390)	인의동 8	효제동 22-3	일반도로	건고제432호 (63.7.1)	-
기정	소로	3	120	6	국지 도로	67 (67)	연지동 246	연지동 270	일반도로	건고제432호 (63.7.1)	-
기정	소로	3	124	4~6	국지 도로	160 (160)	효제동 27-1	효제동 107	일반도로	건고제432호 (63.7.1)	-
기정	소로	3	125	6	국지 도로	130 (130)	충신동 63	충신동 136-11	일반도로	건고제432호 (63.7.1)	-
기정	소로	3	126	6	국지 도로	150 (150)	충신동 120	충신동 171	일반도로	건고제432호 (63.7.1)	-
기정	소로	3	130	6	국지 도로	122 (122)	종로6가 16-1	종로6가 130-1	일반도로	건고제432호 (63.7.1)	-
기정	소로	3	139	6	국지 도로	500 (500)	원남동 151-6	인의동 117-1	일반도로	건고제432호 (63.7.1)	-
기정	소로	3	-	6~8	국지 도로	60 (60)	효제동 122	효제동 117-1	일반도로	서고제2008-419호 (08.11.20)	-
기정	소로	3	-	6~8	국지 도로	207 (207)	효제동 273	효제동 233-2	일반도로	서고제2008-419호 (08.11.20)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로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창경공원	근린공원	와룡동 2-1일대	188,667 (5,208.6)	-	188,667 (5,208.6)	건고 제187호 (62.12.20)	-
기정	-	창덕공원	근린공원	와룡동 2-1일대	496,997 (2,192.5)	-	496,997 (2,192.5)	건고 제187호 (62.12.20)	-
기정	-	종묘공원	근린공원	훈정동 1-2 일대	182,206 (1,389.6)	-	182,206 (1,389.6)	건고 제187호 (62.12.20)	-
기정	2	연지1	근린공원	연지동 1-38	2,827.6 (2,827.6)	-	2,827.6 (2,827.6)	서고시 제726호 (85.10.31)	-
기정	3	어린이 공원	어린이공원	연지동 136-92	474.2 (474.2)	-	474.2 (474.2)	서고시 제1998-353호 (98.10.15)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면적

2)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공공공지	인의동 28-28 일대	414.9	-	414.9	서고제2008-419호 (08.11.20)	-
기정	2	공공공지	인의동 28-6 일대	196.5	-	196.5	서고제2008-419호 (08.11.20)	-
기정	3	공공공지	효제동 295 일대	385.5	-	385.5	서고제2008-419호 (08.11.20)	-

다. 공공 · 문화체육시설

1) 학교

□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학교	초등학교	효제동 225-4	20,616.2	-	20,616.2	서교5 (87.2.17)	효제 초교

2)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사회복지 시설	효제동 107 일대	351	-	351	종로구고시 제2023-126호 (23.10.26)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최대개발규모(변경)

1) 최대개발규모 결정(기정)조서

블록구분		면적(㎡)	비 고	블록구분		면적(㎡)	비 고
A (종묘 인근 블록)	A-1	2,075		C (충신 시장 블록)	C-1	2,421	
	A-2	1,426			C-2	4,547	
	A-3	1,814			C-3	3,734	
	A-4	1,811			C-4	6,489	동일소유(동륭실업)
	A-5	772			C-5	3,537	
	A-6	1,713			C-6	2,025	
	A-7	1,236			C-7	2,028	
	A-8	1,660			C-8	3,972	
	A-9	1,365			C-9	3,316	
	A-10	1,314			C-10	3,614	기개발 - 예일빌딩
	A-11	1,288			C-11	4,090	
	A-12	993			C-12	4,180	
	A-13	1,769			C-13	987	
	A-14	1,358			C-14	4,054	
	A-15	1,570			C-15	3,566	
	A-16	1,342			C-16	4,428	
	A-17	1,660			C-17	854	
	A-18	1,766			C-18	1,851	
B (서울 보증 보험 블록)	B-1	4,957			C-19	1,808	
	B-2	2,379		D (가톨릭 회관 블록)	D-1	1,025	
	B-3	3,457			D-2	2,830	
	B-4	3,406	기개발 - 보령제약		D-3	4,320	
	B-5	747			D-4	3,595	
	B-6	4,153	기개발 - 여전도회관				
	B-7	2,700					
	B-8	4,319					
	B-9	3,403					
	B-10	11,148	기개발 - 은석빌딩,동일소유				
	B-11	2,897					
	B-12	3,302					

블록구분		면적(㎡)	비 고	블록구분		면적(㎡)	비 고
	B-13	1,835			D-5	3,358	
	B-14	2,242			D-6	3,642	
	B-15	2,261			D-7	4,479	
	B-16	4,955			D-8	3,676	
	B-17	2,988			D-9	4,118	기개발 - 한국기독교회관
	B-18	7,419	기개발 - 업무시설		D-10	5,055	기개발 - 삼양사
	B-19	5.279	기개발-기독교 100주년기념관		D-11	2,321	기개발 - 기독교 회관
	B-20	9,504	기개발 - 서울보증보험		D-12	1,832	
	B-21	2,509.5					
	B-22	3,247.5	효제동21-3번지 특별계획구역				
	B-23	3,245					
	B-24	2,315	기개발 - 영동교회				
E (효제초등학교 인근 블록)	E-1	3,131		F (율곡로 북측 블록)	F-1	2,409	
	E-2	689			F-2	2,323	
	E-3	465			F-3	1,648	
	E-4	1,056			F-4	920	
	E-5	1,052			F-5	896	
	E-6	3,369			F-6	727	
	E-7	2,527			F-7	922	
	E-8	3,403			F-8	483	
	E-9	2,411			F-9	2,485	
	E-10	2,785			F-10	1,285	
	E-11	3,895			F-11	1,570	
	E-12	3,597			F-12	709	
	E-13	2,857			F-13	2,676	
	E-14	1,821			F-14	827	
	E-15	2,633					
	E-16	2,932					
	E-17	3,761					
	E-18	3,265					
	E-19	4,885					
	E-20	1,004					
	E-21	1,644					

※ 구적면적으로 실제 면적과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음.

- 블록별 최대개발규모 범위 초과 개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이행하며 특별계획구역으로 관리함
- 블록별 최대개발규모 범위안 기준면적(2,000㎡) 이상의 공동개발의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기존대지 및 공동개발(지정 · 권장) 대지가 기준면적(2,000㎡을 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함)

2) 최대개발규모 결정(변경)조서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이화동, 효제동(일부), 종로6가(일부) 일대(변경)

구 분	최대개발규모(㎡)	비 고
지구단위구역내	-	개발규모 3,000㎡ 초과 개발 시 특별계획구역으로 관리

※ 2,000㎡이상 개발 시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능

※ 적용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형도면을 따름(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조)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 효제동(일부), 종로5·6가동(일부) 일대(변경없음)

블록구분		면적(㎡)	비 고
E (효제초등학교 인근 블록)	E-1	3,131	
	E-2	689	
	E-3	465	
	E-4	1,056	
	E-5	1,052	
	E-6	3,369	
	E-7	2,527	
	E-8	3,403	
	E-9	2,411	
	E-10	2,785	
	E-11	3,895	
	E-12	3,597	
	E-13	2,857	
	E-14	1,821	
	E-15	2,633	
	E-16	2,932	
	E-17	3,761	
	E-18	3,265	
	E-19	4,885	
	E-20	1,004	
	E-21	1,644	

※ 구적면적으로 실제 면적과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음.

- 블록별 최대개발규모 범위 초과 개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이행하며 특별계획구역으로 관리함.
- 블록별 최대개발규모 범위안 기준면적(2,000㎡) 이상의 공동개발의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기존대지 및 공동개발(지정·권장) 대지가 기준면적(2,000㎡

을 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 최대개발규모 변경사유서

블록구분	변경사유
-	○ 효제초등학교 블록을 제외한 블록별 최대개발규모 일괄 삭제

나. 최소개발규모(변경)

1) 최소개발규모 결정(기정)조서

구 분	최소개발규모(㎡)	비 고
A-1	150㎡ 이상	간선부
A-2	100㎡ 이상	이면부

※ 최소개발규모에 미달하는 대지는 최소개발규모의 50% 범위까지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규모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서 개발 가능

2) 최소개발규모 결정(변경)조서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이화동, 효제동(일부), 종로6가(일부) 일대(변경)

구 분	최소개발규모(㎡)	비 고
A-1	150㎡ 이상	간선부
A-2	100㎡ 이상	이면부

※ 최소개발규모 미만 필지의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 가능

※ 적용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형도면을 따름(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조)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 효제동(일부), 종로5·6가동(일부) 일대(변경없음)

구 분	최소개발규모(㎡)	비 고
A-1	150㎡ 이상	간선부
A-2	100㎡ 이상	이면부

※ 최소개발규모에 미달하는 대지는 최소개발규모의 50% 범위까지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규모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서 개발 가능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 최소개발규모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사유
-	○ 소규모 필지가 다수 입지한 현황을 고려하여 단서 조항 변경

다. 가구 및 획지(변경)

1) 가구 및 획지 결정(기정)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A-1	1	1,607.5	와룡동 2-3	327.3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150-2	1,280.2	
	2	467.9	원남동 151-2	205.1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151-6	262.8	
A-2	1	288.3	원남동 209	288.3	
	2	100.3	원남동 208-1	70.5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07	29.8	
	3	218.9	원남동 199	218.9	
	4	338.7	원남동 197-1	244.6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198	94.1	
	5	109.6	원남동 210-2	109.6	
	6	181.8	원남동 206-1	181.8	
	7	105.7	원남동 194	105.7	
A-3	1	1,123.5	원남동 194	1,123.5	
	2	129.1	원남동 212-1	7.3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12-7	88.7	
			원남동 211	33.1	
	3	139.0	원남동 212-2	139.0	
	4	200.8	원남동 212-3	79.3	공도개발 지정
			원남동 212-4	100.7	
			원남동 212-6	20.8	
	5	131.5	원남동 214-10	0.7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13	56.2	
			원남동 214-1	38.3	
			원남동 214-12	1.3	
			원남동 214-6	35.0	
A-4	1	185.1	원남동 171-2	185.1	
	2	1,027.1	원남동 177-1	1,027.1	
	3	599.0	원남동 189-1	599.0	
A-5	1	399.3	원남동 166-2	26.1	166-2, 179-2, 179-3 공동개발 지정 179-3, 180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179-2	54.2	
			원남동 179-3	79.3	
			원남동 180	239.7	
	2	195.4	원남동 181	68.1	공동개발 지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원남동 183-3	65.8	
			원남동 182	61.5	
	3	151.7	원남동 183-8	60.8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184	26.4	
			원남동 184-1	9.9	
			원남동 185	49.6	
			원남동 183-1	1.7	
			원남동 183-13	3.3	
A-6	1	327.2	원남동 189-12	205.3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189-2	52.2	
			원남동 189-3	35.7	
			원남동 183-12	13.2	
			원남동 183-11	16.5	
			원남동 183-10	4.3	
	2	212.6	원남동 192-2	212.6	
	3	269.7	원남동 189-7	130.9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189-6	53.2	
			원남동 189-4	41.0	
			원남동 189-5	15.5	
			원남동 189-8	29.1	
	4	128.9	원남동 191-1	73.7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191-3	47.3	
			원남동 191-2	7.9	
	5	197.3	원남동 189-10	1.7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189-9	91.9	
			원남동 190-1	32.7	
			원남동 190-3	6.9	
			원남동 190-2	59.5	
			원남동 95-9	4.6	
	6	534.4	원남동 187	389.5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188-2	144.9	
A-7	1	109.1	원남동 217-3	107.4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17-2	1.7	
	2	52.9	원남동 218	52.9	
	3	158.7	원남동 219-1	158.7	
	4	218.2	원남동 222	62.8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221	69.4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원남동 220	86.0	
	5	109.1	원남동 223	109.1	
	6	184.9	원남동 229	102.2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30-2	46.3	
			원남동 230-1	36.4	
	7	102.5	원남동 232	39.7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31-2	62.8	
	8	49.6	원남동 231-1	49.6	
A-8	1	101.0	원남동 214-8	49.6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14-5	40.7	
			원남동 214-18	10.7	
	2	66.4	원남동 215-2	66.4	
	3	125.6	원남동 215-1	62.8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216	62.8	
	4	50.5	원남동 214-4	4.1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25-4	22.0	
			원남동 225-5	24.4	
	5	109.9	원남동 225-3	50.6	225-2, 215-3, 214-2 공동개발 지정 214-3, 225-3 공동개발 지정 225-3, 225-2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214-2	3.0	
			원남동 225-2	49.3	
			원남동 215-3	4.0	
			원남동 214-3	6.0	
	6	142.8	원남동 225-1	37.0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224	105.8	
	7	50.8	원남동 225-6	27.3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25-7	23.5	
	8	236.2	원남동 226-2	68.5	226-1, 239-3 공동개발 지정 226-1, 226-2, 227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226-1	99.2	
			원남동 239-3	3.3	
			원남동 227	65.2	
	9	140.0	원남동 228-5	38.3	228-2, 228-3, 228-4, 228-5 공동개발 지정 228-1, 228 공동개발 지정 228, 228-3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228-3	40.3	
			원남동 228-2	2.0	
			원남동 228-4	4.6	
			원남동 228-1	14.5	
			원남동 228	40.3	
	10	88.8	원남동 239-2	45.8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39-1	43.0	
	11	138.3	원남동 237	98.6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38	39.7	
	12	92.6	원남동 240	92.6	
	13	96.2	원남동 241	96.2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14	97.9	원남동 225-10	44.0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25-9	53.9	
A-9	1	251.9	원남동 242-2	251.9	
	2	94.2	원남동 242-1	94.2	
	3	205.1	원남동 236	33.1	234, 235 공동개발 권장 235, 236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35	86.0	
			원남동 234	86.0	
	4	56.2	원남동 233	56.2	
	5	396.7	원남동 244-7	396.7	
	6	142.1	원남동 243-3	72.7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243-2	69.4	
	7	79.3	원남동 243-4	79.3	
	8	115.7	원남동 243-5	115.7	
A-10	1	145.5	원남동 244-1	109.1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45-6	36.4	
	2	86.0	원남동 245-1	86.0	
	3	683.9	원남동 249-7	658.8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49-1	1.3	
			원남동 248-2	4.0	
			원남동 248-3	19.8	
	4	165.2	원남동 246	67.1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46-1	7.3	
			원남동 246-2	90.8	
	5	204.4	원남동 247-2	132.3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248	72.1	
A-11	1	155.4	원남동 256-2	56.2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56-1	59.5	
			원남동 255-2	39.7	
	2	217.9	원남동 257-1	217.9	
	3	152.1	원남동 255-1	39.7	254-1, 255-1 공동개발 지정 254-1, 254-2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254-1	39.7	
			원남동 254-2	72.7	
	4	484.6	원남동 250	281.0	249-4, 250, 252 공동개발 권장 250-1, 251 공동개발 권장 250, 250-1 공동개발 지정 249-4, 249-5 공동개발 지정 251-2, 252, 251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50-1	19.8	
			원남동 249-4	66.1	
			원남동 249-5	8.6	
			원남동 252	66.1	
			원남동 251	30.4	
			원남동 251-2	12.6	
	5	122.3	원남동 253	122.3	
A-12	1	164.9	원남동 243-6	164.9	
	2	174.3	원남동 243-7	87.2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243-23	87.1	
	3	231.4	원남동 243-10	115.7	공동개발 권장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원남동 243-11	115.7	
	4	228.1	원남동 243-9	112.4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243-12	115.7	
A-13	1	82.6	원남동 259	82.6	
	2	86.0	원남동 260	86.0	
	3	119.0	원남동 261	119.0	
	4	123.7	원남동 262-4	26.8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62-1	96.9	
	5	155.9	원남동 263	150.6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62-3	5.3	
	6	140.6	원남동 264	140.6	
	7	155.4	원남동 266-1	155.4	
	8	441.2	원남동 273	441.2	
	9	124.7	원남동 265	124.7	
	10	70.9	원남동 267	70.9	
	11	108.0	원남동 270-2	51.0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71	57.0	
A-14	1	79.3	원남동 258	79.3	
	2	135.5	원남동 278	135.5	
	3	101.7	원남동 279-2	100.5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79-3	1.2	
	4	128.9	원남동 277	128.9	
	5	191.8	원남동 276-2	107.8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76-1	84.0	
	6	299.0	원남동 279	299.0	
	7	174.1	원남동 282	174.1	
	8	247.9	원남동 275	86.0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80	82.6	
			원남동 281	79.3	
A-15	1	216.1	인의동 59-5	216.1	
	2	479.3	인의동 59-8	479.3	
	3	411.9	인의동 59-6	379.8	공동개발 지정
			인의동 59-7	32.1	
	4	254.5	인의동 59	254.5	
	5	92.1	인의동 57-6	92.1	
	6	111.7	인의동 57-4	111.7	
A-16	1	544.3	인의동 57-2	188.4	57-1, 57-3 공동개발 지정 57-2, 56 공동개발 지정 57-3, 56 공동개발 권장
			인의동 56	46.3	
			인의동 57-1	66.0	
			인의동 57-3	243.6	
	2	677.8	인의동 49-1	51.0	공동개발 지정
			인의동 50-2	626.8	
A-17	1	204.9	인의동 61-1	139.8	공동개발 지정
			인의동 61-2	65.1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2	138.5	인의동 89-9	5.6	공동개발 지정
			인의동 89-8	7.3	
			인의동 89-11	125.6	
	3	151.8	인의동 89-13	97.9	89-17, 89-12 공동개발 지정 89-17, 89-13 공동개발 권장
			인의동 89-17	10.9	
			인의동 89-12	43.0	
	4	211.5	인의동 89-15	211.5	
	5	151.2	인의동 89-25	6.4	공동개발 지정
			인의동 89-14	74.8	
			인의동 89-6	70.0	
	6	396.0	인의동 89-16	6.6	89-16, 89-5 공동개발 지정 89-5, 90-5, 90-3, 89-3 공동개발 권장
			인의동 89-5	88.1	
			인의동 90-5	67.9	
			인의동 89-3	162.0	
			인의동 90-3	71.4	
	7	236.3	인의동 90-1	236.3	
A-18	1	453.0	인의동 78-1	29.9	78-1, 77 공동개발 지정 77, 76-1, 79-1, 75-4 공동개발 권장 75-4, 80-1 공동개발 지정
			인의동 77	82.6	
			인의동 76-1	99.2	
			인의동 79-1	109.8	
			인의동 75-4	44.9	
			인의동 80-1	86.6	
	2	437.1	인의동 74-1	148.7	72, 73, 74-1 공동개발 권장 74-1, 81-1 공동개발 지정
			인의동 81-1	26.4	
			인의동 72	69.4	
			인의동 73	192.5	
	3	339.2	인의동 63	33.1	63, 62-1 공동개발 지정
			인의동 62-1	306.1	
	4	267.8	인의동 101-12	4.2	85-4, 85-3 공동개발 지정 101-12, 86 공동개발 지정 86, 85-3, 85-1 공동개발 권장
			인의동 86	89.9	
			인의동 85-3	108.4	
			인의동 85-1	62.2	
			인의동 85-4	3.1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B-1	1	188.4	원남동 96-7	63.8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96-8	63.1	
			원남동 96-9	61.5	
	2	588.8	원남동 94-3	35.7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94-4	36.7	
			원남동 95	494.8	
			원남동 95-13	21.6	
	3	214.9	원남동 89-1	213.6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89-4	1.3	
	4	190.7	원남동 89-3	187.1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95-12	3.6	
B-1	5	505.2	원남동 86-1	100.5	86-1, 86-15 공동개발 지정 86-5, 86-6, 86-8 공동개발 지정 86-1, 86-8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86-15	52.1	
			원남동 86-5	3.3	
			원남동 86-6	332.8	
			원남동 86-8	16.5	
	6	152.0	원남동 88-1	152.0	
	7	86.0	원남동 85-2	86.0	
	8	534.8	원남동 27-1	0.7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7-5	70.5	
			원남동 27-13	52.7	
			원남동 27-10	16.2	
			원남동 28-7	240.3	
			원남동 28-8	154.4	
	9	577.3	원남동 28-23	15.9	36, 28-33, 37-1 공동개발 지정 35, 36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36	431.8	
			원남동 35	86.0	
			원남동 37-1	43.6	
	10	324.2	원남동 28-11	150.7	28-11, 28-9 공동개발 권장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원남동 28-9	150.7	28-9, 28-12, 28-6, 28-13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8-12	6.3	
			원남동 28-6	13.2	
			원남동 28-13	3.3	
	11	153.1	원남동 28-15	153.1	
	12	89.3	원남동 34-1	89.3	
	13	59.5	원남동 34-2	59.2	
	14	148.8	원남동 33	59.5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32	89.3	
	15	228.1	원남동 29-1	228.1	
	16	89.3	원남동 28-18	89.3	
	17	76.0	원남동 28-17	76.0	
	18	241.3	원남동 29-3	128.9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29-2	112.4	
	19	129.0	원남동 30	39.7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8-19	89.3	
B-2	1	164.7	원남동 26-6	72.1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38	92.6	
	2	160.0	원남동 49-10	108.8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49-20	51.2	
	3	135.5	원남동 39	135.5	
	4	168.7	원남동 42-2	89.3	40, 42-3 공동개발 지정 42-2, 42-3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40	43.0	
			원남동 42-3	36.4	
	5	301.1	원남동 49-11	131.2	49-11, 49-12, 49-13 공동개발 지정 49-14, 41 공동개발 지정 41, 49-13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49-14	3.6	
			원남동 49-12	10.2	
			원남동 49-13	70.1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원남동 41	86.0	
	6	206.3	원남동 49-9	114.4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49-17	40.0	
			원남동 47-2	3.0	
			원남동 49-19	48.9	
	7	357.4	원남동 47-3	93.9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47-4	109.4	
			원남동 47-5	0.7	
			원남동 48-5	9.9	
			원남동 49-4	143.5	
	8	199.1	원남동 43	199.1	
	9	310.3	원남동 49-18	79.7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60-1	230.6	
	10	339.6	원남동 49-16	59.5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56-3	47.3	
			원남동 59	19.8	
			원남동 57	213.0	
B-3	1	305.1	원남동 84-2	94.2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82-2	210.9	
	2	221.5	원남동 72-2	221.5	
	3	269.5	원남동 80-2	110.8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66-26	158.7	
	4	235.8	원남동 72-1	235.8	
	5	208.3	원남동 66-13	208.3	
	6	228.1	원남동 66-12	228.1	
	7	89.3	원남동 66-51	89.3	
	8	281.0	원남동 66-10	281.0	
	9	200.6	원남동 70	200.6	
	10	161.9	원남동 69	82.6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68	79.3	
	11	277.7	원남동 67	155.4	67, 66-2, 66-8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66-2	109.1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원남동 66-8	13.2	
	12	284.3	원남동 66-9	284.3	
	13	277.6	원남동 66-69	72.0	66-6, 66-24 공동개발 지정 66-69, 66-6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66-6	63.5	
			원남동 66-24	142.1	
	14	181.8	원남동 66-66	181.8	
	15	234.7	원남동 66-7	234.7	
B-4	1	2,663.0	원남동 66-21	1,983.6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47-1	679.4	
	2	158.1	연지동 49	89.3	공동개발 권장
			연지동 50	68.8	
	3	145.5	연지동 55-1	145.5	
	4	337.7	연지동 53-3	172.1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51-1	109.5	
			연지동 51-2	56.1	
	5	139.1	연지동 56	74.6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57-3	28.1	
			연지동 57-1	36.4	
B-5	1	343.8	인의동 1-6	22.8	2, 3-1 공동개발 권장 1-6, 1-7, 2-5, 2 공동개발 지정
			인의동 1-7	18.8	
			인의동 2-5	44.3	
			인의동 2	168.6	
			인의동 3-1	89.3	
	2	403.6	인의동 4-1	13.2	4, 5-2 공동개발 권장 4, 4-1 공동개발 지정 5-2, 7-5, 6 공동개발 지정
			인의동 4	260.5	
			인의동 5-2	70.4	
			인의동 7-5	15.2	
			인의동 6	44.3	
B-6	1	142.1	원남동 66-19	142.1	
	2	263.4	원남동 66-18	263.4	
	3	262.1	원남동 66-75	262.1	
	4	148.0	원남동 66-44	148.0	
	5	122.8	연지동 46-1	122.8	
	6	198.3	원남동 46-1	122.8	공동개발 권장
			연지동 43	76.0	
	7	62.2	연지동 45	62.2	
	8	96.9	연지동 44-1	96.9	
	9	63.6	연지동 44-2	63.6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10	254.8	연지동 42	254.8	
	11	376.9	원남동 66-17	376.9	
	12	112.4	연지동 37	112.4	
	13	144.5	연지동 41-1	80.7	공동개발 권장
			연지동 41-2	63.8	
	14	110.4	연지동 40	110.4	
	15	115.6	연지동 38-2	59.5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39	56.1	
	16	238.0	연지동 36-1	84.3	35, 36-2 공동개발 지정 36-1, 36-2 공동개발 권장
			연지동 35	135.5	
			연지동 36-2	18.2	
	17	208.4	연지동 33	208.4	
	18	198.3	연지동 5-5	198.3	
	19	205.0	연지동 5-3	205.0	
	20	168.6	연지동 5-6	168.6	
	21	346.4	연지동 30	346.4	
	22	135.5	연지동 28	135.5	
	23	60.7	연지동 27	60.7	
B-7	1	217.2	원남동 65-2	217.2	
	2	189.3	원남동 65-3	189.3	
	3	112.2	원남동 66-34	59.2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66-50	53.0	
	4	77.7	원남동 66-46	77.7	
	5	134.3	원남동 66-32	126.0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66-45	8.3	
	6	187.8	원남동 64-2	187.8	
	7	154.4	원남동 63-3	2.0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64-1	149.4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원남동 63-5	3.0	
	8	220.5	원남동 63-2	126.0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63-4	94.5	
	9	376.9	원남동 66-31	205.0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66-1	171.9	
	10	116.6	원남동 66-38	53.9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66-49	62.7	
	11	145.5	원남동 66-58	50.6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66-39	46.3	
			원남동 66-56	48.6	
	12	115.7	원남동 66-60	59.5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66-57	56.2	
	13	211.5	원남동 66-37	62.8	66-54, 66-55 공동개발 지정 66-37, 66-55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66-55	79.3	
			원남동 66-54	69.4	
	14	142.1	원남동 66-67	142.1	
	15	105.8	연지동 5-1	105.8	
	16	66.1	연지동 5-2	66.1	
B-8	1	110.1	원남동 62	110.1	
	2	870.3	원남동 61	89.3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1-24	781.0	
	3	175.3	연지동 3-1	32.1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3-2	46.3	
			연지동 3-3	56.2	
			연지동 3-4	40.7	
	4	304.1	연지동 4-6	65.1	공동개발 권장
			연지동 4-1	162.3	
			연지동 4-5	76.7	
	5	228.4	연지동 4-11	56.2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4-3	168.6	
			연지동 4-2	3.6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6	98.8	연지동 4-7	56.2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4-14	42.6	
	7	89.3	연지동 4-10	89.3	
	8	66.1	연지동 4-8	66.1	
	9	169.9	연지동 6-1	169.9	
	10	200.4	연지동 8	95.9	7, 8 공동개발권장 7, 6-2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7	92.6	
			연지동 6-2	11.9	
	11	117.0	연지동 9	117.0	
	12	79.3	연지동 10	79.3	
	13	148.7	연지동 1-17	64.8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11	69.4	
			연지동 1-19	14.5	
	14	156.4	연지동 1-16	61.5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1-20	94.9	
	15	66.1	연지동 16	66.1	
	16	82.6	연지동 17	82.6	
	17	74.6	연지동 25	74.6	
	18	57.6	연지동 24	57.6	
	19	86.0	연지동 15	86.0	
	20	109.1	연지동 14	109.1	
	21	72.7	연지동 13	72.7	
	22	89.3	연지동 18	89.3	
	23	210.3	연지동 19	164.0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12	46.3	
	24	137.2	연지동 22	137.2	
B-9	1	3,403.2	연지동 2-1	36.4	1-1, 2-1, 2-3 공동개발 지정 1-32, 327-3 공동개발 지정 1-1, 1-32 공동개발 권장
			연지동 2-3	113.2	
			연지동 1-1	974.4	
			연건동 327-3	8.6	
			연지동 1-32	2,370.6	
B-10	1	10,503.8	연지동 1-15	41.3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1-11	1,555.9	
			연지동 1-21	26.8	
			연지동 1-22	15.9	
			연지동 1-23	5.0	
			연지동 1-8	1,094.4	
			연지동 1-7	596.1	
			연지동 1-33	1,368.8	
			효제동 73-4	10.2	
			연지동 127-3	19.2	
			효제동 47-4	31.5	
			연지동 1-30	5,738.7	
B-11	1	290.4	연건동 199-2	178.2	공동개발 지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연건동 198-6	112.2	
	2	468.5	연건동 198-7	320.9	공동개발 지정
			연건동 198-11	147.6	
	3	243.6	연건동 198-2	243.6	
	4	1,135.2	연건동 195-12	1,135.2	
	5	416.5	연건동 195-38	60.8	195-40, 197-4 공동개발 지정 195-38, 195-3 공동개발 지정 195-3, 197-4 공동개발 권장
			연건동 195-40	58.5	
			연건동 195-3	214.9	
			연건동 195-4	82.3	
	6	261.2	연건동 197-5	172.9	공동개발 지정
			연건동 197-6	42.0	
			연건동 197-7	46.3	
B-12	1	165.1	연건동 195-23	165.1	
	2	155.4	연건동 195-24	155.4	
	3	185.1	연건동 195-25	185.1	
	4	307.4	연건동 195-16	307.4	
	5	117.5	연건동 195-17	117.5	
	6	105.8	연건동 195-13	105.8	
	7	99.2	연건동 195-19	99.2	
	8	82.6	연건동 195-20	82.6	
	9	82.6	연건동 195-21	82.6	
	10	270.8	연건동 195-14	151.7	공동개발 지정
			연건동 195-15	119.1	
	11	467.9	연건동 195-31	155.1	195-31, 195-30 공동개발 지정 195-30, 195-11 공동개발 권장
			연건동 195-30	55.0	
			연건동 195-11	257.8	
	12	867.1	연건동 195-10	867.1	
	13	169.2	연건동 195-32	169.2	
B-13	1	253.5	인의동 8-2	35.0	8-2, 9 공동개발 지정 8-2, 13-2 공동개발 권장
			인의동 9	78.7	
			인의동 13-2	139.8	
	2	119.0	인의동 10	119.0	
	3	248.0	인의동 12	248.0	
	4	103.4	인의동 14	46.9	공동개발 지정
			인의동 14-2	36.7	
			인의동 14-6	19.8	
	5	178.5	인의동 16	82.6	공동개발 권장
			인의동 17	95.9	
	6	447.8	인의동 15-2	140.5	공동개발 권장
			인의동 18	307.3	
	7	252.4	인의동 20	12.1	20, 19, 21 공동개발 지정 19, 22-1 공동개발 권장
			인의동 19	106.0	
			인의동 21	5.2	
			인의동 22-1	129.1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8	214.7	인의동 25	214.7	
B-14	1	326.8	연지동 58	113.2	공동개발 권장
			연지동 65-2	213.6	
	2	501.6	연지동 59	501.6	
	3	277.9	연지동 70	277.9	
	4	348.7	연지동 62-2	348.7	
	5	112.4	연지동 74-2	112.4	
	6	234.7	연지동 73	234.7	
	7	69.4	연지동 74-3	69.4	
	8	331.4	연지동 75	181.6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74-5	66.1	
			연지동 76	83.7	
B-15	1	62.7	연지동 83	16.5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84	16.5	
			연지동 85	29.7	
	2	128.9	연지동 87	19.8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88	16.5	
			연지동 89	59.5	
			연지동 89-1	33.1	
	3	181.9	연지동 82	95.9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90	86.0	
	4	208.3	연지동 80	208.3	
	5	115.7	연지동 91	115.7	
	6	316.4	연지동 110-2	316.4	
	7	470.4	연지동 110-1	470.4	
	8	148.8	연지동 108-1	148.8	
	9	234.7	연지동 107	168.6	공동개발 권장
			연지동 106	66.1	
	10	36.4	연지동 103	36.4	102, 103 공동개발 지정
B-16	1	60.5	연지동 102	60.5	102, 103 공동개발 지정
	2	99.2	연지동 93-1	99.2	
	3	238.0	연지동 74-1	49.6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74-6	56.2	
			연지동 93-2	132.2	
	4	62.8	연지동 74-8	62.8	
	5	95.9	연지동 74-9	95.9	
	6	55.2	연지동 74-10	55.2	
	7	866.3	연지동 74-12	782.4	74-12, 100-11 공동개발 지정 95-1, 74-12 공동개발 권장
			연지동 100-11	7.9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연지동 95-1	76.0	
	8	191.4	연지동 96-2	191.4	
	9	122.3	연지동 101-1	122.3	
	10	51.9	연지동 102-2	51.9	
	11	102.5	연지동 100-13	102.5	
	12	105.8	연지동 100-12	105.8	
	13	350.4	연지동 100-5	350.4	
	14	169.0	연지동 97	155.4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96-1	13.6	
	15	109.1	연지동 98-1	66.1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98-2	43.0	
	16	371.2	연지동 157-3	15.8	157, 155-1, 199-1 공동개발 권장 155-1, 187-1 공동개발 지정 157, 157-3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157	107.2	
			연지동 155-1	192.0	
			연지동 187-1	2.2	
			연지동 199-1	54.0	
	17	380.5	연지동 105	380.5	
	18	244.0	연지동 100-14	244.0	
	19	172.6	연지동 100-1	172.6	
	20	112.4	연지동 100-3	112.4	
	21	148.8	연지동 100-2	148.8	
	22	191.8	연지동 100-4	105.8	공동개발 권장
			연지동 99	86.0	
B-17	1	228.2	연지동 133	191.7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134-1	28.3	
			연지동 134-3	8.2	
	2	370.2	연지동 111	138.8	111, 112-1, 112-2 공동개발 지정 111, 113 공동개발 권장
			연지동 112-1	74.7	
			연지동 112-2	60.8	
			연지동 113	95.9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3	125.6	연지동 114-1	125.6	
	4	214.9	연지동 115	214.9	
	5	86.0	연지동 126	86.0	
	6	257.8	연지동 125	132.2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127	125.6	
	7	297.5	연지동 123-1	19.8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123	191.7	
			연지동 124	86.0	
	8	148.8	연지동 122	148.8	
	9	353.7	연지동 119	353.7	
	10	456.0	연지동 130	128.9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129	82.6	
			연지동 128	76.0	
			연지동 128-1	23.1	
			연지동 130	26.4	
			연지동 136-11	119.0	
	11	155.3	연지동 131	155.3	
	12	115.7	연지동 132-1	115.7	
B-18	1	7,419.2	연지동 199-3	27.7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136-5	7,358.2	
			연지동 136-61	13.0	
			연지동 136-62	20.3	
B-19	1	5,250.9	연지동 135	5,150.4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51-5	95.3	
			효제동 49-5	5.2	
B-20	1	8,840.5	연지동 136-74	8,840.5	
	2	663.4	연지동 136-25	251.5	136-25, 136-26 공동개발 권장 136-26, 136-35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136-26	383.9	
			연지동 136-35	28.0	
B-21	1	110.5	효제동 49-1	110.5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2	235.1	효제동 50-8	212.0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51-11	19.8	
			효제동 51-10	3.3	
	3	143.1	효제동 48	143.1	
	4	189.1	효제동 50-1	189.1	
	5	113.4	효제동 51-3	113.4	
	6	109.0	효제동 52	102.4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50-7	6.6	
	7	1,391.7	효제동 46	67.4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45	1,324.3	
B-22	1	3,247.5	효제동 21-3	8.3	효제동 21-3번지 특별계획구역
			효제동 21-8	43.6	
			효제동 21-9	86.7	
			효제동 21-10	146.4	
			효제동 21-11	6.6	
			효제동 21-12	373.6	
			효제동 21-13	135.5	
			효제동 21-14	3.3	
			효제동 21-15	29.8	
			효제동 22-3	683.4	
			효제동 23-2	91.6	
			효제동 24-1	62.8	
			효제동 24-2	93.7	
			효제동 24-3	46.3	
			효제동 24-4	52.9	
			효제동 24-8	102.5	
			효제동 24-9	52.9	
			효제동 24-12	25.3	
			효제동 25-2	252.6	
			효제동 36	88.3	
			효제동 36-1	136.5	
			효제동 36-2	111.4	
			효제동 37	80.0	
			효제동 39-7	125.6	
			효제동 40	402.9	
			효제동 73-9	1.9	
			효제동 73-10	3.1	
B-23	1	571.2	효제동 54-2	559.9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54-3	1.4	
			효제동 54-1	9.9	
	2	69.4	효제동 59	69.4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3	78.0	효제동 61-1	78.0	
	4	105.8	효제동 61-3	105.8	
	5	113.4	효제동 61	113.4	
	6	160.4	효제동 64-1	160.4	
	7	113.4	효제동 62-3	113.4	
	8	75.3	효제동 62-4	72.7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62-5	2.6	
	9	89.6	효제동 64-9	3.3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64-4	16.5	
			효제동 64-5	69.8	
	10	96.1	효제동 64-6	96.1	
	11	313.9	효제동 64-8	214.7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64-2	99.2	
	12	514.7	효제동 65-3	3.3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65-2	418.8	
			효제동 65-4	92.6	
	13	502.6	효제동 67-4	502.6	
B-24	1	2,314.9	연지동 136-12	2,175.8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136-67	73.5	
			연지동 136-93	20.4	
			연지동 136-95	45.2	
C-1	1	716.7	연건동 187-1	712.7	공동개발 지정
			연건동 187-8	4.0	
	2	153.0	연건동 190-10	121.7	공동개발 지정
			연건동 190-9	13.3	
			연건동 190-17	18.0	
	3	209.3	연건동 190-16	150.4	공동개발 지정
			연건동 190-21	58.9	
	4	680.6	연건동 190-22	200.0	192-1, 192-2 공동개발 지정 192-2, 190-22 공동개발 권장
			연건동 192-1	385.2	
			연건동 192-2	95.4	
	5	194.8	연건동 190-24	29.8	190-24, 190-25 공동개발 지정 190-25, 193-1 공동개발 권장 190-26, 190-27, 193-1, 193-2 공동개발 지정
			연건동 190-25	33.1	
			연건동 190-26	1.7	
			연건동 190-27	0.3	
			연건동 193-1	105.8	
			연건동 193-2	24.1	
	6	178.3	연건동 194-3	29.2	공동개발 지정
			연건동 193-4	149.1	
C-2	1	593.9	효제동 20	593.9	
	2	1,157.9	효제동 20-3	1,129.1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0-6	28.8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3	135.2	효제동 1	135.2	
	4	1,111.0	효제동 3-1	55.5	3-1, 2 공동개발 권장 3-6, 4-1, 5-1 공동개발 권장 5-3, 6, 7, 10 공동개발 권장 2, 3-3, 3-5, 3-6 공동개발 지정 4, 4-1, 4-2 공동개발 지정 5, 5-1, 5-2, 5-3 공동개발 지정 6, 6-2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	147.8	
			효제동 3-3	50.2	
			효제동 3-5	1.3	
			효제동 3-6	9.9	
			효제동 4	79.3	
			효제동 4-1	29.8	
			효제동 4-2	8.6	
			효제동 5	49.6	
			효제동 5-1	19.8	
			효제동 5-2	49.6	
			효제동 5-3	16.5	
			효제동 6-2	89.3	
			효제동 6	80.1	
			효제동 7	237.7	
			효제동 10	186.0	
	5	155.4	효제동 13	155.4	
	6	148.8	효제동 14	112.4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8	36.4	
	7	154.3	효제동 15-1	154.3	
	8	66.1	효제동 16-1	66.1	
	9	86.0	효제동 16-2	86.0	
	10	189.7	효제동 19-4	94.2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9-5	95.5	
	11	343.8	효제동 19-1	343.8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12	99.2	효제동 19-3	99.2	
C-3	1	168.6	효제동 73	102.5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74	66.1	
	2	135.5	효제동 100-11	135.5	
	3	208.3	효제동 101	208.3	
	4	165.3	효제동 76-2	165.3	
	5	158.7	효제동 75	158.7	
	6	142.1	효제동 100-17	142.1	
	7	92.6	효제동 100-10	92.6	
	8	230.6	효제동 105-1	45.5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05-2	66.1	
			효제동 105-3	99.2	
			효제동 100-1	19.8	
	9	168.9	효제동 103	168.9	
	10	221.5	효제동 77	205.0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77-1	16.5	
	11	446.3	효제동 80-1	436.4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80-3	9.9	
	12	228.0	효제동 100-13	82.6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100-14	79.3	
			효제동 100-15	66.1	
	13	79.3	효제동 105-9	79.3	
	14	79.3	효제동 105-10	79.3	
	15	86.0	효제동 105-7	86.0	
	16	379.2	효제동 105-5	132.1	105-6, 105-13 공동개발 지정 105-5, 105-6, 107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105-6	89.3	
			효제동 105-13	9.9	
			효제동 107	147.9	
	17	122.3	효제동 107-2	122.3	
	18	89.2	효제동 72	82.6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72-1	6.6	
C-4	1	7,612.0	효제동 67-2	544.4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94-2	16.5	
			효제동 95-1	69.4	
			효제동 95-2	6.6	
			효제동 98	5,888.8	
			효제동 84-1	252.2	
			효제동 91	10.5	
			효제동 255-17	424.8	
			효제동 291-8	0.1	
			효제동 85-1	28.6	
			효제동 291-7	3.9	
			효제동 291-9	10.4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효제동 291-11	17.6	
			효제동 86-4	116.7	
			효제동 86-3	133.3	
			효제동 89-1	85.7	
			효제동 90-5	2.5	
	2	94.2	효제동 113	59.9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115-1	34.3	
	3	26.4	연지동 136-49	133.3	
C-5	1	552.9	이화동 204-3	93.2	공동개발 지정
			이화동 205-2	79.3	
			이화동 205-4	17.5	
			이화동 206-2	32.4	
			이화동 209-1	330.5	
	2	156.5	이화동 207-2	156.5	
	3	252.6	이화동 215	252.6	
	4	141.8	이화동 214-2	46.3	공동개발 지정
			이화동 217	95.5	
	5	498.9	이화동 212	234.4	211, 211-1, 214-4 공동개발 지정 212, 211-1 공동개발 권장
			이화동 211-1	23.1	
			이화동 211	148.8	
			이화동 214-4	92.6	
	6	148.5	이화동 214-3	46.3	공동개발 지정
			이화동 217-3	3.3	
			이화동 218-1	80.3	
			이화동 218-3	18.6	
	7	162.0	이화동 222-1	162.0	
	8	167.6	이화동 220	167.6	
	9	69.4	이화동 219	62.8	공동개발 지정
			이화동 219-1	6.6	
	10	149.8	충신동 77-1	149.8	
	11	69.4	충신동 81	69.4	
	12	257.6	충신동 83	178.2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82-1	39.7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충신동 82-2	29.8	
			충신동 82-3	9.9	
	13	86.0	충신동 80	86.0	
	14	86.0	충신동 79	86.0	
	15	141.5	충신동 78-1	47.7	78-1, 78-2 공동개발 지정 78-2, 78-3 공동개발 권장
			충신동 78-2	78.5	
			충신동 78-3	15.3	
C-6	1	1,157.3	충신동 91-7	102.1	91-1, 97-2 공동개발 지정 89, 89-1, 89-2 공동개발 지정 85-3, 90, 90-1, 90-2 공동개발 지정 85, 86, 85-3, 89-1 공동개발 권장 90-1, 91-7, 91-6, 91-1 공동개발 권장
			충신동 91-6	89.3	
			충신동 91-1	99.5	
			충신동 97-2	52.9	
			충신동 85	132.2	
			충신동 86	269.8	
			충신동 89	76.0	
			충신동 89-1	71.7	
			충신동 89-2	79.3	
			충신동 85-3	12.6	
			충신동 90-1	43.0	
			충신동 90-2	16.5	
			충신동 90	112.4	
	2	132.9	충신동 92	132.9	
	3	250.1	충신동 91-4	139.6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94-3	14.5	
			충신동 91-5	96.0	
	4	129.0	충신동 88-1	129.0	
	5	204.4	충신동 95	79.4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96	120.8	
			충신동 91-8	4.2	
C-7	1	322.3	충신동 100	322.3	
	2	135.5	충신동 101-1	135.5	
	3	188.4	충신동 110	188.4	
	4	201.7	충신동 108	201.7	
	5	99.2	충신동 107	99.2	
	6	998.3	충신동 100-2	97.5	101-2, 102-1, 102-2 공동개발 지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충신동 101-2	185.1	100-2, 101-2 공동개발 권장 104-2, 106 공동개발 지정 102-2, 103-1, 104-1, 104-2, 105-1 공동개발 권장
			충신동 102-2	58.5	
			충신동 102-1	76.0	
			충신동 104-2	92.9	
			충신동 106	95.9	
			충신동 105-1	77.7	
			충신동 103-1	237.0	
			충신동 104-1	77.7	
C-8	1	268.8	이화동 107-2	249.3	공동개발 지정
			이화동 115-2	19.5	
	2	86.6	이화동 106-2	86.6	
	3	306.8	이화동 105-2	306.8	
	4	82.7	이화동 100-1	57.9	공동개발 지정
			이화동 101-2	24.8	
	5	87.8	이화동 113	87.8	
	6	204.9	이화동 108-1	119.0	공동개발 지정
			이화동 108-4	75.0	
			이화동 108-5	10.2	
			이화동 108-8	0.7	
	7	82.6	이화동 112	82.6	
	8	82.6	이화동 109-2	19.8	공동개발 지정
			이화동 110	13.2	
			이화동 111	49.6	
	9	142.4	이화동 108-2	74.0	공동개발 지정
			이화동 108-7	2.0	
			이화동 109-1	66.4	
	10	261.2	충신동 75	211.2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72-1	36.4	
			충신동 72-3	13.6	
	11	438.7	충신동 73-7	324.0	73-7, 73-6 공동개발 지정 73-6, 74 공동개발 권장
			충신동 73-6	38.7	
			충신동 74	76.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12	113.7	충신동 73-5	113.7	
	13	154.7	충신동 73-3	154.7	
	14	276.4	충신동 73-4	276.4	
	15	289.6	충신동 57-4	289.6	
	16	213.5	충신동 75-5	213.5	
	17	97.2	충신동 73-1	97.2	
	18	217.5	충신동 57-6	217.5	
C-9	1	254.5	충신동 70	254.5	
	2	148.2	충신동 68	148.2	
	3	109.2	충신동 67-1	109.2	
	4	326.9	충신동 69-3	323.3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73-18	3.6	
	5	142.8	충신동 69-4	142.8	
	6	137.9	충신동 69-2	137.9	
	7	200.8	충신동 73-15	5.0	62-1, 62-9 공동개발 권장 73-15, 62-1, 61-2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62-1	105.8	
			충신동 62-9	86.0	
			충신동 61-2	4.0	
	8	217.2	충신동 61-3	8.3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61-4	9.6	
			충신동 61-5	14.2	
			충신동 62-4	62.8	
			충신동 62-5	59.5	
			충신동 62-6	62.8	
	9	80.8	충신동 62-7	80.8	
	10	165.2	충신동 62-10	82.6	공동개발 권장
			충신동 62-11	82.6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11	113.2	충신동 62-12	113.2	
	12	698.2	충신동 62-2	583.4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62-14	58.2	
			충신동 62-15	56.6	
	13	146.8	충신동 66	146.8	
	14	438.0	충신동 65	438.0	
	15	70.7	충신동 62-13	70.7	
C-10	1	3,613.5	충신동 60	3,382.4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56-7	197.7	
			충신동 56-6	33.4	
C-11	1	191.4	충신동 115-1	90.3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15-2	101.0	
	2	143.8	충신동 123-8	143.8	
	3	91.9	충신동 123-9	91.9	
	4	112.7	충신동 123-10	112.7	
	5	186.0	충신동 116	186.0	
	6	279.3	충신동 117	93.2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17-1	93.5	
			충신동 118	92.6	
	7	97.5	충신동 123-11	97.5	
	8	95.5	충신동 123-12	95.5	
	9	90.6	충신동 123-13	81.3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53-7	9.3	
	10	198.9	충신동 122	46.3	122, 121, 120 공동개발 지정 119, 120 공동개발 권장
			충신동 121	31.8	
			충신동 120	31.5	
			충신동 119	89.3	
	11	145.9	충신동 126-1	48.6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27	97.3	
	12	92.7	충신동 129	92.7	
	13	76.0	충신동 128	76.0	
	14	118.3	충신동 123-7	118.3	
	15	179.5	충신동 123-6	92.9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23-5	86.6	
	16	129.5	충신동 123-2	114.0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23-3	9.9	
			충신동 123-17	5.6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17	118.3	충신동 123-1	60.5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23-16	52.2	
			충신동 123-18	5.6	
	18	152.1	충신동 130	152.1	
	19	187.4	충신동 153-2	187.4	
	20	139.8	충신동 153-5	139.8	
	21	118.2	충신동 153-3	118.2	
	22	85.8	충신동 155-2	85.8	
	23	264.1	충신동 155-1	263.1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23-19	1.0	
	24	79.3	충신동 131	79.3	
	25	59.5	충신동 134	59.5	
	26	59.5	충신동 133-2	59.5	
	27	74.7	충신동 135	74.7	
	28	86.9	충신동 123-14	86.9	
	29	62.8	충신동 133-1	62.8	
C-12	1	191.7	충신동 156	191.7	
	2	86.0	충신동 152	86.0	
	3	185.2	충신동 151	99.2	공동개발 권장
			충신동 150	86.0	
	4	256.9	충신동 136-9	189.1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36-8	67.8	
	5	95.9	충신동 132-1	52.9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32-2	43.0	
	6	92.6	충신동 149	92.6	
	7	135.5	충신동 148	135.5	
	8	157.7	충신동 136-7	157.7	
	9	117.6	충신동 136-2	117.6	
	10	229.9	충신동 136-1	229.9	
	11	247.9	충신동 136-5	195.0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42-2	52.9	
	12	155.4	충신동 147	155.4	
	13	158.7	충신동 144	89.3	
			충신동 145-2	9.9	
			충신동 145-1	59.5	
	14	105.8	충신동 143	105.8	
	15	132.8	충신동 141-1	132.8	
	16	177.2	충신동 140-2	177.2	
	17	115.4	충신동 136-12	115.4	
	18	127.6	충신동 136-16	125.6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36-13	2.0	
	19	128.9	충신동 160	128.9	
	20	101.4	충신동 159	101.4	
	21	79.4	충신동 163	79.4	공동개발 지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22	71.1	충신동 174	71.1	
	23	136.3	충신동 173-2	34.0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65	39.7	
			충신동 166	56.2	
			충신동 120-7	6.4	
	24	103.0	충신동 167	79.3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73-1	23.7	
	25	446.7	충신동 170	372.9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72	48.5	
			충신동 173-3	25.3	
C-13	1	176.8	효제동 123	23.1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24-2	71.7	
			효제동 125-2	82.0	
	2	729.2	효제동 126-2	729.2	
C-14	1	120.0	충신동 195	56.0	공동개발 권장
			충신동 196	64.0	
	2	92.6	충신동 194	39.7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97	52.9	
	3	370.4	충신동 198-1	155.2	193, 200-1 공동개발 지정 198-1, 200-1 공동개발 권장
			충신동 200-1	112.7	
			충신동 193	102.5	
	4	102.1	충신동 201-1	85.6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201-3	16.5	
	5	148.4	충신동 191-1	65.8	공동개발 권장
			충신동 191-2	82.6	
	6	126.5	충신동 189-5	126.5	
	7	252.6	충신동 189-4	133.0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89-1	119.6	
	8	211.7	충신동 191-3	89.3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91-4	86.0	
			충신동 192	36.4	
	9	148.8	충신동 189-6	148.8	
	10	138.8	충신동 189-3	138.8	
	11	112.4	충신동 189-8	112.4	
	12	145.5	충신동 189-7	145.5	
	13	244.3	충신동 191-5	62.8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91-6	99.2	
			충신동 206-18	82.3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14	627.1	충신동 202	46.3	202, 203, 204-2, 205-5 공동개발 지정 205-3, 205-5, 206-12 공동개발 권장 206-12, 206-13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203	135.5	
			충신동 204-2	39.7	
			충신동 205-5	10.0	
			충신동 205-3	180.8	
			충신동 206-12	125.6	
			충신동 206-13	89.2	
	15	76.0	충신동 206-15	76.0	
	16	142.8	충신동 206-11	142.8	
	17	327.3	충신동 189-20	327.3	
	18	171.9	충신동 189-11	171.9	
	19	129.9	충신동 206-1	129.9	
	20	80.3	충신동 206-14	80.3	
C-15	1	149.8	충신동 175-24	149.8	
	2	187.4	충신동 175-16	187.4	
	3	165.3	충신동 175-18	165.3	
	4	158.7	충신동 175-15	158.7	
	5	204.9	충신동 175-19	204.9	
	6	195.0	충신동 175-14	195.0	
	7	178.8	충신동 175-10	178.8	
	8	186.1	충신동 175-11	186.1	
	9	197.4	충신동 175-9	197.4	
	10	190.7	충신동 175-8	190.7	
	11	188.4	충신동 175-12	188.4	
	12	182.8	충신동 175-7	182.8	
	13	167.8	충신동 175-1	167.8	
	14	84.7	충신동 31-9	84.7	
	15	195.0	충신동 175-2	195.0	
	16	69.8	충신동 31-10	12.2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31-11	21.2	
			충신동 31-24	36.4	
	17	185.1	충신동 175-3	185.1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18	72.4	충신동 31-12	72.4	
	19	214.8	충신동 31-14	40.0	31-14, 31-25 공동개발 지정 31-32, 179-1 공동개발 지정 31-14, 31-15 공동개발 권장 31-25, 31-32 공동개발 권장
			충신동 31-25	60.5	
			충신동 31-15	59.8	
			충신동 179-1	36.4	
			충신동 31-32	18.1	
	20	185.1	충신동 175-5	185.1	
C-16	1	66.1	충신동 189-2	66.1	
	2	62.8	충신동 189-13	62.8	
	3	69.4	충신동 188-6	69.4	
	4	166.3	충신동 175-21	51.6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75-23	114.7	
	5	155.4	충신동 188-7	155.4	
	6	253.6	충신동 188-8	162.8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88-9	90.8	
	7	56.2	충신동 188-1	56.2	
	8	95.9	충신동 188-2	95.9	
	9	204.1	충신동 188-3	43.0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88-5	161.1	
	10	110.6	충신동 175-13	110.6	
	11	119.6	충신동 187-28	119.6	
	12	327.6	충신동 187-30	63.1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87-22	112.4	
			충신동 187-19	152.1	
	13	82.6	충신동 187-23	82.6	
	14	145.5	충신동 187-20	145.5	
	15	76.0	충신동 187-24	76.0	
	16	132.2	충신동 187-21	132.2	
	17	87.5	충신동 187-18	87.5	
	18	106.1	충신동 186-1	106.1	
	19	126.6	충신동 187-25	126.6	
	20	2.3	충신동 179-13	2.3	
	21	718.7	충신동 177	462.9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76	150.0	
			충신동 187-26	105.8	공동개발 권장
	22	189.1	충신동 188-10	56.9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89-14	42.0	
			충신동 189-15	90.2	
	23	291.1	충신동 179-10	264.3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79-8	26.8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24	65.2	충신동 31-38	15.6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79-24	49.6	
	25	448.9	충신동 178-2	17.2	178-2, 187-27 공동개발 지정 184, 187-27 공동개발 권장
			충신동 184	306.1	
			충신동 187-27	125.6	
	26	125.0	충신동 179-12	91.6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79-15	33.4	
C-17	1	206.6	충신동 35-12	23.5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35-27	15.5	
			충신동 35-7	6.9	
			충신동 35-17	18.2	
			충신동 35-16	38.3	
			충신동 35-8	74.8	
			충신동 35-10	29.4	
	2	217.5	충신동 33-11	29.8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33-2	122.3	
			충신동 33-3	3.3	
			충신동 33-13	38.3	
			충신동 33-18	10.6	
			충신동 33-14	13.2	
	3	278.7	충신동 27-88	71.7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27-89	33.1	
			충신동 27-42	152.1	
			충신동 32-1	5.3	
			충신동 33-12	16.5	
C-18	1	293.3	충신동 27-82	49.6	27-82, 27-43, 27-84, 24-44 공동개발 지정 27-46, 27-47, 27-69, 27-48 공동개발 지정 27-44, 27-46 공동개발 권장
			충신동 27-43	6.6	
			충신동 27-84	46.3	
			충신동 27-44	57.9	
			충신동 27-46	17.2	
			충신동 27-47	59.5	
			충신동 27-69	33.1	
			충신동 27-48	23.1	
	2	186.1	충신동 27-83	186.1	
	3	90.8	충신동 31-19	44.7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31-20	46.1	
	4	95.9	충신동 27-85	95.9	
	5	109.1	충신동 27-72	109.1	
	6	79.8	충신동 31-5	79.8	
	7	294.8	충신동 27-86	56.2	27-86, 27-50 공동개발 권장 27-51, 27-52 공동개발 권장 27-53, 27-54, 27-52 공동개발 지정 27-50, 27-51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27-50	59.5	
			충신동 27-51	31.7	
			충신동 27-52	38.3	
			충신동 27-53	56.2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충신동 27-54	52.9	
	8	162.6	충신동 30-1	162.6	
	9	99.2	충신동 27-73	99.2	
	10	318.3	충신동 27-56	318.3	
C-19	1	88.6	충신동 29-9	88.6	
	2	121.0	충신동 29-7	121.0	
	3	114.0	충신동 29-1	114.0	
	4	380.1	충신동 27-59	69.4	27-59, 27-60 공동개발 지정 27-60, 27-61 공동개발 권장 27-61, 27-62, 29-3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27-60	53.9	
			충신동 27-61	71.4	
			충신동 27-62	79.3	
			충신동 29-3	106.1	
	5	115.1	충신동 29-2	86.0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29-17	24.1	
			충신동 179-18	5.0	
	6	93.2	충신동 179-17	93.2	
	7	184.7	충신동 27-133	2.2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29-4	56.2	
			충신동 29-18	2.3	
			충신동 179-19	91.2	
			충신동 179-41	31.2	
			충신동 29-22	1.6	
	8	111.8	충신동 29-19	4.4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29-5	52.9	
			충신동 29-6	54.5	
	9	269.2	충신동 27-64	269.2	
	10	123.2	충신동 27-66	123.2	
D-1	1	218.2	인의동 95-1	9.9	95, 95-1 공동개발 지정 94, 95 공동개발 권장
			인의동 95	122.3	
			인의동 94	86	
	2	400.7	인의동 103	26.4	102, 103 공동개발 지정 101-1, 101-3, 110-1 공동개발 지정 101-1, 102 공동개발 권장
			인의동 102	33.1	
			인의동 101-1	171.9	
			인의동 101-3	158.7	
			인의동 110-1	10.6	
	3	148.2	인의동 90-2	8.1	90-2, 97 공동개발 지정 98-2, 98-1, 100-1 공동개발 지정 97, 98-2 공동개발 권장
			인의동 97	51	
			인의동 98-2	64.9	
			인의동 98-1	22.1	
			인의동 100-1	2.1	
D-2	1	2,829.9	인의동 112-1	2,767.1	공동개발 지정
			인의동 111-7	62.8	
D-3	1	4,286.5	인의동 28-28	303.3	공동개발 지정
			인의동 28-8	1,516.8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인의동 28-2	697.1	
			인의동 28-21	429.8	
			인의동 28-15	466.1	
			인의동 28-19	10.6	
			인의동 28-4	201	
			인의동 28-11	199	
			인의동 28-7	462.8	
D-4	1	1,980.8	인의동 28-36	518.5	28-36, 25-25, 28-26, 28-6 공동개발 권장 28-6, 48-1, 48-5 공동개발 지정
			인의동 28-25	357.2	
			인의동 28-26	845.5	
			인의동 28-6	212.6	
			인의동 48-1	44.2	
			인의동 48-5	2.8	
	2	1,644.5	인의동 28-9	1,644.5	
D-5	1	155.4	연지동 167-2	2.5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168	71.2	
			연지동 164-2	22.8	
			연지동 163-3	12.3	
			연지동 169	89.3	
			연지동 170	142.8	
	2	663.7	연지동 163-1	17.4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184	40.4	
			연지동 183	179.7	
			연지동 181	264.2	
			연지동 186-1	162.0	
	3	171.9	연지동 173	171.9	
	4	135.5	연지동 174	72.7	공동개발 권장
			연지동 175-1	62.8	
	5	185.1	연지동 177-3	185.1	
	6	122.3	연지동 179	122.3	
	7	122.1	연지동 187-6	2.1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188-6	120.0	
	8	114.9	연지동 188-2	48.2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188-3	37.9	
			연지동 188-5	22.8	
			연지동 188	6.0	
	9	147.8	연지동 178	135.2	공동개발 지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연지동 178-1	12.6	
	10	62.5	연지동 188-11	62.5	
	11	195.0	연지동 188-12	59.5	188-4, 188-13 공동개발 지정 188-4, 188-12 공동개발 권장
			연지동 188-4	59.8	
			연지동 188-13	75.7	
	12	257.9	연지동 177-1	257.9	
	13	297.5	연지동 189	221.5	공동개발 권장
			연지동 191	76.0	
	14	95.9	연지동 192-1	95.9	
	15	242.7	연지동 136-70	242.7	
D-6	1	155.4	연지동 199	82.6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198-1	72.8	
	2	142.2	연지동 197-1	49.6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196	92.6	
	3	277.7	연지동 200	277.7	
	4	430.0	연지동 193-9	243.6	공동개발 권장
			연지동 193-10	186.4	
	5	144.5	연지동 193-6	144.5	
	6	99.2	연지동 203	99.2	
	7	338.5	연지동 204	338.5	
	8	296.5	연지동 193-8	296.5	
	9	405.5	연지동 206	369.6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209	35.9	
	10	325.0	연지동 193-7	319.0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216-8	6.0	
	11	263.8	연지동 216-3	158.4	216-3, 216-4 공동개발 지정 216-4, 218 공동개발 권장
			연지동 216-4	36.0	
			연지동 218	69.4	
	12	82.6	연지동 216-2	79.3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216-6	3.3	
	13	94.6	연지동 211	94.6	
	14	110.8	연지동 214	109.1	공동개발 지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연지동 214-1	1.7	
	15	97.6	연지동 212	68.2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213	29.4	
	16	66.1	연지동 219	66.1	
D-7	1	533.4	연지동 231-1	16.5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193-1	516.9	
	2	315.4	연지동 231	135.6	231, 232-1 공동개발 권장 232-1, 232-2, 230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232-1	37.6	
			연지동 232-2	49.6	
			연지동 230	92.6	
	3	109.1	연지동 229-1	41.0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229-2	68.1	
	4	247.9	연지동 228-1	56.2	공동개발 권장
			연지동 228-2	191.7	
	5	244.7	연지동 233-2	18.2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234-3	61.8	
			연지동 234-1	164.7	
	6	171.9	연지동 236	69.4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237	102.5	
	7	290.5	연지동 224-2	16.4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222	274.0	
	8	86.0	연지동 226	86.0	
	9	523.6	연지동 216-1	508.1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216-9	15.5	
	10	135.7	연지동 239-3	9.9	239-3, 239-2 공동개발 지정 239-2, 240 공동개발 권장
			연지동 239-2	56.2	
			연지동 240	69.6	
	11	189.9	연지동 239-1	19.8	239-1, 238-2 공동개발 지정 238-2, 238-8 공동개발 권장 238-8, 238-3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238-2	82.6	
			연지동 238-3	30.3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연지동 238-8	57.2	
	12	95.8	연지동 238-9	95.8	
	13	329.7	연지동 238-5	329.7	
	14	95.9	연지동 238-17	95.9	
	15	204.0	연지동 238-1	204.0	
	16	468.9	연지동 193-2	468.9	
D-8	1	245.0	연지동 245	49.1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246	146.3	
			연지동 247	49.6	
	2	201.6	연지동 244	69.4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248	49.6	
			연지동 243-4	82.6	
	3	122.3	연지동 251-2	122.3	
	4	112.4	연지동 252	52.9	
			연지동 253	59.5	
	5	278.6	연지동 254-1	278.6	
	6	227.8	연지동 255	227.8	
	7	625.1	연지동 250	625.1	
	8	201.6	연지동 243-1	201.6	
	9	122.6	연지동 242	122.6	
	10	148.4	연지동 258-14	148.4	
	11	100.2	연지동 258-15	100.2	
	12	99.2	연지동 258-16	99.2	
	13	153.1	연지동 258-4	153.1	
	14	76.0	연지동 258-11	76.0	
	15	109.1	연지동 258-5	109.1	
	16	150.7	연지동 258-10	72.7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258-9	78.0	
	17	104.4	연지동 258-6	104.4	
	18	99.2	연지동 258-7	99.2	
	19	116.7	연지동 258-18	116.7	
	20	79.3	연지동 258-8	79.3	
D-9	1	4,117.5	연지동 136-56	3,560.0	136-56, 136-86 공동개발 지정 136-73, 136-56 공동개발 권장
			연지동 136-73	435.5	
			연지동 136-86	122.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D-10	1	5,054.6	연지동 263	5,054.6	
D-11	1	2,297.6	연지동 136-46	2,024.5	공동개발 지정
			연지동 136-53	53.8	
			연지동 136-57	14.5	
			연지동 136-97	204.8	
D-12	1	348.3	효제동 308	296.9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306-3	33.1	
			효제동 306-2	18.3	
	2	1,148.8	효제동 315-6	725.3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315-1	423.5	
E-1	1	305.2	효제동 251-1	12.1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53-1	219.9	
			효제동 255-5	3.8	
			효제동 255-6	18.2	
			효제동 255-23	51.2	
	2	194.8	효제동 254	194.8	
	3	224.1	효제동 247-3	162.0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48-1	45.4	
			효제동 249-1	16.7	
	4	145.4	효제동 247-1	82.6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47-2	62.8	
	5	213.5	효제동 245-1	124.3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45-8	9.9	
			효제동 246-1	72.7	
			효제동 246-2	6.6	
	6	183.7	효제동 245-4	92.6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45-5	69.4	
			효제동 245-10	9.9	
			효제동 255-9	11.8	
	7	186.2	효제동 245-6	62.8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45-12	106.4	
			효제동 255-10	14.9	
			효제동 255-21	2.1	
	8	207.9	효제동 245-11	207.9	
	9	177.8	효제동 245-2	177.8	
	10	45.3	효제동 245-13	43.3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45-22	2.0	
	11	146.1	효제동 245-20	146.1	
	12	77.0	효제동 245-21	77.0	
	13	130.9	효제동 245-3	130.9	
	14	94.5	효제동 245-15	94.5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15	70.4	효제동 245-17	70.4	
	16	128.9	효제동 244	112.4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45-16	16.5	
	17	228.1	효제동 243	228.1	
	18	93.3	효제동 240-2	93.3	
	19	225.1	효제동 233-3	92.9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36	132.2	
E-2	1	191.5	효제동 273	191.5	
	2	132.2	효제동 272	132.2	
	3	109.1	효제동 271-1	69.4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271-2	39.7	
	4	92.6	효제동 270	92.6	
	5	163.6	효제동 285	2.3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69	89.3	
			효제동 268-2	72.0	
E-3	1	134.2	효제동 286	1.0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68-1	133.2	
	2	194.7	효제동 267	194.7	
	3	135.9	효제동 267-2	7.6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19-1	128.3	
E-4	1	132.8	효제동 219-4	0.3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65-7	1.3	
			효제동 220	131.2	
	2	435.4	효제동 264	0.3	221, 222-4, 264 공동개발 지정 221, 222-1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222-4	13.6	
			효제동 224	329.6	
			효제동 222-1	91.6	
	3	138.8	효제동 223	79.3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24	59.5	
	4	67.1	효제동 261-2	14.2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26-2	52.9	
	5	98.2	효제동 225	98.2	
	6	227.1	효제동 226-1	90.9	226-1, 260 공동개발 지정 226-1, 227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260	0.7	
			효제동 227	135.5	
	7	480.7	효제동 227-1	152.1	229, 256-1, 227-1 공동개발 지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효제동 256-1	156.7	228, 229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229	92.6	
			효제동 228	76.3	
E-5	1	868.0	효제동 231	211.6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232	99.2	
			효제동 233-1	557.2	
	2	188.4	효제동 233-2	188.4	
E-6	1	153.9	효제동 155-10	13.0	155-10, 133-2 공동개발 지정 133-2, 134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133-2	63.9	
			효제동 134	77.0	
	2	1,928.2	효제동 133-3	139.7	133-3, 133-7 공동개발 지정 136, 133-7 공동개발 권장 136, 138 공동개발 권장 136, 137, 143, 160-1, 164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133-7	13.0	
			효제동 136	157.7	
			효제동 138	82.6	
			효제동 137	256.5	
			효제동 143	181.8	
			효제동 160-1	487.8	
			효제동 164	609.1	
	3	115.7	효제동 139	115.7	
	4	109.1	효제동 140	72.7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41	36.4	
	5	128.9	효제동 144	128.9	
	6	231.4	효제동 145	231.4	
	7	317.2	효제동 151	317.2	
	8	211.7	효제동 155	211.7	
E-7	1	911.3	효제동 166-1	89.3	165, 166-1 공동개발 지정 166-1, 167, 171-5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165	62.8	
			효제동 167	544.3	
			효제동 171-5	214.9	
	2	69.4	효제동 215-1	69.4	
	3	89.3	효제동 216	89.3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4	52.9	효제동 217	52.9	
	5	191.7	효제동 218	191.7	
	6	99.2	효제동 209	99.2	
	7	370.2	효제동 211	175.2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12-1	195.0	
	8	92.6	효제동 214	92.6	
	9	165.3	효제동 208	165.3	
	10	128.9	효제동 171-20	128.9	
	11	72.7	효제동 171-7	72.7	
E-8	1	62.8	효제동 206	62.8	
	2	158.7	효제동 207-1	158.7	
	3	184.5	효제동 197-5	146.8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97-15	37.7	
	4	218.2	효제동 204	218.2	
	5	324.6	효제동 197-6	110.1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97-7	135.2	
			효제동 203	79.3	
	6	102.5	효제동 202	102.5	
	7	130.4	효제동 201	99.2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01-1	31.2	
	8	124.6	효제동 200	124.6	
	9	92.9	효제동 199	92.9	
	10	167.9	효제동 198	167.9	
	11	77.7	효제동 197-1	77.7	
	12	67.1	효제동 171-19	67.1	
	13	198.0	효제동 171-30	135.2	171-18, 171-28 공동개발 지정 171-28, 171-30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171-18	10.9	
			효제동 171-28	51.9	
	14	125.7	효제동 171-17	33.1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71-15	92.6	
	15	142.1	효제동 171-16	142.1	
	16	182.2	효제동 197-2	72.1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97-3	110.1	
	17	212.6	효제동 173-11	212.6	
	18	101.2	효제동 173-8	101.2	
	19	120.0	효제동 197-8	120.0	
	20	114.3	효제동 173-12	114.3	
	21	161.6	효제동 173-9	161.6	
E-9	1	254.8	효제동 171-13	254.8	
	2	233.4	효제동 173-7	233.4	
	3	128.9	효제동 174-3	128.9	
	4	1,834.0	효제동 171-10	114.1	171-10, 171-21 공동개발 권장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효제동 171-22	65.5	171-21, 171-22 공동개발 지정 171-22, 171-23 공동개발 권장 171-23, 171-25, 171-12 공동개발 지정 171-12, 173-1, 173-2, 174-6 공동개발 권장 174-6, 174-14 공동개발 지정 174-6, 174-5 공동개발 권장 174-4, 174-5, 174-7, 174-2, 174-4, 175-10 공동개발 권장 174-10, 175-11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71-21	2.6	
			효제동 171-12	69.4	
			효제동 171-25	95.5	
			효제동 171-23	26.1	
			효제동 173-2	581.6	
			효제동 173-1	188.2	
			효제동 174-6	73.7	
			효제동 174-14	8.9	
			효제동 174-4	73.7	
			효제동 174-5	45.3	
			효제동 174-7	152.1	
			효제동 174-8	149.8	
			효제동 174-2	61.8	
			효제동 175-10	92.6	
			효제동 175-11	33.1	
E-10	1	131.7	효제동 194-1	131.7	
	2	92.6	효제동 191	92.6	
	3	418.4	효제동 193-1	198.1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95	137.7	
			효제동 188-1	82.6	
	4	304.1	효제동 193-2	6.6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92	277.7	
			효제동 188-2	19.8	
	5	132.2	효제동 189	69.4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90	62.8	
	6	109.1	효제동 186	109.1	
	7	231.4	효제동 196-4	1.3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97-13	91.9	
			효제동 197-14	91.9	
			효제동 187	46.3	
	8	87.6	효제동 197-10	87.6	
	9	112.1	효제동 197-11	112.1	
	10	145.4	효제동 184	69.4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85	76.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11	205.0	효제동 173-13	205.0	
	12	243.3	효제동 173-14	90.2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73-15	67.1	
			효제동 176-11	86.0	
	13	86.0	효제동 482	86.0	
	14	168.6	효제동 176-10	109.1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81	59.5	
	15	198.3	효제동 176-12	198.3	
E-11	1	544.7	효제동 176-5	66.1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76-6	112.4	
			효제동 176-3	99.2	
			효제동 176-15	20.1	
			효제동 176-2	66.1	
			효제동 176-4	76.0	
			효제동 176-1	86.0	
			효제동 176-12	18.8	
	2	333.9	효제동 179-1	46.3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79-2	287.6	
	3	207.3	효제동 175-21	207.3	
	4	112.4	효제동 175-19	112.4	
	5	105.8	효제동 175-20	105.8	
	6	208.3	효제동 175-27	112.4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175-26	95.9	
	7	219.1	효제동 174-13	90.2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75-18	128.9	
	8	155.4	효제동 175-25	155.4	
	9	67.4	효제동 174-10	4.6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75-22	62.8	
	10	72.7	효제동 175-12	72.7	
	11	66.1	효제동 175-23	66.1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12	76.0	효제동 175-13	76.0	
	13	86.0	효제동 175-24	86.0	
	14	99.2	효제동 175-14	99.2	
	15	123.5	효제동 175-16	110.1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75-15	13.4	
	16	533.1	효제동 175-9	213.9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175-3	95.9	
			효제동 175-1	223.3	
	17	99.2	효제동 175-7	99.2	
	18	170.9	효제동 175-5	170.9	
	19	110.1	효제동 175-4	110.1	
E-12	1	1,014.3	충신동 206-7	156.8	207-12, 188-15, 206-3 공동개발 지정 206-3, 206-7, 206-8, 206-9, 260-10, 214-2 공동개발 권장 206-8, 207-14, 공동개발 지정 213-3, 214-2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206-3	54.3	
			충신동 188-15	55.5	
			충신동 207-12	6.6	
			충신동 206-8	155.4	
			충신동 207-14	23.1	
			충신동 213-3	5.7	
			충신동 214-2	120.7	
			충신동 206-9	148.7	
			충신동 206-10	287.5	
	2	115.7	충신동 206-4	26.4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207-13	89.3	
	3	115.7	충신동 206-5	115.7	
	4	108.7	충신동 214-1	108.7	
	5	245.4	충신동 188-13	169.1	188-13, 188-14 공동개발 권장 188-14, 207-7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88-14	63.1	
			충신동 207-7	13.2	
	6	294.2	충신동 207-8	89.3	공동개발 권장
			충신동 207-9	82.6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충신동 207-6	122.3	
	7	95.3	충신동 207-1	95.3	
	8	155.4	충신동 207-2	155.4	
	9	316.7	충신동 186-7	81.4	186-5, 186-6 공동개발 지정 186-7, 186-8 공동개발 지정 186-6, 186-8 공동개발 권장
			충신동 186-5	30.3	
			충신동 186-6	102.5	
			충신동 186-8	102.5	
	10	170.5	충신동 186-3	86.5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81-5	58.2	
			충신동 181-3	25.8	
	11	91.5	충신동 211-2	91.5	
	12	128.9	충신동 211-1	128.9	
	13	120.5	충신동 210	68.6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209	51.9	
	14	78.8	충신동 208	78.8	
	15	104.7	충신동 211-3	104.7	
E-13	1	141.7	종로6가동 238-29	141.7	
	2	48.8	종로6가동 238-31	48.8	
	3	107.9	종로6가동 238-2	38.2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38-3	24.1	
			종로6가동 238-7	12.9	
			종로6가동 238-4	12.2	
			종로6가동 238-5	13.2	
			종로6가동 238-35	7.3	
	4	84.0	종로6가동 238-32	84.0	
	5	121.7	종로6가동 238-30	121.7	
	6	404.6	종로6가동 238-6	404.6	
	7	122.3	종로6가동 239-13	122.3	
	8	122.3	종로6가동 239-12	122.3	
	9	132.2	종로6가동 239-11	132.2	
	10	108.7	종로6가동 238-16	108.7	
	11	128.6	종로6가동 236-4	128.6	
	12	96.4	종로6가동 236-1	96.4	
	13	103.8	종로6가동 238-17	103.8	
	14	137.9	종로6가동 238-18	137.9	
	15	50.9	종로6가동 238-13	50.9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16	89.6	종로6가동 238-11	53.2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38-12	36.4	
	17	130.2	종로6가동 236-2	66.1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38-1	64.1	
	18	85.0	종로6가동 238-25	85.0	
	19	66.4	종로6가동 238-24	66.4	
	20	158.3	종로6가동 238-22	58.5	235-7, 238-20, 239-9, 239-10 공동개발 지정 238-22, 238-21 공동개발 권장
			종로6가동 238-21	51.9	
			종로6가동 238-20	35.0	
			종로6가동 239-9	9.9	
			종로6가동 239-10	2.3	
			종로6가동 235-7	0.7	
E-14	1	181.9	종로6가동 239-20	95.9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39-19	86.0	
	2	119.0	종로6가동 239-21	119.0	
	3	106.8	종로6가동 239-22	106.8	
	4	310.4	종로6가동 239-24	110.1	239-16, 239-17 공동개발 지정 239-17, 239-18 공동개발 권장 239-16, 239-24 공동개발 권장
			종로6가동 239-18	83.6	
			종로6가동 239-17	77.0	
			종로6가동 239-16	39.7	
	5	106.8	종로6가동 239-23	106.8	
	6	314.5	종로6가동 239-25	80.3	공동개발 권장
			종로6가동 239-30	234.2	
	7	81.7	종로6가동 239-26	81.7	
	8	86.0	종로6가동 239-27	86.0	
	9	98.2	종로6가동 239-28	98.2	
	10	132.3	종로6가동 239-29	93.6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40-4	38.7	
E-15	1	66.7	종로6가동 234-4	23.1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34-2	43.6	
	2	134.2	종로6가동 234-3	134.2	
	3	119.2	종로6가동 233-2	119.2	
	4	150.8	종로6가동 232-1	150.8	
	5	297.2	종로6가동 231-2	66.4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33-3	58.9	
			종로6가동 230	171.9	
	6	92.6	종로6가동 235-3	39.7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35-2	52.9	
	7	74.4	종로6가동 215-18	74.4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8	50.7	종로6가동 215-48	50.7	
	9	163.8	종로6가동 215-19	160.5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15-46	3.3	
	10	83.3	종로6가동 215-17	83.3	
	11	156.7	종로6가동 215-16	155.0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15-31	1.7	
	12	235.1	종로6가동 215-23	235.1	
	13	163.1	종로6가동 215-56	163.1	
	14	296.8	종로6가동 215-34	3.6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15-59	17.9	
			종로6가동 215-24	164.3	
			종로6가동 215-25	67.1	
			종로6가동 215-37	9.9	
			종로6가동 215-55	64.0	
	15	176.9	종로6가동 215-22	176.9	
	16	95.9	종로6가동 229	95.9	
E-16	1	82.6	종로6가동 228-14	82.6	
	2	158.6	종로6가동 228-10	158.6	
	3	69.4	종로6가동 228-11	69.4	
	4	69.4	종로6가동 228-9	69.4	
	5	142.1	종로6가동 228-8	142.1	
	6	198.3	종로6가동 228-5	76.0	228-5, 228-6 공동개발 권장 227, 228-5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27	46.3	
			종로6가동 228-6	76.0	
	7	109.1	종로6가동 228-7	109.1	
	8	223.1	종로6가동 226	223.1	
	9	81.6	종로6가동 225	81.6	
	10	84.0	종로6가동 241-1	84.0	
	11	180.5	종로6가동 241-2	180.5	
	12	89.3	종로6가동 241-4	89.3	
	13	87.6	종로6가동 240-1	13.9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41-5	73.7	
	14	396.5	종로6가동 239-6	46.3	239-6, 228-18 공동개발 지정 228-18, 240-3 공동개발 권장
			종로6가동 240-3	254.3	
			종로6가동 228-18	95.9	
	15	393.0	종로6가동 228-15	79.3	공동개발 지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종로6가동 228-16	69.4	
			종로6가동 228-17	72.7	
			종로6가동 239-5	57.2	
			종로6가동 239-4	53.9	
			종로6가동 239-3	60.5	
	16	174.5	종로6가동 235-5	59.5	239-1, 235-6 공동개발 지정 235-5, 235-6 공동개발 권장 239-1, 239-2 공동개발 권장
			종로6가동 235-6	32.4	
			종로6가동 239-1	16.5	
			종로6가동 239-2	66.1	
	17	82.6	종로6가동 228-13	82.6	
	1	1,262.2	종로6가동 239-34	207.3	239-41, 239-43, 239-44 공동개발 지정 239-34, 239-36, 239-39, 239-41, 239-42 공동개발 권장
			종로6가동 239-36	465.5	
			종로6가동 239-39	289.6	
			종로6가동 239-41	128.9	
			종로6가동 239-44	46.3	
			종로6가동 239-42	71.7	
			종로6가동 239-43	52.9	
	2	200.7	종로6가동 240-8	200.7	
E-17	3	176.3	종로6가동 241-9	49.6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41-8	80.3	
			종로6가동 241-7	44.7	
			종로6가동 219-1	1.7	
	4	123.0	종로6가동 240-7	86.0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40-6	34.0	
			종로6가동 241-10	3.0	
	5	2,105.7	종로6가동 242-1	2,092.5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42-2	13.2	
	1	381.3	종로6가동 210-39	8.8	210-39, 201-10 공동개발 지정 210-10, 210-11 공동개발 권장 210-11, 212-1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10-10	98.5	
			종로6가동 210-11	132.2	
			종로6가동 212-1	141.8	
	2	1,255.8	종로6가동 210-1	1,255.8	
	3	300.5	종로6가동 213-2	300.5	
	4	115.7	종로6가동 193-2	115.7	
	5	136.4	종로6가동 214-2	136.4	
E-18	6	59.8	종로6가동 214-3	59.8	
	7	65.5	종로6가동 215-52	65.5	
	8	920.0	종로6가동 193-5	82.6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193-4	56.2	
			종로6가동 194-6	89.3	
			종로6가동 194-10	99.2	
			종로6가동 189	549.7	
			종로6가동 187	43.0	
	9	52.9	종로6가동 194-5	52.9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10	62.8	종로6가동 194-4	62.8	
	11	367.6	종로6가동 210-24	2.6	210-24, 210-2, 197, 197-7 공동개발 지정 197-7, 197-6 공동개발 권장 197-6, 197-5, 197-22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10-2	24.1	
			종로6가동 197	54.8	
			종로6가동 197-7	131.6	
			종로6가동 197-6	99.2	
			종로6가동 197-5	53.6	
			종로6가동 197-22	1.7	
	12	153.1	종로6가동 197-8	153.1	
E-19	1	146.5	종로6가동 197-10	146.5	
	2	1,059.8	종로6가동 197-9	106.1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197-30	187.4	
			종로6가동 195-2	766.3	
	3	102.5	종로6가동 194-7	102.5	
	4	119.0	종로6가동 194-8	119.0	
	5	79.3	종로6가동 195-5	79.3	
	6	241.0	종로6가동 196	241.0	
	7	436.4	종로6가동 185	436.4	
	8	228.1	종로6가동 182-1	228.1	
	9	185.1	종로6가동 179-1	185.1	
	10	177.6	종로6가동 178-1	29.8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172-2	147.8	
	11	148.4	종로6가동 173	148.4	
	12	128.9	종로6가동 171	128.9	
	13	82.6	종로6가동 184	76.0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185-1	6.6	
	14	351.6	종로6가동 185-2	2.3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168-3	83.3	
			종로6가동 168-2	62.1	
			종로6가동 169-2	203.9	
	15	49.6	종로6가동 170	49.6	
	16	92.6	종로6가동 185-3	92.6	
	17	132.9	종로6가동 166-2	132.9	
E-20	1	91.0	종로6가동 163	52.9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164	38.1	
	2	60.4	종로6가동 161	60.4	
	3	128.9	종로6가동 162	59.5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159-1	52.9	
			종로6가동 159-2	16.5	
	4	50.6	종로6가동 160-1	50.6	
	5	233.7	종로6가동 157	233.7	
	6	274.5	종로6가동 155-1	274.5	
	7	134.6	종로6가동 148-1	14.2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146-1	119.4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종로6가동 145-2	1.0	
F-1	1	375.3	원남동 152-11	24.8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128-1	350.5	
	2	262.0	원남동 135-1	81.0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133-1	111.2	
			원남동 130-3	69.8	
	3	131.0	원남동 127-5	131.0	
	4	161.7	원남동 130-6	7.3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130-4	16.5	
			원남동 130-5	6.9	
			원남동 127-3	131.0	
	5	71.3	원남동 125-3	28.0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125-2	36.0	
			원남동 125-9	7.3	
	6	101.8	원남동 125-7	27.1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125-6	23.8	
			원남동 125-5	50.9	
	7	1,192.4	원남동 118-1	804.9	118-1, 117-1 공동개발 지정 122-2, 122-3 공동개발 지정 122-1, 122-2 공동개발 권장 122-2, 118-1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117-1	238.7	
			원남동 122-3	1.7	
			원남동 122-2	77.0	
			원남동 122-1	70.1	
	8	59.5	원남동 121-1	59.5	
	9	56.2	원남동 121-2	56.2	
F-2	1	278.5	원남동 105-3	35.8	105-3, 106-1 공동개발 지정 106-1, 105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106-1	185.2	
			원남동 105	57.5	
	2	527.3	원남동 97-13	1.7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104-2	39.3	
			원남동 103-1	486.3	
	3	967.3	원남동 103	967.3	
	4	89.3	원남동 102	89.3	
	5	95.9	원남동 101	95.9	
	6	224.8	원남동 100	128.9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99	95.9	
	7	134.9	원남동 98	134.9	
F-3	1	142.1	원남동 25	142.1	
	2	570.4	원남동 25-2	570.4	
	3	283.1	원남동 24-1	78.3	23-3, 24-7 공동개발 지정 24-16, 24-6 공동개발 지정 24-3, 24 공동개발 지정 24-1, 24-7, 24-6, 24-17, 24 공동개발 권장
			원남동 23-3	3.3	
			원남동 24-7	75.0	
			원남동 24-16	1.3	
			원남동 24-6	34.0	
			원남동 24-17	31.7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원남동 24-3	0.3	
			원남동 24	59.2	
	4	651.7	원남동 24-11	2.6	공동개발 지정
			원남동 24-10	465.2	
			원남동 50-8	131.6	
			연건동 0-2가	1.1	
			연건동 302-31	20.5	
			연건동 302-15	30.7	
F-4	1	140.8	연건동 302-30	140.8	
	2	684.8	연건동 302-28	108.1	302-28, 302-29, 302-8, 302-18 공동개발 지정 51-1, 302-29 공동개발 권장 51-1, 51-3 공동개발 지정 52-2, 51-1 공동개발 권장
			연건동 302-29	13.2	
			연건동 302-8	229.1	
			연건동 302-18	65.8	
			원남동 51-3	10.6	
			원남동 51-1	154.7	
			원남동 52-2	103.3	
	3	99.2	연건동 302-17	99.2	
F-5	1	166.3	연건동 318	116.7	공동개발 지정
			연건동 319	49.6	
	2	252.2	연건동 317	252.2	
	3	481.7	연건동 315	253.6	315, 323-1, 322 공동개발 지정 323-1, 323-3 공동개발 권장
			연건동 323-1	72.1	
			연건동 322	82.6	
			연건동 323-3	73.4	
F-6	1	484.5	연건동 206	484.5	
	2	136.2	연건동 207-1	6.6	공동개발 지정
			연건동 208	129.6	
	3	123.6	연건동 209	117.0	공동개발 지정
			연건동 203-4	5.3	
			연건동 203-11	1.3	
F-7	1	284.3	연건동 233-2	261.2	공동개발 지정
			연건동 128-4	23.1	
	2	264.5	연건동 233	264.5	
	3	109.1	연건동 263	109.1	
	4	263.2	연건동 264-3	6.6	264-3, 264-2, 264-1, 264 공동개발 지정 273-8, 273-1 공동개발 지정 273-8, 264 공동개발 권장
			연건동 264-2	66.1	
			연건동 264-1	17.9	
			연건동 264	92.6	
			연건동 273-1	20.5	
			연건동 273-8	59.5	

2)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조서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이화동, 효제동(일부), 종로6가(일부) 일대(변경)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A-1	1,548.3	와룡동	2-113	28.9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원남동	150-2	1,199.9		
			151-2	49.8	공동개발 권장	맹지
			151-13	48.7		-
			151-6	221.0	-	-
A-2	3,047.2	원남동	197-1	224.6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98	94.1		
			212-3	79.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12-4	100.7		
			212-6	20.8	공동개발 권장	30㎡미만 필지
			199	218.9	-	-
			208-1	100.3	-	-
			209	288.3	-	-
			210-2	109.6	-	-
			206-1	181.8	-	-
			194	105.7	-	-
			211	40.4	-	-
			212-7	88.7	-	-
			212-2	139.0	-	-
			194	1,123.5	-	-
			213	56.2	-	-
			214-1	75.3	-	-
A-3	4,174.9	원남동	171-2	151.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77-1	1,003.4		
			166-2	26.1	공동개발 권장	30㎡미만 필지
			179-2	54.2		-
			181	68.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82	61.5		
			183-3	65.8		
			183-1	1.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83-13	3.3		
			183-14	5.0		
			183-15	4.3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183-8	56.5		
A-3	4,174.9	원남동	183-10	4.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83-11	16.5		
			183-12	13.2		
			189-2	52.2		
			189-3	35.7		
			189-5	15.5		
			189-12	205.3		
			189-4	41.0(18.7)		인접국공유지 (대지분할)
			189-4	41.0(22.3)	공동개발 지정	인접국공유지 (대지분할)
			189-6	53.2		동일소유자
			189-7	130.9		
			189-8	29.1		
			191-2	7.9		
			191-3	47.3		
			189-9	91.9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90-1	32.7		
			187	389.5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88-2	144.9		
			179-3	79.3	-	-
			180	239.7	-	-
			184	36.3	-	-
			185	49.6	-	-
			189-1	599.0	-	-
			192-2	212.6	-	-
			191-1	73.7	-	-
			95-9	72.7	-	-
A-4	4,661.9	원남동	220	86.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21	69.4		
			222	62.8		
			231-2	62.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32	39.7		
			219-1	158.7	-	-
			218	52.9	-	-
			223	109.1	-	-
			217-2	1.7	공동개발 권장	30㎡미만 필지
			217-3	107.4		-
			229	102.2	-	-
			230-1	36.4	-	-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230-2	46.3	-	-
			231-1	49.6	-	-
A-4	4,661.9	원남동	214-5	40.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14-8	49.6		
			214-18	10.7		
			214-2	3.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25-2	46.3		
			215-3	4.0	공동개발 권장	30㎡미만 필지
			214-3	6.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25-3	50.6		
			214-4	4.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25-4	22.0		
			225-5	24.4	공동개발 권장	30㎡미만 필지
			225-6	27.3	공동개발 권장	30㎡미만 필지
			225-7	23.5		
			226-1	99.2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26-2	68.5		
			227	65.2		
			239-2	45.8	공동개발 권장	-
			239-3	3.3		30㎡미만 필지
			234	86.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35	86.0		
			216	62.8	-	-
			215-1	62.8	-	-
			215-2	66.4	-	-
			224	105.8	-	-
			225-1	37.0	-	-
			225-9	53.9	-	-
			225-10	44.0	-	-
			228-1	140.0	-	-
			237	98.6	-	-
			238	39.7	-	-
			239-1	43.0	-	-
			240	92.6	-	-
			241	96.2	-	-
			244-7	396.7	-	-
			233	56.2	-	-
			236	33.1	-	-
			242-1	94.2	-	-
			242-2	251.9	-	-
			243-2	69.4	-	-
			243-3	72.7	-	-
			243-4	79.3	-	-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243-5	115.7	-		-
			243-9	112.4	-		-
			243-12	115.7	-		-
			243-10	115.7	-		-
			243-11	115.7	-		-
			243-6	164.9	-		-
			243-7	87.2	-		-
			243-23	87.1	-		-
A-5	5,383.5	원남동	246	67.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46-1	7.3			
			244-1	109.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45-6	36.4			
			248-2	25.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49-7	658.8			
			247-2	132.3	-		-
			248	72.1	-		-
			245-1	86.0	-		-
			246-2	90.8	-		-
			249-4	66.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49-5	8.6			
			250	281.0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	동일소유자
			250-1	19.8			
			252	66.1			
			251	30.4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51-2	12.6			
			254-1	39.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55-1	39.7			
			255-2	39.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56-1	59.5			
			256-2	56.2			
			253	122.3	-		-
			254-2	72.7	-		-
			257-1	217.9	-		-
			262-1	96.9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62-4	26.8			
			262-3	5.3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263	150.6			-
			259	82.6	-		-
			260	86.0	-		-
			261	119	-		-
			266-1	155.4	-		-
			264	140.6	-		-
			265	124.7	-		-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267	70.9	-	-
			273	441.2	-	-
			270-2	51.0	-	-
			271	57.0	-	-
			276-1	84.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76-2	107.8		
			279-2	100.5	공동개발 권장	-
			279-3	1.2		30㎡ 미만 필지
			278	135.5	-	-
			277	128.9	-	-
			258	79.3	-	-
			282	174.1	-	-
			279	299.0	-	-
			280	247.9	-	-
A-6	5,865.1	인의동	7-6	28.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56	46.3		
			57-2	188.4		
			59-5	216.1		
			59-6	379.8		
			59-7	32.1		
			59-8	479.3		
			101-13	44.8		
			59	254.5		
			63	33.1		
			7-7	6.6	-	-
			101-14	10.7	-	-
			57-6	92.1	-	-
			57-4	111.7	-	-
			49-1	51.0	-	-
			50-2	626.8	-	-
			57-1	66.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57-3	243.6		
			61-1	139.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61-2	65.1		
			62-1	306.1		
			89-8	7.3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89-9	5.6		
			89-11	125.6		-
			89-12	43.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89-17	10.9		
			89-14	74.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89-25	6.4		
			89-3	162.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89-5	88.1		
			89-16	6.6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90-5	67.9			
			89-13	97.9	-		-
			89-15	211.5	-		-
			89-6	70.0	-		-
			90-3	71.4	-		-
			90-1	236.3	-		-
			77	82.6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78-1	29.9			
			75-4	44.9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80-1	86.6			
			74-1	148.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81-1	26.4			
			85-1	62.2	공동개발 권장		-
			85-9	0.2			30㎡ 미만 필지
			86	89.9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01-12	4.2			
			76-1	99.2	-		-
			79-1	109.8	-		-
			73	192.5	-		-
			72	69.4	-		-
			85-3	111.3	-		-
B-1	4,551.5	원남동	28-23	15.9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36	431.8			
			37-1	43.6			
			32	89.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33	59.5			
			27-1	0.7	공동개발 권장		맹지
			28-7	534.1			-
			28-6	13.2	공동개발 권장	공동개발 권장	맹지
			28-9	150.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8-11	150.7			
			28-12	6.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맹지
			28-13	3.3			
			96-7	63.8	-		-
			96-8	63.1	-		-
			96-9	61.5	-		-
			94-3	35.7	-		-
			94-4	36.7	-		-
			95	494.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95-13	21.6			
			89-3	187.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95-12	3.6		
			89-1	213.6		
			89-4	1.3		
			86-1	100.5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86-15	52.1		
			86-5	3.3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86-6	332.8		-
			86-8	16.5		30㎡ 미만 필지
			85-2	86.0	공동개발 권장	-
			86-7	1.3		30㎡ 미만 필지
			33	59.5	-	-
			34-1	89.3	-	-
			34-2	59.5	-	-
			28-15	153.1	-	-
			28-18	89.3	-	-
			28-17	76.0	-	-
			28-19	89.3	-	-
			30	39.7	-	-
			29-1	228.1	-	-
			29-2	112.4	-	-
			29-3	128.9	-	-
			88-1	152.0	-	-
B-2	2,372.4	원남동	49-16	59.5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56-3	47.3		
			57	213.0		
			59	19.8		
			26-6	72.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38	92.6		
			39	135.5		
			40	43.0		
			41	86.0		
			42-2	89.3		
			42-3	36.4		
			43	199.1		
			47-2	3.0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47-3	93.9		
			47-4	109.4		
			47-5	0.7		
			48-5	9.9		
			49-4	143.5		
			49-9	114.4		
			49-10	108.8		
			49-11	131.2		
			49-12	10.2		
			49-13	70.1		
			49-14	3.6		
			49-15	3.0		
			49-17	40.0		
			49-19	48.9		
			49-20	51.2		
			49-21	10.4		
			61-4	16.3		
			49-18	79.7	-	-
			60-1	230.6	-	-
B-3	3,454.2	원남동	66-6	63.5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66-24	142.1		
			66-69	72.0		
			66-2	109.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66-8	7.0		
			66-9	284.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66-83	6.2		
			66-66	181.8	-	-
			66-7	234.7	-	-
			67	155.4	-	-
			69	82.6	-	-
			68	79.3	-	-
			66-10	281.0	-	-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66-51	86.3	-	-
			66-12	228.1	-	-
			66-13	208.3	-	-
			66-26	158.7	-	-
			80-2	110.8	-	-
			82-2	210.9	-	-
			84-2	94.2	-	-
			72-2	221.5	-	-
			72-1	235.8	-	-
			70	200.6	-	-
B-4	3,443.4	원남동	66-21	1,983.6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연지동	47-1	679.4		
		연지동	56	622.3	-	-
			49	89.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50	68.8		
B-5	747.4	인의동	1-6	22.8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1-7	18.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	168.6		
			4	260.5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4-1	13.2		
			6	44.3	공동개발 권장	-
			7-5	15.2		30㎡ 미만 필지
			2-5	44.3	-	-
			5-2	70.4	-	-
			3-1	89.3	-	-
B-6	4,022.1	연지동	35	135.5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36-2	18.2		
			27	60.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8	135.5		
			5-3	205.0	-	-
			5-5	198.3	-	-
			5-6	168.6	-	-
			30	346.4	-	-
			36-1	84.3	-	-
			33	208.4	-	-
			37	112.4	-	-
			39	115.6	-	-
			42	254.8	-	-
			40	262.5	-	-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43	76.0	-	-
			44-1	96.9	-	-
			44-2	63.6	-	-
			46-1	122.8	-	-
			45	62.2	-	-
		원남동	66-17	376.9	-	-
			66-18	263.4	-	-
			66-19	142.1	-	-
			66-75	262.1	-	-
			66-48	101.9	-	-
			66-44	148.0	-	-
B-7	26,850.3	원남동	63-2	126.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63-4	94.5		
			63-3	2.0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맹지
			63-5	3.0		
			64-1	149.4		-
			66-1	171.9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66-31	205.0		
			66-45	8.3		
			66-37	62.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66-38	116.6		
			66-39	46.3		
			66-54	69.4		
			66-55	79.3		
			66-56	48.6		
			66-57	56.2		
			66-58	50.6		
			66-60	59.5		
			66-67	142.1		
			66-71	2.3		
			64-2	187.8	-	-
			65-3	189.3	-	-
			65-2	217.2	-	-
			66-32	126.0	-	-
			66-46	77.7	-	-
			66-34	112.2	-	-
		연지동	5-1	105.8	-	-
			5-2	66.1	-	-
B-7	26,850.3	원남동	61	89.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연지동	1-24	781.0		
		연지동	3-1	32.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3-2	46.3		
			3-4	40.7		
			4-1	162.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4-5	76.7		
			4-6	65.1		
			4-2	3.6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4-3	168.6		-
			1-17	64.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19	14.5		
			11	69.4		
			12	46.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9	164.0		
			13	72.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4	109.1		
			15	86.0		
			17	82.6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8	89.3		
			4-10	89.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4-7	56.2		
			1-20	94.9	-	-
			3-3	56.2	-	-
			4-11	56.2	-	-
			4-14	42.6	-	-
			4-8	66.1	-	-
			6-1	169.9	-	-
			8	200.4	-	-
			9	117.0	-	-
			10	79.3	-	-
			16	66.1	-	-
			22	137.2	-	-
			24	57.6	-	-
			25	74.6	-	-
		원남동	62	110.1	-	-
		연지동	1-1	974.4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32	2,370.6		
			2-1	36.4		
			2-3	13.2		
		연건동	327-3	8.6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B-7	26,850.3	연지동	1-7	596.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1-8	1,094.4			
			1-11	1,555.9			
			1-15	41.3			
			1-16	61.5			
			1-21	26.8			
			1-22	15.9			
			1-23	5.0			
			1-30	6,382.5			
			1-33	1,368.8			
			127-3	19.2			인접국공유지
		효제동	47-4	31.5			동일소유자
			73-4	10.2			인접국공유지
		연건동	195-3	214.9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	동일소유자
			195-40	58.5			
			197-4	82.3			
			197-5	172.9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97-6	42.0			
			195-12	1,135.2	공동개발 권장		-
			198-18	19.9			30㎡ 미만 필지
			198-6	112.2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98-7	320.9			
			198-11	147.6			
			199-2	178.2			
			198-2	256.6	-		-
			195-30	55.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95-31	155.1			
			195-14	151.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95-15	119.1			
			195-10	867.1	-		-
			195-11	257.8	-		-
			195-32	169.2	-		-
			195-38	60.8	-		-
			197-7	46.3	-		-
			195-13	105.8	-		-
			195-19	99.2	-		-
			195-20	82.6	-		-
			195-21	82.6	-		-
			195-23	165.1	-		-
			195-24	155.4	-		-
			195-25	185.1	-		-
			195-16	307.4	-		-
			195-17	117.5	-		-
B-8	1,817.3	인의동	14-2	36.7	공동개발 권장		-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14-6	19.8		30㎡ 미만 필지
			16	82.6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7	95.9		
			15-2	140.5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8	307.3		
			19	106.0	공동개발 권장	부정형 필지
			20	12.1		30㎡ 미만 필지
			21	5.2		
			22-1	129.1		-
			8-2	35.0	-	-
			9	78.7	-	-
			10	119.0	-	-
			13-2	139.8	-	-
			14	46.9	-	-
			12	248.0	-	-
			25	214.7	-	-
B-9	35,734.8	연지동	74-5	66.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75	181.6		
			76	83.7		
			59	501.6	-	-
			58	113.2	-	-
			65-2	213.6	-	-
			62-2	348.7	-	-
			70	277.9	-	-
			74-2	112.4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74-3	69.4		
			73	234.7	-	-
			83	16.5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84	16.5		
			85	29.7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106	66.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07	168.6		
			110-1	470.4	-	-
			108-1	148.8	-	-
			110-2	316.4	-	-
			87	128.9	-	-
			90	86.0	-	-
			91	115.7	-	-
			82	95.9	-	-
			81	86.0	-	-
			80	208.3	-	-
			103	36.4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02	60.5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93-2	132.2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74-6	56.2		
			74-1	49.6		기 공동개발
B-9	35,734.8	연지동	74-12	782.4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00-11	7.9		
			157	107.2	공동개발 권장	-
			157-3	15.8		30㎡ 미만 필지
			157-7	0.7		
			74-10	55.2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74-9	95.9		
			105	380.5	-	-
			100-1	172.6	-	-
			100-14	244.0	-	-
			100-2	148.8	-	-
			100-3	112.4	-	-
			99	86.0	-	-
			100-4	105.8	-	-
			102-2	51.9	-	-
			101-1	122.3	-	-
			100-13	102.5	-	-
			100-12	105.8	-	-
			100-5	350.4	-	-
			98-1	109.1	-	-
			97	169.0	-	-
			96-2	191.4	-	-
			95-1	76.0	-	-
			74-8	62.8	-	-
			93-1	99.2	-	-
			155-1	194.2	-	-
			133	191.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34-1	28.3		
			134-3	8.2		
			125	132.2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27	125.6		
			123	191.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23-1	19.8		
			124	86.0		
			111	138.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12-1	74.7		
			112-2	60.8		
			113	95.9		
			132-1	115.7	-	-
			131	155.3	-	-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128	456.0	-	-
			126	86.0	-	-
			122	148.8	-	-
			119	353.7	-	-
			114-1	125.6	-	-
			115	214.9	-	-
			136-5	7,419.2	-	-
		연지동	135	5,150.4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효제동	51-5	95.3		
B-9	35,734.8	연지동	136-25	251.5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36-26	383.9		
			136-35	28.0		
			136-12	2,175.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36-67	73.5		
			136-93	20.4		
			136-95	45.2		
			136-74	8,840.5	-	-
B-10	8,373.2	효제동	49-1	110.5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50-1	189.1		
			50-8	212.0		
			51-10	3.0		
			51-11	19.8		
			51-21	0.3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45	1,324.3	-	-
			46	67.4	-	-
			48	143.1	-	-
			52	109.0	-	-
			51-3	113.4	-	-
			21-3	8.3	-	효제동21-3번지 특별계획구역
			21-8	43.6		
			21-9	86.7		
			21-10	146.4		
			21-11	6.6		
			21-12	373.6		
			21-13	135.5		
			21-14	3.3		
			21-15	29.8		
			22-3	683.4		
			23-2	91.6		
			24-1	62.8		
			24-2	93.7		
			24-3	46.3		
			24-4	52.9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24-8	102.5		
			24-9	52.9		
			24-12	25.3		
			25-2	252.6		
			36	88.3		
			36-1	136.5		
			36-2	111.4		
			37	80.0		
			39-7	125.6		
			40	402.9		
			73-9	1.9		
			73-10	3.1		
B-10	8,373.2	효제동	54-1	9.9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54-2	559.9		-
			54-3	1.4		30㎡ 미만 필지
			61	113.4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62-3	113.4		
			62-4	76.5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64-4	88.4		
			65-2	418.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65-3	3.3		
			65-4	92.6		
			67-4	532.6		
			64-2	99.2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64-8	214.7		
			64-6	96.1	-	-
			64-1	160.4	-	-
			61-3	105.8	-	-
			61-1	78.0	-	-
			59	69.4	-	-
C-1	2,175	연건동	187-1	712.7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187-4	15.5		동일소유자
			187-22	60.8		
			187-8	108.7	공동개발 권장	부정형 필지
			190-10	121.7	공동개발 권장	-
			190-17	46.6		맹지
			190-9	272.1	공동개발 권장	-
			190-40	31.6		30㎡ 미만 필지
			190-18	97.2	-	-
			190-19	173.6	-	-
			190-20	103.8	-	-
			190-21	122.6	-	-
			190-16	150.4	-	-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188-3	45.3	-	-
			188-4	106.8	공동개발 권장	-
			190-34	5.6		30㎡ 미만 필지
C-2	1,437.6	연건동	190-27	0.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93-2	45.6		
			194-1	4.3		
			194-2	44.0		
			190-28	13.2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192-1	385.2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92-2	95.4		
			190-24	29.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90-25	33.1		
			190-26	1.7		
			193-1	105.8		
			193-4	149.1	-	-
			194-3	106.5	-	-
			190-22	200.0	-	-
			190-29	123.0		
			190-30	100.2	-	-
C-3	5,636.6	효제동	2	147.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3-3	60.1		
			3-5	1.3		
			20	918.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0-1	66.1		
			20-2	1.0		
			20-3	2,013.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0-4	23.1		
			20-5	167.6		
			21-1	13.2		
			19-4	94.2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9-5	101.8		
			27-1	45.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7-4	46.3		
			27-5	79.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7-6	19.8		
			28	98.2	공동개발 권장	-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30-4	6.6		30㎡ 미만 필지
			28-2	34.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8-5	5.0		
			14	112.4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8	36.4		
			3-1	55.5	-	-
			1	135.2	-	-
			10	186.0	-	-
			13	155.4	-	-
			19-1	343.8	-	-
			15-1	154.3	-	-
			19-3	99.2	-	-
			16-1	66.1	-	-
			16-2	86.0	-	-
			28-4	72.4	-	-
			30-1	86.0	-	-
			30-3	62.8	-	-
			31-1	43.0	-	-
C-4	11,856.4	효제동	71-1	303.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71-3	36.4		
			69-1	138.2	공동개발 권장	부정형필지
			69-3	10.6		30㎡ 미만 필지
			69-4	321.7		-
			69-7	94.9		-
			77	205.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77-1	16.5		
			80-1	436.4		
			80-3	9.9		
			105-5	132.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05-12	13.4		
			105-6	89.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05-13	9.9		
			107	270.2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07-4	4.2		
			105-1	45.5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05-11	7.4		
			103	168.9	-	-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101	208.3	-	-
			100-11	135.5	-	-
			105-2	185.1	-	-
			100-10	92.6	-	-
			100-17	142.1	-	-
			100-13	228.0	-	-
			105-9	79.3	-	-
			105-10	79.3	-	-
			105-7	86.0	-	-
			73	168.6	-	-
			72	89.2	-	-
			75	158.7	-	-
			76-2	165.3	-	-
			67-2	544.4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94-2	16.5		
			95-1	69.4		
			95-2	6.6		
			98	5,888.8		
			84-1	252.2		
			91	10.5		
			255-17	424.8		
			291-8	0.1		
			85-1	28.6		
			291-7	3.9		
			291-9	10.4		
			291-11	17.6		
			86-4	116.7		
			86-3	133.3		
			89-1	85.7		
			90-5	2.5		
			255-33	17.9		
			113	59.9	-	-
			115-1	34.3	-	-
C-5	7,021.1	이화동	205-2	79.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05-4	17.5		
			206-2	32.4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209-1	330.5	-	-
			214-2	46.3	공동개발 권장	맹지
			215	254.6		-
			214-3	46.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17-3	3.3		
			218-1	80.3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218-3	23.1		
			219	62.8		
			219-1	13.2		
			211	148.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11-1	23.1		
			214-4	92.6		
			220	167.6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22-1	162.0		
		충신동	78-1	66.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78-2	95.9		
			78-3	165.3		
			80	86.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81	69.4		
			82-1	39.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82-2	29.8		
			82-3	9.9		
			83	178.2		
			77-1	162.0	-	-
			79	86.0	-	-
		이화동	207-2	156.5	-	-
			204-3	93.2	-	-
			217	95.5	-	-
			212	234.4	-	-
C-5	7,021.1	충신동	85-3	12.6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89	76.0		
			89-1	71.7		
			89-2	79.3		
			90	112.4		
			90-1	43.0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90-2	16.5			
			91-4	155.0	공동개발 권장		-
			91-5	96.0			맹지
			91-8	4.2	공동개발 권장	공동개발 권장	맹지, 30㎡ 미만 필지
			95	79.4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96	120.8			
			96-1	8.4	공동개발 권장		동일소유자(91-8), 30㎡ 미만 필지
			96-2	3			
			95-1	5.2			30㎡ 미만 필지
			91-1	99.5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91-6	89.3			
			97-2	52.9			
			88-1	143.5	-		-
			86	269.8	-		-
			85	132.2	-		-
			92	135.5	-		-
			91-7	102.1	-		-
			101-2	185.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02-1	76.0			
			102-2	58.5			
			109-3	5.1			
			104-1	76.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07	99.2			
			104-2	104.5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06	95.9			
			100	322.3	-		-
			100-2	97.5	-		-
			101-1	135.5	-		-
			110	188.4	-		-
			103-1	237.0	-		-
			108	201.7	-		-
			105-1	77.7	-		-
C-6	10,292.2	이화동	107-2	249.3	공동개발 권장		-
			115-2	19.5			30㎡ 미만 필지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100-1	57.9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01-2	24.8			
			108-1	119.0	공동개발 권장		맹지
			108-4	85.9			-
			108-2	74.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08-7	2.0			
			109-1	66.4			
			105-2	306.8	-		-
			106-2	86.6	-		-
			113	89.3	-		-
			112	82.6	-		-
			110	33.0	-		-
			111	49.6	-		-
		충신동	73-6	38.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73-7	324.0			
			72-3	13.6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	인접국공유지
			74	76.0			기 공동개발
			75	211.2			
			72-1	36.4	공동개발 권장		맹지
			57-6	217.5	-		-
			57-4	289.6	-		-
			57-5	213.5	-		-
			73-1	97.2	-		-
			73-3	154.7	-		-
			73-4	276.4	-		-
			73-5	113.7	-		-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C-6	10,292.2	충신동	69-3	323.3	공동개발 권장	맹지
			73-18	3.6		30㎡ 미만 필지
			62-1	109.8	공동개발 권장	-
			73-14	1.7		30㎡ 미만 필지, 맹지
			73-15	5.0		
			67-1	119.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68	148.8		
			65	443.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66	148.8		
			62-2	583.4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62-14	58.2		
			62-15	56.6		
			61-4	9.6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62-5	59.5		
			61-5	14.2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62-6	62.8		
			69-2	137.9	-	-
			69-4	142.8	-	-
			70	254.5	-	-
			62-4	71.1	-	-
			62-7	80.8	-	-
			62-9	86.0	-	-
			62-10	82.6	-	-
			62-11	82.6	-	-
			62-12	113.2	-	-
			62-13	70.7	-	-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충신동	56-6	33.4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기공동개발
			56-7	197.7		
			60	3,382.4		
C-7	7,592.8	충신동	123-1	60.5	공동개발 권장	-
			123-18	5.6		30㎡ 미만 필지
			123-2	114.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23-5	86.6		
			123-6	92.9		
			123-17	5.6		
			123-3	9.9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123-19	1.0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155-1	263.1		-
			120	31.5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부정형필지
			121	31.8		
			122	46.3		
			119	89.3	-	-
			123-7	118.3	-	-
			128	76.0	-	-
			135	74.7	-	-
			133-1	62.8	-	-
			133-2	59.5	-	-
			134	59.5	-	-
			129	92.7	-	-
			127	97.3	-	-
			126-1	48.6	-	-
			131	79.3	-	-
			130	152.1	-	-
			123-16	52.2	-	-
			155-2	85.8	-	-
			153-2	187.4	-	-
			153-3	118.2	-	-
			153-5	139.8	-	-
			123-8	143.8	-	-
			123-9	91.9	-	-
			123-10	112.7	-	-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123-11	97.5	-	-
			123-12	95.5	-	-
			123-13	90.6	-	-
			123-14	86.9	-	-
			115-1	192.8	-	-
			116	198.3	-	-
			117	294.2	-	-
C-7	7,592.8	충신동	136-12	115.4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36-16	125.6		
			136-13	2.0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136-5	195.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42-2	52.9		
			144	156.7		
			120-8	9.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47	155.4		
			132-1	52.9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32-2	43.0		
			136-8	67.8		
			136-9	189.1		
			150	86.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51	99.2		
			172	48.5	공동개발 권장	-
			173-3	25.3		30㎡ 미만 필지
			170	372.9		부정형 필지
			167	79.3	공동개발 권장	-
			173-1	23.7		30㎡ 미만 필지
			120-7	6.4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65	39.7		
			166	56.2		
			173-2	34.0		
			136-1	229.9	-	-
			136-2	117.6	-	-
			136-7	157.7	-	-
			148	135.5	-	-
			149	92.6	-	-
			152	86.0	-	-
			156	191.7	-	-
			141-1	132.8	-	-
			140-2	177.2	-	-
			143	107.8	-	-
			163	79.4	-	-
			160	128.9	-	-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159	101.4	-	-
			174	71.1	-	-
C-8	930.9	효제동	73-8	1.5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24-2	71.7		
			73-11	8.2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123	23.1		
			73-12	4.8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155-13	10.4		
			125-2	82.0		-
			126-2	729.2	-	-
C-9	3,779.4	충신동	189-1	119.6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89-4	133.0		
			191-1	65.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91-2	82.6		
			191-3	89.3	공동개발 권장	맹지
			191-4	86.0		
			192	36.4		-
			191-5	62.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91-6	99.2		
			206-18	82.3		
			202	46.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03	135.5		
			201-1	85.6	공동개발 권장	-
			201-3	16.5		30㎡ 미만 필지
			205-3	180.8	공동개발 권장	-
			205-5	10.0		30㎡ 미만 필지
			189-5	126.5	-	-
			189-3	138.8	-	-
			189-6	148.8	-	-
			189-8	122.4	-	-
			189-7	145.5	-	-
			189-11	171.9	-	-
			189-20	327.3	-	-
			206-1	129.9	-	-
			206-14	80.3	-	-
			206-15	76.0	-	-
			206-11	142.8	-	-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195	56.0	-		-
			196	64.0	-		-
			194	39.7	-		-
			197	52.9	-		-
			198-1	155.2	-		-
			200-1	112.7	-		-
			193	102.5	-		-
			204-2	39.7	-		-
			206-12	125.6	-		-
			206-13	89.2	-		-
C-10	3,360	총신동	31-14	40.0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	동일소유자
			31-15	59.8			
			31-25	60.5			
			31-32	18.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부정형 필지
			179-1	36.4			
			31-9	84.7	-		-
			31-10	69.8	-		-
			31-12	72.4	-		-
			175-1	167.8	-		-
			175-2	195.0	-		-
			175-3	185.1	-		-
			175-5	185.1	-		-
			175-9	197.4	-		-
			175-8	190.7	-		-
			175-7	182.8	-		-
			175-10	178.8	-		-
			175-11	186.1	-		-
			175-12	188.4	-		-
			175-16	187.4	-		-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175-15	158.7	-	-
			175-14	195.0	-	-
			175-24	149.8	-	-
			175-18	165.3	-	-
			175-19	204.9	-	-
C-11	4,290.4	충신동	31-38	15.6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79-24	49.6		
			189-14	42.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89-15	90.2		
			188-3	43.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88-5	161.1		
			187-19	152.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87-22	112.4		
			187-23	82.6		
			187-30	63.1		
			179-8	26.8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179-10	264.3		-
			179-12	91.6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79-15	33.4		
			187-26	105.8	공동개발 권장	맹지
			176	153.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77	462.9		
			178-2	17.2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175-21	51.6	-	-
			175-23	114.7	-	-
			179-13	2.3	-	-
			184	306.1	-	-
			187-27	125.6	-	-
			187-25	126.6	-	-
			187-28	119.6	-	-
			175-13	110.6	-	-
			187-20	145.5	-	-
			187-21	132.2	-	-
			186-1	106.1	-	-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187-24	76.0	-	-
			187-18	87.5	-	-
			188-1	56.2	-	-
			188-2	98.9	-	-
			188-6	69.4	-	-
			188-7	155.4	-	-
			188-8	162.8	-	-
			188-9	90.8	-	-
			189-2	66.1	-	-
			189-13	62.8	-	-
			188-10	56.9	-	-
C-12	4,031.3	충신동	27-42	152.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7-88	71.7		
			27-89	33.1		
			33-2	122.3		
			33-3	3.3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32-1	5.3		
			33-11	29.8		
			33-12	16.5		
			33-13	38.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33-14	13.2		
			33-18	10.6		
			35-7	30.4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35-27	15.5		
			35-16	38.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35-17	18.2		
			35-8	74.8	공동개발 권장	-
			35-10	29.4		30㎡ 미만 필지
			27-48	23.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7-69	33.1		
			27-43	6.6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7-82	49.6		
			27-84	46.3		
			27-46	17.2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27-47	59.5		-
			27-50	59.5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27-51	31.7		
			27-86	56.2		
			27-53	56.2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7-54	52.9		
			31-19	44.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31-20	46.1		
			27-73	99.2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30-1	162.6		
			27-44	57.9	-	-
			27-52	38.3	-	-
			27-83	186.1	-	-
			27-85	95.9	-	-
			27-72	109.1	-	-
			27-56	318.3	-	-
			31-5	79.8	-	-
C-12	4,031.3	충신동	29-5	52.9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9-6	54.5		
			29-19	4.4		
			29-2	86.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9-17	24.1		
			179-18	5.0		
			27-59	69.4	-	-
			27-60	53.9	-	-
			27-61	71.4	-	-
			27-62	79.3	-	-
			29-1	114.0	-	-
			29-7	121.0	-	-
			29-9	88.6	-	-
			29-3	106.1	-	-
			27-64	269.2	-	-
			27-66	123.2	-	-
			179-17	93.2	-	-
			27-133	182.4	-	-
D-1	3,597	인의동	97	59.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98-2	64.9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98-1	22.1		동일소유자, 기 공동개발(98-1,-2)
			100-1	2.1		
			95	122.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95-1	9.9		
			94	86.0	공동개발 권장	부정형 필지
			101-1	171.9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기 공동개발
			101-3	158.7		
			110-1	10.6		
			102	33.1	공동개발 권장	-
			103	26.4		30㎡ 미만 필지
			112-1	2,767.1	-	-
			111-7	62.8	-	-
D-2	7,535.6	인의동	28-2	532.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기 공동개발
			28-4	39.4		
			28-7	454.4		
			28-8	1,271.0		
			28-11	147.1		
			28-15	383.6		
			28-21	429.8		
			28-28	170.2		
D-2	7,535.6	인의동	48-1	44.2	공동개발 권장	-
			48-5	2.8		30㎡ 미만 필지
			28-6	212.6		부정형 필지
			28-26	845.5	-	-
			28-25	357.2	-	-
			28-36	581.5	-	-
			28-9	1,644.5	-	-
			28-44	245.8	-	-
			28-45	43.7	-	-
			28-48	130.0	-	-
D-3	3,168.3	연지동	163-3	12.3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164-2	22.8		
			167-2	2.5		
			168	71.2		
			169	89.3		
			170	145.5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199-4	5.3			
			163-1	17.4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	동일소유자
			184	40.4			
			171-2	4.6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81	264.2			
			183	179.7			
			186-1	162.0	공동개발 권장		맹지
			187-6	2.1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188-6	120.0			-
			188	6.0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188-2	48.2			
			188-3	37.9			
			188-5	22.8			
			189	221.5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91	76.0			
			136-70	242.7	-		-
			188-12	195.0	-		-
			192-1	95.9	-		-
			178	210.3	-		-
			177-1	257.9	-		-
			179	122.3	-		-
			177-3	185.1	-		-
			173	171.9	-		-
			174	135.5	-		-
D-4	18,554.2	연지동	203	99.2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04	338.5			
			204-1	8.6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205-1	2.2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06	369.6			
			208-1	2.4			
			193-6	144.5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93-10	186.4			
			193-7	319.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216-8	6.0		
			211	94.6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14	109.1		
			212	68.2		
			214-1	1.7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213	29.4		
			216-3	158.4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16-4	36.0		
			218	69.4		
			216-2	79.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16-6	3.3		
			198-1	72.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99	82.6		
			193-8	296.5	-	-
			193-9	243.6	-	-
			196	92.6	-	-
			197-1	49.6	-	-
			200	277.7	-	-
			209	35.9	-	-
			219	66.1	-	-
D-4	18,554.2	연지동	216-1	508.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16-9	15.5		
			226	86.0		
			239-2	56.2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39-3	9.9		
			238-5	329.7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238-9	95.8		
			238-17	95.9		
			238-2	82.6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38-3	30.3		
			239-1	19.8		
			193-1	516.9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193-2	468.9		
			231-1	16.5		
			230	180.4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231	135.6		
			229-1	109.1		
			228-1	56.2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28-2	191.7		
			233-2	18.2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234-1	164.7		부정형필지
			234-3	61.8		
			236	69.4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37	102.5		
			222	274.0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건축
			224-2	16.5		
			238-1	204.0	-	-
			240	69.6	-	-
			238-8	57.2	-	-
			136-56	3,560.0	-	-
			136-73	435.5	-	-
			263	5,054.6	-	-
			136-46	2,047.5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136-53	53.8		
			136-57	14.5		
			136-66	2.1		
D-5	3,373.3	연지동	246	146.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47	49.6		
			243-4	82.6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44	69.4		
			248	49.6		
			251-2	122.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52	52.9		
			253	59.5		
			258-9	78.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58-10	72.7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258-4	153.1	-	-
			258-5	109.1	-	-
			258-6	104.4	-	-
			258-7	99.2	-	-
			258-8	79.3	-	-
			258-11	76.0	-	-
			258-18	116.7	-	-
			258-14	148.4	-	-
			258-15	100.2	-	-
			258-16	99.2	-	-
			242	122.6	-	-
			243-1	201.6	-	-
			250	625.1	-	-
			255	227.8	-	-
			254-1	278.6	-	-
			245	49.1	-	-
D-6	1,832.3	효제동	306-2	18.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306-3	33.1		
			315-1	758.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315-6	725.3		
			308	296.9	-	-
F-1	2,757.5	원남동	117-1	238.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18-1	804.9		
			121-1	59.5		
			122-2	77.0		
			122-3	1.7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132-7	1.1		
			126	633.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32-6	0.6		
			130-4	16.5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130-5	6.9		
			130-6	7.3		
			152-1	27.4		
			130-3	69.8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135-1	81.0		
			128-1	469.1	공동개발 권장	-
			152-11	24.8		30㎡ 미만 필지
			133-1	111.2	-	-
			122-1	70.1	-	-
			121-2	56.2	-	-
F-2	2,321	원남동	99	95.9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00	128.9		
			97-13	1.7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103	817.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103-1	486.3		
			104-2	39.3		
			105	57.5	공동개발 권장	-
			105-3	35.8		-
			106-1	185.2		부정형토지
			103-3	150.0	-	-
			102	89.3	-	-
			101	98.9	-	-
			98	134.9	-	-
F-3	1,647.6	연건동	302-16	0.7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302-15	30.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302-31	20.5		
		원남동	24-10	465.2		
			24-11	2.6		
			50-8	131.6		
		원남동	24	59.2	공동개발 권장	-
			24-3	0.3		30㎡ 미만 필지
			23-3	3.3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24-7	75.7		-
			24-6	1.3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24-16	34.0		-
			24-17	31.7	-	-
			24-1	78.3	-	-
			25	712.5	-	-
F-4	924.8	연건동	302-8	229.1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302-18	65.8		
			302-28	108.1		
			302-29	13.2		
		원남동	51-1	154.7		
			51-3	10.6		
			52-2	103.3	-	-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연건동	302-30	140.8	-	-
			302-17	99.2	-	-
F-5	900.2	연건동	318	116.7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319	49.6		
			315	481.7	-	-
			317	252.2	-	-
F-6	744.3	연건동	207-1	6.6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08	129.6		
			203-11	1.3	공동개발 권장	30㎡ 미만 필지
			203-4	5.3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09	117.0		
			206	484.5	-	-
F-7	924.1	연건동	264	92.6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자
			264-1	17.9		
			264-2	66.1		
			264-3	6.6		
			273-1	80.0	-	-
			263	109.1	-	-
			233	267.5	-	-
			233-2	284.3	-	-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 효제동(일부), 종로5·6가동(일부) 일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E-1	1	305.2	효제동 251-1	12.1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53-1	219.9	
			효제동 255-5	3.8	
			효제동 255-6	18.2	
			효제동 255-23	51.2	
	2	194.8	효제동 254	194.8	
	3	224.1	효제동 247-3	162.0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48-1	45.4	
			효제동 249-1	16.7	
	4	145.4	효제동 247-1	82.6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47-2	62.8	
	5	213.5	효제동 245-1	124.3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45-8	9.9	
			효제동 246-1	72.7	
			효제동 246-2	6.6	
	6	183.7	효제동 245-4	92.6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45-5	69.4	
			효제동 245-10	9.9	
			효제동 255-9	11.8	
	7	186.2	효제동 245-6	62.8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45-12	106.4	
			효제동 255-10	14.9	
			효제동 255-21	2.1	
	8	207.9	효제동 245-11	207.9	
	9	177.8	효제동 245-2	177.8	
	10	45.3	효제동 245-13	43.3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45-22	2.0	
	11	146.1	효제동 245-20	146.1	
	12	77.0	효제동 245-21	77.0	
	13	130.9	효제동 245-3	130.9	
	14	94.5	효제동 245-15	94.5	
	15	70.4	효제동 245-17	70.4	
	16	128.9	효제동 244	112.4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45-16	16.5	
	17	228.1	효제동 243	228.1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18	93.3	효제동 240-2	93.3	
	19	225.1	효제동 233-3	92.9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36	132.2	
E-2	1	191.5	효제동 273	191.5	
	2	132.2	효제동 272	132.2	
	3	109.1	효제동 271-1	69.4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271-2	39.7	
	4	92.6	효제동 270	92.6	
	5	163.6	효제동 285	2.3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69	89.3	
			효제동 268-2	72.0	
E-3	1	134.2	효제동 286	1.0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68-1	133.2	
	2	194.7	효제동 267	194.7	
	3	135.9	효제동 267-2	7.6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19-1	128.3	
E-4	1	132.8	효제동 219-4	0.3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65-7	1.3	
			효제동 220	131.2	
	2	435.4	효제동 264	0.3	221, 222-4, 264 공동개발 지정 221, 222-1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222-4	13.6	
			효제동 224	329.6	
			효제동 222-1	91.6	
	3	138.8	효제동 223	79.3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24	59.5	
	4	67.1	효제동 261-2	14.2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26-2	52.9	
	5	98.2	효제동 225	98.2	
	6	227.1	효제동 226-1	90.9	226-1, 260 공동개발 지정 226-1, 227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260	0.7	
			효제동 227	135.5	
	7	480.7	효제동 227-1	152.1	229, 256-1, 227-1 공동개발 지정 228, 229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256-1	156.7	
			효제동 229	92.6	
			효제동 228	76.3	
E-5	1	868.0	효제동 231	211.6	공동개발 권장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효제동 232	99.2	
			효제동 233-1	557.2	
	2	188.4	효제동 233-2	188.4	
E-6	1	153.9	효제동 155-10	13.0	155-10, 133-2 공동개발 지정 133-2, 134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133-2	63.9	
			효제동 134	77.0	
	2	1,928.2	효제동 133-3	139.7	133-3, 133-7 공동개발 지정 136, 133-7 공동개발 권장 136, 138 공동개발 권장 136, 137, 143, 160-1, 164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133-7	13.0	
			효제동 136	157.7	
			효제동 138	82.6	
			효제동 137	256.5	
			효제동 143	181.8	
			효제동 160-1	487.8	
			효제동 164	609.1	
	3	115.7	효제동 139	115.7	
	4	109.1	효제동 140	72.7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41	36.4	
	5	128.9	효제동 144	128.9	
	6	231.4	효제동 145	231.4	
	7	317.2	효제동 151	317.2	
	8	211.7	효제동 155	211.7	
E-7	1	911.3	효제동 166-1	89.3	165, 166-1 공동개발 지정 166-1, 167, 171-5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165	62.8	
			효제동 167	544.3	
			효제동 171-5	214.9	
	2	69.4	효제동 215-1	69.4	
	3	89.3	효제동 216	89.3	
	4	52.9	효제동 217	52.9	
	5	191.7	효제동 218	191.7	
	6	99.2	효제동 209	99.2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7	370.2	효제동 211	175.2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12-1	195.0	
	8	92.6	효제동 214	92.6	
	9	165.3	효제동 208	165.3	
	10	128.9	효제동 171-20	128.9	
	11	72.7	효제동 171-7	72.7	
E-8	1	62.8	효제동 206	62.8	
	2	158.7	효제동 207-1	158.7	
	3	184.5	효제동 197-5	146.8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97-15	37.7	
	4	218.2	효제동 204	218.2	
	5	324.6	효제동 197-6	110.1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97-7	135.2	
			효제동 203	79.3	
	6	102.5	효제동 202	102.5	
	7	130.4	효제동 201	99.2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201-1	31.2	
	8	124.6	효제동 200	124.6	
	9	92.9	효제동 199	92.9	
	10	167.9	효제동 198	167.9	
	11	77.7	효제동 197-1	77.7	
	12	67.1	효제동 171-19	67.1	
	13	198.0	효제동 171-30	135.2	171-18, 171-28 공동개발 지정 171-28, 171-30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171-18	10.9	
			효제동 171-28	51.9	
	14	125.7	효제동 171-17	33.1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71-15	92.6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15	142.1	효제동 171-16	142.1	
	16	182.2	효제동 197-2	72.1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97-3	110.1	
	17	212.6	효제동 173-11	212.6	
	18	101.2	효제동 173-8	101.2	
	19	120.0	효제동 197-8	120.0	
	20	114.3	효제동 173-12	114.3	
	21	161.6	효제동 173-9	161.6	
E-9	1	254.8	효제동 171-13	254.8	
	2	233.4	효제동 173-7	233.4	
	3	128.9	효제동 174-3	128.9	
	4	1,834.0	효제동 171-10	114.1	171-10, 171-21 공동개발 권장 171-21, 171-22 공동개발 지정 171-22, 171-23 공동개발 권장 171-23, 171-25, 171-12 공동개발 지정 171-12, 173-1, 173-2, 174-6 공동개발 권장 174-6, 174-14 공동개발 지정 174-6, 174-5 공동개발 권장 174-4, 174-5, 174-7, 174-2, 174-4, 175-10 공동개발 권장 174-10, 175-11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71-22	65.5	
			효제동 171-21	2.6	
			효제동 171-12	69.4	
			효제동 171-25	95.5	
			효제동 171-23	26.1	
			효제동 173-2	581.6	
			효제동 173-1	188.2	
			효제동 174-6	73.7	
			효제동 174-14	8.9	
			효제동 174-4	73.7	
			효제동 174-5	45.3	
			효제동 174-7	152.1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효제동 174-8	149.8	
			효제동 174-2	61.8	
			효제동 175-10	92.6	
			효제동 175-11	33.1	
E-10	1	131.7	효제동 194-1	131.7	
	2	92.6	효제동 191	92.6	
	3	418.4	효제동 193-1	198.1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95	137.7	
			효제동 188-1	82.6	
	4	304.1	효제동 193-2	6.6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92	277.7	
			효제동 188-2	19.8	
	5	132.2	효제동 189	69.4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90	62.8	
	6	109.1	효제동 186	109.1	
	7	231.4	효제동 196-4	1.3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97-13	91.9	
			효제동 197-14	91.9	
			효제동 187	46.3	
	8	87.6	효제동 197-10	87.6	
	9	112.1	효제동 197-11	112.1	
	10	145.4	효제동 184	69.4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85	76.0	
	11	205.0	효제동 173-13	205.0	
	12	243.3	효제동 173-14	90.2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73-15	67.1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효제동 176-11	86.0	
	13	86.0	효제동 482	86.0	
	14	168.6	효제동 176-10	109.1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81	59.5	
	15	198.3	효제동 176-12	198.3	
E-11	1	544.7	효제동 176-5	66.1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76-6	112.4	
			효제동 176-3	99.2	
			효제동 176-15	20.1	
			효제동 176-2	66.1	
			효제동 176-4	76.0	
			효제동 176-1	86.0	
			효제동 176-12	18.8	
	2	333.9	효제동 179-1	46.3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79-2	287.6	
	3	207.3	효제동 175-21	207.3	
	4	112.4	효제동 175-19	112.4	
	5	105.8	효제동 175-20	105.8	
	6	208.3	효제동 175-27	112.4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175-26	95.9	
	7	219.1	효제동 174-13	90.2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75-18	128.9	
	8	155.4	효제동 175-25	155.4	
	9	67.4	효제동 174-10	4.6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75-22	62.8	
	10	72.7	효제동 175-12	72.7	
	11	66.1	효제동 175-23	66.1	
	12	76.0	효제동 175-13	76.0	
	13	86.0	효제동 175-24	86.0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14	99.2	효제동 175-14	99.2	
	15	123.5	효제동 175-16	110.1	공동개발 지정
			효제동 175-15	13.4	
	16	533.1	효제동 175-9	213.9	공동개발 권장
			효제동 175-3	95.9	
			효제동 175-1	223.3	
	17	99.2	효제동 175-7	99.2	
	18	170.9	효제동 175-5	170.9	
	19	110.1	효제동 175-4	110.1	
E-12	1	1,014.3	충신동 206-7	156.8	207-12, 188-15, 206-3 공동개발 지정 206-3, 206-7, 206-8, 206-9, 260-10, 214-2 공동개발 권장 206-8, 207-14, 공동개발 지정 213-3, 214-2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206-3	54.3	
			충신동 188-15	55.5	
			충신동 207-12	6.6	
			충신동 206-8	155.4	
			충신동 207-14	23.1	
			충신동 213-3	5.7	
			충신동 214-2	120.7	
			충신동 206-9	148.7	
			충신동 206-10	287.5	
	2	115.7	충신동 206-4	26.4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207-13	89.3	
	3	115.7	충신동 206-5	115.7	
	4	108.7	충신동 214-1	108.7	
	5	245.4	충신동 188-13	169.1	188-13, 188-14 공동개발 권장 188-14, 207-7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88-14	63.1	
			충신동 207-7	13.2	
	6	294.2	충신동 207-8	89.3	공동개발 권장
			충신동 207-9	82.6	
			충신동 207-6	122.3	
	7	95.3	충신동 207-1	95.3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8	155.4	충신동 207-2	155.4	
	9	316.7	충신동 186-7	81.4	186-5, 186-6 공동개발 지정 186-7, 186-8 공동개발 지정 186-6, 186-8 공동개발 권장
			충신동 186-5	30.3	
			충신동 186-6	102.5	
			충신동 186-8	102.5	
	10	170.5	충신동 186-3	86.5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81-5	58.2	
			충신동 181-3	25.8	
	11	91.5	충신동 211-2	91.5	
	12	128.9	충신동 211-1	128.9	
	13	120.5	충신동 210	68.6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209	51.9	
	14	78.8	충신동 208	78.8	
	15	104.7	충신동 211-3	104.7	
E-13	1	141.7	종로6가동 238-29	141.7	
	2	48.8	종로6가동 238-31	48.8	
	3	107.9	종로6가동 238-2	38.2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38-3	24.1	
			종로6가동 238-7	12.9	
			종로6가동 238-4	12.2	
			종로6가동 238-5	13.2	
			종로6가동 238-35	7.3	
	4	84.0	종로6가동 238-32	84.0	
	5	121.7	종로6가동 238-30	121.7	
	6	404.6	종로6가동 238-6	404.6	
	7	122.3	종로6가동 239-13	122.3	
	8	122.3	종로6가동 239-12	122.3	
	9	132.2	종로6가동 239-11	132.2	
	10	108.7	종로6가동 238-16	108.7	
	11	128.6	종로6가동 236-4	128.6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12	96.4	종로6가동 236-1	96.4	
	13	103.8	종로6가동 238-17	103.8	
	14	137.9	종로6가동 238-18	137.9	
	15	50.9	종로6가동 238-13	50.9	
	16	89.6	종로6가동 238-11	53.2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38-12	36.4	
	17	130.2	종로6가동 236-2	66.1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38-1	64.1	
	18	85.0	종로6가동 238-25	85.0	
	19	66.4	종로6가동 238-24	66.4	
	20	158.3	종로6가동 238-22	58.5	235-7, 238-20, 239-9, 239-10 공동개발 지정 238-22, 238-21 공동개발 권장
			종로6가동 238-21	51.9	
			종로6가동 238-20	35.0	
			종로6가동 239-9	9.9	
			종로6가동 239-10	2.3	
			종로6가동 235-7	0.7	
E-14	1	181.9	종로6가동 239-20	95.9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39-19	86.0	
	2	119.0	종로6가동 239-21	119.0	
	3	106.8	종로6가동 239-22	106.8	
	4	310.4	종로6가동 239-24	110.1	239-16, 239-17 공동개발 지정 239-17, 239-18 공동개발 권장 239-16, 239-24 공동개발 권장
			종로6가동 239-18	83.6	
			종로6가동 239-17	77.0	
			종로6가동 239-16	39.7	
	5	106.8	종로6가동 239-23	106.8	
	6	314.5	종로6가동 239-25	80.3	공동개발 권장
			종로6가동 239-30	234.2	
	7	81.7	종로6가동 239-26	81.7	
	8	86.0	종로6가동 239-27	86.0	
	9	98.2	종로6가동 239-28	98.2	
	10	132.3	종로6가동 239-29	93.6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40-4	38.7	
E-15	1	66.7	종로6가동 234-4	23.1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34-2	43.6	
	2	134.2	종로6가동 234-3	134.2	
	3	119.2	종로6가동 233-2	119.2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4	150.8	종로6가동 232-1	150.8	
	5	297.2	종로6가동 231-2	66.4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33-3	58.9	
			종로6가동 230	171.9	
	6	92.6	종로6가동 235-3	39.7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35-2	52.9	
	7	74.4	종로6가동 215-18	74.4	
	8	50.7	종로6가동 215-48	50.7	
	9	163.8	종로6가동 215-19	160.5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15-46	3.3	
	10	83.3	종로6가동 215-17	83.3	
	11	156.7	종로6가동 215-16	155.0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15-31	1.7	
	12	235.1	종로6가동 215-23	235.1	
	13	163.1	종로6가동 215-56	163.1	
	14	296.8	종로6가동 215-34	3.6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15-59	17.9	
			종로6가동 215-24	164.3	
			종로6가동 215-25	67.1	
			종로6가동 215-37	9.9	
			종로6가동 215-55	64.0	
	15	176.9	종로6가동 215-22	176.9	
	16	95.9	종로6가동 229	95.9	
E-16	1	82.6	종로6가동 228-14	82.6	
	2	158.6	종로6가동 228-10	158.6	
	3	69.4	종로6가동 228-11	69.4	
	4	69.4	종로6가동 228-9	69.4	
	5	142.1	종로6가동 228-8	142.1	
	6	198.3	종로6가동 228-5	76.0	228-5, 228-6 공동개발 권장 227, 228-5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27	46.3	
			종로6가동 228-6	76.0	
	7	109.1	종로6가동 228-7	109.1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8	223.1	종로6가동 226	223.1	
	9	81.6	종로6가동 225	81.6	
	10	84.0	종로6가동 241-1	84.0	
	11	180.5	종로6가동 241-2	180.5	
	12	89.3	종로6가동 241-4	89.3	
	13	87.6	종로6가동 240-1	13.9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41-5	73.7	
	14	396.5	종로6가동 239-6	46.3	239-6, 228-18 공동개발 지정 228-18, 240-3 공동개발 권장
			종로6가동 240-3	254.3	
			종로6가동 228-18	95.9	
	15	393.0	종로6가동 228-15	79.3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28-16	69.4	
			종로6가동 228-17	72.7	
			종로6가동 239-5	57.2	
			종로6가동 239-4	53.9	
			종로6가동 239-3	60.5	
	16	174.5	종로6가동 235-5	59.5	239-1, 235-6 공동개발 지정 235-5, 235-6 공동개발 권장 239-1, 239-2 공동개발 권장
			종로6가동 235-6	32.4	
			종로6가동 239-1	16.5	
			종로6가동 239-2	66.1	
	17	82.6	종로6가동 228-13	82.6	
E-17	1	1,262.2	종로6가동 239-34	207.3	239-41, 239-43, 239-44 공동개발 지정 239-34, 239-36, 239-39, 239-41, 239-42 공동개발 권장
			종로6가동 239-36	465.5	
			종로6가동 239-39	289.6	
			종로6가동 239-41	128.9	
			종로6가동 239-44	46.3	
			종로6가동 239-42	71.7	
			종로6가동 239-43	52.9	
	2	200.7	종로6가동 240-8	200.7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3	176.3	종로6가동 241-9	49.6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41-8	80.3	
			종로6가동 241-7	44.7	
			종로6가동 219-1	1.7	
	4	123.0	종로6가동 240-7	86.0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40-6	34.0	
			종로6가동 241-10	3.0	
	5	2,105.7	종로6가동 242-1	2,092.5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42-2	13.2	
E-18	1	381.3	종로6가동 210-39	8.8	210-39, 201-10 공동개발 지정 210-10, 210-11 공동개발 권장 210-11, 212-1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10-10	98.5	
			종로6가동 210-11	132.2	
			종로6가동 212-1	141.8	
	2	1,255.8	종로6가동 210-1	1,255.8	
	3	300.5	종로6가동 213-2	300.5	
	4	115.7	종로6가동 193-2	115.7	
	5	136.4	종로6가동 214-2	136.4	
	6	59.8	종로6가동 214-3	59.8	
	7	65.5	종로6가동 215-52	65.5	
	8	920.0	종로6가동 193-5	82.6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193-4	56.2	
			종로6가동 194-6	89.3	
			종로6가동 194-10	99.2	
			종로6가동 189	549.7	
			종로6가동 187	43.0	
	9	52.9	종로6가동 194-5	52.9	
	10	62.8	종로6가동 194-4	62.8	
	11	367.6	종로6가동 210-24	2.6	210-24, 210-2, 197, 197-7 공동개발 지정 197-7, 197-6 공동개발 권장 197-6, 197-5, 197-22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210-2	24.1	
			종로6가동 197	54.8	
			종로6가동 197-7	131.6	
			종로6가동 197-6	99.2	
			종로6가동 197-5	53.6	
			종로6가동 197-22	1.7	
	12	153.1	종로6가동 197-8	153.1	
E-19	1	146.5	종로6가동 197-10	146.5	
	2	1,059.8	종로6가동 197-9	106.1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197-30	187.4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종로6가동 195-2	766.3	
	3	102.5	종로6가동 194-7	102.5	
	4	119.0	종로6가동 194-8	119.0	
	5	79.3	종로6가동 195-5	79.3	
	6	241.0	종로6가동 196	241.0	
	7	436.4	종로6가동 185	436.4	
	8	228.1	종로6가동 182-1	228.1	
	9	185.1	종로6가동 179-1	185.1	
	10	177.6	종로6가동 178-1	29.8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172-2	147.8	
	11	148.4	종로6가동 173	148.4	
	12	128.9	종로6가동 171	128.9	
	13	82.6	종로6가동 184	76.0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185-1	6.6	
	14	351.6	종로6가동 185-2	2.3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168-3	83.3	
			종로6가동 168-2	62.1	
			종로6가동 169-2	203.9	
	15	49.6	종로6가동 170	49.6	
	16	92.6	종로6가동 185-3	92.6	
	17	132.9	종로6가동 166-2	132.9	
E-20	1	91.0	종로6가동 163	52.9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164	38.1	
	2	60.4	종로6가동 161	60.4	
	3	128.9	종로6가동 162	59.5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159-1	52.9	
			종로6가동 159-2	16.5	
	4	50.6	종로6가동 160-1	50.6	
	5	233.7	종로6가동 157	233.7	
	6	274.5	종로6가동 155-1	274.5	
	7	134.6	종로6가동 148-1	14.2	공동개발 지정
			종로6가동 146-1	119.4	
			종로6가동 145-2	1.0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 가구 및 획지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사유
-	○공동개발 지정에 따른 제약을 최소화하고 자율적 공동개발 등 유연한 개발 유도를 위하여 공동개발 계획 변경

2. 건축물 용도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변경)

1) 불허용도 결정(기정)조서

구 분	불허용도	비 고
전구간 (간선부 ·이면부)	•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과 무도학원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미관지구내 불허용도(해당구역) • 교육환경보호구역 준용(해당구역)	-

2) 불허용도 결정(변경)조서

구 분	불허용도	비 고
전구간 (간선부 ·이면부)	•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과 무도학원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교육환경보호구역 준용(해당구역)	-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3) 불허용도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사유
-	○ 미관지구 해제에 따른 불허용도 변경

나. 건축물의 권장용도 결정(변경)

1) 권장용도 결정(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권장용도(전층)
간선부	종묘블록	UA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창경궁로 새터길 충효길	UB	•공동주택(주거복합)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사무소, 오피스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
	대학로 율곡로	UC	•공동주택(주거복합)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사무소, 오피스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
이면부	종묘블록	UD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서울보증보험 충신시장 기독교회관 효제초교	UE	•공장 중 아파트형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
	대학천 복개로변	UF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
	율곡로 북측	UG	-

2) 권장용도 결정(변경)조서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이화동, 효제동(일부), 종로6가(일부) 일대(변경)

구 분	권장용도
간선부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연구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이면부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특화가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1층에 한함)
종묘블록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구 분	권장용도
율곡로 북측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중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관련업종

※ 적용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형도면을 따름(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조)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 효제동(일부), 종로5·6가동(일부) 일대(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권장용도(전층)
간선부	충효길	UB	•공동주택(주거복합)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사무소, 오피스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
	대학로 율곡로	UC	•공동주택(주거복합)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사무소, 오피스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
이면부	충신시장 효제초교	UE	•공장 중 아파트형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
	대학천 복개로변	UF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3) 권장용도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사유
-	○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주거용도에 대한 권장용도 계획 삭제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계획 변경

3. 건축물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건폐율 결정(변경없음)

1) 건축물의 건폐율 결정조서

구 분	건폐율	비 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4조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일반상업지역	60%	

※ 2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4조의 규정을 우선 적용함.

나. 건축물의 용적률 결정(변경)

1) 건축물의 용적률 결정(기정)조서

구 분	용적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간선부	400% 이하	600% 이하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1.0 × α현금,건축물)} 이내	-
이면부	400% 이하	500% 이하		
종묘인근 블록	300% 이하	400% 이하		
을곡로 북측 이면부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250% 이하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합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1.0 × α현금,건축물)} 이내|

[α :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대비 가중평균한 용적률]

※ 공동주택(주거복합)을 건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의 비율에 의해 산출된 용적률을 적용함.

※ 2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규정을 우선 적용함.

2) 건축물의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이화동, 효제동(일부), 종로6가(일부) 일대(변경)

구 분		용적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600% 이하	66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이면부	500% 이하	5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275% 이하		

※ 적용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형도면을 따름(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조)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 효제동(일부), 종로5·6가동(일부) 일대(변경없음)

구 분	용적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간선부	400% 이하	600% 이하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1.0 × α현금,건축물)} 이내	-
이면부	400% 이하	500% 이하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합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1.0 × α현금,건축물)} 이내

[α :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대비 가중평균한 용적률]

※ 공동주택(주거복합)을 건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의 비율에 의해 산출된 용적률을 적용함.

※ 2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규정을 우선 적용함.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3) 용적률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사유
-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24.4.)에 따라 정합성 유지를 위해 변경

다.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

1) 건축물의 높이 결정(기정)조서

구 분	적용지역	높이계획	비 고
최고높이	H-1 (충효길 및 새터길 남측 블록)	최고높이 70m 이하	•문화재 앙각규제 적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 적용
	H-2 (충효길 및 새터길 남측 블록)	최고높이 50m 이하	
	H-3 (종묘인근 및 율곡로 북측 블록)	최고높이 30m 이하	

2)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조서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이화동, 효제동(일부), 종로6가(일부) 일대(변경)

구 분	적용지역	높이계획	비 고
최고높이	H-1 (김상옥로 남측)	기준높이 70m + α	•문화재 앙각규제 적용 •α는 높이완화 인센티브 계획에 따라 산정 - α : 최대20m
	H-2 (김상옥로 및 율곡로 북측, 창경궁로 블록, 종묘인근 블록)	기준높이 50m + α	
	H-3 (종묘인근 블록)	기준높이 30m	

※ 서울도심기본계획의 높이기준을 따름

※ 높이완화의 경우 종묘에서 건축물이 조망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심의를 통해 결정

※ 적용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형도면을 따름(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조)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 효제동(일부), 종로5·6가동(일부) 일대(변경없음)

구 분	적용지역	높이계획	비 고
최고높이	H-1 (충효길 남측 블록)	최고높이 70m 이하	•문화재 앙각규제 적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 적용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3) 높이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사유
-	○ 서울도심기본계획(2023) 수립에 따라 정합성 유지를 위해 최고높이를 기준높이로 변경

4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배치 결정(변경)

1) 건축물의 배치 결정(기정)조서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 고
건축한계선	대학로, 율곡로, 창경궁로변	• 도로경계선에서 3m	-
	새터길, 충효길변	• 도로경계선에서 2m	-
	지구내 이면도로변	• 도로중심선에서 2~3m 후퇴	-
	효제동 21-3 특별계획구역	• 대학로변 3m	-
		• 남측 이면도로변 5~6m	-
벽면한계선	효제동 21-3 특별계획구역	• 남측 이면도로변, 대학로변 일부 지정	2층이하 적용

2) 건축물의 배치 결정(변경)조서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이화동, 효제동(일부), 종로6가(일부) 일대(변경)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 고
건축한계선	대학로, 율곡로, 창경궁로변	• 도로경계선에서 3m	-
	김상옥로변	• 도로경계선에서 2m	-
	지구내 이면도로변	• 도로중심선에서 2~3m	-
	효제동 21-3 특별계획구역	• 대학로변 3m	-
		• 남측 이면도로변 5~6m	-
	옛길, 물길	• 옛길 : 도로중심선에서 4m • 물길 : 도로중심선에서 6m	-
벽면한계선	효제동 21-3 특별계획구역	• 남측 이면도로변, 대학로변 일부 지정	2층이하 적용

※ 적용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형도면을 따름(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조)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 효제동(일부), 종로5 · 6가동(일부) 일대(변경없음)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 고
건축 한계선	대학로, 율곡로	• 도로경계선에서 3m	-
	충효길변	• 도로경계선에서 2m	-
	지구내 이면도로변	• 도로중심선에서 2~3m 후퇴	-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3) 배치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사유
-	○ 옛길, 물길변 역사적 도시조직 보전 및 관리를 위해 건축한계선 설정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①	효제동 21-3번지 특별계획구역	효제동 21-3번지 일대	3,247.5	-	3,247.5	-

나. 효제동 21-3번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구 분				내 용	비 고
위치				• 효제동 21-3번지 일대	
면적				• 3,247.5㎡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일반상업지역	
가구 및 획지계획				• B-22(A1)	
건축물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 용도	전층	• 일반상업지역 내 불허용도 ‣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과 무도학원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상대보호구역 내 불허용도	-
		권장 용도	전층	• 공동주택(주거복합)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사무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	기존 지침 준수, 오피스텔 제외, 재정비(안)에 따름
	밀도	건폐율		• 60%	-
		용적률		•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400% / 600% 이하 • 상한용적률: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0.7×α건축물) ※ 가중치 : 공공시설 제공 부지 용적률/사업부지 용적률 ※ α토지 : 공공시설 제공 토지면적/공공시설(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α건축물 : 공공시설 제공 건축물 환산부지면적 / 공공시설(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주거복합 신축시 도시계획조례 제48조 주거비율 준수	-
		높이		• 최고높이 50m 이하(옥탑 등 부속시설 제외 50m 이하)	2015 역사도심

구 분			내 용	비 고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준수, 앙각규제 준수	기본계획 높이 준수
	배치	건축선	• 대학로변 : 건축한계선 3m • 남측 이면도로변 : 건축한계선 5~6m	-
		벽면한계선	• 이면부 및 간선부 일부 지정	지침도 참조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대지 내공지	보도형공지	• 대학로 건축한계선 및 벽면한계선 후퇴부 보도형 공지 조성 • 이면부 건축한계선 후퇴부 일부 보도형 공지 조성	지침도 참조
		차도형공지	• 이면부 건축한계선 일부 및 벽면한계선 후퇴부 차도형 공지 조성	
	차량진출입금지구간		• 대학로변 차량 진출입금지구간 지정	-

다. 효제동 21-3번지 특별계획구역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항 목	내 용			완화기준	비 고
공동 개발	공동 개발 (지정/권장)	간선부	준수시	기준용적률×0.5α	• 2필지 : α=0.1 • 3,4필지 : α=0.15 • 5필지이상 : α=0.2
		이면부	준수시	기준용적률×0.5α	• 2필지 : α=0.1 • 3,4필지 : α=0.15 • 5필지이상 : α=0.2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0.1	• 전층권장용도는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에 50%이상시 인정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위치준수	기준용적률×0.1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 피로티구조: α=0.5 / 개방형구조: α=1.0
	쌈지형, 침상형 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α	• 피로티구조: α=0.5 / 침상형공지: α=0.8 / 개방형구조: α=1.0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	• 건축선 후퇴부분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건축선보다 추가하여 건축한계선을 후퇴한 경우 제공
	벽면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x0.8	

항 목	내 용		완화기준		비 고
대지내 통로	보행통로	공공보행 통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α		• 피로티구조: α=0.5 / 개방형구조: α=1.0
건축물 형태	개방형 입면	준수시	기준용적률×0.1		• 1층 전면부 투시형 처리 70% 이상 계획 시
친환경 인센티브	녹색건축인증		최우수(그린1등급) :기준용적률×0.12 우수(그린2등급) :기준용적률×0.08 우량(그린3등급) :기준용적률×0.04	세기준 모두 1등급 만족시: 기준용적률×0.4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준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의무 대상 준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에너지 효율 1등급 :기준용적률×0.08 에너지 효율 2등급 :기준용적률×0.06 에너지 효율 3등급 :기준용적률×0.04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신재생에너지 1등급 :기준용적률×0.12 신재생에너지 2등급 :기준용적률×0.10 신재생에너지 3등급 :기준용적률×0.08 신재생에너지 4등급 :기준용적률×0.06 신재생에너지 5등급 :기준용적률×0.04		• 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준용
	중수도 시설설치		기준용적률×0.04		• 총 사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 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 시설설치		기준용적률×0.04		• 빗물 저류 · 이용시설 용량(ton)및 빗물침투시설 •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 ×0.02이상이 되도록 설치
	옥상녹화		기준용적률×(녹화면적 /대지면적)×0.1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자연지반 보존		기준용적률×(보존면적 /대지면적)×0.2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항 목	내 용	완화기준	비 고
	녹색 주차장	기준용적률×(설치면적 /대지면적)×0.2	• 기준용적률×0.05이내
	저공해자동차	기준용적률x0.08	• [비주거 : 연면적 1만㎡이상] :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전체 주차면수의 1% 이상 전기차충전기 설치시
건물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제공시	기준용적률×0.2	• 구분 지상권 제공시 공공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주) 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2. 동일사유로 인하여 용적률 완화, 건폐율 완화, 높이 완화는 중복적용 할 수 없다.
3. 건축법 제 46조1항 소요너비 미달도로의 건축선 후퇴부분 및 같은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지정 고시한 건축선은 인센티브 면적 산정시 제외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건축선보다 추가하여 건축선을 후퇴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한다.
4. 그 밖의 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지침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을 따른다.

6. 인센티브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건폐율 완화계획 결정(변경)

1)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기정)조서

구 분	적용기준	지침내용	비 고
구역 전체	• 20m(5층)이하 건축물 신축시	• 20m(5층)이하 건축물 신축 시 - 공공시설 제공 및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제공 시 → 완화건폐율= 당해용도지역건폐율 ×(1+제공하는면적/당초 대지면적)	• 80% 이내

2)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변경)조서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이화동, 효제동(일부), 종로6가(일부) 일대(변경)

구 분	적용기준	지침내용	비 고
종묘블럭, 율곡로 북측(일반상업지역), 옛길, 물길변	• 20m(5층)이하 건축물 신축시	• 80% 이하(20p% 범위 내 완화)	• 최소개발규모 미달필지 제외 • 250㎡미만 개발에 한함

구 분	적용기준	지침내용	비 고
구역 전체	• 공공시설부지 제공시	• 80% 이하(20p% 범위 내 완화) • 완화건폐율 = 당해 용도지역 건폐율(높이관련 완화 건폐율 적용×(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 대지면적)	• 간선부 70% 이하

※ 공공시설 부지 제공시 용적률 완화 및 높이 완화와 중복 적용 하지 않음.

※ 적용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형도면을 따름(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조)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 효제동(일부), 종로5·6가동(일부) 일대(변경없음)

구 분	적용기준	지침내용	비 고
구역 전체	• 20m(5층)이하 건축물 신축시	• 20m(5층)이하 건축물 신축시 - 공공시설 제공 및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제공시 → 완화건폐율=당해용도지역건폐율 ×(1+제공하는면적/당초 대지면적)	• 80%이내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3) 건폐율 완화 변경사유서

구분	변 경 사 유
-	○ 저층 개발 유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개발효율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와 연계한 완화 기준 마련 ○ 구역 전체의 효율적 개발 유도를 위하여 공공시설 기부채납과 연계한 완화 기준 마련

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계획 결정(변경)

1)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계획 결정(기정)조서

항 목					완화기준	비 고
용적률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권장)	간선부	준수시	기준용적률×0.5α	•2필지 : α=0.1 •3,4필지 : α=0.15 •5필지이상 : α=0.2
			이면부	준수시	기준용적률×0.5α	•2필지 : α=0.2 •3,4필지 : α=0.3 •5필지이상 : α=0.4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0.1	•전층권장용도는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에 50% 이상시 인정
				1층 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해당층바닥면적)×0.1	•1층권장 용도는 1층 바닥연면적의 70%이상시 인정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위치준수	기준용적률×0.1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피로티구조 : α=0.5 •개방형구조 : α=1.0
		쌈지형, 침상형 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α	•피로티구조 : α=0.5 •침상형공지 : α=0.8 •개방형구조 : α=1.0
		건축 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α	•피로티구조 : α=0.5 •개방형구조 : α=1.2
	대지내 통로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피로티구조 : α=0.5 •개방형구조 : α=1.0
	환경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보존시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2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1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하고 법정 조경면적 제외
		중수도 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 제외
		빗물이용 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 설치
		녹색주차장/투수성포장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0.05	
		신재생 에너지 사용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 이상을 부담
		에너지 절약 계획		준수시	기준용적률×α	•1등급 : α=0.08 •2등급 : α=0.05 ※ 서울시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너지저감율, 에너지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건물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제공시	기준용적률×0.2	•구분지상권 제공시 공공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주) 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2. 대지내 공지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3.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및 건축법 제 46조 소요너비 미달도로의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면적 산정시 제외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건축선보다 추가하여 건축선을 후퇴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한다.
4. 동일사유로 인하여 용적률 완화, 건폐율 완화, 높이 완화는 중복적용 할 수 없다.
5. 용적률 완화 범위의 최소 20%는 환경친화적 건축물 계획요소의 사용시에만 제공된다.
6. 에너지 절약계획 등급은 다음표와 같다.
7.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1조 권장용도 지침준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건축물 대장에 해당용도를 표시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구 분	에너지 절감율 1)	에너지 성능지표 2)	친환경 건축물 인증 3)
1등급	33.5% 이상	81점 이상	85점 이상
2등급	23.5~33.5% 미만	74~81점 미만	75~85점 미만

주) 1. ‘건축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 에 의함
2. ‘건축물에너지 설계기준’ 에 의함
3.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지침’ 에 의함

2)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계획 결정(변경)조서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이화동, 효제동(일부), 종로6가(일부) 일대(변경)

구 분	항 목	세부기준	비 고
공통사항	역사문화건축 활성화	건축물 전체 또는 5층 이하 건축물의 구조를 목조로 적용하거나 목재를 사용하여 입면을 특화한 경우	20%
	저영향개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 건축물:빗물분담량 기준의 1.2배 이상 설치 /그 외: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빗물분담량 기준 준수	20%
간선부	지역특화용도	권장용도를 건축연면적의 50% 이상 설치하는 경우	20%
	개방형공간 조성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대지면적의 20% 이상 조성하는 경우	20%
	실내형 공지 조성	건축물 내부에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대지면적의 30% 이상 조성하는 경우	10%
	입체녹지 조성	입체녹지 공간 대지면적의 50% 이상 조성하는 경우	10%
	전선지중화	지상 전주, 전선 등을 지중화 또는 가로지장물을 대지 내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20%
	역사문화증진	자연재료사용 및 역사문화 경관 권장색채를 적용하는 경우(「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2008) 참조」	10%
	소계 (허용용적률 인센트브량의 1.5배 적용)		90%
이면부	지역특화용도	권장용도를 건축연면적의 20% 이상 설치하는 경우	20%
	개방형공간 조성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대지면적의 20% 이상 조성	10%

구 분	항 목	세부기준	비 고
	실내형 공지 조성	건축물 내부에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대지면적의 30% 이상 조성하는 경우	10%
	입체녹지 조성	입체녹지 공간 대지면적의 50% 이상 조성하는 경우	10%
	역사문화증진	자연재료사용 및 역사문화 경관 권장색채를 적용하는 경우(「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2008) 참조」	10%
	건축협정(공동개발)	인접한 30㎡ 미만 필지와 건축협정 또는 공동개발을 통해 통합개발하는 경우	10%
	소계 (허용용적률 인센트브량의 1.4배 적용)		70%
특화거리	지역특화용도	1층부 전체를 권장용도로 설치하는 경우	20%
	역사문화증진	자연재료사용 및 역사문화 경관 권장색채를 적용하는 경우(「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2008) 참조」	20%
	가로특화	가로환경개선(안)에서 제시하는 바닥포장 특성화 및 투수성 포장 조성하는 경우	10%
	개방형공간 조성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대지면적의 20% 이상 조성	10%
	건축협정(공동개발)	인접한 30㎡ 미만 필지와 건축협정 또는 공동개발을 통해 통합개발하는 경우	10%
	소계 (허용용적률 인센트브량의 1.4배 적용)		70%
을곡로 북측	지역특화용도	권장용도를 건축연면적의 20% 이상 설치하는 경우	20%
	개방형공간 조성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대지면적의 20% 이상 조성하는 경우	20%
	실내형 공지 조성	건축물 내부에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대지면적의 30% 이상 조성하는 경우	10%
	가로특화	가로환경개선(안)에서 제시하는 바닥포장 특성화 및 투수성 포장 조성하는 경우	10%
	소계 (허용용적률 인센트브량의 1~2배 적용)		60%

※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상한용적률 인센티브와 중복 적용 불가능
※ 공공공간 확보 및 지역특화용도 도입의 경우 높이 인센티브와 중복 적용 불가능
※ 건축협정(공동개발)의 경우 재정비 결정고시 이후 분할된 필지에 대하여는 적용 제외
※ 적용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형도면을 따름(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조)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 효제동(일부), 종로5·6가동(일부) 일대(변경없음)

항 목					완화기준	비 고
용적률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권장)	간선부	준수시	기준용적률×0.5α	•2필지 : α=0.1 •3,4필지 : α=0.15 •5필지이상 : α=0.2
			이면부	준수시	기준용적률×0.5α	•2필지 : α=0.2 •3,4필지 : α=0.3 •5필지이상 : α=0.4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0.1	•전층권장용도는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에 50%이상 시 인정
				1층 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해당층바닥면적)×0.1	•1층권장 용도는 1층 바닥연면적의 70%이상시 인정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위치준수	기준용적률×0.1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피로티구조 : α=0.5 •개방형구조 : α=1.0
		쌈지형, 침상형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α	•피로티구조 : α=0.5 •침상형공지 : α=0.8 •개방형구조 : α=1.0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α	•피로티구조 : α=0.5 •개방형구조 : α=1.2
	대지내 통로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피로티구조 : α=0.5 •개방형구조 : α=1.0
	환경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보존시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2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1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하고 법정 조경면적 제외
		중수도 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 제외
		빗물이용 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 설치
		녹색주차장/투수성포장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0.05	
		신재생에너지 사용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 이상을 부담
		에너지 절약 계획		준수시	기준용적률×α	•1등급 : α=0.08 •2등급 : α=0.05 ※ 서울시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너지저감율, 에너지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건물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제공시	기준용적률×0.2	•구분지상권 제공시 공공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주) 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2. 대지내 공지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3.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및 건축법 제 46조 소요너비 미달도로의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면적 산정시 제외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건축선보다 추가하여 건축선을 후퇴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한다.

4. 동일사유로 인하여 용적률 완화, 건폐율 완화, 높이 완화는 중복적용 할 수 없다.

5. 용적률 완화 범위의 최소 20%는 환경친화적 건축물 계획요소의 사용시에만 제공된다.
6. 에너지 절약계획 등급은 다음표와 같다.
7.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1조 권장용도 지침준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건축물 대장에 해당용도를 표시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구 분	에너지 절감율 1)	에너지 성능지표 2)	친환경 건축물 인증 3)
1등급	33.5% 이상	81점 이상	85점 이상
2등급	23.5~33.5% 미만	74~81점 미만	75~85점 미만

주) 1. '건축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 에 의함
2. '건축물에너지 설계기준' 에 의함
3.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지침' 에 의함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3)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사유
-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24.4)에 따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변경

다. 상한용적률 인센티브계획 결정(변경)

1) 상한용적률 인센티브계획 결정(기정)조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 상한용적률 산출식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 이내
※ 가중치란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용적률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대비 가중평균한 용적률) 비율
※ α란 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2) 상한용적률 인센티브계획 결정(변경)조서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이화동, 효제동(일부), 종로6가(일부) 일대(변경)

계획요소	완화조건	완화내용	비 고
공공시설 등 제공	기부채납시	허용용적률 + 조례용적률 × (1.3×가중치×α토지+1.0×α건축물) 이내	•건축물(공공주차장 등) 기부채납 시 1개층 이상 설치 의무
건물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지하철출입구등 건물 또는 대지내 설치시	- 대지에 설치할 경우 허용용적률 + 조례용적률 ×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 건폐면적 / 대지면적) 이내 - 건물에 설치할 경우 허용용적률 + 조례용적률 ×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 연면적 / 건물연면적) 이내	-

계획요소	완화조건	완화내용	비 고
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면적 초과 설치 시	허용용적률 + 조례용적률 × {(공개공지등 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조례용적률의 1.2배 이내 ※허용용적률인센티브와 중복적용 불가
친환경 건축물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 인증시	허용용적률 + 조례용적률 × Σ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ß)	• 정비사업, 역세권사업 등 별도의 용적률 상향 및 공공기여 방안(기준)을 갖고 있는 사업은 해당 계획기준 준용
관광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허용용적률 + 조례용적률 × 완화비율	• 조례용적률의 1.2배 이내 •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비율 결정

주1)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경우 상한용적률로 적용 가능
주2)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와 중복 적용 불가능

※ 적용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형도면을 따름(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조)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 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ß)

※ ①~③ 항목 중복 적용시 완화비율은 최대 15% 적용 ((Σ①~③) ≥ 15% -> 15% 적용)

①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

구분	ZEB1	ZEB2	ZEB3	ZEB4	ZEB5	에너지 효율1++	에너지 효율1+
완화비율	15%	14%	13%	12%	11%	6%	3%

② 녹색건축 인증

녹색건축인증	최대완화비율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6%
녹색건축 우수 등급	3%

③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	15%이상	20%이상	25%이상
완화비율	5%	10%	15%

④ 장수명주택인증(조례 개정 후 시행)

장수명주택 인증등급	최우수	우수
완화비율	15%	10%

□ 효제동(일부), 종로5·6가동(일부) 일대(변경없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 상한용적률 산출식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 이내
※ 가중치란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용적률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대비 가중평균한 용적률) 비율
※ α란 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3)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사유
-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24.4)에 따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변경

라. 높이 완화 인센티브계획 결정(변경)

1) 높이 완화 인센티브(기정)조서

구분	완화기준	비고
기준높이 완화	• 건축한계선 후퇴를 통한 전면공지 조성시에는 건축물의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산정식 적용시 전면도로의 넓이는 반대쪽 건축한계선 후퇴선까지의 거리로 완화 적용	

2) 높이 완화 인센티브(변경)조서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이화동, 효제동(일부), 종로6가(일부) 일대(변경)

계획요소	완화조건	완화내용	비 고
녹지 등 공공공간 확보	대지면적의 15%초과 확보시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기준높이 × [(설치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α	개방형 α : 1.0 침상형 α : 0.8 필로티형 α : 0.5
경제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용도 도입	지역특화용도 도입시	기준높이 × (권장용도면적/주차장제외 건축연면적) × 0.3	블록별 권장용도계획 참조
주차장 개방	부설주차장 개방시	기준높이 × (개방주차장 대수/부설주차장 대수) × 1.0 ※제공 후 구에서 관리(주차관리과)	인근 거주민들에 개방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요금 기준을 따름)
가로활성화	공공보행통로 설치시	기준높이 × (설치면적/대지면적) × 1.0	구분지상권 설정 필요
유니버셜 디자인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BF인증)을 인증하는 경우	기준높이 × 0.1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인증
범죄예방디자인 (CEPTED)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시	기준높이 × 0.1	구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 의무면적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름

※ 높이완화는 최대 20m 범위내에서 가능(종묘에서 건축물이 조망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심의를 통해 결정)

※ 공공공간 확보 및 지역특화용도 도입의 경우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와 중복 적용 불가능

※ 적용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형도면을 따름(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조)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 효제동(일부), 종로5 · 6가동(일부) 일대(변경없음)

구분	완화기준	비고
기준높이 완화	• 건축한계선 후퇴를 통한 전면공지 조성시에는 건축물의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산정식 적용시 전면도로의 넓이는 반대쪽 건축한계선 후퇴선까지의 거리로 완화 적용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3) 높이 완화 인센티브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사유
-	○ 서울도심기본계획(2023) 수립에 따라 정합성 유지를 위해 개발사업시 지역 내 필요시설 등을 유도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등(변경없음)

제어요소	적용구간	제어내용
전면공지	간선변 건축한계선	전면공지로 조성
	이면부 건축한계선	전면공지로 조성
공개공지	간선도로 가각부	공개공지 조성시 위치를 지정
공공보행통로	보행연결필요구간	폭4m 이상으로 조성

나.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결정(변경)

1)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결정(기정)조서

제어요소	계획내용
차량출입금지구간	• 주요 간선부 차량출입 원칙적 불허
제한적 차량출입금지구간	• 주요간선부 중 이면도로 차량접근이 불가한 필지
공공보행통로	• 대규모 블록에 공공보행통로 지정
보행자 우선도로	• 보행중심의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종로4 · 5가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2)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결정(변경)조서

□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충신동, 이화동, 효제동(일부), 종로6가(일부) 일대(변경)

제어요소	계획내용
차량출입금지구간	• 주요 간선부 차량출입 원칙적 불허
제한적 차량출입금지구간	• 주요간선부 중 이면도로 차량접근이 불가한 필지
공공주차장	• 2,000㎡이상 규모있는 개발 시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차장 설치 ※ 주차장 제공 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공공보행통로	• 대규모 블록에 공공보행통로 지정
보행자 우선도로	• 보행중심의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 적용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형도면을 따름(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조)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 효제동(일부), 종로5·6가동(일부) 일대(변경없음)

제어요소	계획내용
차량출입금지구간	• 주요 간선부 차량출입 원칙적 불허
제한적 차량출입금지구간	• 주요간선부 중 이면도로 차량접근이 불가한 필지
공공보행통로	• 대규모 블록에 공공보행통로 지정
보행자 우선도로	• 보행중심의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3)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사유
공공주차장	○ 주차장이 부족한 도심(상업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주차장 설치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준 마련

다. 특화가로 색채 및 가로환경개선계획 결정(신설)

1) 특화가로 색채 및 가로환경개선계획 결정조서

제어요소	계획내용
재료 색채	• 자연재료사용(벽돌, 전돌, 목재 등) 및 “서울색정립 및 체계화(2008)” 역사문화 경관 권장 색채 적용
개방형 입면	• 옛길, 물길 변으로 1층 점포의 주출입구조성(반사유리등 반사성재료 사용금지)
가로 환경	•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옥류천물길 등) • 흥덕동천은 단계적 복원 추진(단기적으로 지상부실개천 조성) • 흔적 또는 바닥포장특성화 및 투수성포장

제어요소	계획내용
가로 시설물	• 안내판 설치 및 탐방로 조성 •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통합주차장설치지원

※ 적용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형도면을 따름(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조)

※ 추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따름

2) 특화가로 색채 및 가로환경개선계획 결정사유서

구 분	결정사유
-	○ 종묘주변, 옛길, 물길 등 역사문화자산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기준마련

2.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구 분	경미한 사항	구청장권한 구도시계획위원회
법률에서 정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용도지구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
	2. 가구(영 제42조의3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이내의 변경인 경우	○
	3. 획지면적의 변경(신설, 폐지를 포함한다.)	○
	4.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층수변경은 제외한다)	○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
	6. 건축선(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벽면지정선 등을 포함한다)의 변경 또는 신설, 폐지의 경우	○
	7.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권자를 시장으로 지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9.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의 세분 또는 변경은 제외한다)	○
	10.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 완화(친환경 에너지 상한용적률에 한정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
	11.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신설, 폐지를 포함한다)과 그 위치변경에 따른 차량출입 불허구간의 변경	○

구 분	경미한 사항	구청장권한 구도시계획위원회
	12.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	○
	13.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
	14.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
	15.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
	16.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
	17.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
	18.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19. 공개공지, 보행전용통로, 보차혼용로등 대지내공지 위치 변경(신설, 폐지를 포함한다.)	○
	20. 건축물 권장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의 변경(다만,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허용용도 및 불허용도는 제외한다)	○
	21.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9 제2호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무(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계획시설, 시장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하여 입안하는 도시계획시설,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도시계획시설은 제외하며, 시장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내 자치구로 결정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경우와 제2호에 따라 사전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	1. 대지의 분할, 교환에 관한 사항, 공개공지 등 대지 내 공지의 조성방법에 관한 사항, 수종, 조경시설물의 설치계획의 변경	○
	2.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에 관한 사항	○
	3. 최대개발규모 범위내에서 2,000㎡ 이상 개발	○
	4. 최소개발규모 미만의 개발	○
	5.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계획의 변경	○
	6. 구역외 필지와의 공동개발시 지침완화 여부	○
	7. 기존건축물 연면적의 50%이내로서 500㎡이내의 기존건축물 철거 및 증축시 지침적용 완화	○
	8. 대수선 및 리모델링시 지침적용완화	○

※ 상기 표의 '법률에서 정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한 사무를 말하며, 경미한 변경에 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등의 규정에 따른다.

※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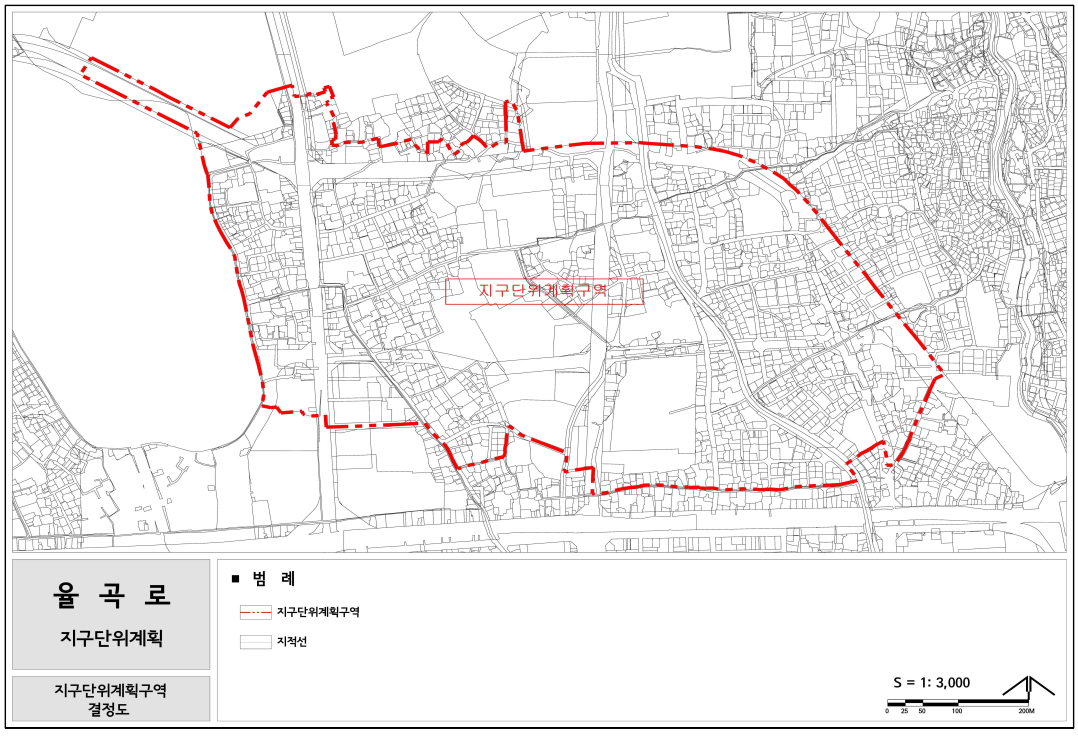
Ⅳ. 관련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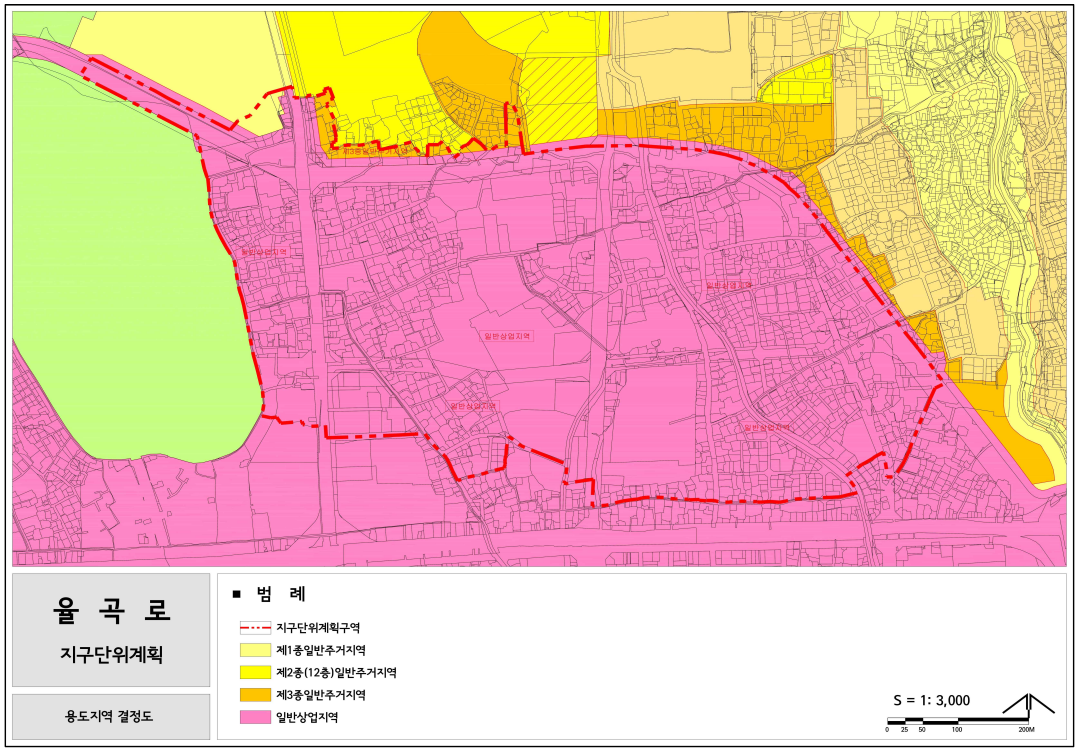
Ⅴ.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1) 및 종로구 건축과(☎02-2148-2813)에 비치·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및 서울도시공간포털(http://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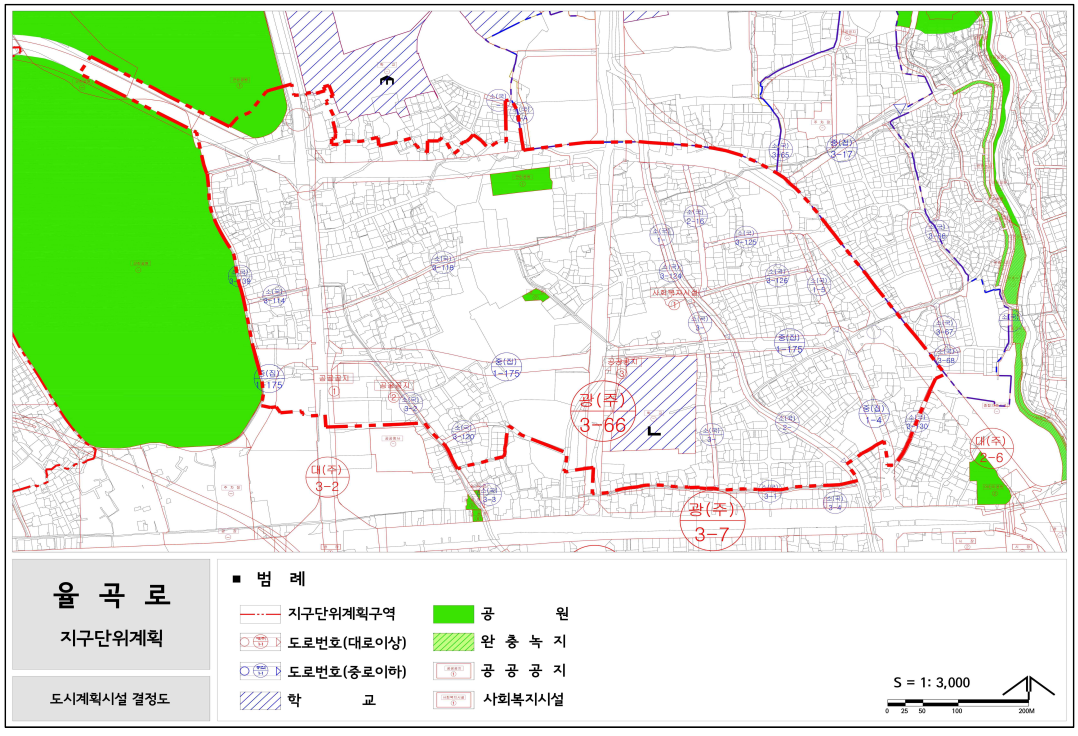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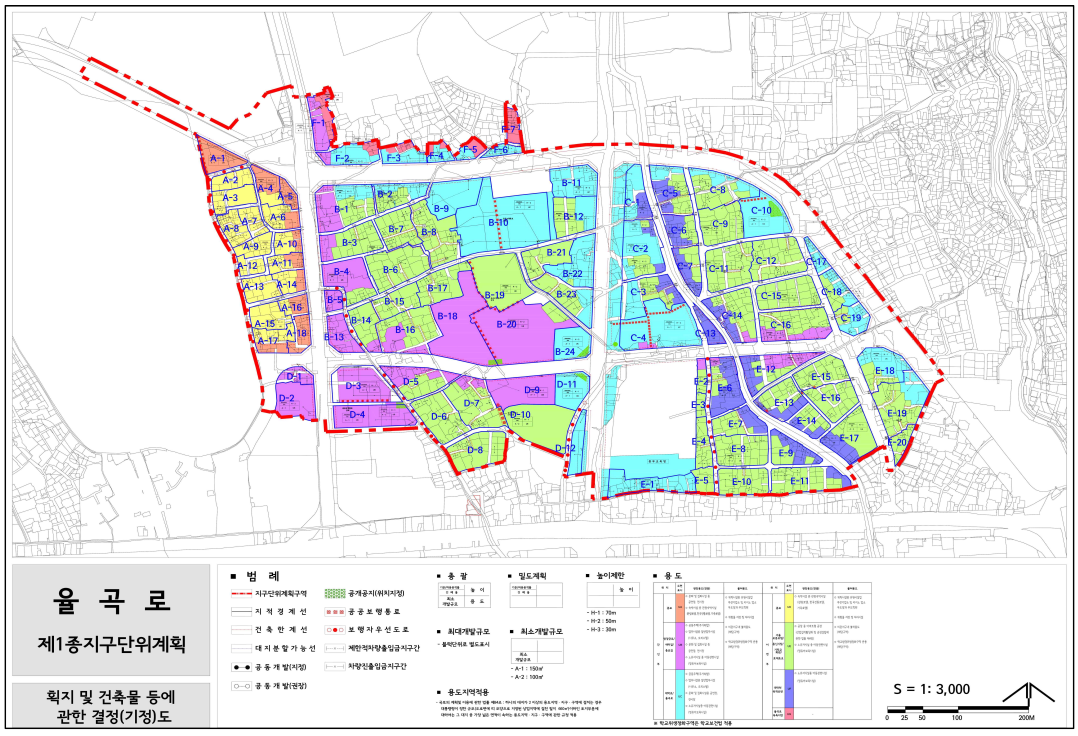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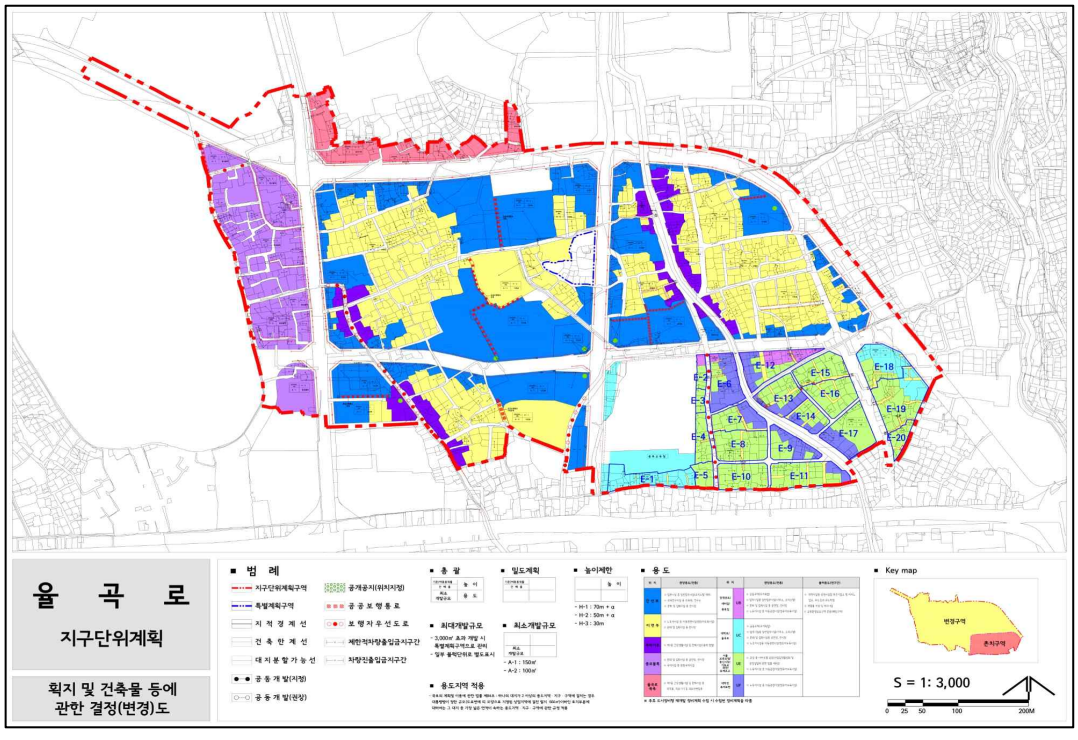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기관의 장
선람

공람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55 문의 : ☎120